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619호

2020.10.29.(목)



목 차

자치법규

[훈 령]

제103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4
제1033호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5

[예 규]

제728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	11
------------------------------------	----

[입법예고]

제2020-2978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2
제2020-2987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3
제2020-2998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4
제2020-3002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5

[행정예고]

제2020-2979호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변경 행정예고	16
---	----

고 시

제2020-426호 천호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9
제2020-429호 도시관리계획(충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6
제2020-430호 도시관리계획(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62
제2020-431호 도시관리계획(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75
제2020-432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체육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80
제2020-433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83
제2020-434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85

공 고

제2020-2968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122
제2020-2972호	2020년도 제13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122
제2020-2973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26
제2020-297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128
제2020-2982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29
제2020-2985호	지방자치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31
제2020-2990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134
제2020-2992호	부동산 개업공인증개사 등의 교육기관 모집 공고	136
제2020-2993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38
제2020-3004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46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20-346호	주식백지신탁 계약체결사실 신고사항 공고	156
------------	-----------------------------	-----

구 고 시

제2020-1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성북구)	157
제2020-195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성북구) ..	160
제2020-11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주민 휴게쉼터 조성) 실시계획인가 고시(노원구)	163
제2020-18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서대문구)	168
제2020-189호	홍은제6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대문구)	171
제2020-128호	도시계획시설사업(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양천구)	183
제2020-12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용왕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양천구)	189
제2020-213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실효 고시(구로구)	193
제2020-19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영등포구)	198
제2020-154호	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동작구)	202
제2020-155호	도시관리계획(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동작구)	204
제2020-18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관악구)	208
제2020-169호	도시계획시설사업(봉은역사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 고시(강남구)	213

구 공 고

제2020-111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용산구)	214
제2020-12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성동구) ..	215
제2020-1117호	도시관리계획(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노원구) ..	216
제2020-1156호	충정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 열람·공고(서대문구)	217
제2020-100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열람공고(금천구)	279
제2020-153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동작구)	280
제2020-1581호	도시관리계획(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서초구)	295
제2020-2034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열람 공고 (강동구)	296

사업소고시

제2020-28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01
제2020-28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01

사업소공고

제2020-34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양천소방서)	302
-----------	-----------------------------	-----

기 타

제2020-309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305
------------	--------------------------------	-----

자치법규

[훈 령]

서울특별시훈령 제103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 2,211명” 을 “총 2,208명” 으로 한다.

별표의 표 중 총계란, 본청란, 역사문화재과란, 도시공간개선단란, 사업소란, 서부도로사업소란, 강서도로사업소란 및 서부공원녹지사업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2,208	328	517	81	436	233	141	8	17	11	26	446	287	113
본 청	304	110	17	0	68	28	29	0	6	0	5	89	20	0
역사 문화재과	7	2	4									1		
도시공간 개선단	2	2												
사업소	1,608	167	498	81	256	115	98	8	9	9	17	253	240	113
서부도로 사업소	19		1	14								1	2	1
강서도로 사업소	16		1	13								1		1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136		91		2						2		36	7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기관(부서)별 공무직 정원조정 검토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관(부서)별 정원조정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총 정원을 2,211명에서 2,208명으로 3명을 감축함(제4조 및 별표)

- (역사문화재과) 일반종사원 2명 증원(0명→2명),
 시설청소원 1명 증원(0명→1명)
- (도시공간개선단) 일반종사원 2명 감축(4명→2명)
- (서부도로사업소) 대민종사원 2명 감축(3명→1명)
- (강서도로사업소) 시설경비원 1명 감축(1명→0명)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청소원 1명 감축(1명→0명)

서울특별시훈령 제1033호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미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법률자문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의뢰한 사안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요청사항”을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 규정」 제10조”를 “「서울특별시 계약 법률심사 운영 규정」 제8조”로, “계약심사”를 “계약(협약) 심사”로, “제11조”를 “제10조”로, “사업부서에서”를 “사업부서로부터”로, “최종 협약 또는 계약서”를 “최종 계약서 또는 협약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 규정」 제10조”를 “「서울특별시 계약 법률심사 운영 규정」 제8조”로, “제11조”를 “같은 규정 제10조”로, “최종 체결된 협약서 또는 계약서”를 “계약서 또는 협약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률자문 의뢰서”를 “법률자문 안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0일”을 “10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법률자문의뢰서(외부)”를 “법률자문의뢰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외부 법률고문의”를 “법률고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률자문”을 “법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법률자문 안건

의뢰부서	OO과/OO담당관			희망 자문방법 (해당란 체크)		긴급 사유
구 분	성 명	전 화	이메일	외 부 법률고문	☐ 특수 분야 전문지식 필요() ☐ 외부의 객관적 시각 필요() ☐ 기타(이유 :)	(※ 업무일 기준 10일 이상이 원칙, 긴급한 사안의 경우 사유 부기)
팀 장				내 부 법률전문관		
담 당				상관없음		
건 명	(예시)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의 주차장법 위반 여부					

1

자 문 배 경

〈작성요령〉

1. 자문의 목적, 취지 등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2. 질의사항 관련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쟁점이 정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붙임 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 옆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갑설, 을설 기재 시 부서의견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 문 요 지

자문 1항 :

○

(갑설)

—

(을설)

—

※ 부서검토 의견 : 갑설, 을설

자문 2항 :

○

(갑설)

—

(을설)

—

※ 부서검토 의견 : 갑설, 을설

붙임 : 입증자료, 관련법령 등

<유의사항>

1. 질의에 대한 회신은 담당변호사 배정 후 원칙적으로 10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 회신 드립니다.
(※ 접수 순서,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회신 드리므로, 회신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긴급처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긴급사유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증자료(관련 방침 포함)가 있는 경우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파악하신 관련 법령(조례 포함)은 빠짐없이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자문의뢰번호 2020-○○○-○]

법률자문 의뢰서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 변호사님 귀하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을 의뢰합니다.

2020. . .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1. 법률자문 안건 : 따로 붙임

2. 안건 의뢰자

o 담당자

- ○○○○과 : ○○○ 주무관 (abcdefg@seoul.go.kr)

(연락처 : 전화 2133-○○○○)

- 법률지원담당관 : ○○○ 변호사 (hijklmn@seoul.go.kr)

(연락처 : 전화 2133-○○○)

- ▶ o 자문의견서는 의뢰서 수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연 시 미리 ○○○ 주무관과 협의·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 o 자문의견서는 업무담당자 및 법률지원담당관 담당자에게 각각 E-Mail(또는 팩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자문료 지급 요청 시에는 세금계산서(자문의뢰번호를 필히 기재), 청구서와 자문결과(의견서) 원본(날인)을 법률지원담당관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서울시청 법률지원담당관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규정의 제명 및 조문을 현행화하고, 일부 명확하지 않은 조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훈령을 정비하여 법률자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 규정」의 제명과 계약심사에 대한 근거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함(제6조 및 제8조).

나. 동일한 내용에 대한 반복적 법률자문 의뢰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제4조).

다. 안건의 법률자문 기간(10일)에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제외하고, 실근무일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제9조).

라. 그 밖에 “외부 법률고문”을 “법률고문” 등으로 용어를 정비함.

[예 규]

서울특별시예규 제728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를 삭제한다.

제20조의5제1항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을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으로 한다.

제24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계약상대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장이 정한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의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⑮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4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포괄임금 방식 근로계약서 대신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건설산업기본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서 공사대금의 청구·수령 시 이용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시스템과 예규에서 규정하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중복되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제20조의4 삭제).

나. 주휴수당, 고용개선장려금 등의 투명한 지출 및 건설일용근로자의 체계적인 근로내역 관리를 위하여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적용대상의 기준을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소규모 공사로 확대함(제20조의5제1항).

다. 계약상대자가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함(제24조제14항 및 제15항 신설).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2978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기술발전과 시민의 다양한 수요 등의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이메일에 국한된 전자고지 신청 서식을 다양한 전자고지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자고지(이메일) 신청(변경, 해지)서’ 서식을 개정하고, 조례 및 규칙의 체계에 맞게 용어 및 서식명을 정비함(안 제29조제3항 및 안 별지 제26호서식).

가. 휴대전화(문자, 모바일 앱 등)에 의한 고지 방법을 추가함.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항목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전화: 02-3146-1188, Fax: 02-3146-1209, E-mail: kimseoul@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987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2020. 3. 26.)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시험 의뢰시 부과되는 수수료 기준이 관련 상위법령의 수수료를 준용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검사·시험수수료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함(안 제7조제1호 및 제2호, 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주암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전화: 02-570-3330, FAX: 02-570-3338, E-mail: selina@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2998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정보별 공표 방법을 정비하고 용어를 정비하며, 하부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기능을 시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집행기관” 용어를 “공개대상기관” 으로 변경함(안 제2조, 제3조,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

나. 조례의 개정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행정정보 공개 사항에 해당 행정정보의 담당부서가 삭제됨에 따라 별표의 공개 항목에서도 담당부서를 삭제함(안 별표).

다.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를행정기관의 심의회 기능을 포괄하므로, 하부 소속기관의 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

라. 인용 제명의 오기와 어법에 어긋난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등을 정정하는 등 규칙을 정비함(안 제2조, 제2조의2,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정보공개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정보공개정책과(전화: 02-2133-5679, FAX: 02-2133-0769, 이메일: skysnowman1@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002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 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으로 장애인 동행 보호자 1명에 대한 한강공원 이용료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감면의 범위 등을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나. 이용자의 편의와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운영시간 및 요금 제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강공원 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에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동행하는 보호자를 감면 대상에 포함하되, 즉시 감면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부장이 감면 시설과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별표 2).
- 나. 한강공원의 주차장 이용시간을 기간의 구분 없이 상시 06:00부터 24:00까지로 규정함(안 별표 2).
- 다.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차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강공원의 수영장, 물놀이장, 캠핑장 이용 차량을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승용차 요일제 폐지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 전자 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대한 감면을 중단함(안 별표 2).
- 라. 3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전체 요금의 30%를 감면하던 규정을 3시간을 초과하는 요금에 대해서만 30%를 감면하도록 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전화: 02-3780-0753, FAX: 02-3780-0740, 이메일: funksun@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2979호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변경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방식을 변경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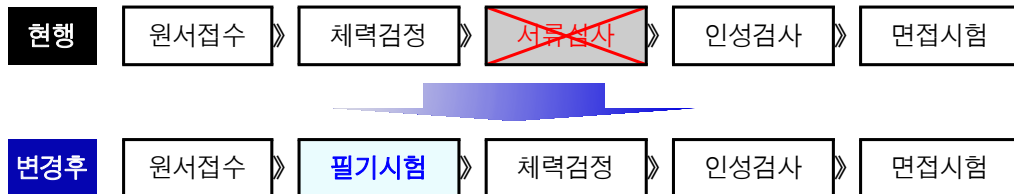
1. 변경이유

청원경찰 채용절차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여 우수한 청원경찰을 선발하기 위하여 필기시험을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1년 청원경찰 채용시험부터 서류전형을 폐지하고 필기시험을 도입함.

※ 서류전형 : 일반경비지도사, 무도단증, 국어능력인증시험, 한국사능력시험 등의 자격증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함.



나. 필기시험 과목은 민간경비론과 일반상식으로 하고, 과목당 20문항씩을 출제함.

- 1) 민간경비론(20문항): 청원경찰 경비업무 일반에 대한 법적·이론적 지식으로 민간경비론 10문제, 청원경찰법 10문제로 구성
- 2) 일반상식(20문항) : 한국사 10문제, 시정 주요시책 및 일반상식 10문제로 구성

다. 필기시험에서는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되, 과목별로 40점 이상 득점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필기시험 합격배수는 변경될 수 있음.

라. 무도단증 및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취업지원대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필기시험에 가산특전을 부여함.

1) 가산특전 자격증 및 대상

구분	가산 특전 대상 분야	가산비율	비고
무도단증 소지자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2~3단 : 3%	무도단증과 자격증은 높은 가산비율의 하나만 적용
		4단 이상 : 5%	
자격증 소지자	일반경비지도사	과목별 만점의 5%	
	응급구조사	1급 : 과목별 만점의 3%	
		2급 : 과목별 만점의 1%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2) 무도단증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또는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중앙본부 및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인·단체로서 시장이 청원경찰 채용공고 시에 공고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단증만 인정함.

3) 무도단증, 자격증 및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중복 가산특전

가) 무도단증 또는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가장 가산비율이 높은 무도단증 또는 자격증 하나만 적용함.

나) 무도단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무도단증 또는 자격증 가산비율에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을 합산함.

3.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인사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전화: 2133-5566, FAX: 2133-0773, E-mail: alswns5689@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의견 제출의 내용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변경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1. 찬성 / 반대 여부
		2. 그 이유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426호

천호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7호(1997.1.21)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9-451호(2019.12.26)로 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천호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천호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원경관을 고려한 근로자대기실 등 설치하여 현장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위 치 : 강동구 천호동 360번지

3. 면 적 : 26,696.8㎡

4. 천호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02)2133-2075) 및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02)2181-1195)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천호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조서

가. 총괄표(위치 : 강동구 천호동 360번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6,696.8	9,801.6	3	486.5	1,989.5	234	26,696.8	9,837.6	5	522.5	2,025.5	234	
기 반 시 설	소 계	6,423.3	6,423.3					6,423.3	6,423.3					
	도 로	3,674	3,674					3,674	3,674					
	광 장	2,749.3	2,749.3					2,749.3	2,749.3					
조 경 시 설		932.8	932.8					932.8	932.8					
휴 양 시 설		244	244	1	21.5	21.5	77	244	244	1	21.5	21.5	77	
운 동 시 설		1,261.5	1,261.5				27	1,261.5	1,261.5				27	
교 양 시 설		653	653	1	429	1,932	1	653	653	1	429	1,932	1	
편 익 시 설		251	251				3	251	251				3	
관 리 시 설		36	36	1	36	36	126	72	72	3	72	72	126	증)2동, 36㎡
녹 지 및 기 타		16,895.2						16,859.2						감) 36㎡
시 설 율 (법정40%)		(9,801.6 / 26,696.8) × 100 = 36.71%						(9,837.6 / 26,696.8) × 100 = 36.84%						
건 폐 율 (법정 20%)		(486.5 / 26,696.8) × 100 = 1.82%						(522.5 / 26,696.8) × 100 = 1.95%						

나. 시설조서 (변경결정)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26,696.8	9,801.6			486.5	1,989.5	234			26,696.8	9,837.6			522.5	2,025.5	234	증)36㎡
기반 시설	소 계			6,423.3	6,423.3								6,423.3	6,423.3						
	도 로		천호동360	3,674	3,674							천호동360	3,674	3,674						
	광 장	가	천호동360	2,749.3	2,749.3						가	천호동360	2,749.3	2,749.3						
		가-1	천호동360	(919.1)	(919.1)						가-1	천호동360	(919.1)	(919.1)						
		가-2	천호동360	(1,294.4)	(1,294.4)						가-2	천호동360	(1,294.4)	(1,294.4)						
		가-3	천호동360	(453.3)	(453.3)						가-3	천호동360	(453.3)	(453.3)						
		가-4	천호동360	(82.5)	(82.5)						가-4	천호동360	(82.5)	(82.5)						
조경 시설	소 계			932.8	932.8								932.8	932.8						
연 못	나	천호동360	932.8	932.8						나	천호동360	932.8	932.8							
휴양 시설	소 계			244	244			21.5	21.5	77			244	244			21.5	21.5	77	
	팔각정자	1	천호동360	40	40	목조	1동	21.5	21.5		1	천호동360	40	40	목조	1동	21.5	21.5		
	파고라	①								7	①								7	
		①-1	연못							1	①-1	연못							1	
		①-2	광장							1	①-2	광장							1	
		①-3	광장							1	①-3	광장							1	
		①-4	농구장							1	①-4	농구장							1	
		①-5	무대							1	①-5	무대							1	
		①-6	연못							1	①-6	연못							1	
		①-7	광장							1	①-7	광장							1	
	휴게소	다	천호동360	163	163						다	천호동360	163	163						
		다-1	천호동360	(24)	(24)						다-1	천호동360	(24)	(24)						
		다-2	천호동360	(26)	(26)						다-2	천호동360	(26)	(26)						
		다-3	천호동360	(26)	(26)						다-3	천호동360	(26)	(26)						
		다-4	천호동360	(26)	(26)						다-4	천호동360	(26)	(26)						
		다-5	천호동360	(26)	(26)						다-5	천호동360	(26)	(26)						
		다-6	천호동360	(35)	(35)						다-6	천호동360	(35)	(35)						
야외탁자	②	휴게소							12	②	휴게소								12	
벤치	③	전지역							56	③	전지역								56	
앉 음 벽	④	진입구							2	④	진입구								2	
전망데크	⑤	연못	41	41						⑤	연못	41	41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공공 시설	소 계			1,261.5	1,261.5					27			1,261.5	1,261.5					27	
	소운동장	라	천호동360	998	998						라	천호동360	998	998						
	체력단련장	마	천호동360	263.5	263.5						마	천호동360	263.5	263.5						
		마-1	천호동360	(30)	(30)						마-1	천호동360	(30)	(30)						
		마-2	천호동360	(33)	(33)						마-2	천호동360	(33)	(33)						
		마-3	천호동360	(29)	(29)						마-3	천호동360	(29)	(29)						
		마-4	천호동360	(65)	(65)						마-4	천호동360	(65)	(65)						
		마-5	천호동360	(20)	(20)						마-5	천호동360	(20)	(20)						
		마-6	천호동360	(20)	(20)						마-6	천호동360	(20)	(20)						
		마-7	천호동360	(20)	(20)						마-7	천호동360	(20)	(20)						
		마-8	천호동360	(21.5)	(21.5)						마-8	천호동360	(21.5)	(21.5)						
		마-9	천호동360	(25)	(25)						마-9	천호동360	(25)	(25)						
	체력단련시설	㉔	천호동360							27	㉔	천호동360							27	
교양 시설	소 계			653	653			429	1,932	1			653	653			429	1,932	1	
	도 서 관	2	천호동360	473	473	R.C	1동	429	1,932		2	천호동360	473	473	R.C	1동	429	1,932		
	야외 무대	㉕		180	180					1	㉕		180	180					1	
편익 시설	소 계			251	251					3			251	251					3	
	주 차 장	바	천호동360	251	251						바	천호동360	251	251						
	음 수 장	㉖	광장							3	㉖	광장							3	
관리 시설	소 계			36	36			36	36	126			72	72			72	72	126	증)36㎡
	안 내 판	㉗	전지역							9	㉗	전지역							9	
	제 어 실	3	연 못	36	36	컨테이너	1동	36	36		3	연 못	36	36	컨테이너	1동	36	36		
	공 원 등	㉘	전지역							64	㉘	전지역							64	
	인부대기실	㉙	광 장							1	㉙	광 장							1	
											4	광 장	18	18	컨테이너	1동	18	18		증)18㎡
	안내초소	㉚	광 장							1	㉚	광 장							1	
	볼라드	㉛	입구							51	㉛	입구							51	
	창고										5	광 장	18	18	컨테이너	1동	18	18		증)18㎡
녹지및 기타	소 계			16,895.2									16,859.2							
	녹 지		전지역	16,895.2								전지역	16,859.2							감)36㎡

다. 도 로 조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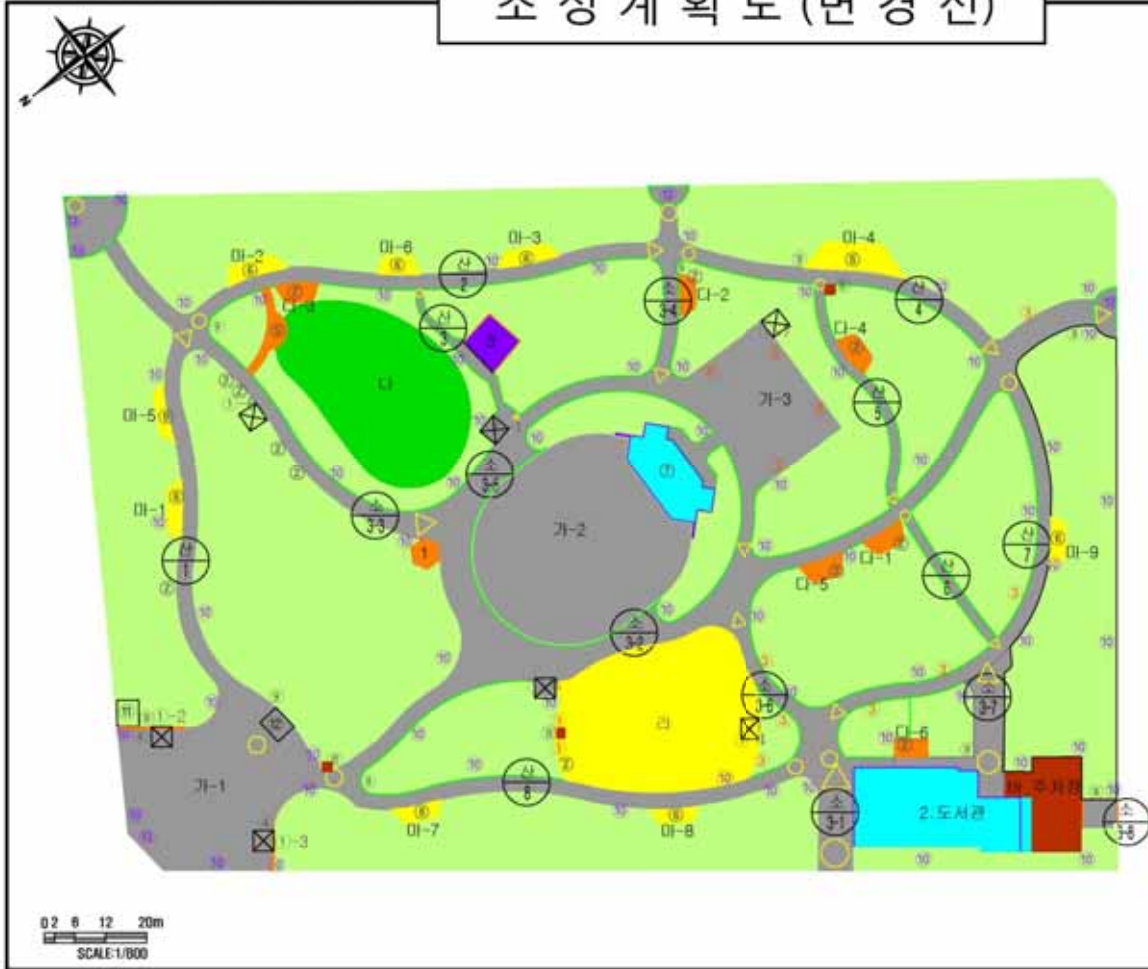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3,674				
당 초	소 로	계				2,032				
당 초		3류	1	4	20	80	차량진입로	서측진입구	소로6	
당 초		"	2	4	198	792	주진입로	광장	남측진입구	
당 초		"	3	3	102	306	부진입로	북동측진입구	소로5	
당 초		"	4	3	35	105	부진입로	동측진입구	소로5	
당 초		"	5	4	127	508	부진입로	소로2	소로2	
당 초		"	6	3	38	114	부진입로	소로1	소로2	
당 초		"	7	4	18	72	부진입로	도서관	산책로7	
당 초		"	8	4	12	48	주차장진입로	남측진입구	주차장	
당 초		"	9	1	7	7	제어실진입로	산책로2	제어실	
당 초		계				1,642				
당 초	산책로	3류	1	3	93	279	산 책 로	소로2	소로3	
당 초		"	2	3	94	282	산 책 로	소로3	소로4	
당 초		"	3	3	36	108	산 책 로	산책로2	소로6	
당 초		"	4	2	75	225	산 책 로	소로4	소로2	
당 초		"	5	2	48	94	산 책 로	산책로4	소로2	
당 초		"	6	2	30	60	산 책 로	소로2	산책로7	
당 초		"	7	3	96	288	산 책 로	소로2	소로8	
당 초		"	8	3	102	306	산 책 로	소로8	소로2	

조성계획도(변경전)

천호근린공원

범례

구분	부호	면적	비고	면적/비고
전체	전체	26,896.8		
조성면적	조성면적	8,423.3		
가-1	가-1	818.3	1개소	
가-2	가-2	254.4	1개소	
가-3	가-3	403.3	1개소	
가-4	가-4	82.5	1개소	
가-5	가-5	3,674.4		
가-6	가-6	932.8		
가-7	가-7	932.8		
가-8	가-8	244.3		
가-9	가-9	403.3		
가-10	가-10	403.3		
가-11	가-11	403.3		
가-12	가-12	403.3		
가-13	가-13	403.3		
가-14	가-14	403.3		
가-15	가-15	403.3		
가-16	가-16	403.3		
가-17	가-17	403.3		
가-18	가-18	403.3		
가-19	가-19	403.3		
가-20	가-20	403.3		
가-21	가-21	403.3		
가-22	가-22	403.3		
가-23	가-23	403.3		
가-24	가-24	403.3		
가-25	가-25	403.3		
가-26	가-26	403.3		
가-27	가-27	403.3		
가-28	가-28	403.3		
가-29	가-29	403.3		
가-30	가-30	403.3		
가-31	가-31	403.3		
가-32	가-32	403.3		
가-33	가-33	403.3		
가-34	가-34	403.3		
가-35	가-35	403.3		
가-36	가-36	403.3		
가-37	가-37	403.3		
가-38	가-38	403.3		
가-39	가-39	403.3		
가-40	가-40	403.3		
가-41	가-41	403.3		
가-42	가-42	403.3		
가-43	가-43	403.3		
가-44	가-44	403.3		
가-45	가-45	403.3		
가-46	가-46	403.3		
가-47	가-47	403.3		
가-48	가-48	403.3		
가-49	가-49	403.3		
가-50	가-50	403.3		
가-51	가-51	403.3		
가-52	가-52	403.3		
가-53	가-53	403.3		
가-54	가-54	403.3		
가-55	가-55	403.3		
가-56	가-56	403.3		
가-57	가-57	403.3		
가-58	가-58	403.3		
가-59	가-59	403.3		
가-60	가-60	403.3		
가-61	가-61	403.3		
가-62	가-62	403.3		
가-63	가-63	403.3		
가-64	가-64	403.3		
가-65	가-65	403.3		
가-66	가-66	403.3		
가-67	가-67	403.3		
가-68	가-68	403.3		
가-69	가-69	403.3		
가-70	가-70	403.3		
가-71	가-71	403.3		
가-72	가-72	403.3		
가-73	가-73	403.3		
가-74	가-74	403.3		
가-75	가-75	403.3		
가-76	가-76	403.3		
가-77	가-77	403.3		
가-78	가-78	403.3		
가-79	가-79	403.3		
가-80	가-80	403.3		
가-81	가-81	403.3		
가-82	가-82	403.3		
가-83	가-83	403.3		
가-84	가-84	403.3		
가-85	가-85	403.3		
가-86	가-86	403.3		
가-87	가-87	403.3		
가-88	가-88	403.3		
가-89	가-89	403.3		
가-90	가-90	403.3		
가-91	가-91	403.3		
가-92	가-92	403.3		
가-93	가-93	403.3		
가-94	가-94	403.3		
가-95	가-95	403.3		
가-96	가-96	403.3		
가-97	가-97	403.3		
가-98	가-98	403.3		
가-99	가-99	403.3		
가-100	가-100	403.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429호

**도시관리계획(충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2-2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0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2020.7.8.)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충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10월 29일

서울특별시 장

I. 결정 취지

- 서대문역 일대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도심 범위 내 역세권으로서의 도심 지원기능 강화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충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충현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 충정로2가 2-2 일대	-	증)49,210	49,210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면 적 (㎡)	결 정 사유
신설	①	서대문구 충정로2가 2-2 일대	49,210	· 뉴타운(북아현, 돈의문) 및 도시환경정비구역(마포로4)과 인접하고 서대문 고가도로 철거('15.9),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16.8)에 따라 급격한 도시변화가 예상되어 선제적 도시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 무질서한 개발을 예방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심범위 내 역세권으로서의 도시의 지원기능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9,210.0	-	49,210.0	10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40,124.8	-	40,124.8	81.5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9,085.2	-	9,085.2	18.5	

주) 특별계획구역①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제3종일반주거지역(1,024.8㎡) →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방화지구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구분	도면 번호	지구명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방화지구	서대문~영천간	27,600 (4,320)	- (360)	12	건고제727 (63.12.13.)	

주)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 연장임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변경)

가. 도 로 (변경)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6	649 (554)	5,555 (4,360)	1	160 (65)	2,532 (1,337)	-	-	-	5	489	3,023
중로	1	160 (65)	2,532 (1,337)	1	160 (65)	2,532 (1,337)	-	-	-	-	-	-
소로	5	489	3,023	-	-	-	-	-	-	5	489	3,023

주)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 또는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1	6	20	집산 도로	160 (65)	충정로2가 113-2	충정로2가 102-2	일반 도로	-	총고제722호 (36.03.26.)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40	충정로2가 74	충정로2가 130-1	일반 도로	-	서고286호 (76.11.01.)	
변경	소로	3	1	6	국지 도로	140	충정로2가 74	충정로2가 130-1	보행자 우선도로	-		
기정	소로	3	2	4	국지 도로	41	충정로2가 5-9	충정로2가 7-2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3	2	4	국지 도로	41	충정로2가 5-9	충정로2가 7-2	보행자 우선도로	-	-	
신설	소로	3	3	6	국지 도로	75	중로3-42 호선	대로1-7 호선	보행자 우선도로	-	-	
기정	소로	3	19	6	국지 도로	153	충정로2가 31	냉천동 180-2	일반 도로	-	건고제560호 (63.09.19.)	
변경	소로	3	19	6	국지 도로	153	충정로2가 31	냉천동 180-2	보행자 우선도로	-		
기정	소로	3	52	6	국지 도로	80	냉천동 152	냉천동 241-5	일반 도로	-	건고제560호 (63.09.19.)	
변경	소로	3	52	6	국지 도로	80	냉천동 152	냉천동 241-5	보행자 우선도로	-		

주)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 또는 구역에 접한 연장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3-1	소로 3-1	•사용형태 변경 - 일반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이면부 보행활성화 유도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사용형태 변경
소로 3-2	소로 3-2	•사용형태 변경 - 일반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소로 3-3	•도로 신설 -B=6m, L=75m	•현황 개설도로(통일로9길)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및 보행활성화 유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사용형태 변경
소로 3-19	소로 3-19	•사용형태 변경 - 일반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이면부 보행활성화 유도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사용형태 변경
소로 3-52	소로 3-52	•사용형태 변경 - 일반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나. 주차장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노외 주차장	서대문구 총정로2가동 78-13외 4필지	751.2	-	751.2	서대문구고시 제2000-94호 (00.10.25.)	63면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결정조서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가 구 (신 설)	GR-1	냉천동 4번지 일대	8,805.8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노선상업지역(통일로변)
	GR-2	냉천동 144번지 일대	1,709.0	• 제3종 일반주거지역
	GR-3	총정로2가 40번지 일대	8,190.1	
	GR-4	총정로2가 78-23번지 일대	7,084.2	
	GR-5	총정로2가 185-10번지 일대	10,809.4	
	GC-1	냉천동 158번지 일대	1,365.4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노선상업지역(통일로변)
	GC-2	총정로2가 2-2번지 일대	4,187.5	• 일반상업지역
	GC-3	총정로2가 8-2번지 일대	2,839.0	

2) 획지 결정조서

가. 최대개발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 고
간선부		2,000㎡ 이하	-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기존대지 제외 - 계획적 필요에 의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공동개발(지정, 권장)이 적용된 대지 제외 - 자율적 공동개발 시 최대개발규모 준수
이면부	GR 1,5	1,000㎡ 이하	
	GR 2,3,4	500㎡ 이하	

나.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

○ 획지계획 : 없음

다.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에 관한 결정조서

■ 기본방향

구분	지정원칙
공동개발(지정)	◦ 둘 이상의 필지가 묶여 하나의 건축물로 공동건축된 경우 ◦ 인접대지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 건축법상 행지로서 공동개발을 통한 접근도로 확보가 필요한 경우
공동개발(권장)	◦ 필지의 면적이 대지분할 최소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주거지역 90㎡ 이하, 상업지역 150㎡ 이하) ◦ 필지의 형상이 부정형하거나 세장형하여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이 예상되는 경우 ◦ 적정개발규모를 유도하고자 하는 경우

■ 결정조서

가구 번호	연번	면적 (㎡)	지 번	필지면적 (㎡)	계 획 내 용		지정사유	비고	
GR-1	1	299.5	냉천동 1-1	31.1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간선변 적정개발규모 유도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 (1-1,2-1,203-2,205,204, 205-1,207)		
			냉천동 2-1	54.6					
			냉천동 203-2	15.5					
			냉천동 205	5.2					
			냉천동 204	120.3	공동개발 (지정)				
			냉천동 205-1	0.4					
			냉천동 207	72.4					
	2	153.6	냉천동 3-3	76.7	공동개발(권장)		이면부 필지의 부정형 개발 방지 및 적정개발 유도		
			냉천동 4-3	18.8					
			냉천동 5-2	58.1					
	3	365.0	냉천동 204-1	19.2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동일소유 부지 간선변 적정개발규모 유도		
			냉천동 209	97.5					
			냉천동 210	89.3					
			냉천동 212	115.7					
			냉천동 212-1	28.8					
			냉천동 212-4	5.8					
			냉천동 212-5	8.7					
	4	348.2	냉천동 211	86.0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부지 간선변 적정개발규모 유도		
			냉천동 213	262.2					
	5	751.6	냉천동 216	78.7	공동개발(권장)		간선변 적정개발규모 유도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 (216, 220, 241-10)		
			냉천동 218	290.9					
			냉천동 219	277.7					
			냉천동 220	85.0					
			냉천동 241-10	19.3					

가구 번호	연번	면적 (㎡)	지 번	필지면적 (㎡)	계 획 내 용	지정사유	비고
	6	20.8	냉천동 219-1	9.9	공동개발(지정), 냉천동 219와 공동개발(권장)	동일소유 부지 간선변 적정개발규모 유도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	
			냉천동 12-1	10.9			
	7	864.8	냉천동 12	856.2	공동개발(지정), 냉천동 4-5와 공동개발(권장)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 및 건축법 상 맹지 (12-2)	
			냉천동 12-2	8.6			
GR-1	8	216.5	냉천동 241-11	64.5	공동개발(권장)	간선변 적정개발규모 유도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 (241-11, 223, 224)	
			냉천동 223	79.3			
			냉천동 224	72.7			
	9	129.9	냉천동 227	119.7	공동개발(지정), 냉천동 241-11, 224와 공동개발(권장)	간선변 적정개발규모 유도 동일소유 부지	
			냉천동 227-1	10.2			
	10	53.9	냉천동 14-2	1.0	공동개발(지정)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14-2, 225, 225-1) 건축법상 맹지 (14-2) 동일소유 부지 (225, 225-1)	
			냉천동 225	43.0			
			냉천동 225-1	9.9			
	11	236.4	냉천동 226	174.2	공동개발(권장), 냉천동 225-1과 공동개발(권장)	간선변 적정개발규모 유도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231)	
			냉천동 231	62.2			
	12	124.3	냉천동 13-1	112.4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부지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14-5, 14-6)	
			냉천동 14-5	9.9			
			냉천동 14-6	2.0			
	13	270.2	냉천동 23	154.4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부지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24-1, 24-3)	
			냉천동 24-1	56.3			
			냉천동 24-3	59.5			
	14	486.2	냉천동 17	69.4	공동개발(지정), 냉천동 232, 237과 공동개발(권장)	동일소유 부지 간선변 적정개발규모 유도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17, 234, 235, 241-9, 236)	
			냉천동 234	11.2			
			냉천동 235	52.9			
			냉천동 241-9	6.2			
			냉천동 236	15.9			
	15	156.7	냉천동 233	330.6	공동개발(지정), 냉천동 232, 236과 공동개발(권장)	동일소유 부지 (238, 239) 간선변 적정개발규모 유도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237, 238, 239)	
			냉천동 237	56.2			
			냉천동 238	65.8			
	16	484.6	냉천동 239	34.7			
			냉천동 18-1	84.3	공동개발(권장)	이면부 필지의 부정형 개발 방지 및 적정개발 유도	
			냉천동 20-1	400.3			
GR-2	1	1,009.3	냉천동 144	148.3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및 기 공동개발 부지	
			냉천동 147	861.0			
	2	218.2	냉천동 150	95.9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부지 이면부 필지의 적정개발 유도	
			냉천동 155	122.3			
	3	102.3	냉천동 152	79.3	공동개발(권장)	이면부 필지의 부정형 개발 방지 및	

가구 번호	연번	면적 (㎡)	지 번	필지면적 (㎡)	계 획 내 용	지정사유	비고
			냉천동 152-1	16.5		적정개발 유도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152)	
			냉천동 182-5	*6.5			
GR-3	1	152.1	냉천동 176	62.8	공동개발(권장)	이면부 필지의 부정형 개발 방지 및 적정개발 유도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176)	
			냉천동 177	89.3			
	2	184.3	냉천동 178	149.7	공동개발(권장)	이면부 필지의 부정형 개발 방지 및 적정개발 유도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180-2)	
			냉천동 180-2	34.6			
	3	185.1	냉천동 181-1	103.5	공동개발(권장)	이면부 필지의 부정형 개발 방지 및 적정개발 유도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181-2)	
			냉천동 181-2	12.2			
			냉천동 181-3	69.4			
	4	277.1	냉천동 183-2	198.6	공동개발(권장)	이면부 적정개발유도	
			냉천동 183-4	78.5			
	5	178.9	냉천동 184-25	95.2	공동개발(권장)	이면부 적정개발유도 및 맹지 (184-25)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184-29)	
			냉천동 184-29	83.7			
	6	277.1	냉천동 184-2	198.6	공동개발(권장)	이면부 적정개발유도	
			냉천동 184-4	78.5			
	7	178.2	충정로2가 16-20	82.0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부지 및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16-20)	
			충정로2가 16-23	96.2			
	8	141.9	충정로2가 16-21	5.0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부지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16-21)	
			충정로2가 16-24	136.9			
	9	212.5	충정로2가 16-11	1.3	공동개발(권장)	이면부 적정개발유도 및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16-11)	
			충정로2가 20	141.8			
			충정로2가 22	69.4			
	10	354.3	충정로2가 23-1	122.3	공동개발(권장)	이면부 적정개발유도 및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25)	
			충정로2가 24	152.1			
			충정로2가 25	79.9			
	11	240.3	충정로2가 35	239	공동개발(지정), 충정로2가 131-20과 공동개발(권장)	이면부 적정개발유도 및 동일소유 부지,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34-1, 131-20)	
			충정로2가 34-1	1.3			
	12	387.5	충정로2가 36	83.4	공동개발(권장)	이면부 적정개발유도 및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36)	
			충정로2가 37-7	304.1			
	13	404.6	충정로2가 37-12	99.2	공동개발(권장)	이면부 적정개발유도	
			충정로2가 37-13	155.4			
			충정로2가 37-14	150.0			
	14	1,082.1	충정로2가 37-2	89.6	공동개발(지정), 충정로2가 37-23과 공동개발(권장)	이면부 적정개발유도 및 동일소유 부지,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37-2, 37-23)	
			충정로2가 40	992.5			
	15	92.3	충정로2가 37-17	69.4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부지	

가구 번호	연번	면적 (㎡)	지 번	필지면적 (㎡)	계 획 내 용	지정사유	비고
			충정로2가 131-11	22.9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131-11)	
GR-4	1	106.5	충정로2가 74	101.6	공동개발(권장)	이면부 적정개발유도 및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78-11)	
			충정로2가 78-11	4.9			
	2	369.8	충정로2가 76	368.8	공동개발(권장)	이면부 적정개발유도 및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78-9)	
			충정로2가 78-9	1.0			
	3	224.8	충정로2가 78-3	99.2	공동개발(지정)	기 공동개발 부지	
			충정로2가 78-4	125.6			
	4	99.8	충정로2가 78-14	94.5	공동개발(지정), 충정로2가 78-7과 공동개발(권장)	동일소유 부지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79-5)	
			충정로2가 79-5	5.3			
	5	244.0	충정로2가 78-15	77.7	공동개발(지정)	기 공동개발 부지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79-3)	
			충정로2가 79-2	122.0			
			충정로2가 79-3	44.3			
	6	1,111	충정로2가 78	844	공동개발(권장)	이면부 적정개발유도	
			충정로2가 78-30	239.4			
			충정로2가 80	27.6			
	7	260.1	충정로2가 78-16	122.3	공동개발(권장)	이면부 적정개발유도	
			충정로2가 78-17	137.8			
	8	210.3	충정로2가 78-19	101.2	공동개발(권장)	이면부 적정개발유도	
			충정로2가 78-20	109.1			
	9	192.4	충정로2가 78-21	102.5	공동개발(지정)	기 공동개발 부지	
			충정로2가 78-22	89.9			
	10	1,280.5	충정로2가 78-23	325.6	공동개발(권장), 충정로2가 78-8과 공동개발(권장)	이면부 적정개발유도 및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78-8)	
			충정로2가 99-2	954.9			
	11	435.5	충정로2가 99-3	303.2	공동개발(지정), 충정로2가 99-7과 공동개발(권장)	이면부 필지의 부정형 개발 방지 및 동일소유 부지(99-3, 99-5, 100),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99-7) 건축법상 맹지(111)	
			충정로2가 99-5	21.2			
			충정로2가 100	64.8			
			충정로2가 111	46.3			
	12	391.4	충정로2가 99-6	205.6	공동개발(권장)	이면부 적정개발유도	
			충정로2가 99-26	185.8			
	13	165.2	충정로2가 99-10	149.2	공동개발(권장)	이면부 적정개발유도 및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99-16)	
			충정로2가 99-16	16.0			
	14	200.1	충정로2가 99-11	*80.8	공동개발(권장)	이면부 적정개발유도 및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으로 인한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99-11)	
			충정로2가 99-27	119.3			
GR-4	15	218.7	충정로2가 99-34	*1.0	공동개발(지정), 충정로2가 102-2와 공동개발(권장)	동일소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으로 인한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102-2) 발생	
			충정로2가 100-2	49.7			
			충정로2가 101	*154.6			
			충정로2가 102-4	*13.4			

가구 번호	연번	면적 (㎡)	지 번	필지면적 (㎡)	계 획 내 용	지정사유	비고
	16	254.4	충정로2가 108	*62.4	공동개발(권장)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으로 인한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108) 발생	
			충정로2가 110	192.0			
	17	209.5	충정로2가 99-12	*36.3	공동개발(권장)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으로 인한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99-12) 발생	
			충정로2가 112-3	173.2			
	18	151.6	충정로2가 104	*150.8	공동개발(권장)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으로 인한 소규모 단절필지(138) 발생	
			충정로2가 138	*0.8			
GR-5	1	175.4	충정로2가 184-7	143.4	공동개발(지정)	이면부 적정개발유도 및 동일소유 부지,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184-9, 184-10, 184-11)	
			충정로2가 184-10	6.0			
			충정로2가 184-11	26.0			
	2	116.7	충정로2가 182-11	109.1	공동개발(지정), 충정로2가 182-12와 공동개발(권장)	이면부 필지의 부정형 개발 방지 및 적정개발 유도 인접대지 개발에 의한 맹지발생 방지(184-8)	
			충정로2가 184-8	7.6			
	3	1,525.0	충정로2가 182-8	106.8	공동개발(지정), 충정로2가 164-24와 공동개발(권장)	동일소유 부지 및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164-24)	
			충정로2가 182-9	109.1			
			충정로2가 182-10	118.1			
			충정로2가 182-18	1,191.0			
	4	335.8	충정로2가 164-23	77.5	공동개발(지정), 충정로2가 179와 공동개발(권장)	동일소유 부지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164-50, 192-3)	
			충정로2가 164-50	2.8			
			충정로2가 180-5	255.5			
	5	1,736.6	충정로2가 182-13	103.5	공동개발(지정)	이면부 필지의 부정형 개발 방지 및 적정개발 유도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185-16, 190-26) 기 공동개발 부지	
			충정로2가 184-4	755.2			
			충정로2가 184-9	60.8			
			충정로2가 185-4	695.5			
			충정로2가 185-13	29.8			
			충정로2가 185-14	49.6			
			충정로2가 185-16	36.1			
	6	3,445.6	충정로2가 190-26	6.1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부지 및 대지분할 최소규모 미달필지(185-7), 맹지발생 필지(185-13, 185-14) 기 공동개발 부지	
			충정로2가 182-16	75.8			
			충정로2가 183	342.0			
			충정로2가 183-6	66.6			
			충정로2가 185-1	66.1			
			충정로2가 185-7	5.4			
			충정로2가 185-10	2,889.7			
GC-1	1	1,365.4	냉천동 148-11	13.6	특별계획구역 ① (1,365.4㎡)	-	-
			냉천동 148-12	5.6			
			냉천동 148-14	1.8			

가구 번호	연번	면적 (㎡)	지 번	필지면적 (㎡)	계 획 내 용	지정사유	비고
			냉천동 148-18	1.1			
			냉천동 156	99.2			
			냉천동 158	261.2			
			냉천동 159-1	29.3			
			냉천동 159-2	83.6			
			냉천동 160-2	60.8			
			냉천동 161-2	125.6			
			냉천동 162-2	19.8			
			냉천동 163	79.3			
			냉천동 164	79.3			
			냉천동 165	86.6			
			냉천동 166	60.3			
			냉천동 167	29.8			
			냉천동 167-1	18.9			
			냉천동 167-3	6.0			
			냉천동 167-4	1.7			
			냉천동 168-1	111.6			
			냉천동 168-4	9.7			
			냉천동 241-5	0.1			
			냉천동 242	71.1			
			냉천동 243	57.5			
			냉천동 244	48.9			
			냉천동 245	3.0			
GC-2	1	1,820.3	냉천동 169-1	175.6	특별계획구역 ② (1,820.3㎡)	-	-
			냉천동 171-1	643.9			
			냉천동 171-2	103.5			
			냉천동 173	142.1			
			냉천동 174	58.9			
			냉천동 175	36.7			
			냉천동 175-1	48.5			
			냉천동 248	117.4			
			냉천동 249	45.3			
			냉천동 251	172.3			
			냉천동 257-2	0.8			
			냉천동 257-3	12.7			
			냉천동 258	66.5			
			냉천동 259	148.5			
			냉천동 259-1	47.6			

가구 번호	연번	면적 (㎡)	지 번	필지면적 (㎡)	계 획 내 용	지정사유	비고
	2	2,367.2	충정로2가 2-2	2,028.8	특별계획구역 ③ (2,367.2㎡)	-	-
			충정로2가 5-17	2.9			
			충정로2가 5-19	202.0			
			충정로2가 5-20	102.9			
			냉천동 185-1	16.5			
			냉천동 185-3	10.5			
			냉천동 185-6	3.6			
GC-3	1	2,839.0	충정로2가 5-4	206.0	특별계획구역 ④ (2,839.0㎡)	-	-
			충정로2가 5-6	172.9			
			충정로2가 5-7	14.2			
			충정로2가 5-9	198.3			
			충정로2가 5-20	3.3			
			충정로2가 7-2	94.5			
			충정로2가 8-2	1,055.2			
			충정로2가 18	225.8			
			충정로2가 19-1	174.0			
			충정로2가 19-2	85.4			
			충정로2가 25-2	67.0			
			충정로2가 26	165.6			
			충정로2가 26-1	2.0			
			충정로2가 26-2	3.2			
			충정로2가 29	190.4			
			충정로2가 29-1	6.7			
			충정로2가 131-4	174.5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으로 인해 공동개발에 일부 편입되는 필지의 편입면적

- 주) 1. 공동개발(지정·권장)이 계획되지 않은 필지들은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 자율적 공동개발 권장
 2. 대지분할 최소규모 : 주거지역 90㎡ 이상, 상업지역 150㎡ 이상(서울시 건축조례 제29조에 의함)
 3. 기 공동개발 된 경우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기 공동개발 된 부지를 말한다.
 4. 특별계획구역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름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불 허 용 도	비 고
신설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생활시설 중 옥외철담골프연습장 및 안마사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및 유사시설과 관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담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단, 방송국, 전신전화국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통일로변 (GR-1)
	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생활시설 중 옥외철담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및 유사시설과 관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담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단, 방송국, 전신전화국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이면부 제3종 일반주거지역 (GR-1~5)

- 주) 1.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시 관련규정 준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
 2.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2 이상의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를 적용하도록 함
 3.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관련규정 준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
 4. 특별계획구역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름

2) 건축물의 권장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권 장 용 도	비 고
신설	1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단,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및 유사시설과 관람장 제외)	통일로변 (GR-1)
	2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학원, 독서실, 일반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단,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및 유사시설과 관람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연구소, 도서관	이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GR-1)
	3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일용품),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이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GR-2~4)
	4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단,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및 유사시설과 관람장 제외)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연구소, 도서관	이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GR-5)

- 주) 1. 권장용도는 건축면적(주차장 제외)의 20%이상 도입 시 인정
 2. 특별계획구역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름

3) 건축물의 용도완화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용 도 완 화	비 고
신설	(a) •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의 면적제한1) 완화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폭20m이상 도로에 접한 것에 한함) -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경우 폭20m이상 도로에 접한 것에 한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GR-1 내 노선상업지역과 공동개발 필지)
	(b) • 건축물 내 주민이용시설2) 설치 시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업무시설의 면적제한1) 완화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제3종 일반주거지역 (GR-1(이면부), GR-5(현대아파트 제외))

- 주) 1. 면적제한 :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판매시설(2,000㎡ 미만), 업무시설(3,000㎡ 미만) 면적제한
 2. 주민이용시설 : 공공주차장(지하 1개층 이상의 주차장 및 연면적 10%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연면적 10%이상)
 공동이용시설(330㎡ 이상 또는 연면적 5% 이상)
 ※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나목에 따른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을 말함
 ※ 공공주차장 : 민간소유필지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외에 공공에게 상시 개방되는 주차장(자치구와 협약을 통하여 공공주차장 중 일부 주차구획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운영 등)
 ※ 설치규모 및 운영방안 : 구 수요조사를 통해 주민이용시설의 구체적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고, 운영방안 등 구체적 사항은 서대문구와 협의를 통해 결정(ex.사업시행자와 서대문구의 약정 체결(MOU)을 통한 운영·관리, 천연·충현 CRC(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관리협동조합 등)등을 통한 위탁 운영 등)

4)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폐율 계획

구 분		건 폐 율	비 고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주) 특별계획구역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름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250% 이하	법적 용적률의 2배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500% 이하	600% 이하		

- 주) 1.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합
 2. 상한용적률 산정방식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2019.1.16.)」 내용을 따름
 3.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2 이상의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를 적용하도록 함
 4. 기준 · 허용용적률이 상이한 필지간 공동개발 시에는 각각의 기준 · 허용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
 5. 기준 · 허용용적률이 상이한 필지는 각각의 기준 · 허용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
 6. 대상지 내 일반상업지역은 역사도심 범위에 해당함(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16조)
 7.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에 따름
 8.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3] 1.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에 따름
 9. 특별계획구역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름

다. 건축물의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기준

항목	세 분	세 부 계 획 기 준	비 고
계획유도 인센티브	공동 개발	공동개발 (지정/권장), 자율적공동개발	기준용적률 × α 이내 •2필지 $\alpha=0.15$ •3필지 이상 $\alpha=0.3$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이내 •개방형 $\alpha=3$ •필로티형 $\alpha=2$ •침상형 $\alpha=2$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3 이내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3 이내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4 이내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연면적) × 1 이내	
	특정층 (꼭대기층)개방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연면적) × 1 이내	●설치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보행 개선	가로지장을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지하연결통로 설치 등	기준용적률 × 0.5 이내
친환경 인센티브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 1등급): 기준용적률 × 0.18 이내 우수(그린 2등급): 기준용적률 × 0.15 이내 우량(그린 3등급): 기준용적률 × 0.12 이내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 건축물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 급 인증 기준 준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기준용적률 × 0.15 이내 에너지 효율 2등급: 기준용적률 × 0.12 이내 에너지 효율 3등급: 기준용적률 × 0.09 이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 에너지 1등급: 기준용적률 × 0.18 이내 신재생 에너지 2등급: 기준용적률 × 0.15 이내 신재생 에너지 3등급: 기준용적률 × 0.12 이내 신재생 에너지 4등급: 기준용적률 × 0.09 이내 신재생 에너지 5등급: 기준용적률 × 0.06 이내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건축물인증심사기준 별표1) ※ 에너지 총량 기준 (연도별, 규모별, 성능대체비율) 으로 등급 판정 대체 가능
	중수도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0.1 이내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 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 0.1 이내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 물침투시설 ※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1이내	- 법정 조정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0.2이내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 시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이내	- 기준용적률 × 0.05 이내

- 주) 1. 환경친화에너지효율 항목 중 법정의무설치대상은 인센티브 산정 시 제외하며, 소규모 건축물은 친환경 인센티브(30%이상) 적용 없이 계획유도 인센티브로 대체 가능 (소규모 건축물 : 건축허가 신청 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미제출 대상인 건축물 연면적 500㎡미만 건축물)
2.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여 상한용적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2019.1.16.)」을 적용한다.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이 변경된 경우 그에 따른
3.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 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및 [별표3] 규정을 준수하여 건축물 용도 비율 및 용적률을 적용한다.
4.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이상 계획하며, 용적률 10% 이상 설치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한다.

5)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높 이 계 획	비 고
상업지역	노선상업지역 및 간선부와 연결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60m이하	GR-1
주거지역	현대아파트, 경기대 및 공인회계사회	60m이하	GR-5
	이면부	32m이하	GR-1~5

주) 특별계획구역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름

6)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한계선

구 분	계 획 목 표	계 획 내 용		비 고
건 축 한계선	• 간선변 가로경관 증진 및 보도확폭	통일로변	3m	-
	• 이면부 보행 및 차량통행 여건 개선	경기대 입구(충정로9길)	2m	대지규모 및 여건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현대아파트 남측(충정로7길)		
		이면도로변	1m	
		4m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필지	도로중심선으로부터 각 1.5~3m	

주) 특별계획구역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름

■ 벽면지정선

구 분	계 획 목 표	계 획 내 용		비 고
벽 면 지정선	• 경기대로 및 보행자우선도로 (식음거리변)으로 정연한 가로환경 조성	GR-3 이면부 보행가로변, 경기대로변	1m	2층 이하 적용

주) 특별계획구역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름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외관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적용구역	비 고
건축물 형 태	1층바닥높이	•접한 보도 또는 전면공지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 등이 진출입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단차없이 조성	구역전체	규제
	개구부	•폭 20m이상의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노출하여서는 안됨(폭 20m 미만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도 개구부를 전면도로에 면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 •1층 개구부 높이는 인접건축물의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	구역전체	규제
	투시벽 및 투시형 서터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1층 전면벽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설치 •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시형 서터를 사용하여야 함	구역전체	규제
건축물 배 치	건축한계선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방향은 전면도로 방향과 일치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지상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음	구역전체	규제
	벽면지정선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방향은 전면도로 방향과 일치 •건축물 외벽면 또는 담장 등이 벽면지정선 길이의 1/2이상 접해야함	경기대로 및 통일로9안길변 (GR-3)	규제
건축물 외 관	재료 및 색채	•1층 전면 외벽면의 재료는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하며, 1층 전면의 벽면은 창문 및 차양/발코니 등을 권장함 •외벽면의 색채는 주변과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원색 사용은 금지 •'서울시 상징색 가이드라인' 적용을 권장함	구역전체	권장
	야간조명	•간선변 10층 이상 건축 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옥의 미술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투시형 벽면 설치 시 내·외부 조명을 설치하여 가로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함 •이면부 야간경관의 향상 및 보행활동 활성화 유도 •대규모 개발지 및 전면도로변, 도로가각부에 대하여 권장	구역전체	권장
기 타 항	자연지반 보존	•지하부는 인공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저층부의 바닥, 비건폐지 등을 자연재료 또는 투수성 재료로 조성 권장	구역전체	권장
	옥상녹화	•건축물 이용자의 휴게 및 만남의 장소와 도심지내 생물서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 설치 권장	구역전체	권장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열섬효과 방지 등 도시생태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잔디 등 투수성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및 대지 내 투수성포장 설치 권장	구역전체	권장
	중수도시설 및 빗물관리시설	•도시 내 물순환 재생을 도모하고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중수도 및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권장	구역전체	권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여 공생할 수 있도록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건축물을 권장	구역전체	권장
	옹벽처리	•옹벽은 자연석, 조경석 등을 사용, 계단식으로 조성	구역전체	규제
	건축설비의 노출	•폭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가 도로변에 노출하여서는 안 됨 •식음거리변(보행자우선도로)과 접하는 면에 차면시설, 환기시설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	구역전체	규제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대지 내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에 접하여 조성하되, 일반대중이 상시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상부에 배치 •보행도로와 연계하여 일체적으로 조성하되, 단차발생을 지양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썸지공원)형태로 설치	경기대로변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등으로 인해 생기는 건축선 후퇴 공간은 일반대중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 다만, 차량의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교목의 식재 및 블라드의 설치는 예외로 함. •기존 차도 및 보도와 단차 없이 조성하되, 조성형태는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대지내조경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규정 준용 •대지 내 화물 적재공간, 쓰레기 하차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된 경우에는 대지안의 조경을 차폐형으로 조성	
대지 내 통로	보행자 우선도로	•이면도로의 보행자 안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걷고싶은 거리조성	소로3-1,3-2,3-19, 통일로9와길 변 6~8m
	공공보행 통로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단차 없이 연속적으로 조성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됨 •야간조명시설 설치 권장 •개방형구조로 설치 권장, 단, 피로티형, 실내형으로 설치 시 6m 이상의 높이 확보	2개소
	보차혼용 통로	•이면부 효율적인 교통소통 유도를 위한 보차혼용통로 지정	1개소

주) 특별계획구역은 해당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름

2)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차량출입 불허구간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교통 처리 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간선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 불허를 통해 간선변 원활한 차량소통 및 차량진출입으로 인한 보행공간 단절 최소화	간선부 ※결정도면 참고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	•식음특화가로변 필지들을 대상으로 보행친화가로 조성을 위해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하여 차량출입 최소화 •제한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내 필지선을 따라 지정	이면부 ※결정도면 참고

■ 제한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적용 목표	적용기준	
주차 계획	제한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간선변 차량출입불허계획에 따라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이 지정된 것으로 보아 계획지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함	•주차장 설치기준의 50% 완화 •미 완화분(50%)은 자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 공동개발에 의해 이면도로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필지는 완화대상에서 제외함	간선부 (통일로변) ※결정도면 참고
		•자율적으로 차량출입을 불허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이 지정된 것으로 보아 계획지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함	•비주거용도 도입시 50% 완화 - 저층부 1~2층 연면적 50%이상 비주거용도 준수시 •미 완화분(50%)은 자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이면부 (보행자우선도로변) ※결정도면 참고

※ 본 지침과 별도로 관계법령에 주차장 완화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 비주거용도 : 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특별계획구역①	냉천동 158번지 일대	-	증) 1,365.4	1,365.4	
신설	특별계획구역②	냉천동 171-1번지 일대	-	증) 1,820.3	1,820.3	
신설	특별계획구역③	충정로2가 2-2번지 일대	-	증) 2,367.2	2,367.2	
신설	특별계획구역④	충정로2가 8-2번지 일대	-	증) 2,839.0	2,839.0	

■ 특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결 정 사 유
신설	특별계획구역①	냉천동 158번지 일대	1,365.4	•부정형 필지 밀집지역으로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 및 간선변 적정규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2025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16.08)
신설	특별계획구역②	냉천동 171-1번지 일대	1,820.3	•부정형 필지 밀집지역으로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 및 간선변 적정규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2025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16.08)
신설	특별계획구역③	충정로2가 2-2번지 일대	2,367.2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 및 간선변 적정규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2025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16.08)
신설	특별계획구역④	충정로2가 8-2번지 일대	2,839.0	•부정형 필지 밀집지역으로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 및 간선변 적정규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2025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16.08)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1) 특별계획구역①

■ 구역개요

구역명	위치	면적(㎡)	비 고
특별계획구역①	서대문구 냉천동 163번지 일대	1,365.4	-

■ 특별계획구역① 계획지침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도지역		• 통일로변 : 일반상업지역 • 이면부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정비계획 수립 시 결정
용도지구		• 방화지구(통일로변 폭12m)	
기반시설		• 구역면적의 15%이상 순부담 - 도시계획시설(도로) 기부채납 → 소로3-52 확폭(폭6m→8m, 구역 내 1m 확폭) → 통일로9안길 확폭(폭2m→6m, 구역 내 4m 확폭) - 공공시설(건축물) : 주차장, 문화 및 복지시설 등	대지로의 진입을 위한 완화차로 제외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 업무, 판매, 근린생활, 문화/집회, 관광숙박 중 선택적용	2025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마포지역 토지이용계획 중 일반업무·상업용지)
	가로활성화용도	• 상업 및 전시시설 등(저층부 : 건축물 1층~2층)	
건축물의 밀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335% / 460% / 법정용적률	
	높이	70m 이하	
건축물의 배치	건축한계선	• 간선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이면부 : 소로3-3호선, 52호선으로부터 1m	
	벽면한계선	• 통일로 9안길 변 5m (고층부 : 건축물 5층 이상)	
	벽면지정선	• 통일로 9안길 변 3m (저층부 2층 이하)	
기타사항	공개공지	•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설치하여 열린공간 확보(1개소)	
	차량출입 불허구간	• 통일로변에 지정	
	주차출입구	• 위치지정 (소로3-52호선 변)	
	보행자 우선도로	• 대상지 이면도로의 보행환경 개선(소로3-52, 통일로9안길)	
사업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태개발사업 시행	
운영기준		•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 ※ 1.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은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결정
 2. 용적률의 경우 용도지역별 가중평균 값 적용
 - 기준/허용(일반상업지역) : 600% / 800%(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
정비사업부문))
 - 기준/허용(제3종일반주거 → 준주거) : 250% / 350%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020.5.)
 3.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및 상한용적률산정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
비사업부문)에 따름
 4. 순부담률의 경우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15%
 5. 순부담률 = (계획기반시설 - 기존공공용지) / (시행구역면적 - 기존공공용지) × 100

2) 특별계획구역②

■ 구역개요

구역명	위치	면적(㎡)	비 고
특별계획구역②	서대문구 냉천동 171-1번지 일대	1,820.3	

■ 특별계획구역② 계획지침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용도지구		• 방화지구(통일로변 폭12m)	
기반시설		• 도시계획시설(도로) 기부채납 → 소로3-52 확폭(폭6m→8m, 구역 내 1m 확폭) → 소로3-19 확폭(폭6m→8m, 구역 내 2m 확폭)	대지로의 진입을 위한 완화차로 제외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 업무, 판매, 근린생활, 문화/집회, 관광숙박 중 선택적용	2025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마포지역 토지이용계획 중 일반업무상업용지)
	가로활성화용도	• 상업 및 전시시설 등 (저층부 : 건축물 1층~2층)	
건축물의 밀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600% / 800% / 법정용적률	
	높이	90m 이하	2025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중 마포지역(일반업무지역) 높이계획
건축물의 배치	건축한계선	• 간선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이면부 - 소로3-52호선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 공공보행통로(폭6m)변 : 구역 경계선으로부터 4m	
	벽면한계선	• 소로3-19호선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고층부 : 건축물 5층 이상)	
	벽면지정선	• 소로3-19호선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저층부 2층 이하)	
기타사항	공개공지	•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설치하여 열린공간 확보(1개소)	
	차량출입 불허구간	• 통일로변에 지정	
	주차출입구	• 위치지정 (소로3-52호선 변)	
	보행자 우선도로	• 대상지 이면도로의 보행환경 개선(소로3-19, 소로3-52호선)	
	공공 보행통로	•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1개소)	
사업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태개발사업 시행	
운영기준		•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 주) 1. 도시관리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은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결정
 2. 용적률 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⑬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상(마포지역, 도심지역 내 상업지역) 용적률 적용
 3.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및 상한용적률산정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
 비사업부문)에 따름

3) 특별계획구역③

■ 구역개요

구역명	위치	면적(㎡)	비 고
특별계획구역③	서대문구 충정로2가 2~2번지 일대	2,367.2	

■ 특별계획구역③ 계획지침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용도지구		• 방화지구(통일로변 폭12m)	
기반시설		• 도시계획시설(도로) 기부채납 → 소로3-2 확폭(폭4m→6m, 구역 내 유지) → 소로3-19 확폭(폭6m→8m, 구역 내 2m 확폭)	대지로의 진입을 위한 완화차로 제외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 업무, 판매, 근린생활, 문화/집회, 관광숙박 중 선택적용	2025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마포지역 토지이용계획 중 일반업무상업용지)
	가로활성화용도	• 상업 및 전시시설 등 (저층부 : 건축물 1층~2층)	
건축물의 밀도	건폐율	60% 이하	2025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중 마포지역(일반업무지역) 높이계획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600% / 800% / 법정용적률	
	높이	90m 이하	
건축물의 배치	건축한계선	• 간선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이면부 - 소로3-2호선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 공공보행통로(폭6m)변 : 구역 경계선으로부터 2m	
	벽면한계선	• 소로3-19호선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고층부:건축물 5층 이상)	
	벽면지정선	• 소로3-19호선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저층부 2층 이하)	
기타사항	공개공지	•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설치하여 열린공간 확보(1개소)	
	차량출입 불허구간	• 통일로변에 지정	
	주차출입구	• 위치지정(소로3-2호선 변)	
	보행자 우선도로	• 대상지 이면도로의 보행환경 개선(소로3-2, 소로3-19호선)	
사업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태개발사업으로 시행	
운영기준		•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 ※ 1. 도시관리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은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결정
 2. 용적률 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⑬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상(마포지역, 도심지역 내 상업지역) 용적률 적용
 3.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및 상한용적률산정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따름

4) 특별계획구역④

■ 구역개요

구역명	위치	면적(㎡)	비 고
특별계획구역④	서대문구 충정로2가 8-2번지 일대	2,839.0	

■ 특별계획구역④ 계획지침 (통합 개발 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용도지구		• 방화지구(통일로변 폭12m)	
공공기여	공공시설 설치	•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도로) → 소로3-1 확폭(폭6m→8m, 구역 내 2m 확폭) → 소로3-2 확폭(폭4m→6m, 구역 내 2m 확폭) → 소로3-19 확폭(폭6m→8m, 구역 내 2m 확폭)	대지로의 진입을 위한 완화차로 제외
	보행환경 개선	• 지하철출입구 등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 시 - 대지 내 설치시 : 허용용적률 x (출입구, 환기구 건폐면적 / 대지면적) - 건물 내 설치시 : 허용용적률 x (출입구, 환기구 연면적 / 건축 연면적)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 업무, 판매, 근린생활, 문화/집회, 관광숙박 중 선택적용	2025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마포지역 토지이용계획 중 일반업무상업용지)
	가로활성화용도	• 상업 및 전시시설 등 (저층부 : 건축물 1층~2층)	
건축물의 밀도	건폐율	60% 이하	2025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중 마포지역(일반업무지역) 높이계획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600% / 800% / 법정용적률	
	높이	90m 이하	
건축물의 배치	건축한계선	• 간선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이면부 - 소로3-1호선 및 소로3-2호선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벽면한계선	• 소로3-19호선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고층부:건축물 5층 이상)	
	벽면지정선	• 소로3-19호선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저층부 2층 이하)	
기타사항	공개공지	•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설치하여 열린공간 확보(1개소)	
	차량출입 불허구간	• 통일로변에 지정	
	주차출입구	• 위치지정(소로3-1호선 변)	
	보행자 우선도로	• 대상지 이면도로의 보행환경 개선 (소로3-1, 소로3-2, 소로3-19호선)	
사업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태개발사업으로 시행	
운영기준		•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 ※ 1. 도시관리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은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결정
 2. 용적률 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⑩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상(마포지역, 도심지역 내 상업지역) 용적률 적용
 3.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및 상한용적률산정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
 비사업부문)에 따름
 4. 서울시 교통공사 등 관련기관 협의에 따라 지하철 출입구 등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 여부 결정

■ 특별계획구역④ 계획지침 (획지단위 개발 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용도지구		• 방화지구(통일로변 폭12m)	
획지	획지 분할 가능선	• 6개소	도면 참고 ※ 획지 간 공동개발 가능
공공 구역	공공시설 설치	• 도시계획시설(도로) 기부채납 → 소로3-1 확폭(폭6m→8m, 구역 내 2m 확폭) → 소로3-2 확폭(폭4m→6m, 구역 내 2m 확폭) → 소로3-19 확폭(폭6m→8m, 구역 내 2m 확폭)	대지로의 진입을 위한 완화차로 제외
	보행환경 개선	• 지하철출입구 등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 시 - 대지 내 설치시 : 허용용적률 x (출입구, 환기구 건물면적 / 대지면적) - 건물 내 설치시 : 허용용적률 x (출입구, 환기구 연면적 / 건물 연면적)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 업무, 판매, 근린생활, 문화/집회, 관광숙박 중 선택적용	2025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마포지역 토지이용계획 중 일반업무·상업용지)
	가로활성화용도	• 상업 및 전시시설 등 (저층부 : 건축물 1층~2층)	
건축물의 밀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600% / 800% / 법정용적률	2025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중 마포지역(일반업무지역) 높이계획
	높이	간선부 : 80m / 이면부 : 60m	
건축물의 배치	건축한계선	• 간선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이면부 - 소로3-1호선 및 소로3-2호선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벽면지정선	• 소로3-19호선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저층부 2층 이하)	
기타사항	공개공지	•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설치하여 열린공간 확보(1개소)	
	차량출입 불허구간	• 통일로변에 지정 ※ 대형화물차량 진·출입을 고려 현황 우체국 차량출입구 유지	
	보행자 우선도로	• 대상지 이면도로의 보행환경 개선 (소로3-1, 소로3-2, 소로3-19호선)	
사업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태개발사업(사업유형:소단위 정비형)으로 시행	
운영기준		•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 ※ 1. 도시관리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은 향후 정비계획 수립시 결정
 2. 용적률 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⑬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상
 (마포지역, 도심지역 내 상업지역) 용적률 적용
 3.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및 상한용적률산정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
 비사업부문)에 따름
 4. 서울시 교통공사 등 관련기관 협의에 따라 지하철 출입구 등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 여부 결정

㉔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등의 규정에 의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9호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구역 내 공동개발(지정,권장)의 변경(신설,폐지 포함)
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대지내 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6. 대지내·외 통로(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7. 건축선(벽면지정선 등)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8.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변경(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 범위 이내)

III. 관계 도면 : 붙임 참조(세부 내용 및 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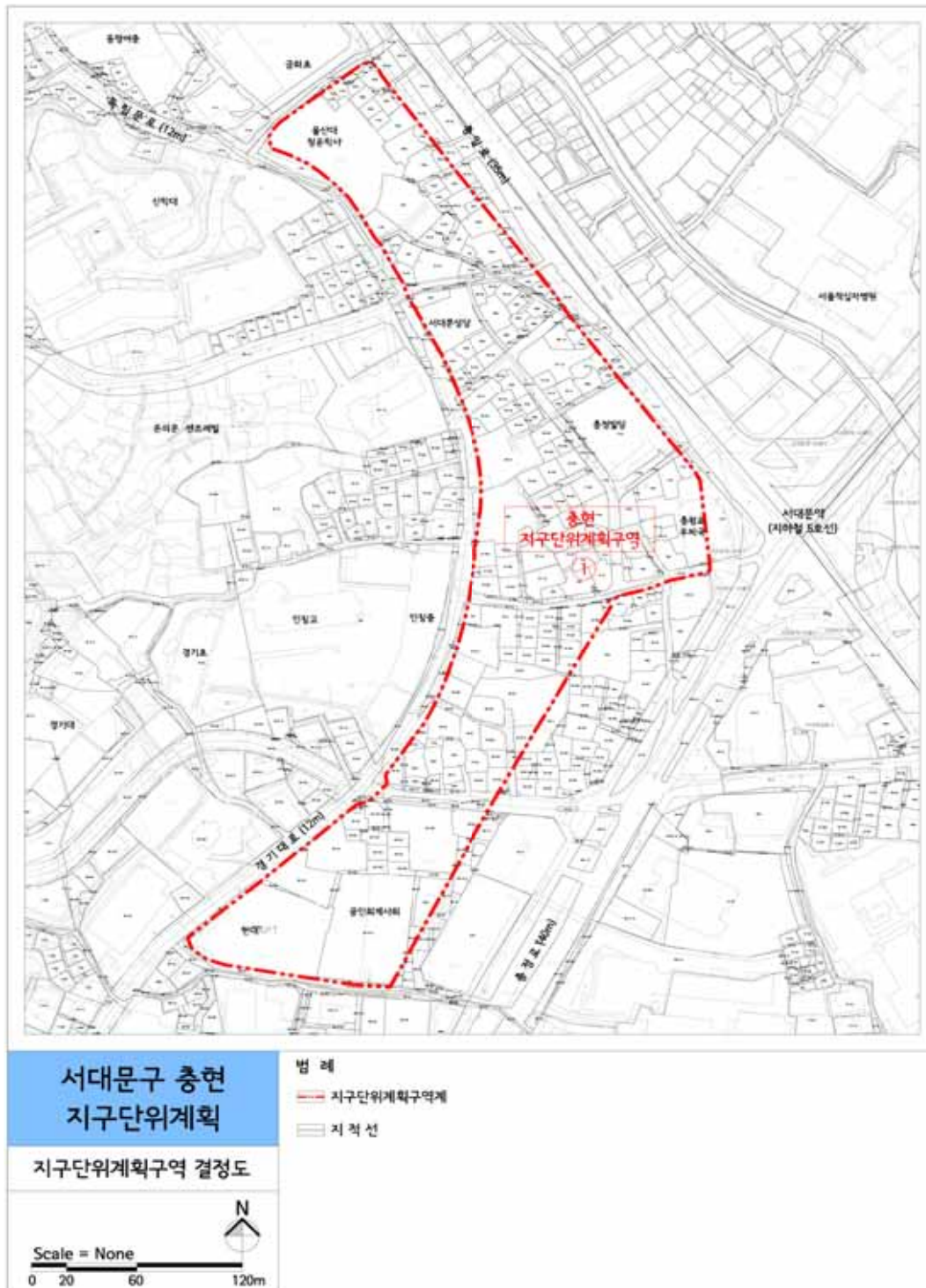
IV.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2) 및

서대문구 도시계획과(☎02-330-8278)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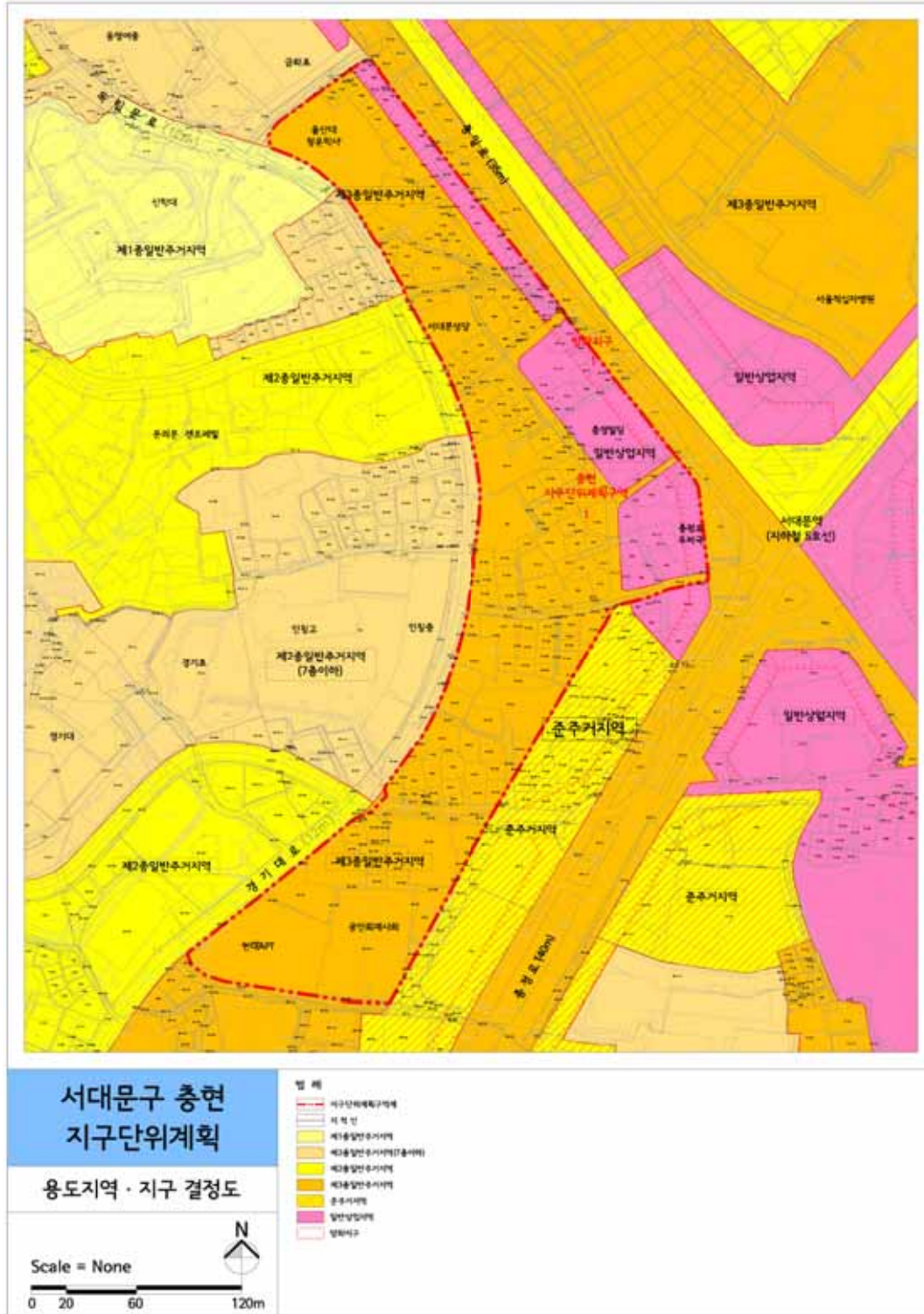
붙임 결정도 각 1부. 끝.

[붙임] 충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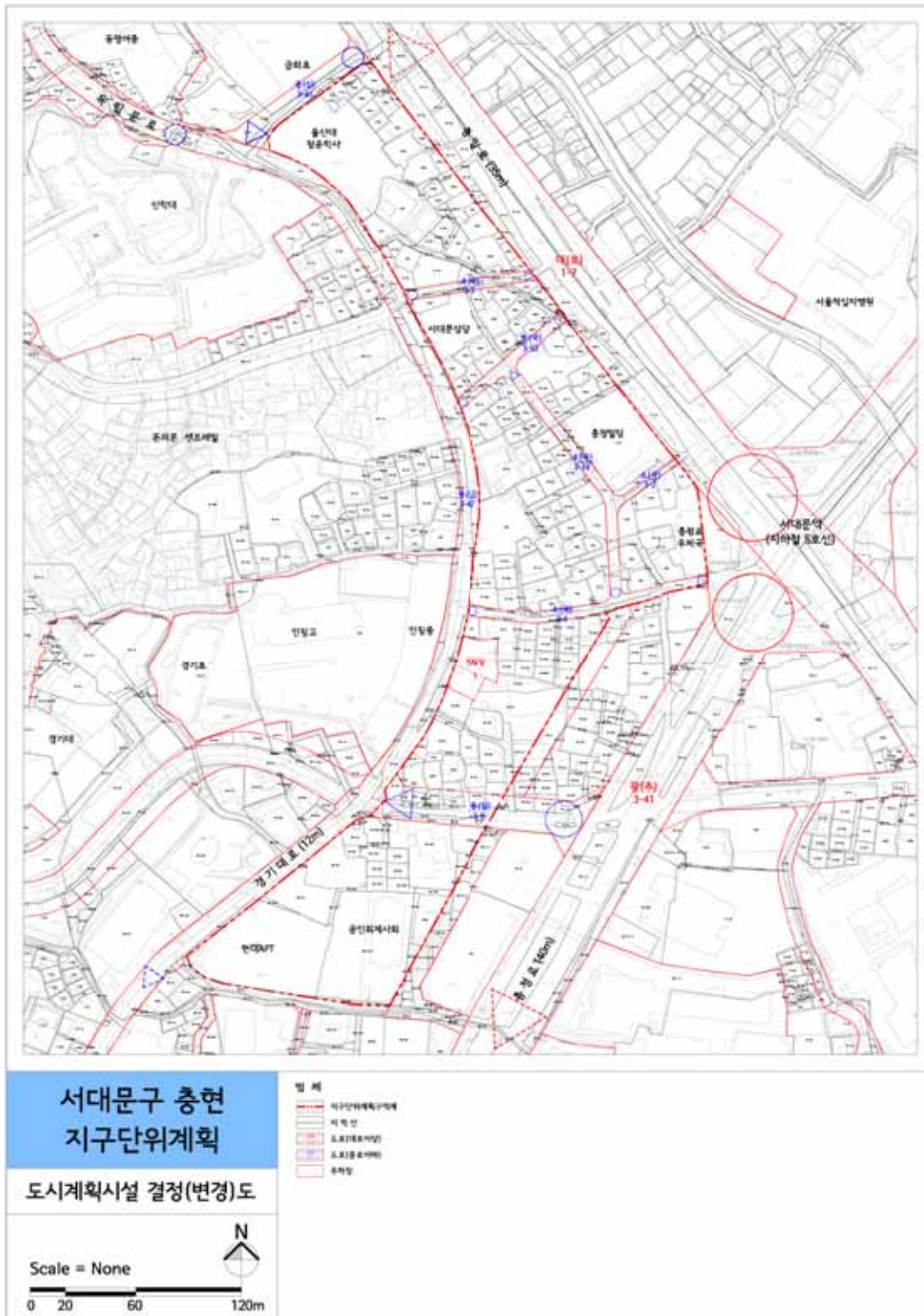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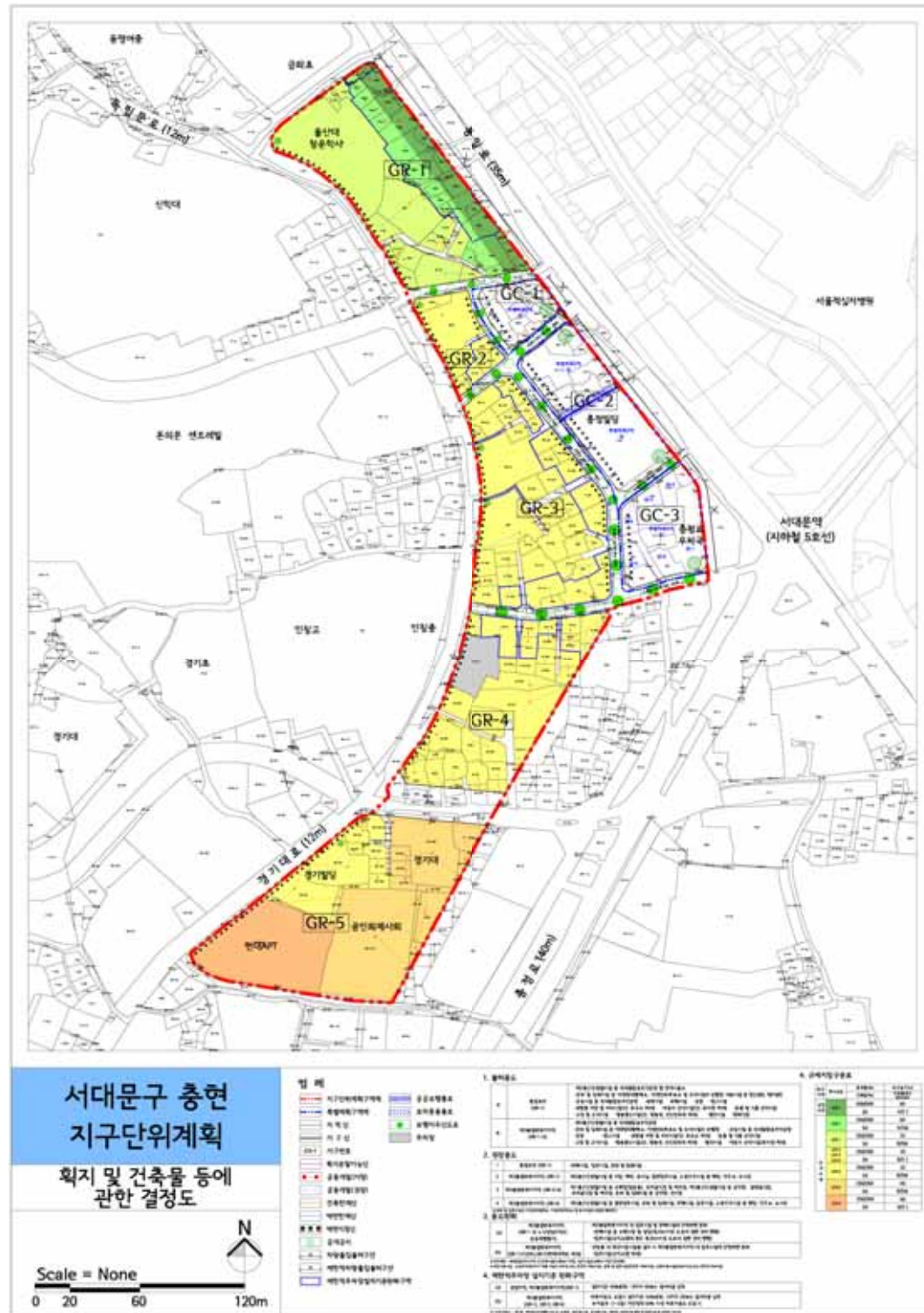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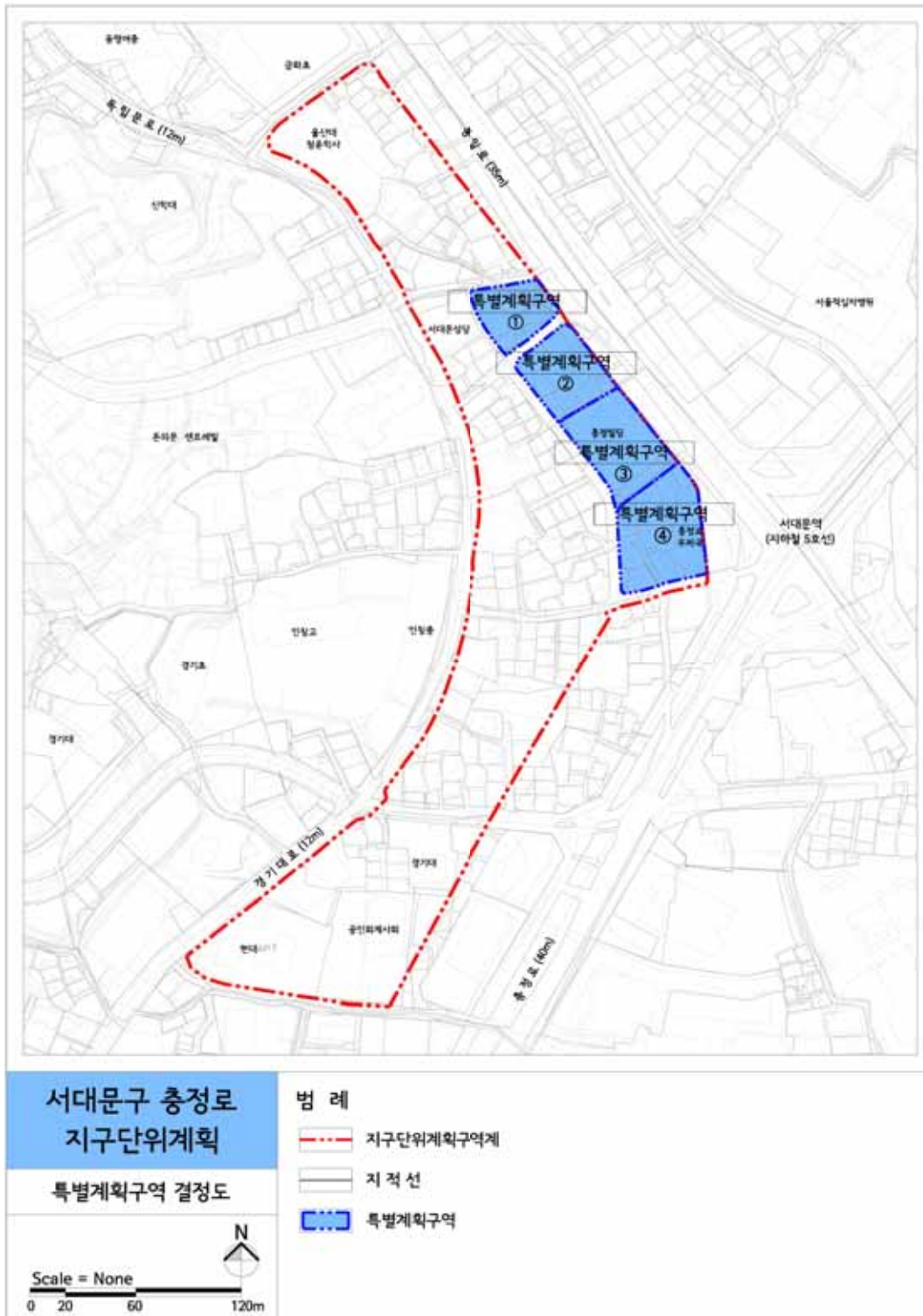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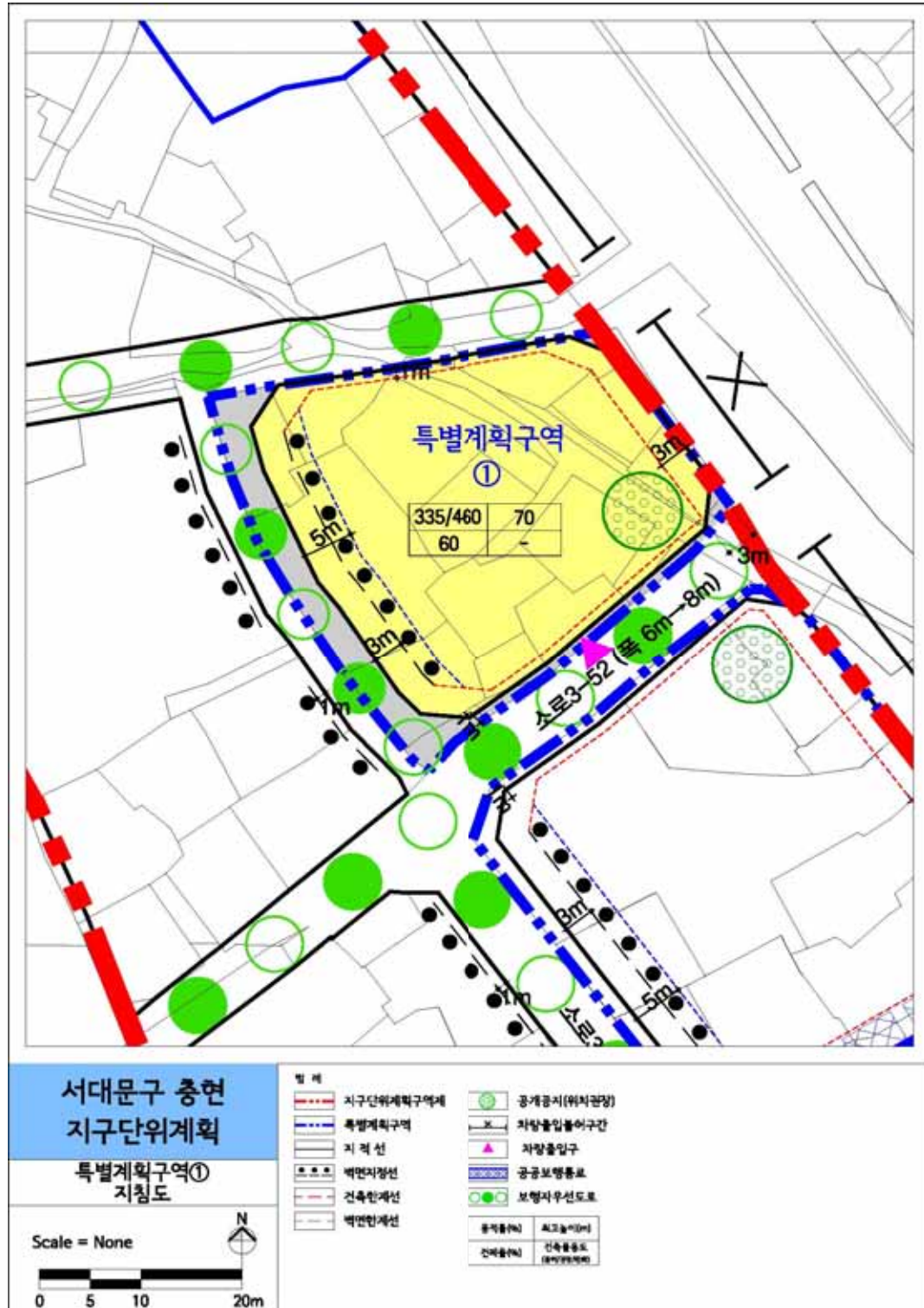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 특별계획구역① 계획지침도



■ 특별계획구역② 계획지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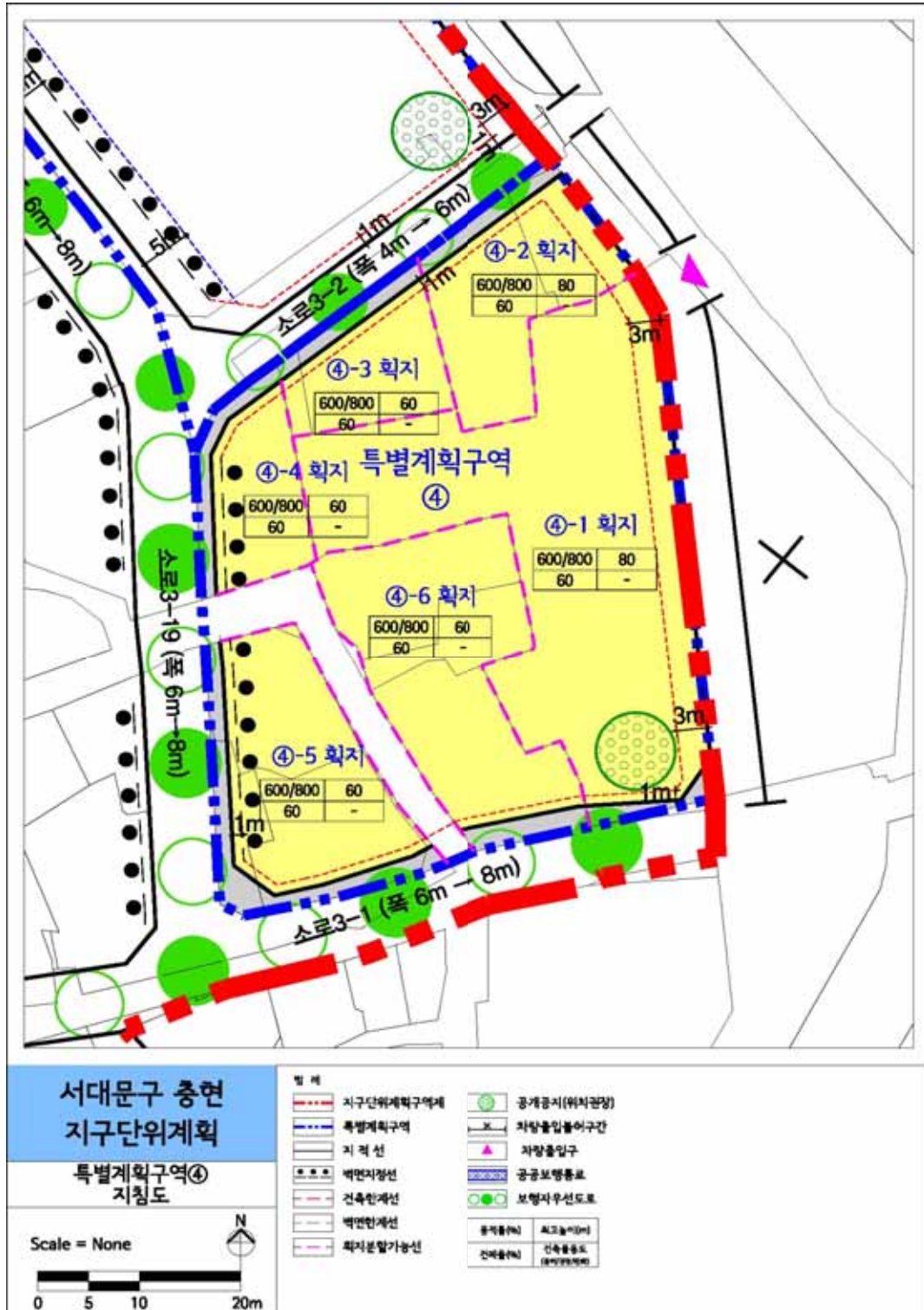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③ 계획지침도



■ 특별계획구역④ 계획지침도 (통합 개발 시)



■ 특별계획구역④ 계획지침도 (획지단위 개발 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430호

**도시관리계획(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20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07.08.)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신규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정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토록 되어 도시관리계획을 신규 수립코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송파구 문정동 150번지 일대	-	증) 447,135	447,135	

※ 택지내 하수도 시설은 제외(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 신규지정 : 증) 447,13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한 지 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47,135	-	447,135	100.0	
주거 지역	합 계	399,863	-	399,863	89.4	、
	제1종일반주거지역	3,105	-	3,105	0.7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1,831	-	11,831	2.6	
	제2종일반주거지역	2,113	-	2,113	0.5	
	제3종일반주거지역	359,595	-	359,595	80.4	
	준주거지역	23,219	-	23,219	5.2	
자연녹지지역		22,365	-	22,365	5.0	
생산녹지지역		24,907		24,907	5.6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단위 : 개소)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1	5,908.0 (3,436.0)	74,725.7	2	481	9,484.0	5	3,974.0 (1,502.0)	31,148.9	4	1,453	34,092.8
대로	2	4,665.0 (2,193.0)	58,537.8	-	-	-	1	3,340 (868)	24,957	1	1,325	33,580.8
중로	2	606	11,483.9	1	451	9,124	1	155	2,359.9	-	-	-
소로	7	637	4,704.0	1	30	360	3	479	3,832.0	3	128	512.0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82	30~50	보조 간선도로	3,340 (868)	강남구 개포동 69	송파구 가락동 660-1	일반 도로	-	서고17호 (90.5.9)	()는 지구내
기정	대로	3	181	25	보조 간선도로	1,325	송파구 가락동 660-2잡	송파구 문정동135-7잡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180호 (86.5.2)	
기정	중로	1	316	20	보조 간선도로	451	송파구 가락동241-5잡	송파구 문정동 199답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180호 (86.5.2)	
기정	중로	2	306	15	국지 도로	155	송파구 가락동 695전	송파구 가락동 819잡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180호 (86.5.2)	
신설	소로	1	A	12	국지 도로	30	송파구 가락동 150-37도	송파구 가락동 150-37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A	8	국지 도로	158	송파구 가락동 150-18도	송파구 가락동 150-18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B	8	국지 도로	162	송파구 가락동 150-19도	송파구 가락동 150-19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C	8	국지 도로	159	송파구 가락동 150-37도	송파구 가락동 150-37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A	4	국지 도로	34	송파구 가락동 150-37도	송파구 가락동 150-37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B	4	특수 도로	36	송파구 가락동 150-37도	송파구 가락동 150-37도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C	4	국지 도로	58	송파구 가락동 150-37도	송파구 가락동 150-37도	일반도로			

■ 도로 결정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1-A	•신설 - 폭원 : 12m, - 연장 : 30m	•택지개발사업 시 기 조성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관리
-	소로 2-A	•신설 - 폭원 : 8m, - 연장 : 158m	
-	소로 2-B	•신설 - 폭원 : 8m, - 연장 : 162m	
-	소로 2-C	•신설 - 폭원 : 8m, - 연장 : 159m	
-	소로 3-A	•신설 - 폭원 : 4m, - 연장 : 34m	
-	소로 3-B	•신설 - 폭원 : 4m, - 연장 : 36m	
-	소로 3-C	•신설 - 폭원 : 4m, - 연장 : 58m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1)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문정동 150-5	10,528.6	-	10,528.6	건설부고시 제180호 (86.5.2)	가락동 223일원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문정동 150-8	10,206.5	-	10,206.5	건설부고시 제180호 (86.5.2)	가락동 659일원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문정동 150-6	1,560.2	-	1,560.2	건설부고시 제180호 (86.5.2)	문정동 180일원
기정	(2)	공원	어린이공원	문정동 150-3	1,596.1	-	1,596.1	건설부고시 제180호 (86.5.2)	가락동 781일원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	문정동 150-11	1,545.1	-	1,545.1	건설부고시 제180호 (86.5.2)	가락동 852일원

※ 기결정 된 공원시설의 위치는 변경된 주소로 변경

2)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녹지	원충녹지	문정동 150-15	8,858.8	-	8,858.8	건설부고시 제180호 (86.5.2)	송파대로변 서측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공공청사	공공의 청사	문정동 150-17 일원	2,113.0	-	2,113.0	건설부고시 제415호 (86.9.23)	가락동 695일원

※ 주민센터, 파출소, 우체국

2) 학교

■ 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㉔	학교	초등학교	문정동 150-10	11,830.9	-	11,830.9	건설부고시 제180호 (86.5.2)	가락동 797일원

※ 학교 건축범위 결정(서고 제2007-442호, '07.12.6.)
: 건폐율 : 30%이하, 용적률 : 120%이하, 층수 : 5층이하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적용구역	최대개발규모	비고
간선부(중대로변)	2,500㎡ 이하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한 경우는 예외
이면부	1,500㎡ 이하	-

나. 가구 및 획지계획

구분	계획기준		비고
	기정	변경	
자율적 공동개발 (권장)	-	• 대지경계선을 접하는 인접필지간에 서로 합의하여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 해당 적용원칙을 준수한 경우	시행지침 참조

■ 가구 및 획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필지		비고
				위 치	면적(㎡)	
신설	-	BL1	304.375.0	문정동 150	237,830.7	공동주택용지
				문정동 150-1	65,184.3	
		2		문정동 150-20	1,360.0	
신설	-	BL2	10,850.5	문정동 150-2	10,850.5	
신설	-	BL3	2,228.7	문정동 150-4	809.8	-
				문정동 150-21	665.7	
				문정동 150-22	391.4	
				문정동 150-23	361.8	
신설	-	BL4	2,264.6	문정동 150-24	532.5	
				문정동 150-25	532.6	
				문정동 150-26	1,199.5	

구 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필지		비고
				위 치	면적(㎡)	
신설	-	BL5	1,194.3	문정동 150-27	596.8	
				문정동 150-28	597.5	
신설	-	BL6	2,523.3	문정동 150-29	537.3	
				문정동 150-30	537.0	
				문정동 150-31	362.2	
				문정동 150-32	362.1	
				문정동 150-35	362.4	
				문정동 150-36	362.3	
신설	-	BL7	723.4	문정동 150-33	361.8	
				문정동 150-34	361.6	

■ 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비고
신설	• 가구 신규 지정 - BL1 ~ BL7	• 계획적 개발유도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구번호 및 면적 결정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1) 불허용도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함

구분	도면기호	불허용도	비고
신규	BL2	A	준주거 지역
	BL3		
	BL4		
	BL5		
	BL6		
	BL7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공동주택용지는 별도 결정

2) 권장용도

구분	도면기호	권장용도	비고
신규	BL2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및 1층의 금융업소(ATM기 제외)제외)	
	BL3		
	BL4		
	BL5		
	BL6		
	BL7		

- ※ 전층 권장용도의 경우 권장용도의 연면적이 주차장을 제외한 지상층 연면적의 20% 이상인 경우
 ※ 공동주택용지는 별도 결정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용적률·높이) 결정조서

1) 건폐율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준주거지역	60%이하	

- ※ 공동주택용지는 별도 결정

2) 용적률 계획

■ 용적률 적용 기준

구분	기정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준주거지역	300%이하	4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 공동주택용지는 별도 결정

3) 높이 계획

■ 건축물의 높이 결정조서

구분		항목	계획내용	비 고
준주거지역	간선부	BL2	80m 이하	81.34~83.34m
		BL3	75m 이하	BL3 : 79.84~81.34m
		BL4		BL4 : 80.84~82.34m
	이면부	BL5	35m 이하	BL5 : 80.84~81.34m
		BL6		BL6 : 79.84~80.34m
		BL7		BL7 : 79.34~80.34m

- ※ 비고내용은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 공동주택용지는 별도 결정

다. 건축물의 건축선·배치·형태 계획

■ 건축물의 건축선·배치·형태 결정조서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배치	건축한계선	간선부	3m	
		이면부	1~2m	
		BL2 (문정동 150-2)	중대로변, 중대로8길 변 : 10m 완충녹지변, 이면도로(소로2류)변 : 3m	
형태	1층부	- 간선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간선도로변으로 1층 벽면은 50% 이상을 투시벽 및 투시형 서터로 처리하며, 개구부가 없는 벽면 설치 금지 - 연접 대지에 기존 건축물들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1층 개구부 높이는 기존 건축물들의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 간선도로에 면한 건축물(진입부)바닥높이는 공지 또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설치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대지내 공지 결정조서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대지내 공지	전 구역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 중대로변, 중대로8길 변 지정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 그 외 구역 지정 - BL2(문정동 150-2) : 중대로8길변으로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3m,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7m 지정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결정조서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중대로 변	- 간선가로 변 원활한 차량소통 도모 및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보행공간 단절 최소화	

4. 용적률 인센티브

가. 허용용적률의 인센티브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중점유도 인센티브 항목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이내	중점유도 인센티브 항목 (30%이상)	유도 및 규제항목 준수시 (70%이내)	공공시설 부지 제공시 등

■ 중점유도 인센티브 운영 기준

구분	항목 및 내용		완화기준	비고
친환경	에너지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용적률x 0.04	-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 상 의무사항을 초과하여 인증된 경우
	대기 환경	저공해 자동차	기준용적률x 0.04	[비주거: 연면적 1만㎡ 이상] - 전체 주차면수의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면수의1% 이상 전기차 충전기 설치시
	물환경	중수도 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x 0.04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x 0.04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x (녹화면적 / 대지면적) x 0.1	- 법정 조정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2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 주차장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 / 대지면적) x 0.2	

※ 중점유도 인센티브를 통해 총 인센티브 대비 30%초과 달성 시 계획유도 인센티브를 대체 가능하나, 계획유도 인센티브의 초과 달성의 경우 중점유도 인센티브의 대체는 적용 불가

■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항 목	세 분	세부계획기준	비 고
계획 유도형	공동 개발	공동개발 권장 자율적 공동개발	기준용적률× α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침상형공지,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α

항 목	세 분	세부계획기준	비 고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α	•간선부 : $\alpha=0.5$ •이면부 : $\alpha=1.0$
권장 용도	전층 (연면적 기준)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전층연면적)×1	•20%이상 설치시(주차장제외)
보행 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지하연결통로 설치 등	기준용적률×0.2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설치시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1.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4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경미한 사항
1. 대지의 분할 · 교환에 관한 사항
2.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3. 통로의 성격 설치계획 (보행자 및 차량전용 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 설치) 등
4. 민간부문 시행지침의 변경에 대한 사항 (경미한 변경 범위에 한함)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 첨부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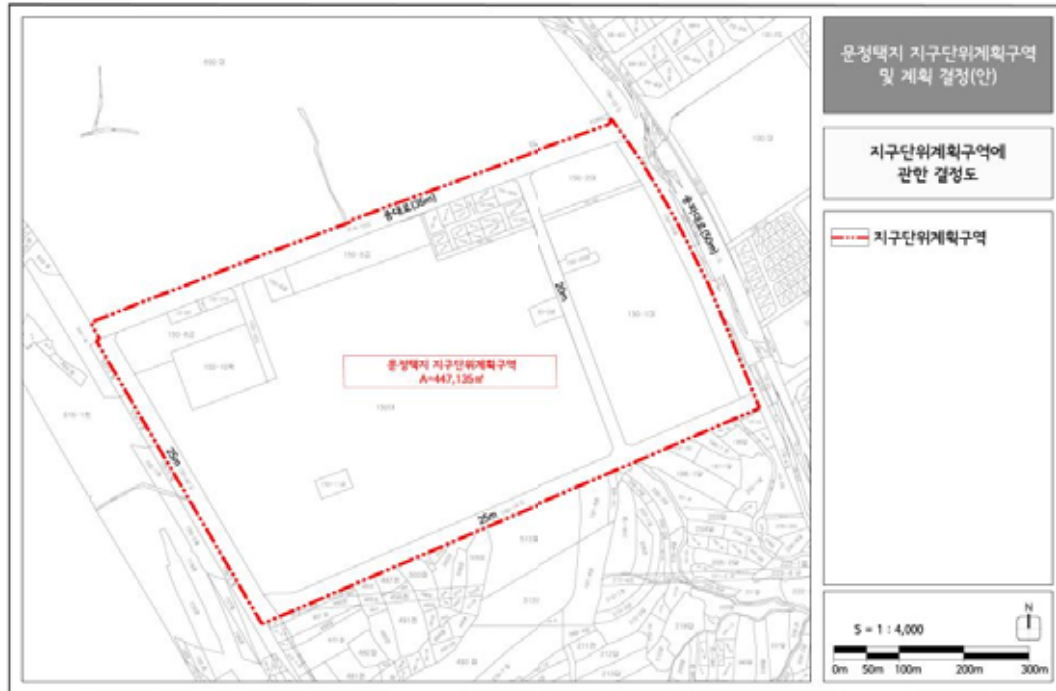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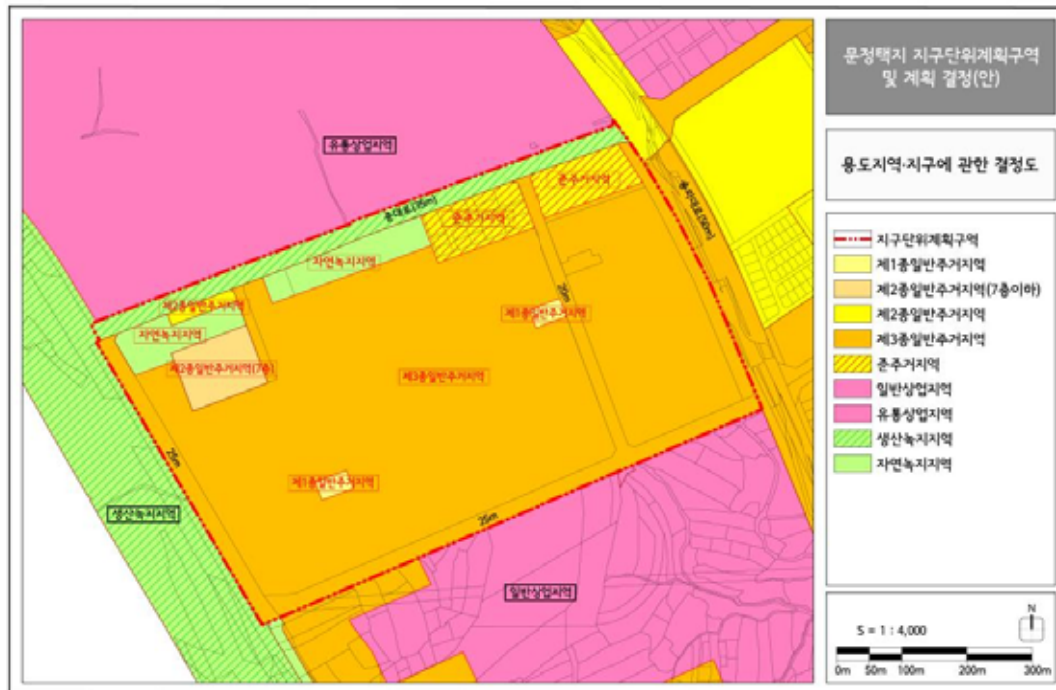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90) 및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3001)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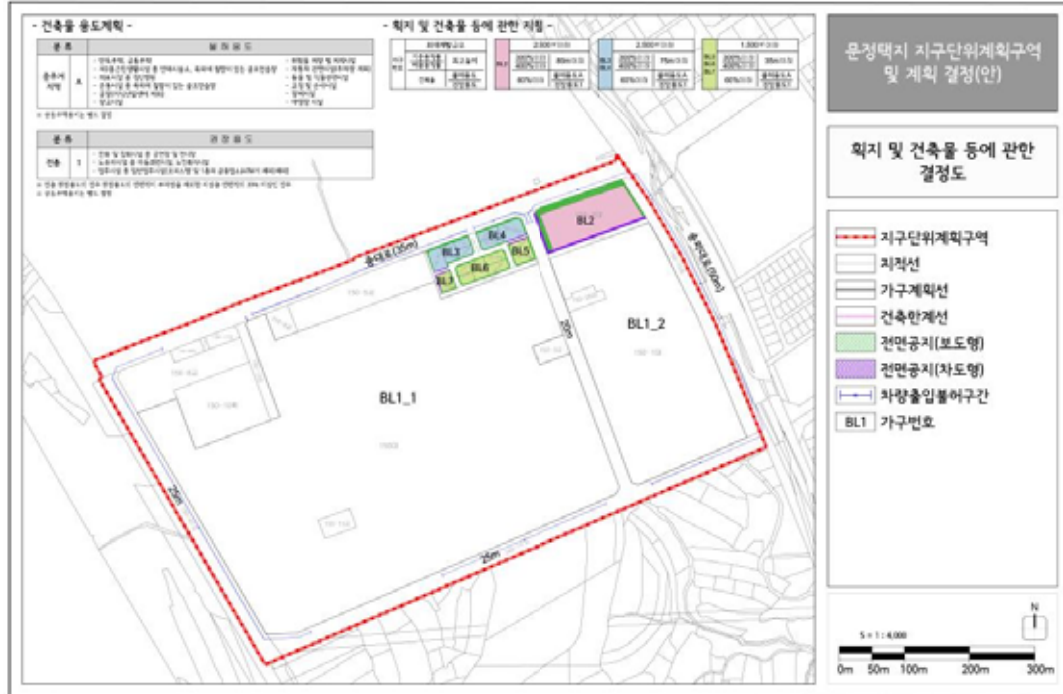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기정)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준주거지역 확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431호

도시관리계획(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7호(2002.1.29)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2009-497호(2009.12.10.)로 결정(변경)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0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8.26.)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노후가 심한 종로경찰서 신축을 위하여 중첩된 도시계획시설 면적 등을 제척하고 청사의 신축규모 및 주변여건 등을 반영한 높이를 변경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경운동 90-18일대	124,068	-	124,068	서고 제2002-27호 (2002.1.29)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사항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1)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조서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의 종류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①	공공 청사	종로 경찰서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4,715.4	감)321.0	4,394.4	서고179호 ('80. 5.28.)	-

※ 상기 공공청사 변경 이외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변경없음

☐ 공공청사 건축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최초 결정일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종로경찰서	60%이하	600%이하	30m이하	증)4m	34m이하	서고 2009-497호 (2009.12.10.)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및 건축계획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면적 변경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선과 획지계획(고합부지 특별계획구역) 결정선의 중첩 부분 제척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선 내 국(경)철형 외 소유자 및 주변 현황에 따른 일부 필지 제척 · 기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선 지정에 있어 오류 사항 정정
		도시계획시설 건축규모(높이) 변경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규모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높이 변경 (증 4m)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 결정조서(변경없음)

－ 관훈동 85-1(도), 84-15(대) 공공보행통로 결정(결정도면 변경)

III.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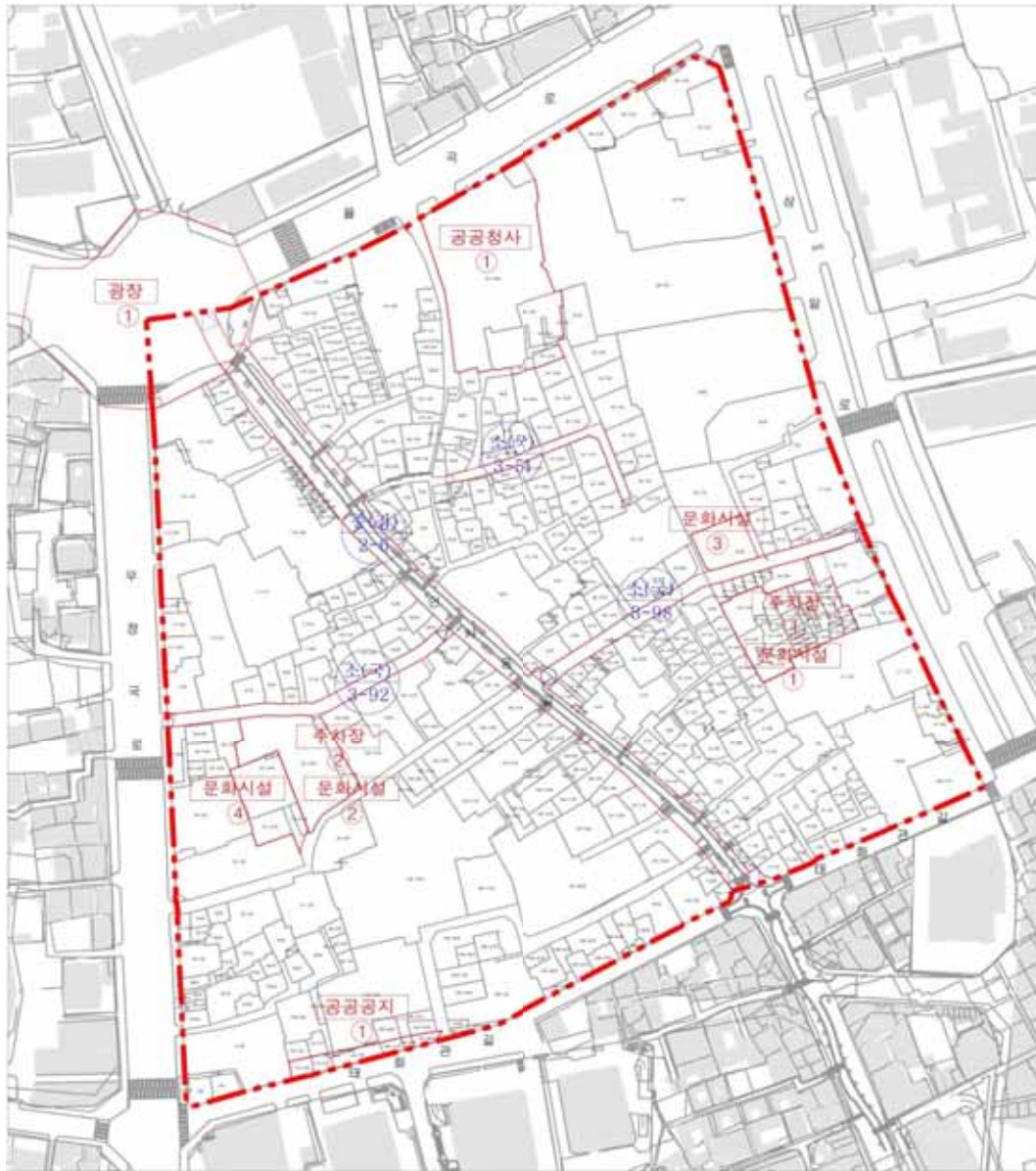
※ 첨부된 관계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한옥건축자산과(☎02-2133-5577), 종로구청 건축과 (☎02-2148-2814)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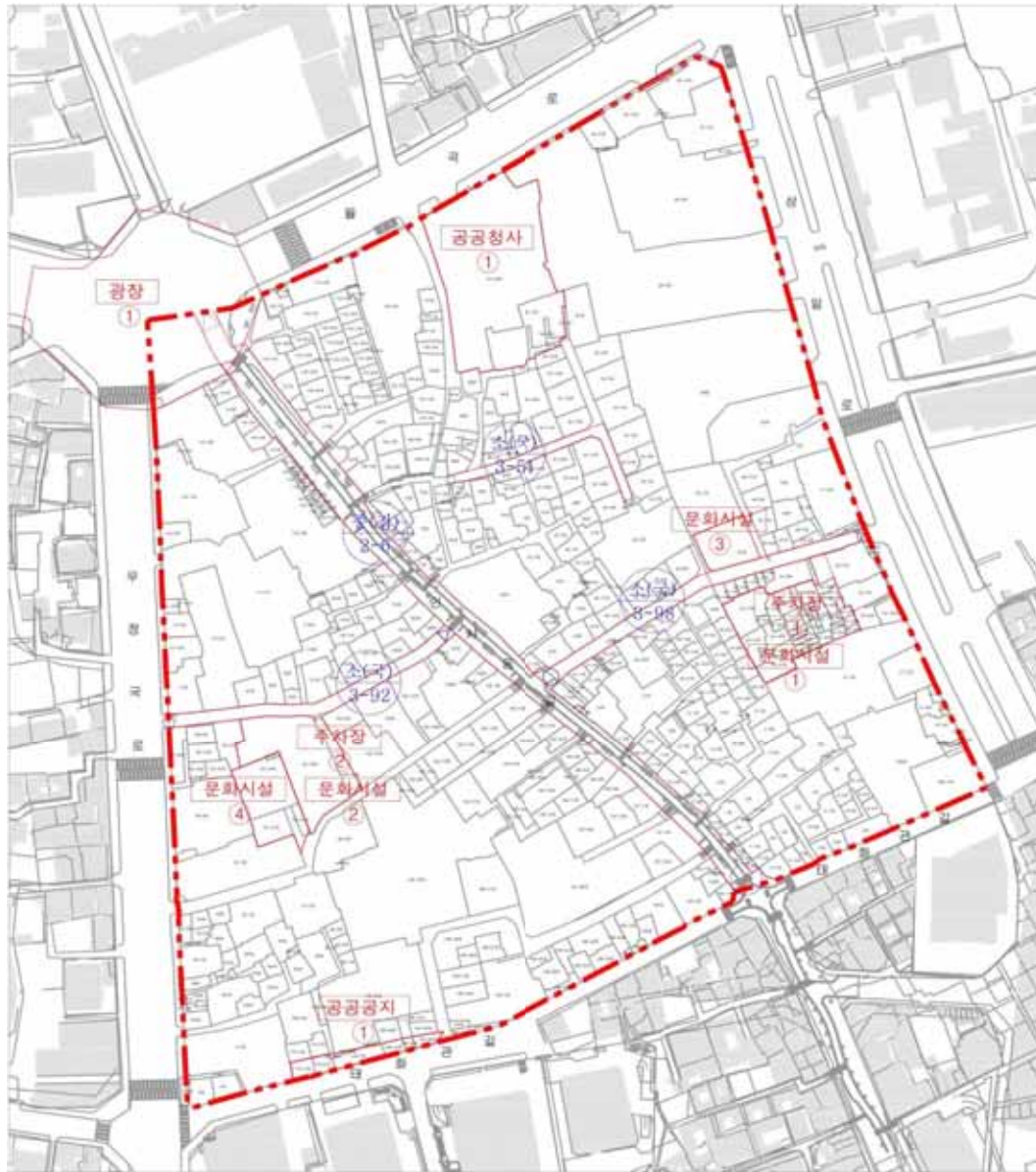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 예정

[붙임]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면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범례

- |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 공공공지 |
| 도 로 | 문화시설 |
| 주 차 장 | 공공청사 |
| 광 장 | |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scale 1:3,000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432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체육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967-709호로 최초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85호로 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63일대 도시계획시설 유수지에 대하여 2020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06.17.)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체육시설, 주차장)을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1. 결정(변경)취지

여름철 집중강우시 외 활용도가 낮은 도시계획시설 유수지에 복개상부를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복합문화체육센터 및 공영주차장)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및 주차장을 신설·중복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체육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유수지	유수 시설	성동구 성수동1가 685-76일대	60,862	-	60,862	'67.10.25 (건고시 제709호)	주소정정 및 중복결정
변경			성동구 성수동1가 685-63일대					
신설	체육시설	체육 시설	성동구 성수동1가 685-63일대	-	증)11,200	11,200	-	중복결정 -체육시설(지상)
신설	주차장	주차장	성동구 성수동1가 685-63일대	-	증)14,112	14,112	-	중복결정 -주차장(지상)

○ 건축물의 범위 결정조서(체육시설)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 고
내용	20%이하	50%이하	28m 이하	체육시설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변경사유서 (주소정정)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유수지	기정 : 성동구 성수동1가 685-76일대	• 기존 지번 말소로 고시문상 위치 표기를 성수동1가 685-63으로 정정
	변경 : 성동구 성수동1가 685-63일대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사유서 (신설 · 중복결정)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체육시설	신설 · 중복결정면적 : 11,200㎡ (체육시설-지상)	• 대상지 일대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생활SOC시설인 체육 · 문화 · 복지(돌봄)시설의 확충
주차장	신설 · 중복결정면적 : 14,112㎡ (주차장-지상)	• 서울숲 방문객, 저층주거지 주차난 완화 등을 위한 공영주차장 신설

○ 지형도면 : 붙임참조

※ 붙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13) 및 성동구청 도시계획과(☎02-2286-5554)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체육시설, 주차장) 결정도
- 기정



-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433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67번지 일대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제71조 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지정목적

- 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
- 나. 주거와 건축, 생활환경 등 높아진 시민의식 수준에 맞추어 미래 서울 도시 주거의 새로운 대안 제시 및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역명	위 치	면 적(㎡)
흑석11특별건축구역 (택지11-1)	동작구 흑석동 267번지 일대	70,238.2

※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음

3.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

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구역명	용 도	최고층수	비 고
흑석11특별건축구역 (택지11-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6층	

나. 특례적용사항

구역명	특례적용사항	적용 취지
흑석11 특별건축구역 (택지11-1)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적용 배제	• 경사지형에 주동을 직각배치하고 형태를 깎아 향과 조망을 개선하며 단지전체에 중저층을 배치하여 새로운 주거 공간과 주동형태를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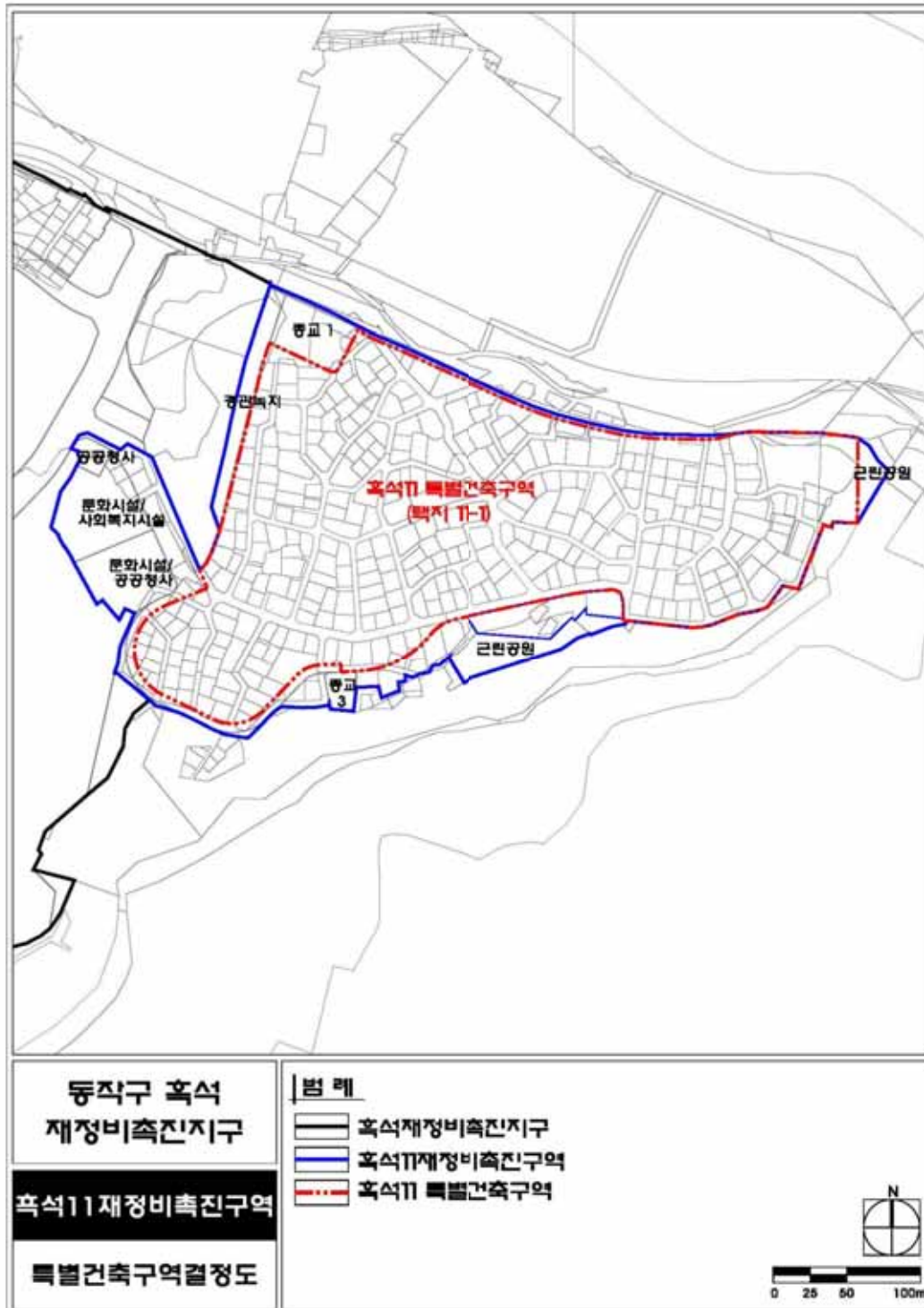
4.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 흑석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에 따름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사항

-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한 서류는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3) 및 동작구 도시개발과(☎02-820-9267)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특별건축구역 결정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434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흑석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7호(2008.09.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71호(2009.0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5호(2009.07.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8호(2009.12.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67호(2010.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2호(2010.07.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56호(2011.06.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4호(2012.01.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1호(2012.0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28호(2012.05.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80호(2012.7.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6호(2012.0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92호(2012.11.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17호(2012.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46호(2012.12.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5호(2013.05.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9호(2013.08.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8호(2013.09.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7호(2013.12.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61호(2014.04.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07호(2014.06.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58호(2014.10.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2호(2015.01.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22호(2015.05.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55호(2016.06.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12호(2016.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5호(2017.06.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66호(2017.07.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07호(2017.11.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60호(2018.03.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12호(2018.04.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6호(2018.05.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2호(2018.07.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04호(2018.09.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53호(2018.11.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95호(2019.03.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15호(2019.04.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7호(2020.01.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5호(2020.01.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91호(2020.03.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13호(2020.03.2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결정·고시합니다.
2.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흑석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흑석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동작구 흑석동 84-10번지 일원	901,934.2	증) 5.2	901,939.4	흑석11구역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2.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면 적(㎡)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소 계	89,312.3	증) 5.2	89,317.5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89,312.3	증) 5.2	89,317.5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흑석11구역)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합 계		89,312.3	증) 5.2	89,317.5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6,791.0	증) 50.6	16,841.6	18.8	
	도 로	3,927.0	증) 365.3	4,292.3	4.8	
	공 원	5,012.0	증) 9.9	5,021.9	5.6	
	녹 지	1,827.0	감) 269.4	1,557.6	1.7	
	공공청사 (11-3, 8)	2,928.0	감) 6.7	2,921.3	3.3	○공공청사/문화시설 증복(2,496.5) +파출소(424.8)
	문화시설 (11-4)	3,097.0	감) 48.5	3,048.5	3.4	○문화/사회복지시설 증복결정
택 지 (획 지)	소 계	72,521.3	감) 45.4	72,475.9	81.2	
	11-1	70,238.2	감) 45.4	70,192.8	78.6	공동주택
	11-5	1,780.8	-	1,780.8	2.0	종교시설
	11-7	502.3	-	502.3	0.6	종교시설

※ 지적측량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완화차로 확장)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증 감	변경 후	
총 계			89,312.3	증) 5.2	89,317.5	100.0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소 계	89,312.3	증) 5.2	89,317.5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1,268.3	증) 105.8	11,374.1	12.7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7,378.8	감) 53.0	7,325.8	8.2
		제2종일반주거지역	70,665.2	감) 47.6	70,617.6	79.1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흑석11 구역	1종일반주거	1종일반주거	증) 105.8	-	●흑석11구역 지적측량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완화차로 확장)에 따른 공원, 도로, 경관녹지 면적 변경 반영
		2종일반주거(7)	2종일반주거(7)	감) 53.0	-	●흑석11구역 지적측량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완화차로 확장)에 따른 공공청사/문화시설, 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의 면적 변경 반영
		2종일반주거	2종일반주거	감) 47.6	-	●흑석11구역 지적측량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완화차로 확장)에 따른 공동주택 및 공공청사(파출소)의 면적 변경 반영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1	43	35	주간선 도로	2,000 (152)	한강대교남 단	이수교	일반 도로	-	건고14 (77.1.31)	1,2,7,11 구역
변경	대로	1	43	35	주간선 도로	2,000 (341)	한강대교남 단	이수교	일반 도로	-	건고14 (77.1.31)	1,2,7,11 구역
기정	중로	2	5	15	국지 도로	144 (107)	흑석동 335-4	흑석동 288-3	일반 도로	-	서고 196호 (12.7.26)	5,11구역
변경	중로	2	5	15	국지 도로	144 (107)	흑석동 335-4	흑석동 288-3	일반 도로	-	서고 196호 (12.7.26)	5,11구역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239	흑석동 288-5	흑석동 294-1	일반 도로	-	서고 91호 (20.3.05)	

※ () 는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에 해당함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43	대로1-43	◦완화차로 확장(증 189m) - L= 152m → 341m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현충로변 완화차로 확장
중로2-5	중로2-5	◦도로 선형 변경	●지적측량 결과 도로폭 미확보에 따라 결정폭에 맞게 도로선형 변경

2)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변경	-	현충 근린공원	근린 공원	동작동 산30-7일대	1,095,846.7 (5,012.0))	증) 9.9	1,095,856.6 (5,021.9)	서고제321호 (09.8.27)	흑석3,4,6,11구역, 존치관리 13구역

※ () 는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에 해당함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현충 근린공원	◦근린공원 면적 정정 (증 9.9㎡) - 면적 : 1,095,846.7㎡ → 1,095,856.6㎡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3) 녹지(경관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변경	①	녹지	경관녹지	흑석동산88-14	1,827.0	감) 269.4	1,557.6	서고 196호 (12.7.26)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녹지	◦경관녹지 변경(감 269.4㎡) - 면적 : 1,827.0㎡ → 1,557.6㎡	●현충로변 완화차로 확장에 따른 면적 축소 및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4)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변경	⑤	공공청사	파출소	흑석동 335-7 일대	427.0	감) 2.2	424.8	서고 196호 (12.7.26)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⑤	공공청사	○공공청사 면적 정정 (감 2.2㎡) - 면적 : 427.0㎡ → 424.8㎡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5) 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변경	①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	흑석동 38-58일대	3,097.0	감) 48.5	3,048.5	서고 91호 (20.3.05)	중복결정 (동작구 기부채납)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면적 축소 (감 48.5㎡) - 면적 : 3,097.0㎡ → 3,048.5㎡	●중로2-5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7) 문화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변경	②	문화시설/공공청 사	-	흑석동 38-58 일대	2,501.0	감) 4.5	2,496.5	서고 91호 (20.3.05)	중복결정 (서울시 기부채납)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②	문화시설/ 공공청사	○면적 축소 (감 4.5㎡) － 면적 : 2,501.0㎡→ 2,496.5㎡	●중로2-5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공동이용 시설	관리사무소	흑석11재정비 촉진구역내	90.0	증) 143.49	233.49	
	경비실		60.0	감) 4.00	56.00	
	통신실		40.0	감) 40.00	-	
	경로당		300.0	증) 229.07	529.07	
	어린이집		300.0	증) 485.11	785.11	
	작은도서관		200.0	증) 200.47	400.47	
	어린이놀이터		2,100.0	감) 538.30	1,561.70	
	주민운동시설		2,700.0	감) 2,331.07	368.93	
	근린생활시설		3,488.0	감) 763.47	2,724.53	

※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마.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흑석11재정비 촉진구역	89,312.3	-	-	흑석동304 번지일대	347	1	-	345	1	
변경		89,317.5									

□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층수/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흑석11 재정비 촉진 구역	89,312.3	택지11-1	70,238.2	흑석동 267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9이하	201이하	13.3층이하/ 16층이하	
			택지11-3	427.0	흑석동 335-7 일대	공공청사	60이하	200이하	12층이하	
			택지11-4	3,097.0	흑석동 38-58 일대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60이하	200이하	7층이하	
			택지11-5	1,780.8	흑석동 264 일대	종교시설	60이하	200이하	7층이하	
			택지11-7	502.3	흑석동 295	종교시설	60이하	150이하	4층이하	
			택지11-8	2,501.0	흑석동 38-58 일대	공공청사 문화시설	60이하	200이하	7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 건설비용 - 세대 당 전용면적 85㎡미만 : 60%이상 (80%이상 권장) - 85㎡초과 20%이상 계획 시 : 초과세대수 만큼의 부분임대 설치 - 세대 당 전용면적 60㎡이하 : 40%이상 ○ 건립예정세대수 : 1,509 세대 - 임대주택 건립시 전용면적 38㎡이상								
		구분(전용면적)		총세대수		분양세대		임대세대		비 율(%)
		40㎡미만		126		-		126		8.3
		40~50㎡미만		105		-		105		7.0
		50~60㎡미만		565		539		26		37.5
		60~85㎡미만		637		637		-		42.2
85㎡이상		76		76		-		5.0		
합 계		1,509		1,252		257		100		
심의완화 사항		○ 특별건축구역 건축계획 수립을 통한 인동거리 등 완화(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 인동거리 : 0.8h → 0.7h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건축한계선 : 현충로변 공동주택 6m								
건축물의 배치·형태· 색채 등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 4~6m ○ 흑석11구역 도시·건축 혁신 건축계획지침에 따름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층수/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흑석11 재정비 촉진 구역	89,317.5	택지11-1	70,192.8	흑석동 267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	29이하	205.00이하	13.3층이하/ 16층이하		
			택지11-3	424.8	흑석동 335-7 일대	공공청사	60이하	200이하	12층이하		
			택지11-4	3,048.5	흑석동 38-58 일대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60이하	200이하	7층이하		
			택지11-5	1,780.8	흑석동 264 일대	종교시설	60이하	200이하	7층이하		
			택지11-7	502.3	흑석동 295	종교시설	60이하	150이하	4층이하		
			택지11-8	2,496.5	흑석동 38-58 일대	공공청사 문화시설	60이하	200이하	7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 건설비용 - 세대 당 전용면적 85㎡미만 : 60%이상 (80%이상 권장) - 85㎡ 초과 20%이상 계획 시 : 초과세대수 만큼의 부분임대 설치 - 세대 당 전용면적 60㎡이하 : 40%이상 ○ 건립예정세대수 : 1,509 세대 - 임대주택 건립시 전용면적 38㎡이상									
		구분(전용면적)		총세대수		분양세대		임대세대		비 율(%)	
		40㎡미만		113		-		113		7.5	
		40~50㎡미만		109		-		109		7.2	
		50~60㎡미만		560		525		35		37.1	
		60~85㎡미만		667		667		-		44.2	
		85㎡이상		60		60		-		4.0	
합 계		1,509		1,252		257		100			
심의완화 사항		○ 특별건축구역 건축계획 수립을 통한 인동거리 등 완화 - 인동거리 : 0.8h → 0.6h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건축한계선 : 현충로변 공동주택 6m									
건축물의 배치·형태· 색채 등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 4~6m ○ 흑석11구역 도시·건축 혁신 건축계획지침에 따름									

□ 용적률 계획(변경)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등)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택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89,317.5㎡	72,475.9㎡	27,206.6㎡	3,030.4㎡	14,703.3㎡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27,206.6㎡ - 3,030.4㎡ - 14,703.3㎡ = 9,472.9㎡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공공청사/문화시설 토지환산면적(3,766.6㎡→ 4,151.2㎡) 및 문화/사회복지시설 토지환산면적(6,213.8㎡) 포함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190%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1+1.3×가중치×α 토지+0.7×α 현금·건축물) ▶ 대상지 · 기준용적률 190% · α 토지 = -1,301.5/70,192.8 = -0.01854 · α 현금·건축물 = 10,365.0/70,192.8 = 0.14766 ▶ 상한용적률 (완화가능용적률) = 190% × (1+1.3×-0.01854×1.0 +0.7×0.14766) = 205.00% ≥ 건축계획(안) 201.55% α 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 포함 α 현금·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정확한 면적은 사업시행인가시 부지가액 등 감정평가를 거쳐 확정함

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시에 매각(처분)

계획기준	• 임대주택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 40㎡이하 * 40㎡이하 : 40~50㎡ : 50~60㎡이하 = 40~50% : 40~50% : 10~20%					
산출 근거	• 전체세대수 : 1,509세대 •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 257세대 : 1,509세대 × 17% = 256.53세대 ∴ 257세대 > 256.53세대					
건립규모	세대수		전체 비율		임대주택 비율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57세대		17.0%		100.0%	
40㎡이하	126세대	113세대	8.3%	7.5%	49.0%	44.0%
40~50㎡이하	105세대	109세대	7.0%	7.2%	40.9%	42.4%
50~60㎡이하	26세대	35세대	1.7%	2.3%	10.1%	13.6%

사.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아.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자. 정비구역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차.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카.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타. 생태 면적률(변경없음)

파. 건축계획(변경)

구 분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구역면적(㎡)		89,312.3	89,317.5	
대지면적(㎡)		70,238.2	70,192.8	특별건축구역
용적률산정용면적(㎡)		141,161.56	141,475.18	
건축면적(㎡)		20,200.00	18,513.04	
용적률(%)		200.98	201.55	
건폐율(%)		28.76	26.37	
주차대수	지상	-	-	근생 법정: 20대
	지하	2,078	2,430	공동 법정: 1,475대
	계	2,078(근생 27대 포함)	2,430(근생 20대 포함)	법정: 1,495대

4. 도시·건축 혁신계획(변경, 흑석11구역)

☐ 도시·건축 혁신 촉진계획지침(변경)

구 분	내 용	비 고
용적률	○ 기준용적률 190%, 상한 용적률 205.0% 이하	
층수/높이	○ 최고층수 16층 이하, 평균층수 13.3층 이하(현충원에서 사업대상지가 보이지 않도록 계획) ※ 최상층 스카이라인지(지역커뮤니티시설) 도입 1개동은 16층 이하, 그 외 15층 이하로 계획	
순부담률	○ 10%이상 (공공시설은 서울시·동작구 수요조사 및 「흑석 지역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지역필요시설을 우선적으로 반영)	
토지이용계획	○ 종교시설(한가람교회)는 이전 배치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	

주1) 도시·건축 혁신 촉진계획의 세부내용은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 공공대안(흑석11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름

주2) '도시·건축 혁신 촉진계획 지침(이하 '촉진계획지침')'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 이후 확정된 촉진계획지침은 사업 완료시까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주3) 촉진계획지침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도시건축혁신단(가칭)(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및 관계부서 협의, 공공건축가 자문, 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도시·건축 혁신 건축계획지침(변경없음)

5.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흑석11구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변 경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흑석동304 번지일대	89,312.3	증) 5.2	89,317.5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증 감	변경 후	
총 계			89,312.3	증) 5.2	89,317.5	100.0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소 계	89,312.3	증) 5.2	89,317.5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1,268.3	증) 105.8	11,374.1	12.7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7,378.8	감) 53.0	7,325.8	8.2
		제2종일반주거지역	70,665.2	감) 47.6	70,617.6	79.1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다.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1	43	35	주간선 도로	2,000 (152)	한강대교남 단	이수교	일반 도로	-	건고14 (77.1.31)	1,2,7,11 구역
변경	대로	1	43	35	주간선 도로	2,000 (341)	한강대교남 단	이수교	일반 도로	-	건고14 (77.1.31)	1,2,7,11 구역
기정	중로	2	5	15	국지 도로	144 (107)	흑석동 335-4	흑석동 288-3	일반 도로	-	서고 196호 (12.7.26)	5,11구역
변경	중로	2	5	15	국지 도로	144 (107)	흑석동 335-4	흑석동 288-3	일반 도로	-	서고 196호 (12.7.26)	5,11구역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239	흑석동 288-5	흑석동 294-1	일반 도로	-	서고 91호 (20.3.05)	

※ () 는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에 해당함

2)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변경	-	현충 근린공원	근린 공원	동작동 산30-7일대	1,095,846.7 (5,012.0))	증) 9.9	1,095,856.6 (5,021.9)	서고제321호 (09.8.27)	흑석3,4,6,11구역, 준치관리 13구역

※ () 는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에 해당함

3) 녹지(경관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변경	①	녹지	경관녹지	흑석동산88-14	1,827.0	감) 269.4	1,557.6	서고 196호 (12.7.26)	

4)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변경	⑤	공공청사	파출소	흑석동 335-7 일대	427.0	감) 2.2	424.8	서고 196호 (12.7.26)	-

5) 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변경	①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	흑석동 38-58일대	3,097.0	감) 48.5	3,048.5	서고 91호 (20.3.05)	중복결정 (동작구 기부채납)

6) 문화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변경	②	문화시설/공공청 사	-	흑석동 38-58 일대	2,501.0	감) 4.5	2,496.5	서고 91호 (20.3.05)	중복결정 (서울시 기부채납)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가 구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획지	11-1	70,238.2	감) 45.4	70,192.8	공동주택
	11-5	1,780.8	-	1,780.8	종교시설
	11-7	502.3	-	502.3	종교시설

2)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건폐율 계획(변경없음)
☐ 용적률 계획(변경)

구 분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정상한용적률	
11-1 (공동주택)	기정	190%	-	201.0% 이하	201.0% 이하	
	변경			205.0% 이하	205.0% 이하	
종교, 도시계획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 따름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변경)

구 분		용적률 완화		비 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소형주택 건설	
11-1	기정	10.1%	-	
	변경	10.6%		

- ☐ 높이 계획(변경없음)
☐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마. 경관계획(변경없음)

바.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시에 매각(처분)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비율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임대주택	소형주택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중 소형주택
합 계	1,509	100.0	257	257	-	17.0	100.0	-
40㎡이하	113	7.5	113	113	-	7.5	44.0	-
40~50㎡이하	109	7.2	109	109	-	7.2	42.4	-
50~60㎡이하	560	37.1	35	35	-	2.3	13.6	-
60~85㎡이하	667	44.2	-	-	-	-	-	-
85㎡초과	60	4.0	-	-	-	-	-	-

3) 환경관리계획(변경없음)

사.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변경없음)

6.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붙임(흑석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총괄) 고시) 및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에 명시 : 결정(변경)도서 게재 생략
7.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및 동작구 도시개발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8.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3) 및 동작구 도시 개발과(☎02-820-9267)에 관련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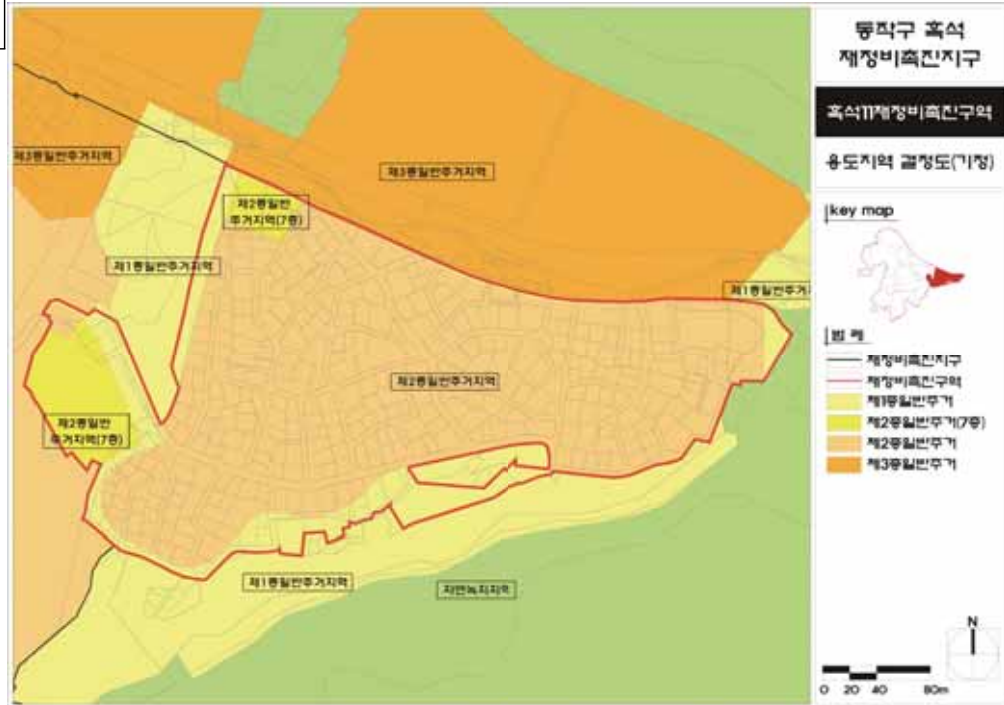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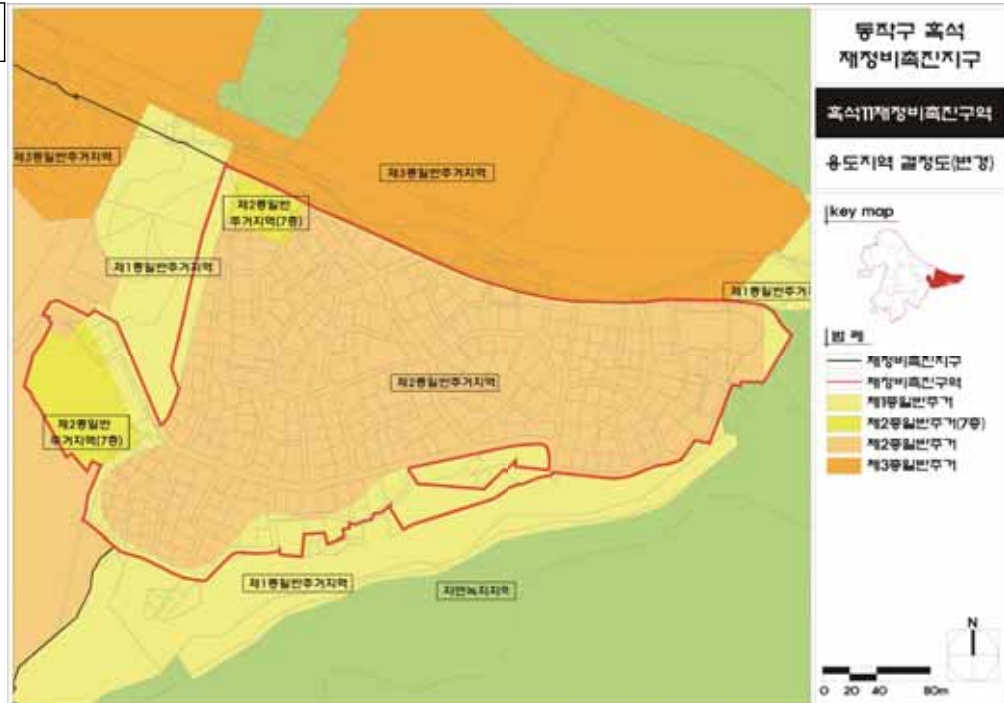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결정도

기정



변경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도

기정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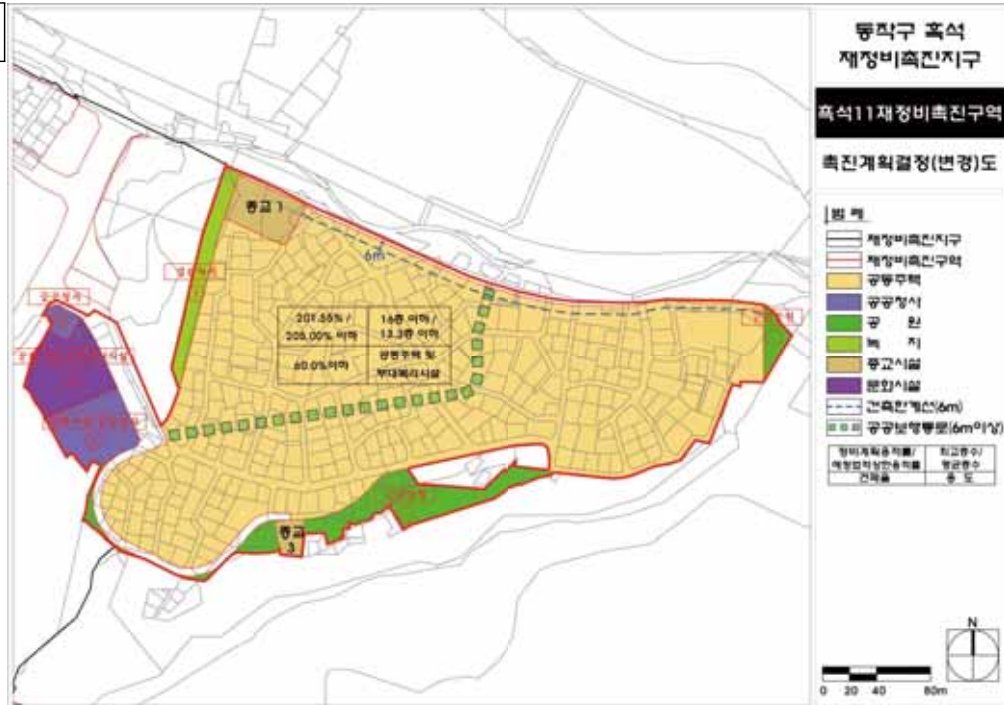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결정(변경)도

기정



변경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도

기정



변경



붙임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총괄) 고시
1. 흑석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기 정	변 경	변경 후	
흑석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동작구 흑석동 84-10번지 일원	901,934.2	증 5.2	901,939.4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흑석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 체계적 도시정비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총 계		901,934.2	증) 5.2	901,939.4	100.00	
주거용지	소 계	533,704.6	감) 45.4	533,659.2	59.17	
	공동주택	481,624.4	감) 45.4	481,579.0	53.40	흑석11
	주상복합	52,080.2	-	52,080.2	5.77	
계획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292,529.9	증) 50.6	292,580.5	32.44	
	도 로	99,234.6	증) 365.3	99,599.9	11.04	흑석11
	공공청사	6,810.0	감) 6.7	6,803.3	0.76	흑석11
	문화시설	3,097.0	감) 48.5	3,048.5	0.34	흑석11
	복합커뮤니티시설	2,373.0	-	2,373.0	0.26	
	사회복지시설	3,538.6	-	3,538.6	0.39	
	대학교(의료시설)	25,951.4	-	25,951.4	2.88	
	학 교	63,012.7	-	63,012.7	6.99	
	공 원	66,204.6	증) 9.9	66,214.5	7.34	흑석11
	녹 지	7,401.5	감) 269.4	7,132.1	0.79	흑석11
	공공공지	6,399.5	-	6,399.5	0.71	
현 안	소 계	8,507.0	-	8,507.0	0.94	
	유수지	2,930.8	-	2,930.8	0.34	
	유수지·도로	764.5	-	764.5	0.08	
	유수지·주차장	698.7	-	698.7	0.07	
	유수지·공원	1,943.3	-	1,943.3	0.22	
	유수지·공원·주차장	1,105.7	-	1,105.7	0.12	
	유수지·공원·도로	298.0	-	298.0	0.03	
	공 원	637.1	-	637.1	0.07	
	도 로	128.9	-	128.9	0.01	
	기타	75,699.7	-	75,699.7	8.39	
기타	현황녹지	20,792.9	-	20,792.9	2.31	
	근린생활시설	9,782.0	-	9,782.0	1.08	
	종교시설	18,700.8	-	18,700.8	2.07	
	지구단위계획	26,303.0	-	26,303.0	2.92	
	환원 기타(자투리 토지 등)	121.0	-	121.0	0.01	

※ 흑석11구역 지적측량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완화차로 확장)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인구 · 주택 수용계획(변경)

구 분		계획세대(세대)		인구수(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12,201	12,201	29,211인 (부분임대 포함 시 30,443인)	29,211인 (부분임대 포함 시 30,513인)	부분임대 1,302호 공급
촉진 구역	소계	9,837	9,837			
	40㎡ 이하	675	662			
	40~60㎡ 이하	3,248	3,247			
	60~85㎡ 이하	4,992	5,022			
	85㎡ 초과	922	906			
존치지역		2,364	2,364			

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개소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2	104,782.7	감) 55.2	104,727.5	
교육시설	5	88,964.1	-	88,964.1	
사회복지시설	5	3,538.6	-	3,538.6	
복합커뮤니티시설	3	2,373.0	-	2,373.0	
문화시설	2	3,097.0	감) 48.5	3,048.5	
공공청사	7	6,810.0	감) 6.7	6,803.3	

※ 흑석11구역 지적측량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완화차로 확장)에 따른 면적 변경

라.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구 분		공 원				녹 지			기 타	합계
		문화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연결녹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공공지	
개수		2	6	2	5	1	1	2	7	26
면적 (㎡)	기정	11,051.0	46,049.2	2,163.5	6,940.9	3,011.2	2,263.5	2,126.8	6,399.5	80,005.6
	변경	11,051.0	46,059.1	2,163.5	6,940.9	3,011.2	2,263.5	1,857.4	6,399.5	79,746.1

※ 흑석11구역 지적측량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완화차로 확장)에 따른 면적 변경

마. 교통계획(변경없음)

바. 경관계획(변경없음)

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없음)

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감	변경 후		
재정비촉진지구		901,934.2	증) 5.2	901,939.4	100.0	-
지구단위계획구역		26,841.0	-	26,841.0	3.0	주민참여형재생사업
재정비촉진구역(1~11구역)		661,026.4	증) 5.2	661,031.6	73.3	-
촉진 구역	흑석1재정비촉진구역	26,675.0	-	26,675.0	2.9	주택재개발사업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45,229.0	-	45,229.0	5.0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102,557.9	-	102,557.9	11.4	주택재개발사업
	흑석4재정비촉진구역	56,619.9	-	56,619.9	6.3	주택재개발사업
	흑석5재정비촉진구역	40,642.4	-	40,642.4	4.5	주택재개발사업
	흑석6재정비촉진구역	64,016.3	-	64,016.3	7.1	주택재개발사업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73,846.7	-	73,846.7	8.2	주택재개발사업
	흑석8재정비촉진구역	34,597.1	-	34,597.1	3.8	주택재개발사업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94,577.8	-	94,577.8	10.5	주택재개발사업
	흑석10재정비촉진구역	32,952.0	-	32,952.0	3.7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89,312.3	증) 5.2	89,317.5	9.9	주택재개발사업
존치지역(1~13)		214,066.8	-	214,066.8	23.7	
존치 관리	1	111,480.0	-	111,480.0	12.4	
	3	22,944.0	-	22,944.0	2.5	
	4	10,693.0	-	10,693.0	1.2	
	5	13,665.0	-	13,665.0	1.5	
	6	5,791.2	-	5,791.2	0.6	
	7	14,372.0	-	14,372.0	1.6	
	8	8,961.0	-	8,961.0	1.0	
	9	12,156.9	-	12,156.9	1.3	
	10	2,834.0	-	2,834.0	0.3	
	11	383.0	-	383.0	0.1	
	12	8,628.0	-	8,628.0	1.0	
	13	2,158.7	-	2,158.7	0.2	

※ 흑석11구역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자.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총 계			901,934.2	증) 5.2	901,939.4	100.0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소 계	867,165.0	증) 5.2	867,170.2	96.1	
		제1종일반주거지역	154,962.7	증) 105.8	155,068.5	17.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24,793.9	감) 53.0	224,740.9	24.9	
		제2종일반주거지역	471,488.9	감) 47.6	471,441.3	52.2	
		제3종일반주거지역	15,919.5	-	15,919.5	1.8	
	준주거지역		34,769.2	-	34,769.2	3.9	

※ 흑석11구역 지적측량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완화차로 확장)에 따른 면적 변경

1) 흑석1구역(주택재개발사업) ~ 10) 흑석10구역(변경없음)

11) 흑석11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증 감	변경 후	
총 계			89,312.3	증) 5.2	89,317.5	100.0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소 계	89,312.3	증) 5.2	89,317.5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1,268.3	증) 105.8	11,374.1	12.7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7,378.8	감) 53.0	7,325.8	8.2
		제2종일반주거지역	70,665.2	감) 47.6	70,617.6	79.1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 흑석11구역 지적측량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완화차로 확장)에 따른 면적 변경

차.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계획(변경없음)
카.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구역명	건폐율(%)		용적률(%)		층수				비고
					평균			최고	
	기준	계획	기준	상한	기준	완화	계획		
흑석1	-	-	-	-	-	-	-	-	
흑석2	60	54.3	-	400	-	-	-	35	해발고도141m

구역명		건폐율(%)		용적률(%)		층수				비고
						평균			최고	
		기준	계획	기준	상한	기준	완화	계획		
흑석3		60	23.4	200	251	16.0	-	15.5	20	
흑석4		60	25	170	228	16.0	-	14.1	20	
흑석5		60	23	190	235	16.0	18.2	18.2	20	
흑석6		60	23	190	224	16.0	-	16.0	20	
흑석7		50	32.0	178.8	207.7	14.5	-	13.6	28	
흑석8		60	22.5	210	240.9	16.0	18.0	18.0	25	
흑석9		60	19.3	205	254.8	16.0	21.4	21.3	25	
흑석10		40	40.0	150	-	4.0	-	4.0	4	
흑석11	기 정	60	28.76	190	201.0	16.0	-	13.3	16	특별건축구역
	변 경	60	26.37	190	205.0	16.0	-	13.3	16	

※ 흑석1구역 건축계획은 향후 조합 등 추진주체 구성 시 용도지역 조정 등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음.

타.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1) 재정비촉진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 산정(변경)

구역 명		구역 면적 (㎡)	기반시설면적(㎡)					
			계획 기반시설	계획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	기존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	유상 매입시설	순 부담 면적	순 부담률 (%)
			A	B	C	D	A-B-C-D	
계	기정	661,026.4	196,357.5	61,402.7	40,412.4	-	94,542.4	14.3
	변경	661,031.6	196,792.7	61,402.7	40,412.4	-	94,977.6	14.4
흑석1재정비촉진구역		26,675.0	8,638.0	2,255.0	1,022.0	-	5,361.0	20.1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45,229.0	19,504.0	9,313.0	2,649.0	-	7,542.0	16.7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102,557.9	30,676.5	9,493.1	4,132.5	-	17,050.9	16.6
흑석4재정비촉진구역 (준공)		56,619.9 (56,622.8)	15,507.7 (15,510.6)	2,561.0	1,252.0	-	11,694.7 (11,697.6)	- (20.7)
흑석5재정비촉진구역 (준공)		40,642.4 (40,940.8)	8,176.8 (8,475.2)	1,324.0	822.0	-	6,030.8 (6,329.2)	- (15.5)
흑석6재정비촉진구역		64,016.3	15,824.8	4,741.0	3,237.6	-	7,846.2	12.3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73,846.7	18,675.8	7,284.0	3,441.0	-	7,950.8	10.8
흑석8재정비촉진구역		34,597.1	12,520.7	4,842.2	4,156.8	-	3,521.7	10.2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94,577.8	33,354.8	15,493.0	4,146.2	-	13,715.6	14.5

구역 명	구역 면적 (㎡)	기반시설면적(㎡)					
		계획 기반시설	계획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	기존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	유상 매입시설	순 부담 면적	순 부담률 (%)
		A	B	C	D	A-B-C-D	
흑석10재정비촉진구역	32,952.0	6,707.0	1,066.0	850.0	-	4,791.0	14.5
흑석11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89,312.3	26,771.4	3,030.4	-	9,037.7	10.1
	변경	89,317.5	27,206.6	3,030.4	-	9,472.9	10.6

※ 흑석11구역 변경사항 반영, 흑석4·5구역 ()는 준공시 자료임

※ 흑석11구역 공공시설 환산부지면적(10,365.0㎡) 포함

2) 재정비촉진구역별 흑석9구역 내 신설학교 공동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과.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계획(변경없음)

하.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 분	총계	임대				분양				부분 임대
		소계	40㎡이하	40~50㎡ 이하	50~60㎡ 이하	소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흑석1	-	-	-	-	-	-	-	-	-	-
흑석2	694	101	-	80	21	593	46	414	133	196
흑석3	1,772	338	156	136	46	1,434	542	856	36	320
흑석4	863	147	62	62	23	716	28	518	170	-
흑석5	655	114	46	51	17	541	24	391	126	-
흑석6	963	165	70	68	27	798	48	559	191	34
흑석7	1,073	162	65	75	22	911	151	716	44	322
흑석8	545	94	40	44	10	451	184	237	30	77
흑석9	1,536	262	110	106	46	1,274	629	576	69	283
흑석10	227	-	-	-	-	227	92	88	47	-
흑석11	1,509	257	126	105	26	1,252	539	637	76	-
			113	109	35		525	667	60	70
총계	9,837	1,640	675	727	238	8,197	2,283	4,992	922	1,232
			662	731	247		2,269	5,022	906	1,302

※ 흑석1구역 건축계획은 향후 조합 등 추진주체 구성 시 용도지역 조정 등이 포함된 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음.

거.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너. 기타계획(에너지순환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친환경건축물 가이드라인)(변경없음)

더. 특성화계획(변경없음)

러.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머.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버.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1) 흑석1구역(주택재개발사업) ~ 10) 흑석10구역(변경없음)

11) 흑석11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 : 생략(본문 내용과 같음)

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변경)

구 분	지구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변경	흑석재정비 촉진지구	동작구 흑석동 84-10번지 일대	901,934.2	증) 5.2	901,939.4	

※ 흑석11구역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2)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총 계			901,934.2	증) 5.2	901,939.4	100.0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소 계	867,165.0	증) 5.2	867,170.2	96.1	
		제1종일반주거지역	154,962.7	증) 105.8	155,068.5	17.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24,793.9	감) 53.0	224,740.9	24.9	
		제2종일반주거지역	471,488.9	감) 47.6	471,441.3	52.2	
		제3종일반주거지역	15,919.5	-	15,919.5	1.8	
	준주거지역		34,769.2	-	34,769.2	3.9	

※ 흑석11구역 지적측량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완화차로 확장)에 따른 면적 변경

3)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29	5,079	78,259.1	7	2,479	44,219.0	11	1,712	24,101.0	11	1,040	9,939.1
	변경	29	5,268	78,624.4	7	2,668	44,584.3	11	1,712	24,101.0	11	1,040	9,939.1
대로	기정	1	152	645.4	1	152	645.4	-	-	-	-	-	-
	변경	1	341	1,010.7	1	341	1,010.7	-	-	-	-	-	-
중로	기정	13	3,449	63,000.4	3	1,735	36,838.6	6	1,241	20,261.0	4	473	5,900.8
소로	기정	15	1,630	14,613.3	3	592	6,735.0	5	471	3,840.0	7	567	4,038.3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1	43	35	주간선 도로	2,000 (152)	한강대교남단	이수교	일반 도로	-	건고14 (77.1.31)	흑석1,2,7구역
변경	대로	1	43	35	주간선 도로	2,000 (341)	한강대교남단	이수교	일반 도로	-	건고14 (77.1.31)	흑석1,2,7,11구역
기정	중로	1	1	20~23	집산 도로	996	흑석동 25~21	흑석동 산63~100	일반 도로	-	서고 307호 (08.9.11)	흑석3,4,5,6,9구역
기정	중로	1	2	20~23	집산 도로	251	흑석동 130~3	흑석동 183~10	일반 도로	-	서고 307호 (08.9.11)	흑석2,7구역
기정	중로	1	30	20	집산 도로	488	흑석동 100~8	흑석동 79~162	일반 도로	-	서고 307호 (08.9.11)	흑석2,3,8,9구역
기정	중로	2	1	15~18	집산 도로	532	흑석동 183~17	흑석동 41~15	일반 도로	-	서고 307호 (08.9.11)	흑석1,2,5구역
기정	중로	2	2	15~21	집산 도로	234	흑석동 143~57	흑석동 186~147	일반 도로	-	서고 307호 (08.9.11)	흑석7구역
기정	중로	2	3	15~18	집산 도로	152	흑석동 130~6	흑석동 163~3	일반 도로	-	서고 307호 (08.9.11)	흑석7구역
기정	중로	2	4	15	집산 도로	128	흑석동 6~5	흑석동 4~7	일반 도로	-	서고 307호 (08.9.11)	흑석1구역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5	15	국지 도로	144	흑석동 335-4	흑석동 288-3	일반 도로	-	서고 196호 (12.7.26)	흑석5,11구역
변경	중로	2	5	15	국지 도로	144	흑석동 335-4	흑석동 288-3	일반 도로	-	서고 196호 (12.7.26)	흑석5,11구역
기정	중로	2	30	15~20	집산 도로	71	흑석초교	중대부중	일반 도로	-	총고제722호 (36.12.26)	흑석존치12구역
기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135	흑석동 68-4	흑석동 67-207	일반 도로	-	서고 307호 (08.9.11)	흑석4구역
기정	중로	3	3	12	집산 도로	110	흑석동 200-8	흑석동 204-126	일반 도로	-	서고 196호 (12.7.26)	흑석10구역
기정	중로	3	31	12	국지 도로	821 (228)	흑석동 (흑석동 산63-100)	상도동 (흑석동 257-129)	일반 도로	-	서고 307호 (08.9.11)	흑석3구역
기정	중로	3	32	12~15	집산 도로	559 (-)	흑석동 183-6	상도동	일반 도로	-	서고 307호 (08.9.11)	흑석1존치관리, 흑석10구역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78	흑석동 76-171	흑석동 257-58	일반 도로	-	서고 307호 (08.9.11)	흑석3구역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212 (77)	흑석동 252-53 (흑석동 67-207)	흑석동 67-54 (흑석동 327-2)	일반 도로	-	서고 307호 (08.9.11)	흑석4구역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108	흑석동 67-207	흑석동 75-33	일반 도로	-	서고 307호 (08.9.11)	흑석3,4구역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206	흑석동 173-12	흑석동 173-79	일반 도로	-	서고 346호 (12.12.20)	흑석7구역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60	흑석동 198-90	흑석동 198-90	일반 도로	-	서고 346호 (12.12.20)	흑석7구역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20	흑석동 51-1	흑석동 4-7	일반 도로	-	서고 346호 (12.12.20)	흑석1구역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29	흑석동4	흑석동 54-8	일반 도로	-	서고 439호 (03.12.30)	흑석5구역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152 (74)	흑석동 86-1	흑석동 93-203	일반 도로	-	서고 307호 (08.9.11)	흑석9구역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241	흑석동 198-90	흑석동 204-171	일반 도로	-	서고 196호 (12.7.26)	흑석10구역
기정	소로	3	180	6	국지 도로	147 (85)	흑석동 중로3-31	흑석동 239-65 (흑석동 239-40)	일반 도로	-	서고 제425호 (84.7.25)	흑석6구역
기정	소로	3	49	6~8	국지 도로	80	흑석동 143-122	흑석동 143-118	일반 도로	-	-	흑석7구역
기정	소로	1	3	6	국지 도로	73	흑석동 소로1-1	흑석동 76-73	일반 도로	-	서고 제407호 (13.12.5)	흑석3구역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3	4	4	국지 도로	55	흑석동 332-1	흑석동 225-35	일반 도로	-	-	흑석9구역 흑석6존치관리
기정	소로	3	5	4	국지 도로	36	흑석동 332-3	흑석동 97-22	일반 도로	-	-	흑석9구역 흑석6존치관리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239	흑석동 288-5	흑석동 294-1	일반 도로	-	서고 제91호 (20.3.05)	흑석11구역

(2) 주차장(변경없음)

(3) 철도(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변경)

- 공원 총괄표

구 분	개소	면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합 계	13	59,014.6	증) 9.9	59,024.5	
어린이공원	2	2,825.5	-	2,825.5	
소공원	4	2,230.9	-	2,230.9	
근린공원	5	48,455.2	증) 9.9	48,465.1	
문화공원	2	5,503.0	-	5,503.0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기정	①	-	문화 공원	흑석동 105번지일대	3,786.0	-	3,786.0	서고제307호 (08.9.11)	흑석1구역제척지 (흑석2구역)
기정	②	-	문화 공원	흑석동 51-8번지일대	1,673.0	-	1,673.0	-	흑석1구역
기정	①	-	근린 공원	흑석동 58-11번지일대	13,799.9	-	13,799.9	서고제307호 (08.9.11)	흑석1,2,4,5,9 구역
기정	②	-	근린 공원	흑석동 69-163번지일대	10,240.9	-	10,240.9	서고제307호 (08.9.11)	흑석3,4구역
기정	②	-	어린이 공원	흑석동 54-28번지일대	2,163.5	-	2,163.5	서고제307호 (08.9.11)	흑석1,5구역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기정	-	둘새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흑석동 105번지 일대	662.0	-	662.0	서고제79호 (80. 3. 3)	흑석존치 12구역
기정	①	-	소공원	흑석동 231-31번지일대	1,420.1	-	1,420.1	서고제307호 (08.9.11)	흑석8구역
기정	③	-	소공원	흑석동 339-4번지	254.8	-	254.8	서고제307호 (08.9.11)	흑석6구역
기정	⑦	-	소공원	흑석동 186-135번지일대	442.0	-	442.0	서고제128호 (12.5.17)	지구단위계획 구역
기정	⑧	-	소공원	흑석동 198-90번지일대	114.0	-	114.0	서고제196호 (12.7.26)	흑석10구역
기정	⑬	노량진 근린공원	근린 공원	대방동,본동 노량진동, 일대	415,610 (1,542)	-	415,610 (1,542)	총독부고시 제208호 (40.3.12)	흑석10구역
변경	-	현충 근린공원	근린 공원	동작동 산30-7일대	1,095,846.7 (16,185.4)	증) 9.9	1,095,856.6 (16,195.3)	서고제321호 (09.8.27)	흑석3,4,6,11구역, 존치관리13구역
기정	-	용봉정 근린공원	근린 공원	흑석동 본동 일대	82,997.0 (6,687.0)	-	82,997.0 (6,687.0)	총독부고시 제208호 (40.3.12)	흑석7구역

(2) 공공공지(변경 없음)

(3) 녹지(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기정	②	-	연결녹지	흑석동339-2	3,011.2	-	3,011.2	서고제307호 (08.9.11)	흑석6구역
기정	④	-	완충녹지	흑석동 140-1일대	2,263.5	-	2,263.5	서고제346호 (12.12.20)	흑석7구역
변경	①	-	경관녹지	흑석동 산88-14	1,827.0	감) 269.4	1,557.6	서고제196호 (12.7.26)	흑석11구역
기정	②	-	경관녹지	흑석동 234-7번지 일대	299.8	-	299.8	서고제156호 (18.5.24)	흑석8구역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공공청사(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기정	①	공공청사	-	흑석동 39-2일대	747.1	-	747.1	서고 제439호 (03.12.30)	주민센터 (흑석5구역)
기정	②	공공청사	-	흑석동 177-32일대	332.7	-	332.7	서고 제307호 (08.9.11)	파출소 (흑석7구역)
기정	③	공공청사	-	흑석동 173-63일대	861.2	-	861.2	서고 제307호 (08.9.11)	선거관리위원회 (흑석7구역)
기정	④	공공청사	-	흑석동 54-152일대	1,941	-	1,941	서고 제307호 (08.9.11)	통합동 주민센터 (흑석2구역)
변경	⑤	공공청사	-	흑석동 335-7일대	427.0	감) 2.2	424.8	서고 제196호 (12.7.26)	파출소 (흑석11구역)

(2) 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변경)

－ 문화/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변경	①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	흑석동 38-58일대	3,097.0	감) 48.5	3,048.5	서고 제91호 (20.3.05)	중복결정

(3) 문화시설/공공청사(변경)

－ 문화/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변경	②	문화시설/공공청 사	-	흑석동 38-58 일대	2,501.0	감) 4.5	2,496.5	서고 제91호 (20.3.05)	중복결정

(4) 사회복지시설 ~ (6) 도서관(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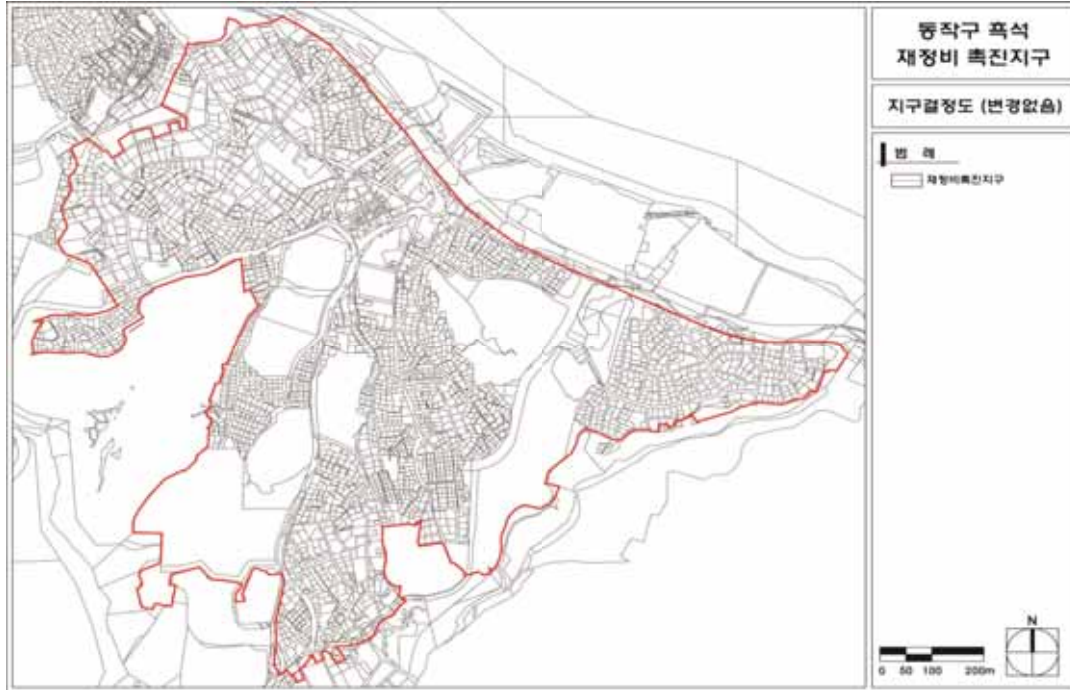
라) 방재시설 ~ 마)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5)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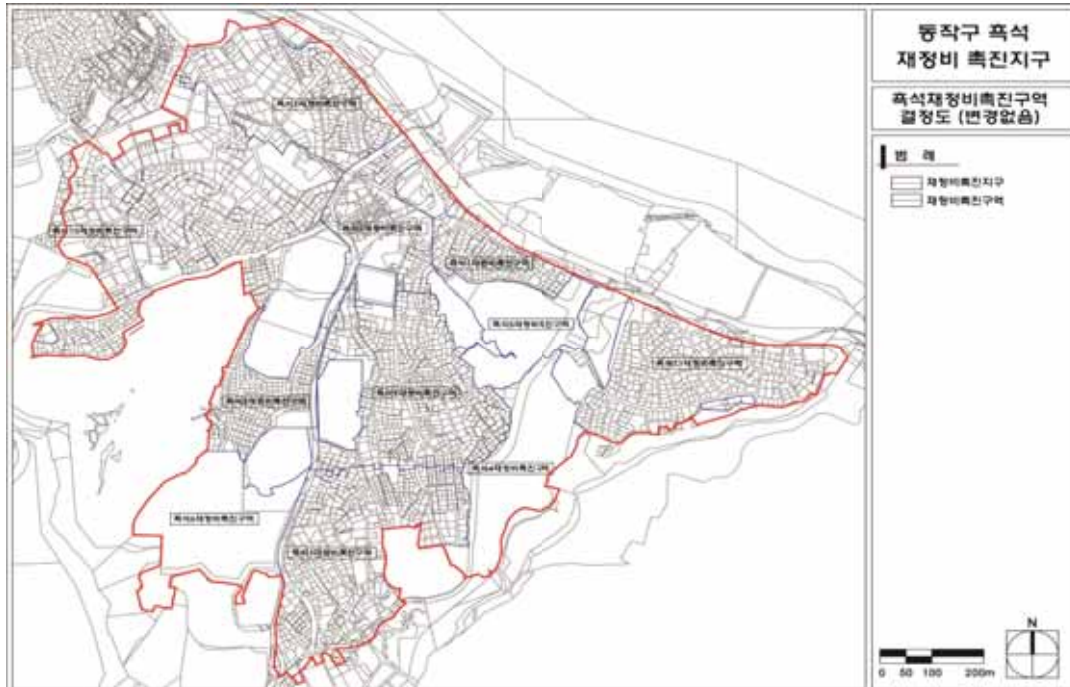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기정	흑석 지구단위계획구역	흑석동 186-19번지 일대	26,841.0	-	26,841.0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변경	흑석11 지구단위계획구역	흑석동 304번지 일대	89,312.3	증) 5.2	89,317.5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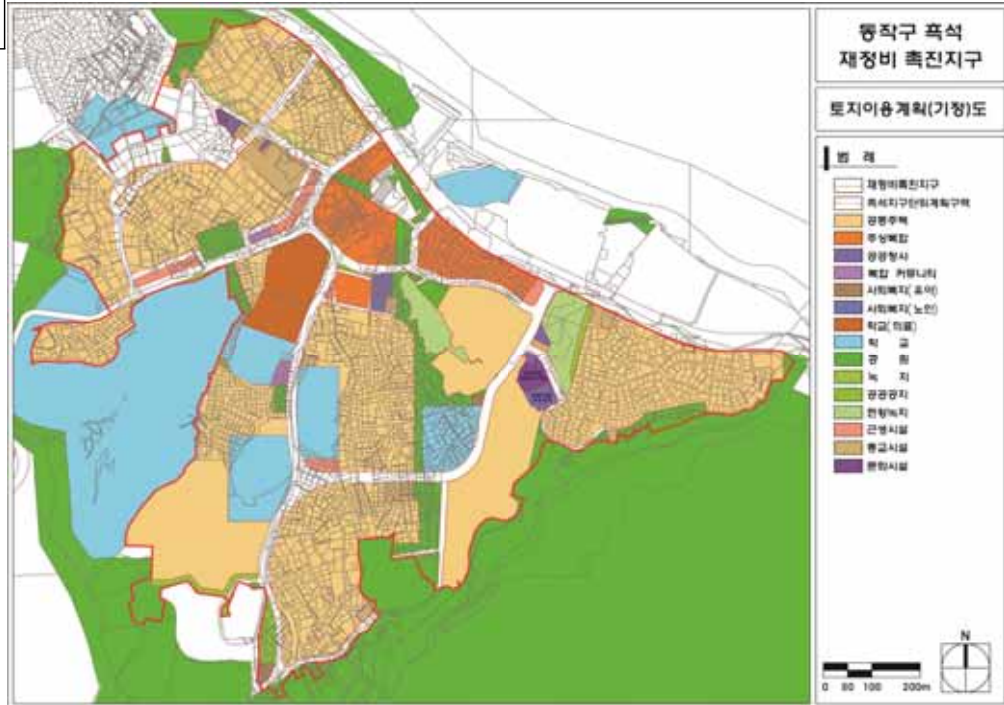


■ 흑석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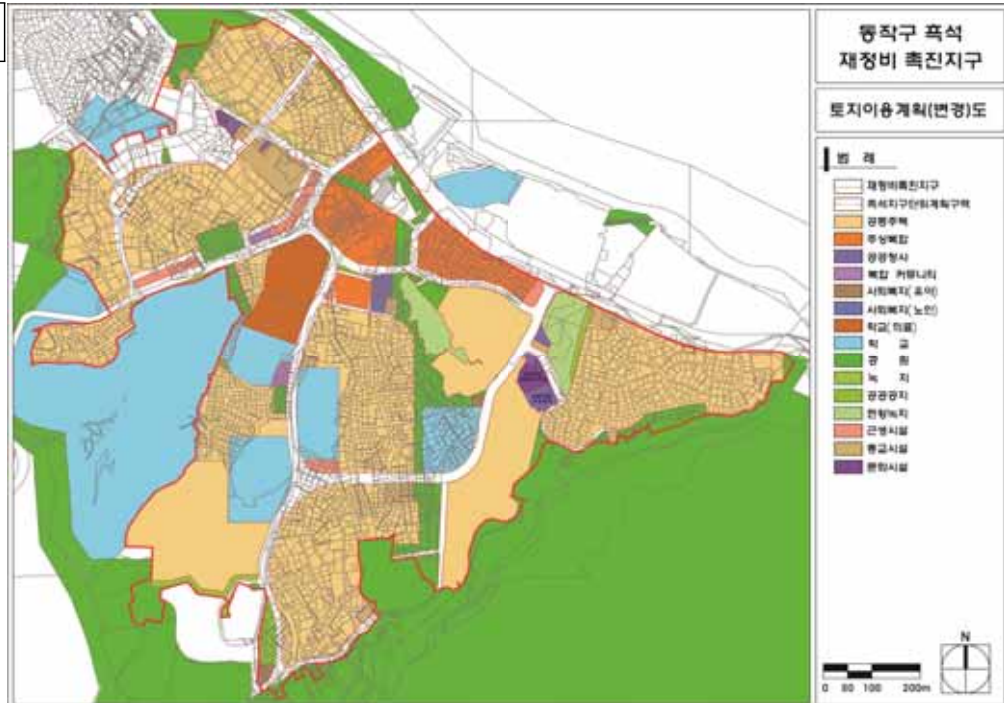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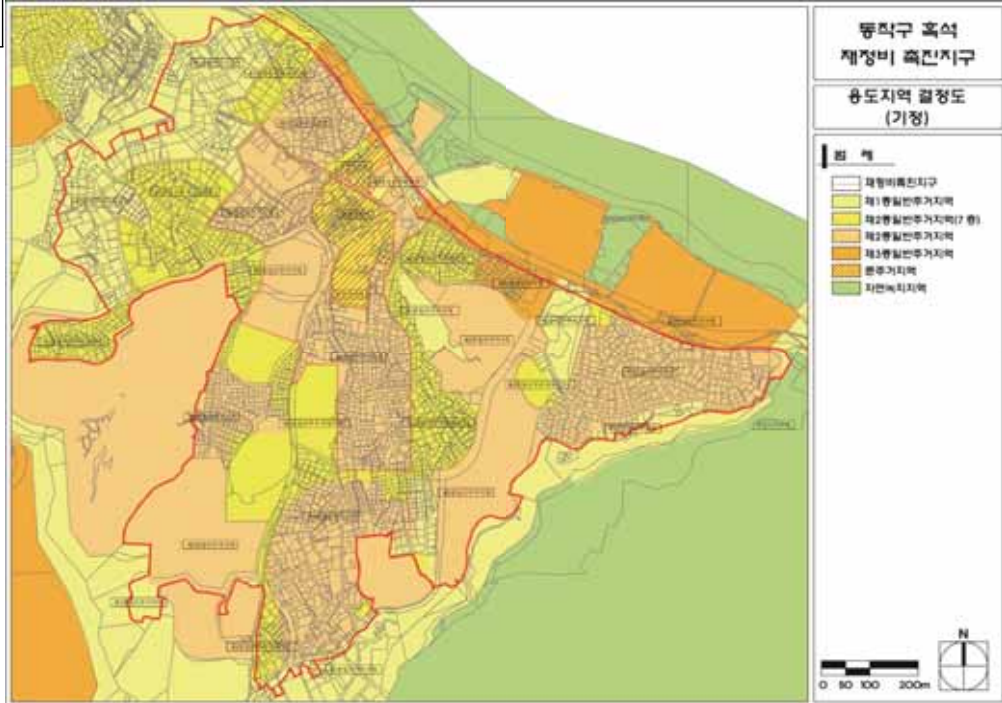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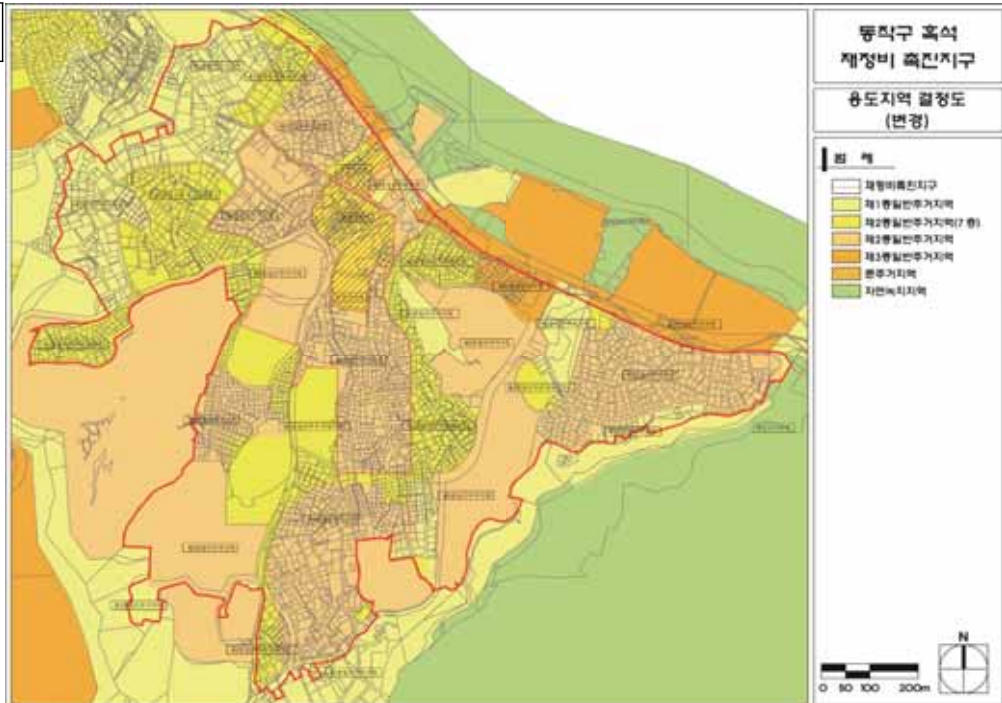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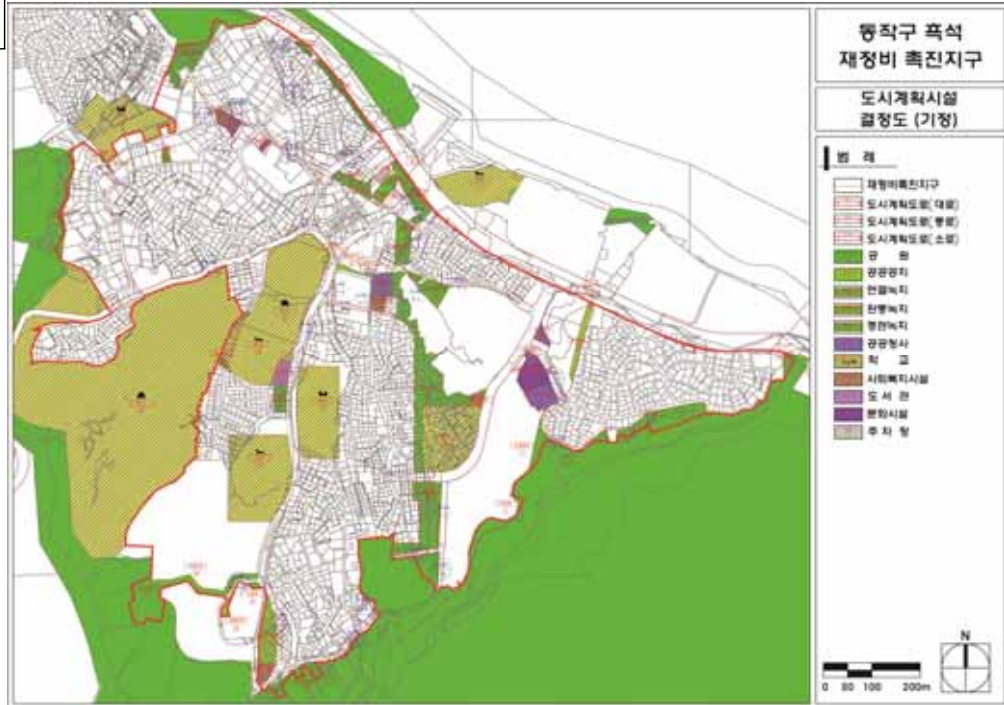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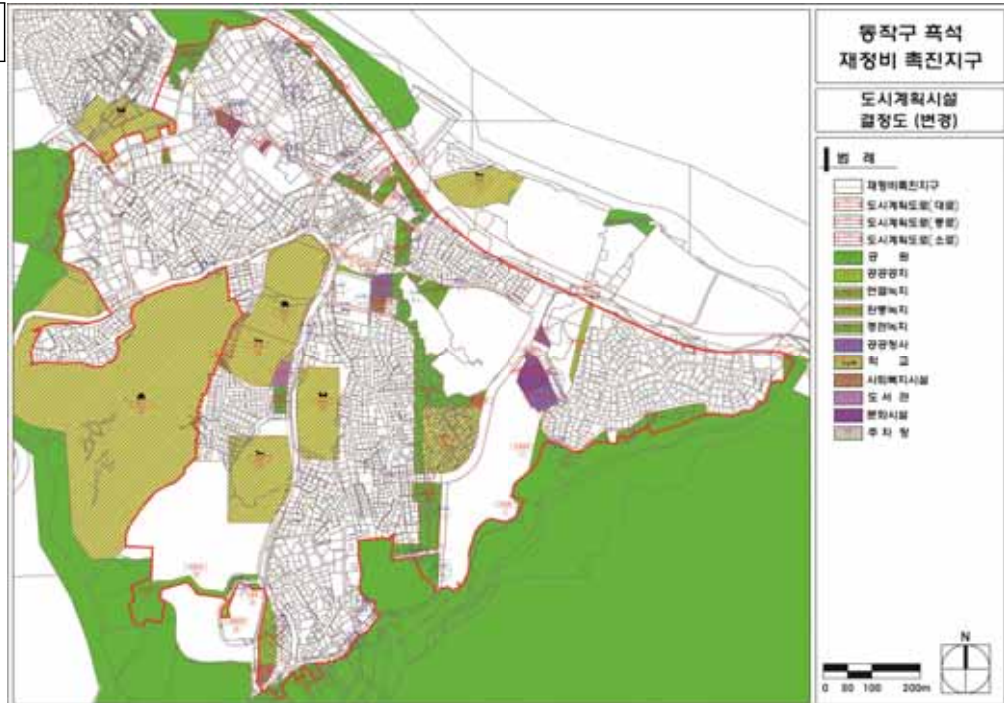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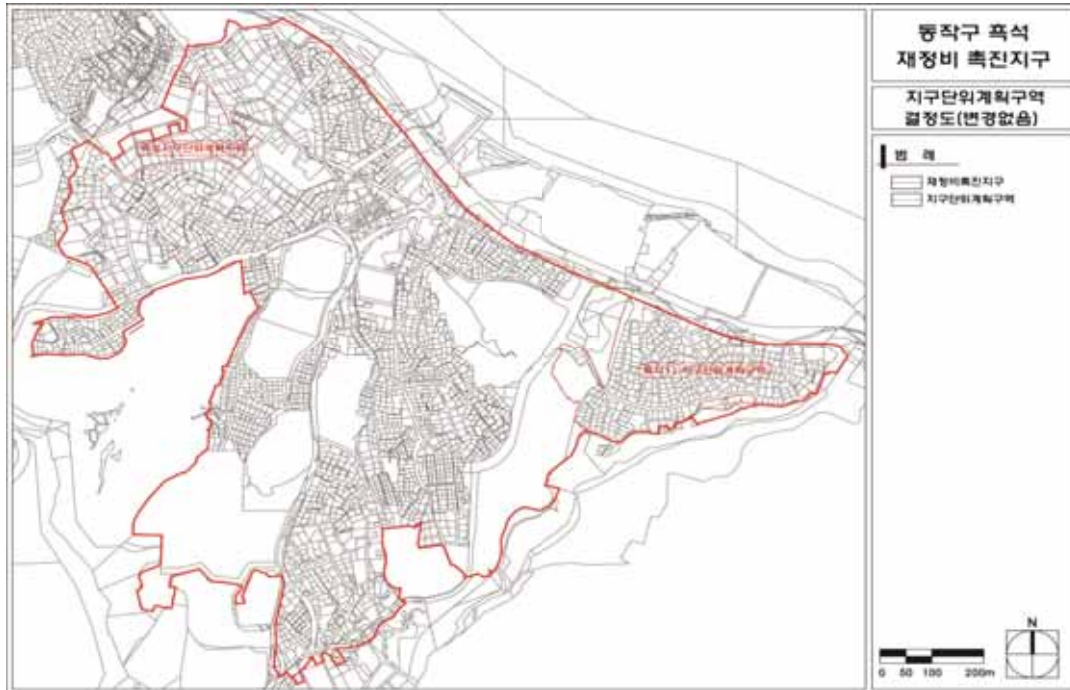
기정



변경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변경없음)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2968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비고
1	202152	20. 9. 1.	에스피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채현중 110111-757531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연구공원에스케이티연구소 (신림동)	분 할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 - 2896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2972호

2020년도 제13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제13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장

- 가. 심의일시: 2020. 10. 15.(목) 14:00 ~ 17:00
 나. 심의장소: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다. 심의대상: 일반안전 총 9건 20작품
 라. 심의결과: 승인 9작품, 부결 11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제13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Gud/Committee_guide_list.jsp#list/1) 홈페이지 내 '2020년 제13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결과'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 고
				승인	부결	
1	서초구 서초동 1335,1335-1번지 서초그랑자이	조각	구축, 재구축 - 8각의 풍경	0		
2-1	성동구 도선동 15번지 외 6필지 도선동 오피스텔	기타 (부조)	상생 (相生)	0		
2-2		조각	선물 (present)		0	
3-1	금천구 독산동 1006번지 일원 독산동 기업형 임대주택건설공사	조각	나의 아름다운 정원	0		
3-2		조각	빛의 바람		0	

2020년 제13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Gud/Committee_guide_list.jsp#list/1) 홈페이지 내 '2020년 제13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결과'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 고
				승인	부결	
3-3		조각	Light House		0	
3-4		조각	Urban Forest (어반 포레스트)		0	
4-1	강동구 명일동 46-3 고덕역 대명벨리온	조각	Bloomingness (활짝 피어남)	0		
4-2		조각	Expose exposed 2103	0		
5-1	노원구 공릉동 617-3 외 2필지 태릉입구역 청년주택	회화	Orange Warmth	0		
5-2		회화	Green Shining	0		
6-1	광진구 화양동 116-1번지 외 15필지 광진구 화양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회화	일상 - 생성左		0	
6-2		회화	일상 - 생성右		0	

2020년 제13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Gud/Committee_guide_list.jsp#list/1) 홈페이지 내 '2020년 제13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결과'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 고
				승인	부결	
6-3		회화	마주보기 - 궁		0	
6-4		조각	프리포즈		0	
7	동대문구 휘경동 161-37 외 다수 필지 이문 휘경 지웰에스테이트	회화	은유적 진화		0	
8-1	용산구 한강로3가 65-9번지 용산트레이드센터	조각	초록 곰돌이 (Green Teddy Bear)		0	작품변경
8-2		조각	Accumulate (축적)		0	작품변경
9-1		회화	Untitled 6901	0		위치변경
9-2		회화	Untitled 1302	0		위치변경 및 작품변경

※ 승인된 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민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2973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이관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253, ***동 ***호(관교동, *****)	일시: 2020-07-25 06:30 장소: 행주대교 북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축하중 1.43톤 초과	처분일: 2020. 9. 26.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0. 11. 30.
김재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13가길 **, ***호(화곡동)	일시: 2020-09-04 11:45 장소: 반포고등학교 내용: 과적방지 의무 위반	처분일: 2020. 9. 26.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0. 11. 30.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정상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안길13번길 **~**, ***호 (송의동,*****)	일시: 2020-06-08 14:36 장소: 행주대교 북단 과적검문소 내용: 제한 축하중 1.45톤 초과	처분일: 2020. 7. 28.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0. 9. 30.
김용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411번길 **, *동 ***호 (주안동, ****)	일시: 2020-07-07 05:41 장소: 마곡동 내용: 제한 축하중 1.7톤 초과	처분일: 2020. 7. 28.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0. 9. 30.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5. 납부기한: 2020. 11. 30.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3%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297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추진하고자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1. 공고제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10.29. ~ 2020.11.12. (15일간)
3. 공고대상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청문일시 및 장소	위반내역	처분내용
세일 에너지㈜	방*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5번길 20, 106호	2020.11.12.(목) 10:00 녹색에너지과	-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 제1항에 따른 기간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사전통지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4. 법적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2항 제5호

5. 청문시 유의사항

-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02-2133-3714 FAX 02-2133-10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982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처분대상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2. 행정처분
 - 국제물류주선업 1차 처분(경고) : 20건(명단 별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 미달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 증서 미제출 등)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5. 불복절차
 - 청구절차 : 행정심판의 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 청구기간 :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6. 담당자 : 서울시청 택시물류과 성은혜(02-2133-2328)

국제물류주산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업체

(행정처분내역 : 경고)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법인주소	보험 만료
1	749	(주)에스엘케이국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수송동, 코리안리빌딩) 301호	2020-02-07
2	1022	형설해운항공(주)	중구 을지로42길 13 (광희동1가)	2020-04-26
3	2147	(주)차이나프레이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0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10) 14층 1404호	2020-04-30
4	2708	(주)북미해운항공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476 (창동, 삼성쉐르빌 퍼스티) 1513호	2020-03-06
5	2818	화인해운(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4길 13 (대치동, 선릉역 풀림아이원레몬) 511비호	2020-03-06
6	2903	한러로지스틱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가산동, 에스티엑스브이타워) 602호	2020-04-09
7	3009	(주)피오엘에스앤에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28 서광빌딩 (사직동 1-96) 101호	2020-04-02
8	3315	(주)에스더블유마리타임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9길 16 (을지로3가, 유신빌딩) 2층 201호	2020-02-26
9	3796	(주)티앤씨항공해운	서울특별시 양천구 등촌로 218, 4층 (목동)	2020-04-02
10	3810	삼화국제물류(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83 비동 514호(인의동, 효성주얼리시티)	2020-04-24
11	4140	이로지스인터내셔널(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8길 82, 3층 303호 에이(등촌동, 강서아이티밸리)	2020-04-09
12	4238	와이케이트랜스(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 (을지로1가, 재능빌딩) 1202호	2020-02-23
13	4303	(주)마이이엠에스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97 (충무로1가, 고려대연각센터빌딩) 1402호	2020-03-23
14	4448	(주)제이케이피홀딩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6길 7-69 (양재동) 2층 202호	2020-04-15
15	4602	(주)티엔지코퍼레이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 (도화동, 마스터즈타워빌딩) 1704호	2020-03-20
16	4609	(주)무브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2길 81 (양재동)	2020-03-13
17	4683	(주)에스랩아시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삼성동) 18층	2020-03-19
18	4751	(주)미주드림여행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길 41 (회현동1가) 402호	2020-03-14
19	4774	(주)이투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6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5차) 1501호	2020-04-25
20	4887	(주)비니어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50길 16 (방이동) 202호	2020-03-28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2985호

지방자치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장

1. 건 명 : 지방자치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 대상 및 내용

대 상 자		처분 원인 사실	처분 예정 내용
성 명	주 소		
임 * 택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목동야구장 000호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 위반일 기준 : 2019.6.4. / 2019.6.5.	과태료 부과처분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 5,000,000원)
박 * 식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목동야구장 000호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 위반일 기준 : 2019.6.4. / 2019.6.5.	과태료 부과처분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 5,000,000원)

4. 공고기간 : 2020. 10. 29. ~ 11. 11(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 당사자의 의견이 있을 때는 의견제출서(붙임)를 작성하여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 체육정책과(담당자 : 박동호)
 - 의견제출 방법 : 이메일(saisai748@seoul.go.kr), 우편(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방문(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 의견제출기한 : 2020. 11. 12. ~ 2020. 11. 25.(14일간)
 -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6. 과태료 사항

- 과태료 납부기간 : 2020. 11. 12. ~ 2020. 11. 25.(14일간)
- 납부방법 : 서울특별시 체육정책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 전용계좌 등은 체육정책과에 문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20)받을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
 -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감경 대상에서 제외.

7. 문 의 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체육정책과(02-2133-26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2990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이민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6길 12-11 B동 *02호	위반일시 : 2020-08-07 06:07 위반장소 : 충정로 36길 앞 위반내용 :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2.78m. 초과값:0.28m, 서울07나63**)	과태료 : 30만원 부과 처분일 : 2020-09-25 납기일 : 2020-11-30
이종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175 614동 1*01호	위반일시 : 2020-08-14 10:59 위반장소 : 월드컵북로 오벨리스크건너편 위반내용 : 차량의 축하중 초과(실측값 11.4t 초과값 1.4t, 경기06오61**)	과태료 : 50만원 부과 처분일 : 2020-09-25 납기일 : 2020-11-30
한양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531번길 69 102동 1*2호	위반일시 : 2020-08-17 09:48 위반장소 : 통일로 구파발삼거리 위반내용 : 차량의 축하중 초과(실측값 11.55t 초과값 1.55t, 경기06오64**)	과태료 : 50만원 부과 처분일 : 2020-09-25 납기일 : 2020-11-30
정택관	경기도 김포시 교동읍 인향로24번길 22-21 4동 2*4호	위반일시 : 2020-09-04 16:08 위반장소 : 홍제교 위반내용 : 차량의 총중량 초과(실측값36.2t, 초과값:4.2t, 인천06바13**)	과태료 : 50만원 부과 처분일 : 2020-09-25 납기일 : 2020-11-30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용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91 209동 1*04호	위반일시 : 2020-08-21 13:57 위반장소 : 성산북단 위반내용 : 차량의 높이 초과(실측값4.15m, 초과값:0.15m, 84두09**)	과태료 : 30만원 부과 처분일 : 2020-09-25 납기일 : 2020-11-30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2020. 11. 30.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300-8307, 팩스번호: 02-300-8337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2992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기관 모집 공고

공인중개사법 제45조(업무위탁)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업무의 위탁)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근 거

가. 공인중개사법 제45조(업무위탁)

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업무의 위탁)

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01호)

2. 교육 위탁기간 : 2021. 1. 1. ~ 2022. 12. 31.

3. 교육 위탁범위

구분	교육시간	위탁범위	위탁내용
실무교육 (사전교육)	28~32시간 (집합16~17, 사이버7~9, 실습5~6)	전체	· 실무 및 직무교육의 실시 · 교육과정 운영, 출결사항 확인, 평가, 수료증의 교부 등 제 업무
직무교육 (사전교육)	3~4시간 (집합 또는 사이버)		
연수교육 (계속교육)	12~16시간 (집합6~8, 사이버6~8)	6~8시간 (집합6~8)	· 자치구 주관 집합교육 미 이수자 교육에 한하여 위탁*

* (2021년부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집합과정 : 자치구 직접 실시 / 사이버과정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운영 예정

4. 신청자격

가.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공인중개사 관련 협회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

5. 지정기준

- 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나. 소재지 :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 등)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
- 다. 시설기준 : 5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함
- 라. 강사의 자격기준
-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교육과목과 관련된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과목과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를 담당할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주택관리사·건축사·공인회계사·법무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 신청방법

-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10. 29.(목) ~ 11. 9.(월)
- 나. 접수장소 및 방법 : 서울시 토지관리과 방문 또는 우편
- 다. 제출서류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82호] 제9조 사항이 포함된 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등 붙임서류 각 1부
- 라. 문의사항 : 서울시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담당 이영, ☎2133-4678)으로 문의

7. 교육업무 수탁기관 지정 고시 : 2020년 12월 중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2993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사전통지서 송달 불능분을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 2020. 10. 29. ~ 2020. 11. 12.(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되었기에 「철도안전법」 제8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안내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5. 의견제출 안내
 -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so2020@seoul.go.kr
 - 팩스: 02-768-8897
 - 우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 방문: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 의견제출기한 : 2020. 11.12 . ~ 2020. 11. 25.(10일간)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2133-4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로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9.22) 반송 공고
(변경의견제출 기한 ~2020.11.11)

선택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1	560412-*****	김우*	이동상인	2020-08-01 13:50	50,000	2020-10-05	폐문부재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20길 62
2	540923-*****	이충*	이동상인	2020-08-03 13:16	50,000	2020-10-06	폐문부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102동 716호(평화동1가, 평화주공아파트)
3	540923-*****	이충*	이동상인	2020-08-06 11:19	50,000	2020-10-06	폐문부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102동 716호(평화동1가, 평화주공아파트)
4	590205-*****	권승*	이동상인	2020-08-11 10:42	50,000	2020-10-06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56-5
5	690510-*****	신중*	이동상인	2020-08-11 11:30	50,000	2020-10-06	폐문부재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201호(산본동)
6	690510-*****	신중*	이동상인	2020-08-11 14:13	50,000	2020-10-06	폐문부재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201호(산본동)
7	560412-*****	김우*	이동상인	2020-08-13 09:49	50,000	2020-10-05	폐문부재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20길 62
8	540923-*****	이충*	이동상인	2020-08-13 11:05	50,000	2020-10-06	폐문부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102동 716호(평화동1가, 평화주공아파트)
9	541003-*****	홍승*	이동상인	2020-08-14 14:40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 17길 18-26
10	380314-*****	하사*	이동상인	2020-08-15 10:39	50,000	2020-10-06	폐문부재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16길 9 1층
11	530904-*****	김수*	이동상인	2020-08-27 17:01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64가길 8-7(신길동)
12	690813-*****	강재*	이동상인	2020-08-20 13:42	50,000	2020-10-06	폐문부재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214번길 12, 2층(산본동)
13	690813-*****	강재*	이동상인	2020-08-24 10:38	50,000	2020-10-06	폐문부재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214번길 12, 2층(산본동)
14	551002-*****	박순*	이동상인	2020-08-25 10:37	50,000	2020-10-06	폐문부재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93번길 8-2, 가동 103호(수택동, 동호주택)
15	590205-*****	권승*	이동상인	2020-08-26 13:45	50,000	2020-10-06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56-5
16	590205-*****	권승*	이동상인	2020-08-27 11:01	50,000	2020-10-06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56-5
17	590205-*****	권승*	이동상인	2020-08-28 14:04	50,000	2020-10-06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56-5
18	590205-*****	권승*	이동상인	2020-08-12 10:30	50,000	2020-10-06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56-5
19	520729-*****	이하*	이동상인	2020-08-01 06:16	50,000	2020-10-05	폐문부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 15번길 36, 101호(안양동)
20	551002-*****	박순*	이동상인	2020-08-01 10:42	50,000	2020-10-06	폐문부재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93번길 8-2, 가동 103호(수택동, 동호주택)
21	551002-*****	박순*	이동상인	2020-08-01 11:16	50,000	2020-10-06	폐문부재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93번길 8-2, 가동 103호(수택동, 동호주택)
22	551002-*****	박순*	이동상인	2020-08-01 11:36	50,000	2020-10-06	폐문부재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93번길 8-2, 가동 103호(수택동, 동호주택)
23	690813-*****	강재*	이동상인	2020-08-18 11:07	50,000	2020-10-06	폐문부재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214번길 12, 2층(산본동)
24	690813-*****	강재*	이동상인	2020-08-19 11:04	50,000	2020-10-06	폐문부재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214번길 12, 2층(산본동)
25	650722-*****	천영*	이동상인	2020-08-19 11:05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80길 31-11

선택	주민/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26	551002-*****	박순*	이동상인	2020-08-20 10:26	50,000	2020-10-06	폐문부재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93번길 8-2, 가동 103호(수택동, 동호주택)
27	551002-*****	박순*	이동상인	2020-08-20 11:59	50,000	2020-10-06	폐문부재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93번길 8-2, 가동 103호(수택동, 동호주택)
28	551002-*****	박순*	이동상인	2020-08-20 12:27	50,000	2020-10-06	폐문부재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93번길 8-2, 가동 103호(수택동, 동호주택)
29	551002-*****	박순*	이동상인	2020-08-21 11:38	50,000	2020-10-06	폐문부재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93번길 8-2, 가동 103호(수택동, 동호주택)
30	551002-*****	박순*	이동상인	2020-08-21 13:37	50,000	2020-10-06	폐문부재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93번길 8-2, 가동 103호(수택동, 동호주택)
31	380314-*****	하사*	이동상인	2020-08-04 10:44	50,000	2020-10-06	폐문부재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16길 9 1층
32	380314-*****	하사*	이동상인	2020-08-08 09:33	50,000	2020-10-06	폐문부재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16길 9 1층
33	590205-*****	권승*	이동상인	2020-08-14 11:39	50,000	2020-10-06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56-5
34	600702-*****	이태*	구결	2020-08-08 17:07	50,000	2020-10-06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61, 405동 1201호 (백석동, 흰돌마을)
35	540923-*****	이충*	이동상인	2020-08-24 15:06	50,000	2020-10-06	폐문부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102동 716호(평화동1가, 평화주공아파트)
36	620908-*****	유연*	구결	2020-08-26 12:19	50,000	2020-10-06	기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 36번길 38, 102호(간석동)
37	540923-*****	이충*	이동상인	2020-08-27 13:38	50,000	2020-10-06	폐문부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102동 716호(평화동1가, 평화주공아파트)
38	540923-*****	이충*	이동상인	2020-08-29 11:41	50,000	2020-10-06	폐문부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102동 716호(평화동1가, 평화주공아파트)
39	411215-*****	박계*	전도	2020-08-04 07:16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길 28-6, 302호 (역삼동)
40	481014-*****	김병*	전도	2020-08-12 13:45	50,000	2020-10-05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 64번길 3-15
41	560412-*****	김우*	이동상인	2020-08-13 13:31	50,000	2020-10-05	폐문부재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20길 62
42	501119-*****	정금*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2020-08-24 16:55	2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43길 48(장위동)
43	751113-*****	연귀*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2020-08-13 16:10	250,000	2020-10-07	기타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91가길 16(주성동)
44	751113-*****	연귀*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2020-08-18 16:30	250,000	2020-10-07	기타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91가길 16(주성동)
45	751113-*****	연귀*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2020-08-21 16:10	250,000	2020-10-07	기타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91가길 16(주성동)
46	751113-*****	연귀*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2020-08-25 15:40	250,000	2020-10-07	기타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91가길 16(주성동)
47	751113-*****	연귀*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2020-08-31 15:45	250,000	2020-10-07	기타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91가길 16(주성동)
48	590205-*****	권승*	이동상인	2020-08-20 16:36	50,000	2020-10-06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56-5
49	440615-*****	김증*	이동상인	2020-08-01 11:30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선택	주민/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50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03 11:31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51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03 14:17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52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04 10:39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53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04 14:11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54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05 10:47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55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05 13:28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56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06 10:43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57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08 09:42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58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10 10:42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59	570928-*****	서춘*	이동상인	2020-08-10 12:05	50,000	2020-10-05	폐문부재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0마길 20 지층 101호
60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11 10:37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61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11 10:41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62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11 14:18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63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13 10:40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64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13 10:50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65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13 13:42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66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14 11:35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67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18 10:40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68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19 11:07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69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19 11:25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70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20 10:34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선택	주민/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71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20 14:29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72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21 11:16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73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22 10:38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74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24 10:34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75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25 10:24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76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25 10:40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77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25 14:16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78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26 10:42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79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26 13:27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80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27 11:07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81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28 10:35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82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28 11:04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83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29 10:50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84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29 11:12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85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31 10:47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86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31 11:06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87	570928-*****	서춘*	이동상인	2020-08-10 11:42	50,000	2020-10-05	폐문부재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0마길 20 지층 101호
88	560920-*****	김기*	이동상인	2020-08-08 10:31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성동구 용답21길 3-4(용답동)
89	560920-*****	김기*	이동상인	2020-08-15 08:42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성동구 용답21길 3-4(용답동)
90	690510-*****	신중*	이동상인	2020-08-27 10:23	50,000	2020-10-06	폐문부재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201호(산본동)
91	690510-*****	신중*	이동상인	2020-08-03 10:45	50,000	2020-10-06	폐문부재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201호(산본동)
92	690510-*****	신중*	이동상인	2020-08-04 09:57	50,000	2020-10-06	폐문부재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201호(산본동)
93	690510-*****	신중*	이동상인	2020-08-05 10:52	50,000	2020-10-06	폐문부재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201호(산본동)

선택	주민/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94	690510-*****	신중*	이동상인	2020-08-07 10:54	50,000	2020-10-06	폐문부재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201호(산본동)
95	690510-*****	신중*	이동상인	2020-08-07 09:08	50,000	2020-10-06	폐문부재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201호(산본동)
96	690510-*****	신중*	이동상인	2020-08-07 09:53	50,000	2020-10-06	폐문부재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201호(산본동)
97	751113-*****	연귀*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2020-08-10 14:36	250,000	2020-10-07	기타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91가길 16(주성동)
98	690510-*****	신중*	이동상인	2020-08-12 09:14	50,000	2020-10-06	폐문부재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201호(산본동)
99	690510-*****	신중*	이동상인	2020-08-22 09:37	50,000	2020-10-06	폐문부재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201호(산본동)
100	690510-*****	신중*	이동상인	2020-08-24 10:40	50,000	2020-10-06	폐문부재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201호(산본동)
101	610505-*****	배중*	이동상인	2020-08-26 10:28	50,000	2020-10-05	폐문부재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8다길 19 (노량진동)
102	380314-*****	하사*	이동상인	2020-08-26 13:11	50,000	2020-10-06	폐문부재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16길 9 1층
103	420613-*****	송삼*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2020-08-29 10:00	250,000	2020-10-06	기타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105, 706동 1506호(만수동, 주공아파트)
104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02 11:02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105	751113-*****	연귀*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2020-08-07 15:46	250,000	2020-10-07	기타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91가길 16(주성동)
106	751113-*****	연귀*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2020-08-07 13:35	250,000	2020-10-07	기타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91가길 16(주성동)
107	380314-*****	하사*	이동상인	2020-08-08 10:36	50,000	2020-10-06	폐문부재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16길 9 1층
108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09 11:42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109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09 11:00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110	440615-*****	김중*	이동상인	2020-08-12 10:49	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111	691115-*****	최형*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2020-08-14 14:18	250,000	2020-10-06	기타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36가길 20(홍제동)
112	751113-*****	연귀*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2020-08-18 16:12	250,000	2020-10-07	기타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91가길 16(주성동)
113	590205-*****	권승*	이동상인	2020-08-19 13:26	50,000	2020-10-06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56-5
114	690813-*****	강재*	이동상인	2020-08-19 13:26	50,000	2020-10-06	폐문부재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214번길 12, 2층(산본동)
115	751113-*****	연귀*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2020-08-20 12:48	250,000	2020-10-07	기타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91가길 16(주성동)

선택	주민/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116	551002-*****	박순*	이동상인	2020-08-25 14:15	50,000	2020-10-06	폐문부재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93번길 8-2, 가동 103호(수택동, 동호주택)
117	551002-*****	박순*	이동상인	2020-08-25 11:53	50,000	2020-10-06	폐문부재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93번길 8-2, 가동 103호(수택동, 동호주택)
118	551002-*****	박순*	이동상인	2020-08-25 11:37	50,000	2020-10-06	폐문부재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93번길 8-2, 가동 103호(수택동, 동호주택)
119	551002-*****	박순*	이동상인	2020-08-28 10:14	50,000	2020-10-06	폐문부재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93번길 8-2, 가동 103호(수택동, 동호주택)
120	781210-*****	김정*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2020-09-18 14:06	250,000	2020-10-06	폐문부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시장3길 66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3004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주)가나건설 등 291명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 10. 29 ~ `20. 11. 12
5. 의견제출 안내
 - 가. 의견제출 기한 : 2020. 10. 29 ~ 2020. 11. 12
 -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http://cartax.seoul.go.kr>)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50%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교통지도과 전용차로과장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6, 팩스번호 : 02-2133-4904
 - ※ 인터넷(<http://cartax.seoul.go.kr>)통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의견제출 대상 및 기타 참고사항 1부.

공시송달(사전통지서)명단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1	84보3563	(주)가나건설	2020-09-23 17:52	경기도 남양주시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	235수2371	(주)달생	2020-09-25 19:1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	101호2923	(주)모두가치	2020-09-23 19:42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60,000
4	145허1190	(주)모아에스엔	2020-09-09 14:48	서울특별시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5	85러0185	(주)서우기업	2020-09-24 17:18	경기도 남양주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	97여6556	(주)신마로시스	2020-09-01 11:13	경기도 광주시	잠실3사거리~잠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7	18도6185	(주)씨엘	2020-09-23 18:03	경기도 이천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	43거3058	(주)에스엔제이엔터테인먼트	2020-09-25 13:06	서울특별시	서울 종로구 예지동 27-3 종로4가사거리 신한은행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	47루2643	(주)유럽여행	2020-09-25 11:49	서울특별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지하 40	전용차로위반	50,000
10	49저8647	(주)지외이텍스타일	2020-09-22 10:14	경기도 하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	83너8408	(주)프렌즈리테일	2020-09-24 07:50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2	334소3263	(주)하나콜렉션	2020-09-25 18:08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3	79두9026	(주)하이테크오에이솔루션	2020-09-16 07:58	서울특별시	삼성교~강남소방서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4	35수0371	(주)한성아이디일오공	2020-09-02 19:24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15	60누4391	(주)해청송	2020-09-24 07:35	경기도 광명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6	60누4391	(주)해청송	2020-09-23 07:49	경기도 광명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7	60누4391	(주)해청송	2020-09-24 07:40	경기도 광명시	서울여대(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8	60누4391	(주)해청송	2020-09-24 20:38	경기도 광명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9	54서5166	SM메디코어(주)	2020-09-22 12:45	서울특별시	서울 송파구 잠실동 21	전용차로위반	50,000
20	56우4487	법무법인(유한)에이팩스	2020-09-25 18:40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1	89소8002	사성개발주식회사	2020-09-26 14:10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2	20가6312	승리하이텍(주)	2020-09-25 09:00	경기도 안양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3	31버1997	아이지이스로캐오주식회사	2020-09-25 13:34	대구광역시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24	39하5659	에이더블유엔피(AWNP)(유상민)	2020-09-02 20:35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5	57하6115	유한회사더굿카	2020-09-22 18:28	강원도 강릉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6	159하3021	주)다산에프엔씨	2020-09-07 08:11	경기도 구리시	육사체육관~화랑대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27	152호6783	주)명아구조기술	2020-09-03 08:43	충청남도 아산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8	35하0927	주)아이오텍스	2020-09-14 13:28	서울특별시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	전용차로위반	50,000
29	62구2903	주)에이치와이마케팅그룹	2020-08-31 14:3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0	62저9369	주)에치씨지코리아	2020-09-25 19:10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1	166허1603	주)현대바이오테크	2020-09-03 10:40	충청북도 음성군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18-10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32	10호8321	주식회사노블레스렌터카	2020-09-21 14:08	경기도 하남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3	86모5633	주식회사녹색건강나눔	2020-09-24 08:11	서울특별시	태릉대한체육회선수촌~삼육대	전용차로위반	50,000
34	18하1063	주식회사아크패트로	2020-09-10 18:53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5	06누4240	주식회사오토이글로벌	2020-09-25 17:34	인천광역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6	89소1039	주식회사원전사	2020-09-24 08:26	경기도 하남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7	90너0425	주식회사천하리사이클	2020-09-23 18:11	경기도 포천시	육사체육관~화랑대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38	43무9782	주식회사티엠컨택	2020-09-23 17:30	경기도 용인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9	47더6892	주식회사한양케이بل	2020-09-25 18:45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0	61루9809	지이에너지코퍼레이션(주)	2020-09-25 18:51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1	51로6390	태주종합철강주식회사	2020-09-22 20:35	경상북도 안동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2	52호1999	화현무역주식회사	2020-09-22 09:47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3	52호1999	화현무역주식회사	2020-09-15 09:28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4	69여0401	화완조경건설(주)	2020-09-23 19:10	경기도 화성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5	89보1966	효성조경개발주식회사	2020-09-22 17:3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6	13서3140	E**	2020-09-23 07:56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47	35수3060	H**	2020-09-25 20:29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8	08부1962	J**	2020-09-23 17: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9	19나2598	J**	2020-09-25 11:49	인천광역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전용차로위반	50,000
50	51소3070	J**	2020-09-23 17:16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51	61러0569	J**	2020-09-23 17:31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2	15소3980	K**	2020-09-25 09:06	대구광역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3	15소3980	K**	2020-09-25 09:05	대구광역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4	50서9777	K**	2020-09-27 12:51	광주광역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5	31러9279	K**	2020-09-18 08:27	서울특별시	대치역~도곡역	전용차로위반	50,000
56	14루0183	L**	2020-09-26 16:54	충청북도 청주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57	60가2335	N**	2020-09-23 17:34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8	31서1292	N**	2020-09-25 07:23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9	02주9851	O**	2020-09-25 17:37	경기도 시흥시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60,000
60	17소2560	S**	2020-09-22 17:12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1	47도5052	S**	2020-09-25 18:25	경기도 안산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2	서울중아4777	S**	2020-09-23 14:37	서울특별시	종각역~종로2가 교차로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3	50허0775	T**	2020-09-03 19:36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4	22여9102	T**	2020-09-25 07:45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5	107나2185	T**	2020-09-26 07:17	경상남도 창원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66	15구5494	U**	2020-09-22 11:32	충청남도 금산군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7	43조5652	W**	2020-09-24 17:24	경기도 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8	41라0712	X**	2020-09-23 17:25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9	356노6798	X**	2020-09-25 03:50	경기도 부천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0	149라9523	Z**	2020-09-22 19:54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1	149라9523	Z**	2020-09-26 14:33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2	149라9523	Z**	2020-09-24 18:51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3	149라9523	Z**	2020-09-23 16:33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4	149라9523	Z**	2020-09-25 19:50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40,000
75	102주9800	강**	2020-08-28 17:4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6	27우9071	강**	2020-09-16 17:19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7	52하7850	강**	2020-08-26 19:07	경상북도 포항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8	13구5478	강**	2020-09-17 20:36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9	28다0371	고**	2020-09-17 08:33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80	18조9486	고**	2020-09-21 09:3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1	서울31자6982	곽**	2020-09-16 14:52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82	09루0384	곽**	2020-09-21 19:23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3	06저3568	곽**	2020-09-21 11:13	서울특별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전용차로위반	50,000
84	38여5456	길**	2020-09-18 09:07	경기도 용인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5	168마9987	김**	2020-09-21 20:23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6	28루0897	김**	2020-09-21 20:13	인천광역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7	68더0923	김**	2020-09-19 07:40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8	서울31사6252	김**	2020-09-18 20:15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9	05라3950	김**	2020-09-18 17:12	경기도 평택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0	05라3950	김**	2020-09-18 18:06	경기도 평택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40,000
91	67고5829	김**	2020-09-18 17:57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2	37나0723	김**	2020-09-17 18:56	경기도 부천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93	397두7844	김**	2020-09-20 18:01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4	40하5192	김**	2020-09-09 19:2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5	32고0852	김**	2020-09-18 11:57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6	27누2207	김**	2020-09-19 10:29	경기도 화성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7	39보0335	김**	2020-09-21 11:28	경상북도 포항시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6-2	전용차로위반	50,000
98	59오5855	김**	2020-09-19 05:50	경기도 시흥시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앞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99	268우3625	김**	2020-09-12 20:22	경기도 화성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0	48가2839	김**	2020-09-17 18:28	경기도 파주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101	87조6368	김**	2020-09-21 09:58	경기도 군포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전용차로위반	50,000
102	29소3528	김**	2020-09-17 09:46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3	45라0863	김**	2020-09-18 19:3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4	04거1796	김**	2020-09-16 08:32	서울특별시	삼성교~삼성역	전용차로위반	50,000
105	28로0367	김**	2020-09-18 19:09	전라북도 완주군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6	24버2712	김**	2020-09-18 08:48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7	45버0664	김**	2020-09-18 08:51	경기도 성남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08	경기39바4303	김**	2020-09-19 22:23	경기도 광명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9	30다0662	김**	2020-09-16 20:04	경기도 광주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10	서울31아6311	김**	2020-09-18 10:38	경기도 시흥시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111	19수1070	김**	2020-09-18 17:42	인천광역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12	302로9995	김**	2020-09-17 19:19	서울특별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3	10도1532	김**	2020-09-18 20:48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14	76도9445	김**	2020-09-16 11:30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	전용차로위반	50,000
115	33여1348	김**	2020-09-17 18:25	경기도 남양주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6	26머0178	김**	2020-09-17 18:51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7	96더2355	김**	2020-09-16 18:58	인천광역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8	33조3015	김**	2020-09-21 20:23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60,000
119	17우9995	김**	2020-09-18 19:28	경기도 고양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0	17우9995	김**	2020-09-18 19:26	경기도 고양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1	28저3467	김**	2020-09-17 19:27	전라남도 여수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22	서울85자6779	김**	2020-09-18 19:17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23	88더7407	김**	2020-09-21 19:46	경기도 안산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24	37나4108	김**	2020-09-20 13:51	대전광역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5	37나4108	김**	2020-09-20 13:49	대전광역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6	32소3686	김**	2020-09-17 15:12	서울특별시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6-2	전용차로위반	50,000
127	37머8263	나**	2020-09-17 10:27	서울특별시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6-2	전용차로위반	50,000
128	서울07나6101	남**	2020-09-17 08:16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9	50가5562	노**	2020-09-17 10: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30	서울31아2148	노**	2020-09-18 15:23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131	62노2802	노**	2020-09-18 07:40	울산광역시	서울여대(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32	52저1547	노**	2020-09-19 17:32	경기도 성남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33	16저7961	리**	2020-09-21 07:3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34	96구7663	명**	2020-09-18 07:31	경기도 성남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35	12서5750	문**	2020-09-18 21:56	경기도 부천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 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 액
136	서울32아5391	민**	2020-09-17 20:01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37	05여4328	민**	2020-09-16 09:39	충청북도 청주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38	257저7574	민**	2020-09-18 08:44	서울특별시	학여울역교차로~대치우성아파트교차로	전용차로위반	60,000
139	서울32사5270	박**	2020-09-21 19:03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40	159하5470	박**	2020-09-04 13:02	경기도 화성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41	05버2757	박**	2020-09-18 18:02	울산광역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42	15라8821	박**	2020-09-18 19:0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43	125누6707	박**	2020-09-17 14:38	서울특별시	양재IC~서초IC	전용차로위반	50,000
144	173거1773	박**	2020-09-17 18:03	경기도 안산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45	58두7964	박**	2020-09-17 18:4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46	27도3767	박**	2020-09-21 18:10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47	서울31사3326	박**	2020-09-18 14:24	서울특별시	서초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48	서울32자1457	박**	2020-09-17 15: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49	28누9852	박**	2020-09-18 18:35	부산광역시	삼성역~대치우성아파트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50	서울51무7270	박**	2020-09-18 20:37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51	서울86자4640	방**	2020-09-18 19:5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52	01라5104	배**	2020-09-21 17:48	경기도 가평군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53	서울32사2073	백**	2020-09-21 17:13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54	10하7005	백**	2020-08-19 13:45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55	서울31사7252	백**	2020-09-17 20:08	경기도 안양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56	31거4885	변**	2020-09-21 09:48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57	서울31사4713	봉**	2020-09-16 19:12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58	51마0230	서**	2020-09-16 09:25	인천광역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59	19거9507	석**	2020-09-21 17:16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60	42가0503	성**	2020-09-16 13: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61	24서8146	송**	2020-09-18 17:10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62	45머1035	송**	2020-09-18 18:42	경기도 용인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63	31우2358	신**	2020-09-17 17:59	경기도 광주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64	92모2196	신**	2020-09-16 07:05	충청남도 아산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65	45오0671	신**	2020-09-18 19:00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66	14고7703	신**	2020-09-18 19:07	경기도 수원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67	31너9635	심**	2020-09-16 19:35	인천광역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68	64보2131	안**	2020-09-21 17:23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169	395소2402	양**	2020-09-16 08: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70	서울31아2057	양**	2020-09-16 15:38	서울특별시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426-1 (용답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71	07보2041	양**	2020-09-21 09:07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72	12두8147	오**	2020-09-17 17:48	서울특별시	육사체육관~화랑대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173	52저1188	오**	2020-09-17 09:12	경기도 성남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74	01호1160	오**	2020-08-31 19:07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175	서울35다1686	오**	2020-09-21 09:16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76	45수0334	옥**	2020-09-16 09:10	광주광역시	서울여대(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77	19라5051	우**	2020-09-18 18:08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78	서울31바2229	유**	2020-09-19 20:59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179	14라0482	유**	2020-09-18 18:21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80	서울31바9391	유**	2020-09-18 20:43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81	50수3485	유**	2020-09-17 19:01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82	34보2584	윤**	2020-09-19 17:19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83	33다2557	윤**	2020-09-17 07:14	서울특별시	서울여대(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84	경기81자8681	윤**	2020-09-18 10:25	경기도 광주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85	49도5116	윤**	2020-09-21 13:59	인천광역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86	39두4173	윤**	2020-09-17 09:03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87	88마4910	윤**	2020-09-21 17:23	경기도 시흥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88	67바2379	음**	2020-09-17 18:48	경기도 안산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89	47소2097	이**	2020-08-24 21:27	서울특별시	종각역 10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90	경기포천가7136	이**	2020-09-17 12:24	경기도 포천시	종각역~종로2가교차로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91	258고7813	이**	2020-09-19 14: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셋강역 1번출구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92	40가5659	이**	2020-09-16 09:00	충청북도 제천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93	06저7752	이**	2020-09-17 09:12	경기도 이천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94	05고7360	이**	2020-09-21 08:45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95	09루0137	이**	2020-09-18 17:54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96	35서2887	이**	2020-09-17 20:48	서울특별시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197	서울31바7531	이**	2020-09-18 17:26	서울특별시	매봉역~양재전화국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98	68여7835	이**	2020-09-21 11:44	서울특별시	서울 송파구 잠실동 21	전용차로위반	50,000
199	56거6150	이**	2020-09-17 19:16	경기도 하남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00	32수8268	이**	2020-09-16 18:41	경기도 부천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201	93오8972	이**	2020-09-18 09:21	서울특별시	종각역 10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02	26나4662	이**	2020-09-21 20:23	경기도 안산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03	59라0595	이**	2020-09-17 14:39	경기도 수원시	남현동 남대령 고개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204	20서3287	이**	2020-09-16 19: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05	49저1585	이**	2020-09-16 12:17	서울특별시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206	10노3112	이**	2020-09-18 18:51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07	56호8322	이**	2020-09-03 20:35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08	49하2302	이**	2020-09-08 19:48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209	61거0328	이**	2020-09-21 09:46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10	43누8337	이**	2020-09-18 12:11	경기도 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11	15무3911	이**	2020-09-21 18:5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12	58마3702	이**	2020-09-21 09:3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13	89주8738	이**	2020-09-17 09:36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14	52노5816	이**	2020-09-21 07:59	경기도 의정부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15	07고9284	이**	2020-09-19 17:20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16	150버9446	이**	2020-09-18 12:22	경기도 남양주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17	90서6298	이**	2020-09-16 07:40	서울특별시	화랑체육관~화랑대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218	서울14가7580	이**	2020-09-18 18: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19	32저4358	이**	2020-09-21 17:3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20	68로0182	이**	2020-09-18 18:47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21	13구5022	이**	2020-09-16 19:10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22	16버8158	이**	2020-09-18 20:45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23	경기14보5414	이**	2020-09-21 10:18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24	57보6948	이**	2020-09-21 19:48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25	68수9182	이**	2020-09-17 20:14	경기도 안산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26	291다1547	임**	2020-09-21 17:48	경기도 하남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27	17부4405	임**	2020-09-14 10:12	서울특별시	우이교차로~강북구청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28	30로0159	임**	2020-09-16 08:08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29	63부0945	임**	2020-09-21 19:0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30	64부3520	임**	2020-09-18 08:57	경기도 남양주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31	66루3737	임**	2020-09-21 16:44	경기도 고양시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6-2	전용차로위반	50,000
232	29서0924	장**	2020-09-21 17:18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33	37다5891	장**	2020-09-17 17:43	서울특별시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234	46도5718	장**	2020-09-16 02:43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35	48가6817	장**	2020-09-16 11:30	서울특별시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236	07가5331	장**	2020-09-10 17:55	경기도 하남시	양화대교 북단~남단	전용차로위반	50,000
237	97무5956	전**	2020-09-17 08:36	경기도 의정부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38	64조4430	전**	2020-09-18 09:41	경기도 김포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239	64조4430	전**	2020-09-16 09:04	경기도 김포시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40	43너3882	전**	2020-09-18 20:11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41	51루7795	전**	2020-09-17 19:59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42	92마3707	정**	2020-09-18 20:02	경기도 양평군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43	19도0967	정**	2020-09-16 12:31	광주광역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44	53라9159	정**	2020-09-17 19:5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45	13도1960	정**	2020-09-19 17:53	서울특별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46	23너9760	정**	2020-09-17 1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47	54보6653	정**	2020-09-17 20:09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48	08저5081	정**	2020-09-21 18:05	경기도 광명시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249	20부2536	정**	2020-09-17 16:41	서울특별시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외	전용차로위반	50,000
250	62모8093	정**	2020-09-21 17:20	경기도 과천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51	41무7386	정**	2020-09-16 19:13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52	09다2015	정**	2020-09-16 08:37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53	27거2791	조**	2020-09-21 11:05	경기도 용인시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54	21오4485	조**	2020-09-18 20:44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55	20노7627	조**	2020-09-21 17:26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56	08소1684	조**	2020-09-18 18:54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57	서울86자6745	조**	2020-09-17 13:27	서울특별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지하 40	전용차로위반	50,000
258	51노7413	조**	2020-09-17 18:43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60,000
259	33라4684	조**	2020-09-17 17:42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60	22거5134	조**	2020-09-17 20:16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61	서울31바2102	조**	2020-09-16 20:55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262	51우3589	조**	2020-09-16 19:52	서울특별시	육사야구장~ 화랑대역 사거리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63	162우9516	조**	2020-09-17 09:09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64	28소2820	주**	2020-09-18 08:05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역~강남소방서	전용차로위반	50,000
265	인천14마7670	지**	2020-09-21 10:18	인천광역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66	21하2753	진**	2020-08-24 19:16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전용차로위반	50,000
267	62두6926	차**	2020-09-21 06:50	인천광역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60,000
268	58수0244	채**	2020-09-21 07:59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69	40조5421	최**	2020-09-20 13:40	인천광역시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70	30두1329	최**	2020-09-18 18:09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271	91구5609	최**	2020-09-16 07:39	경기도 등두천시	공릉소방서(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72	16여6911	최**	2020-09-18 18:20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73	경기92바7158	최**	2020-09-18 07:16	경기도 광주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74	51구1336	최**	2020-09-21 19:30	경기도 성남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75	63머9005	최**	2020-09-11 15:03	경기도 이천시	신사역교차로~논현역 교차로 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76	서울83자5182	최**	2020-09-16 11:42	서울특별시	LG에클리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277	서울14다7917	최**	2020-09-21 10:38	경기도 시흥시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78	53서7615	최**	2020-09-17 17:25	경기도 남양주시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79	90머8037	최**	2020-09-21 17:17	서울특별시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80	25가0983	최**	2020-09-21 08:39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81	25가0983	최**	2020-09-16 08:25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82	33로5231	탁**	2020-09-18 18:59	경기도 남양주시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83	66러6973	탁**	2020-09-16 17:50	서울특별시	양화대교 남단교차로~ 북단 교차로 방향	전용차로위반	60,000
284	41로9900	하**	2020-09-16 14:54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85	09라8015	한**	2020-09-21 17:55	전라북도 전주시	태릉강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86	서울31아2032	허**	2020-09-18 19:48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87	19로5129	홍**	2020-09-18 13:55	전라남도 순천시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88	26거2440	홍**	2020-09-21 17:25	경기도 고양시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89	129저5331	홍**	2020-09-16 08:30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삼성역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90	64거2917	황**	2020-09-21 10:13	서울특별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전용차로위반	50,000
291	64거2917	황**	2020-09-17 10:07	서울특별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지하 40	전용차로위반	50,000

서울특별시의회공고

서울특별시의회공고 제2020 - 346호

주식백지신탁 계약체결사실 신고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 백지신탁 계약체결사실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식백지신탁 계약체결사실 신고사항 공개목록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용연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계약체결일)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 수				
김용연 (본인)	등명종합건설 (주)	66,000	신탁	23,093,862	2020.10.13.	농협은행

구 고 시

성북구고시 제2020-1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1969-3호(1969.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0-96호(2020.6.25.)로 실시계획작성 고시한 【하월곡동 96-8 ~ 22-10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개요(변경없음)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규모	최초 결정고시	비고
하월곡동 96-8 ~ 22-10간 도로확장공사	하월곡동 26-14 ~ 96-121	· B = 8m · L = 280m	성북구 고시 제1969-3호 (1969.1.18.)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 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작성 고시일로부터 2년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변경) : 따로붙임

※ 변경사유 : 오기정정에 따른 고시문 변경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도로과(☎2241-35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업의 명칭 : 하월곡동 96-8 ~ 22-10 도로확장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지분 대지권 비율	소 유 권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하월곡동 27-162	대지	12	12		장*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 **, ***동***호(**동, **아파트)				분할예정
2	하월곡동 52-46	대지	3	3		이*성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_****				
3	하월곡동 26-28	대지	12	12	1/4	박*숙	서울 영등포구 **동 ***-** **아파트 ***-****				분할예정
					1/4	박*근	서울 도봉구 **동 *** **아파트 ***-****				
					1/4	박*근	서울 성북구 ***동 *** **아파트 ***-****				
					1/4	박*근	충북 진천군 ***면 ***리 ***-** **아파트 ***-****				
4	하월곡동 52-44	대지	14	14		김*남	서울 성북구 **동 **-****				
5	하월곡동 51-43	대지	48	48		임*섭	서울 성북구 ***동 ***-*				
6	하월곡동 26-14	대지	76	76	70/100	조*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로 ** ***-****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로 ** (****가)	근저당권	
					30/100	오*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로 ** ***-****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업의 명칭 : 하월곡동 96-8 ~ 22-10 도로확장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하월곡동 27-2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9㎡	장*웅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 **, ***동****호(**동, **아파트)				
2	하월곡동 26-14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지하 46㎡ 1층 51㎡ 2층 51㎡ 3층 57㎡ 4층 57㎡ 옥탑 8㎡ 옥탑샷시 6㎡	조*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로**길 **-* (**동)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로 ** (****가)	근저당권	
					오*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로**길 **-* (**동)				
3	하월곡동 26-1	건물	벽돌조 스라브지붕	46㎡	박*숙	서울 영등포구 **동 ****-* **아파트 ****-****				
					박*근	서울 도봉구 **동 *** **아파트 ****-****				
					박*근	서울 성북구 ***동 *** **아파트 ****-****				
					박*근	충북 진천군 ***면 ***리 ***-* **아파트 ****-****				

성북구고시 제2020 - 195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365-4 ~ 404-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도시방법)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성 북 구 청 장

가. 결정(변경) 취지

- 정릉동 365-4 ~ 404-3 간 도시계획시설(도로) 관련 일부토지를 제외하여도 도로의 안정성 및 도로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으므로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면적 (㎡)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07	10	일반 도로	380	3,953	정릉동 365-4	정릉동 404-3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1974-23 1974.3.2.	-
변경	소로	1	107	10	일반 도로	380	3,824	정릉동 365-4	정릉동 404-3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1974-23 1974.3.2.	편입 면적 변경 (감 128㎡ 3.25%)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	소로1	•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 면적 변경	• 해당 도시계획시설(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패소하여 임료 22백만원이 매년 지급되고 있는 필지를 포함한 구간으로 당초 토지보상만으로 사업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측량결과 건물들이 다수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됨. • 건물철거 시 영업보상 및 철거공사에 따른 추가예산확보가 필요하고 정릉시장 내 영업장소 축소로 인한 영업지장 등 다수인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물철거에 대한 사업효과가 미비(면적감소 3.25%)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 도시계획시설을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선형을 변경하여 당초 추진계획대로 건물철거 없이 토지보상으로 사업을 완료하고자 함.

다. 지형도면의 작성

- 성북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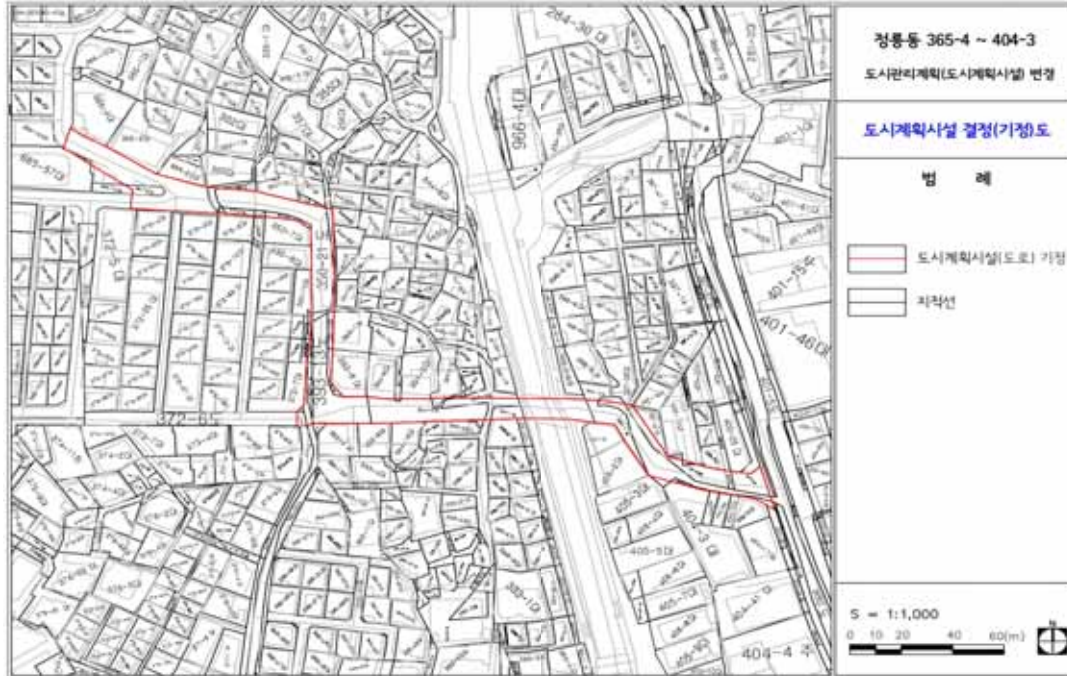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라. 관련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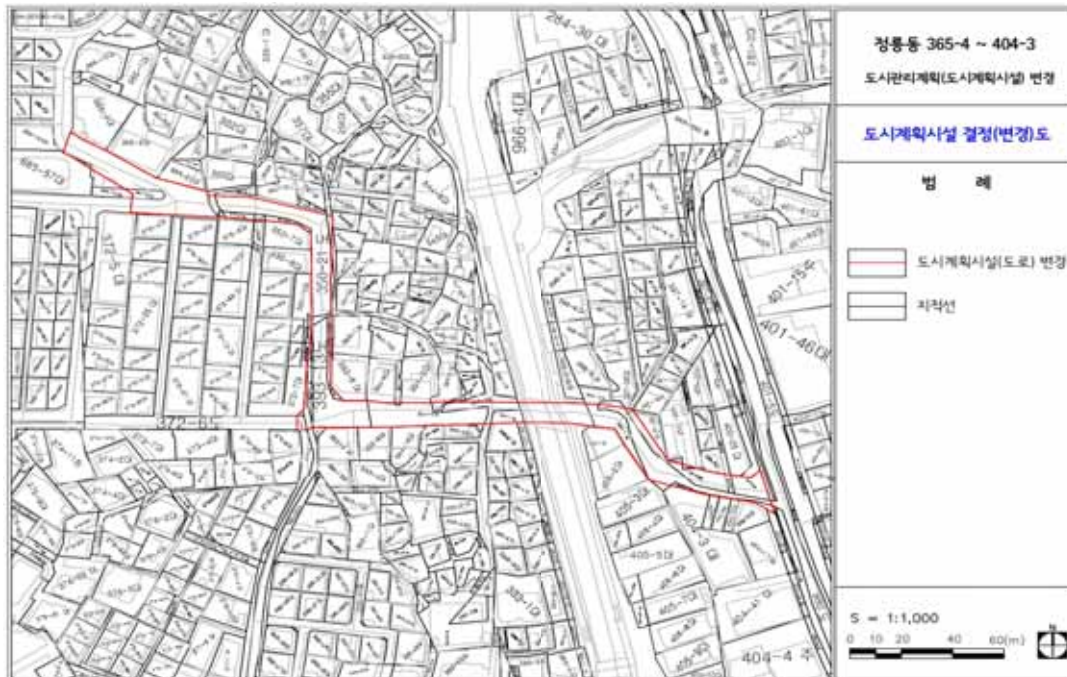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성북구 도시계획과(☎2241-276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노원구고시 제2020 - 11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주민 휴게쉼터 조성)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20-79호(2020.07.16.)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노원구공고 제2020-923호(2020.09.10.) 및 노원구공고 제2020-924호(2020.09.10.)로 도시계획시설사업(주민 휴게쉼터 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 사업인정의제 사업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회신을 받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179-28 외 1필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179-28, 170-13
2. 사업시행자
 - 성 명 : 노원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437(상계동 701-1)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사업의 명칭 : 주민 휴게쉼터 조성
4. 사업의 내용 : 공공공지 조성
 - 면 적 : 118㎡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1년간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물건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따로붙임
7. 공고방법 : 서울시보 및 노원구보 게재
8.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과(☎02-2116-070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의 명칭 : 주민 휴게쉼터 조성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편 입 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관리내용	
1	노원구 하계동 179-28	답	7	7	영업	김영득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가길 19	-	-	-	
2	노원구 하계동 170-13	하천	885	111	영업	노 원 구청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김영득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가길 19	무허가건물	

물 건 조 서

■ 사업의 명칭 : 주민 휴게쉼터 조성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와내용	
1	하계동179-28 하계동170-13	상가	세면블록조/ 샌드위치판넬	1동 (62㎡)	영업	김영득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가길 19	김미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27길 98	임차인	
1-1	하계동170-13	상가	세면블록조/ 샌드위치판넬	1동 (52㎡)	영업			이금숙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33-2	임차인	

물 건 조 서

■ 사업의 명칭 : 주민 휴게쉼터 조성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면적㎡)	권리의 종류와내용	
2	하계동179-28 하계동170-13	영업권	아이스크림할인점	1식	영업	김미정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27길 98				
2-1		냉장고		1대	영업	김미정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27길 98				
2-2		냉동고		1대	영업	김미정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27길 98				
2-3		에어컨		1대	영업	김미정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27길 98				
2-4		철재선반		7개	영업	김미정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27길 98				
2-5		포스기		1대	영업	김미정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27길 98				
2-6		전자레인지		1대	영업	김미정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27길 98				
2-7		아이스크림류		1식	영업	김미정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27길 98				
2-8		과자류		1식	영업	김미정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27길 98				
2-9		문구류		1식	영업	김미정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27길 98				
2-10		음료류		1식	영업	김미정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27길 98				
2-11		배전반		1개	영업	김미정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27길 98				
2-12		환풍기		3개	영업	김미정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27길 98				
2-13		간판		6개	영업	김미정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27길 98				
2-14		어닝천막		1식	영업	김미정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27길 98				

물 건 조 서

■ 사업의 명칭 : 주민 휴게쉼터 조성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면적㎡)	권리의 종류와내용	
3	하계동170-13	영업권	삼거리실내포차	1식	영업	이금숙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33-2				
3-1		냉장고		6개	영업	이금숙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33-2				
3-2		테이블		10개	영업	이금숙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33-2				
3-3		의자		25개	영업	이금숙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33-2				
3-4		싱크대		1식	영업	이금숙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33-2				
3-5		조리기		1식	영업	이금숙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33-2				
3-6		식기류		1식	영업	이금숙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33-2				
3-7		전자레인지		1대	영업	이금숙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33-2				
3-8		에어컨		3대	영업	이금숙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33-2				
3-9		정수기		1개	영업	이금숙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33-2				
3-10		간판		2개	영업	이금숙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33-2				
3-11		TV		1대	영업	이금숙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33-2				
3-12		CCTV		1대	영업	이금숙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33-2				
3-13		환풍기		3개	영업	이금숙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33-2				
3-14		온돌시설		1식	영업	이금숙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33-2				
3-15		선반		5개	영업	이금숙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33-2				
3-16		이동식창고		1개	영업	이금숙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33-2				

□ 위치도



□ 현황사진



서대문구고시 제2020-18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2181호(1966.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은평구 고시 제2016-48호(2016.6.9.)로 최종 변경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78호(2015.3.19.)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0-116호(2020.6.29.)로 실시계획인가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0-1023호(2020.9.23.)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변경열람공고 한 백련근린공원에 대하여
2. 수용 또는 사용할 면적의 토지분할로 인하여 변경된 지번 및 보상내역(물건조서)의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3. 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11-314 등 11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백련근린공원) 조성

다. 사업의 면적 : 15,428㎡

라. 사업의 내용 : 토지보상 15,428㎡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바.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청

사.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고시일 ~ 2022. 12. 31까지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별도 첨부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02-330-19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지분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내용	
계	11필지	45,338	15,428							
홍은동 산11-314	임야	3,695	3,695	1	박*열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64길 15, ***동 ***호(이촌동 엘지한강자이아파트)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	지상권	
홍은동 204-39	대지	28	28	1	이*영	서울시 성북구 대사관로13길 ***				
홍은동 265-493	임야	176	176	1	이*기	서울시 성북구 대사관로13길 ***				
홍은동 산26-134	임야	977	977	1	학교법인**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361-***	중부**서	서울시 중구 소공로 **	압류	
							한국사학****	대구시 동구 혁신대로 ***	가압류	
홍은동 산26-133	임야	857	857	1	김*식	서울시 서대문구 백련사길 **				
홍은동 310-2	전	16	16	1	김*식	서울시 서대문구 백련사길 **				
홍은동 산26-183	학교	43	43	1	김*식	서울시 서대문구 백련사길 **				
홍은동 312-1	대지	331	60	1	재단법인** *****	서울시 서대문구 백련사길 170-***				
홍은동 산11-3	임야	3	3	1	이*용	서울시 경성부관노동 **				
홍은동 산11-54	임야	32,565	2,926	1	이*영	서울시 성북구 대사관로13길 ***	한국산업**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	근저당권	
							유한회사**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	지상권 지역권	
							주식회사 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	근저당권	
							주식회사 국*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	근저당권	
							한국산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근저당권	
							주식회사 산*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	근저당권	
홍은동 265-443	임야	6,647	6,647	4733/7991	이*영	서울시 성북구 대사관로13길 ***	유한회사**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	지상권 지역권	
				3258/7991	유한회사등 원아이**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	한국산업**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	근저당권 지상권	
							주식회사 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	근저당권	
							주식회사 국*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	근저당권	
							한국산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근저당권	
							주식회사 산*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	근저당권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또는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내용	
1	홍은동 산11-314	기존무허가 건물	시멘조	142㎡	조*라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48, 우장산힐스테이트 123동 1***호	국*윤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29-26	전세권	
		담장		1식			임*순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29-26	전세권	
		대문		1식			홍*기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29-26	그밖의권 리	
		기존무허가 건물	시멘조	99㎡	박*은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2*-**				
		기존무허가 건물	시멘조	140㎡	변*우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6다길 ***,101동 ***호	김*복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26-36	전세권	
							채*선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26-36	전세권	
							이*순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26-36	전세권	
							김*현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26-36	전세권	
		기존무허가 건물	가건물 및 시멘조	76㎡	장*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상북로 11-17 청구가든 D동 ***호	박*태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45-15	전세권	
2	홍은동 산26-133	기존무허가 건물	세멘조	1식	김*식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26-***				영업손실
		가건물	1동	12㎡						
		가건물	1동	21㎡						
		가건물	1동	30㎡						
		가건물	1동	39㎡						
		창고	1동	3㎡						
		창고	1동	5㎡						
		창고	1동	4㎡						
		통로(가차)	1식	143㎡						
		대문	목재 등	2개						
		울타리		1식						
		가스저장탱크		1식						
		장독대		1식						
3	홍은동 310-2	가건물	1식	3㎡						
4	홍은동 산26-183	가건물	1동	19㎡						
		가건물	1식	4㎡						

서대문구고시 제2020 - 189호

홍은제6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32호(2009.6.11.)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 최초 결정·고시되고 서대문구고시 제2012-7호(2012.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되어 서대문구고시 제2015-102호(2015.08.12.), 서대문구고시 제2017-156호(2017.10.25.), 서대문구고시 제2020-50호(2020.4.16.)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서대문구 홍은동 13-25번지 일대 홍은동제6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홍은제6주택재건축정비구역” 과 관련 녹지공간이 부족한 주거 밀집지역에 소공원 2개소를 조성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단지 입주민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녹지공간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나. 위치 및 면적

구 분	소공원1	소공원2	비고
위 치	서대문구 홍은동 13-39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15-27 일대	
면 적	397㎡	279㎡	

다. 홍은제6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도면 : 붙임 참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푸른도시과(☎02-330-1907)

흥은제6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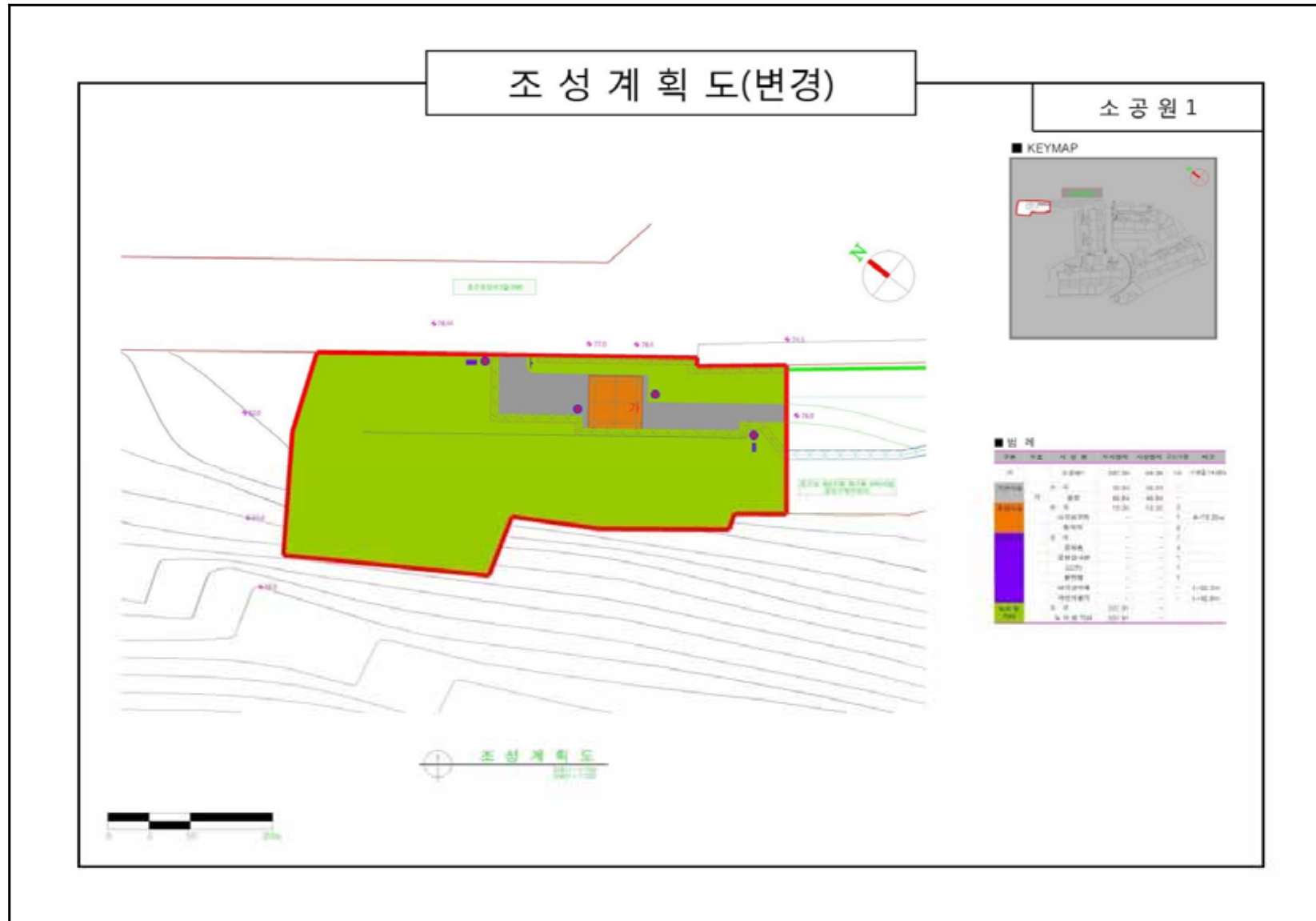
1. 총괄표 소공원1(위치 : 서대문구 흥은동 13-39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397.00	61.01	-	-	-	35	397.00	59.09	-	-	-	10	
기 반 시 설	소 계	23.34	23.34	-	-	-	-	46.84	46.84	-	-	-	-	증23.50㎡
	도 로	-	-	-	-	-	-	-	-	-	-	-	-	
	광 장	23.34	23.34	-	-	-	-	46.84	46.84	-	-	-	-	
조 경 시 설		14.51	14.51	-	-	-	1			-	-	-		감14.51㎡
휴 양 시 설		14.04	14.04	-	-	-	3	12.25	12.25	-	-	-	3	감 1.79㎡
유 희 시 설		9.12	9.12	-	-	-	2			-	-	-		감 9.12㎡
교 양 시 설		-	-	-	-	-	-	-	-	-	-	-	-	
운 동 시 설		-	-	-	-	-	-	-	-	-	-	-	-	
편 익 시 설		-	-	-	-	-	-	-	-	-	-	-	-	
관 리 시 설		-	-	-	-	-	29	-	-	-	-	-	7	
녹지 및 기타		335.99	-	-	-	-	-	337.91	-	-	-	-	-	증 1.92㎡
시 설 율 (법정 20%)		(61.01 / 397.00) × 100 = 15.37%						(59.09 / 397.00) × 100 = 14.88%						
건 폐 율 (법정 5%)		(0 / 397.00) × 100 = 0%						(0 / 397.00) × 100 = 0%						

2.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397.00	61.01					35			397.00	59.09					10	
기 반 시 설	소 계			23.34	23.34								46.84	46.84						증 23.50㎡
	광 장 가	대상지중앙	23.34	23.34							가	대상지 중앙	46.84	46.84						증 23.50㎡
조 경 시 설	소 계			14.51	14.51					1										감 14.51㎡
	목재데크	대상지 북동측			목재	14.51㎡				1										감 14.51㎡
휴 양 시 설	소 계			14.04	14.04					3			12.25	12.25					3	감 1.79㎡
	사각파고라	대상지 중앙			목재	9.00㎡				1	대상지 중앙			목재	12.25㎡			1	증 3.25㎡	
	등의자	대상지 중앙			목재					2										
	평의자										대상지 중앙			목재				2		
	앉음벽	목재데크	5.04	5.04		11.2m													감 5.04㎡	
유 회 시 설	소 계			9.12	9.12					2										감 9.12㎡
	유희공간	대상지 남동측	9.12	9.12																
	체력 단련시설	유희공간			철재					1										
	체력 단련시설	유희공간			철재					1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관 리 시 설	소 계									29										7	
	디딤돌		대상지 남동측							15											
	공원등		전지역							2		전지역								4	
	공원안내판																			1	
	CCTV																			1	
	분전함																			1	
	낙석방지책											전지역									L=25.0m
	자연석쌓기											전지역									L=42.6m
	수목 투사등		전지역							2											
	갈대등		대상지 중앙							10											
	화계		전지역				91.5m														
	웬스A		화계			목재	21.5m														
	웬스B		대상지 경계			목재	37.7m														
녹지 및 기타	소 계			335.99									337.91								감 1.92㎡
	녹지 및 기타			335.99									337.91								감 1.92㎡



1. 총괄표 소공원2(위치 : 서대문구 홍은동 15-27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79.00	55.74				11	279.00	53.88				12	
기 반 시 설	소 계	19.42	19.42				-	28.57	28.57				-	증 9.15㎡
	도 로	9.82	9.82				-	10.10	10.10				-	증 0.28㎡
	광 장	9.60	9.60				-	18.47	18.47				-	증 8.87㎡
조 경 시 설		12.34	12.34				1							감 12.34㎡
휴 양 시 설		11.98	11.98				3	12.25	12.25				3	증 0.27㎡
유 희 시 설		12.00	12.00				3	13.06	13.06				2	증 1.06㎡
교 양 시 설		-	-				-	-	-				-	
운 동 시 설		-	-				-	-	-				-	
편 익 시 설		-	-				-	-	-				-	
관 리 시 설		-	-				4	-	-				7	
녹지 및 기타		223.26	-				-	225.12	-				-	증 1.86㎡
시 설 율 (법정 20%)		(55.74 / 279.00) × 100 = 19.98%					(53.88 / 279.00) × 100 = 19.31%							
건 폐 율 (법정 5%)		(0 / 279.00) × 100 = 0%					(0 / 279.00) × 100 = 0%							

2.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279.00	55.74					11			279.00	53.88						12	
기 반 시 설	소 계			19.42	19.42								28.57	28.57							증 9.15㎡
	도 로	산1	대상지 남서측	9.82	9.82						산1	대상지 남서측	10.10	10.10							증 0.28㎡
	광 장	가	대상지 중앙	9.60	9.60						가	대상지 중앙	18.47	18.47							증 8.87㎡
조 경 시 설	소 계			12.34	12.34					1											감12.34㎡
	목재데크		대상지 중앙			목재	12.34㎡			1											감12.34㎡
휴 양 시 설	소 계			11.98	11.98					3			12.25	12.25						3	증 0.27㎡
	사각파고라		대상지 중앙			목재	9.00㎡			1		대상지 중앙			목재	12.25㎡				1	증 0.27㎡
	등의자		대상지 중앙			목재				2											
	평의자											대상지 중앙			목재					2	
	앉음벽		목재데크	2.98	2.98		6.6m														
유 희 시 설	소 계			12.00	12.00					3			13.06	13.06						2	증 1.06㎡
	유희공간		대상지 남서측	12.00	12.00							대상지 남서측	13.06	13.06							증 1.06㎡
	체력단련 시설		유희공간			철재				1		유희공간			철재					1	
	체력단련 시설		유희공간			철재				1		유희공간			철재					1	
	체력단련 시설		유희공간			철재				1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관 리 시 설	소 계								4										7	
	공원등		전지역						2		전지역								4	
	수목 투사등		전지역						2											
	공원안내판										대상지 중앙								1	
	CCTV										대상지 중앙								1	
	분전함										대상지 중앙								1	
	화계		전지역				72.5m													
	웬스A		화계			목재	24.8m													
	웬스B		대상지 경계			목재	15.5m													
	자연석쌓기										전지역									L=36.0m
녹지 및 기타	소 계			223.26								225.12								증 1.86㎡
	녹지 및 기타			223.26								225.12								증 1.86㎡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8.18	9.82				
변경					11.30	13.20				
당초	산책로	소 계			8.18	9.82				
변경					11.30	13.20				
당초			1-1	1.2	8.18	9.82	산책로	대지경계	광장-가	
변경			1-1	1.2	8.20	10.10	산책로	대지경계	광장-가	
당초										
변경			1-2	1.0	3.10	3.10	산책로	대지경계	광장-가	

양천구고시 제2020 - 128호

도시계획시설사업(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138호(1977. 7. 9.)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76호(2020. 2. 27.)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양천구 고시 제2020-65호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2. 실시계획 변경사항(건축물 보상면적 변동)을 서울시 양천구 공고 제2020-998호(2020. 7. 23.)호로 열람공고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고시 합니다.
3. 사업 관계서류는 양천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업문의는 양천구청(공원녹지과 ☎ 02-2620-357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9일

양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산92-3 외 2필지(162-28, 162-30)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내용(면적)

- 당초 : 토지보상(581㎡), 건물보상(625.84㎡), 공원조성(581㎡)
- 변경 : 토지보상(581㎡), 건물보상(355.53㎡), 공원조성(581㎡)

라. 사 업 비 : 2,150백만원(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예정)

마. 사업의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양천구청 7층 공원녹지과)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 사용·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의 조서 : 첨부-1 참조

아. 사업대상지 위치도(계획평면도), 보상용지도 : 첨부-2 참조

자. 고시방법 : 서울시보 게재

첨부-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 업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산92-3 외 2필지(162-28, 162-30)
 □ 사업시행자 : 양천구청장

변경 전										변경 후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내용			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내용
계			581	581	3명								581	581	3명					
1	신정동 산92-3	임야	3	3	이00	시흥군 서면 철산리 100					* 변경없음									
2	신정동 162-28	대지	235	235	이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14,000동-000호		㈜00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000	근저당권 설정	* 변경없음									
3	신정동 162-30	대지	343	343	이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길 00					* 변경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조서

- 사 업 명 :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 업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162-28 외 1필지(162-30)
- 사업시행자 : 양천구청장

변경 전										변경 후									
연번	지 번	물건의 종류	면적(㎡)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비고	지 번	물건의 종류	면적(㎡)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비고	
			구조 규격	편입면적 및수량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구조 규격	편입 면적 및수량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625.84								355.53							
1	신정동 162-28	건물	세멘부력조 (공장,사무 실)	181.58	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14, ○○○동-○○ ○호	주○○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	근저 당권 설정	신정동 162-28	건물	세멘 부력조 (공장,사무 실)	75.79	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14, ○○○동-○ ○○호	주○○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	근저 당권 설정	
2	신정동 162-30	건물	세멘부력조	444.26	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길 ○○				신정동 162-30	건물	세멘 부력조	279.74	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길 ○○				

첨부-2

사업시행지 위치도(계획평면도) 및 보상용지도
[양천구 신정동 산92 - 3]



사업 위치도(계획평면도) : 신정동 산92-3(토지보상 3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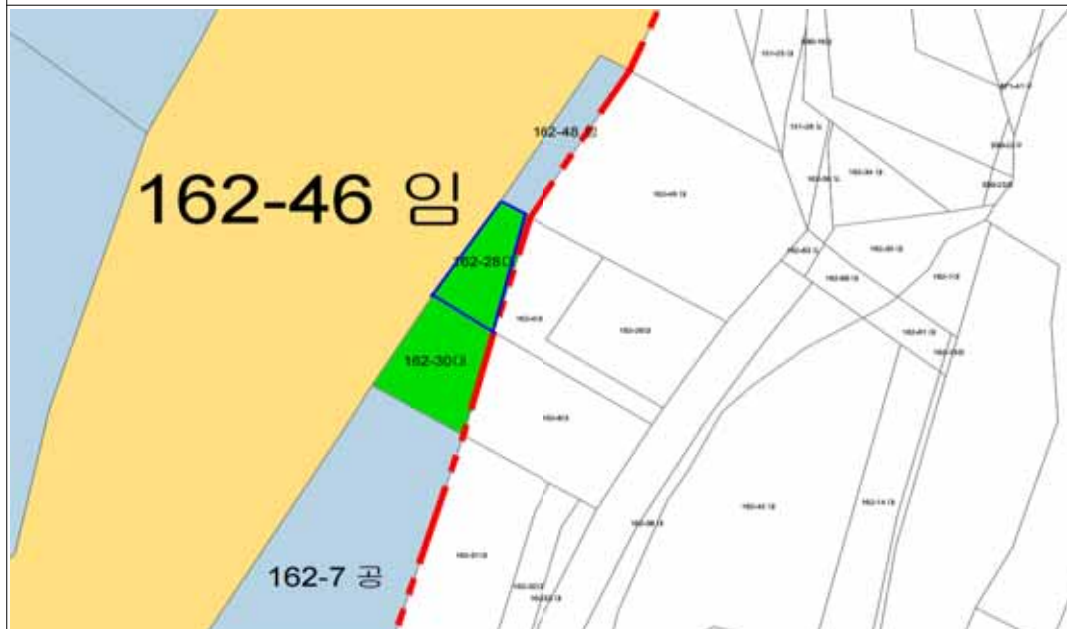
보상용지도 : 신정동 산92-3(임야/3m²)

첨부-2

사업시행지 위치도(계획평면도) 및 보상용지도
[신정동 162 - 28]



사업위치도(계획평면도) : 신정동 162-28(토지보상 235㎡, 건물보상 75.79㎡, 공원조성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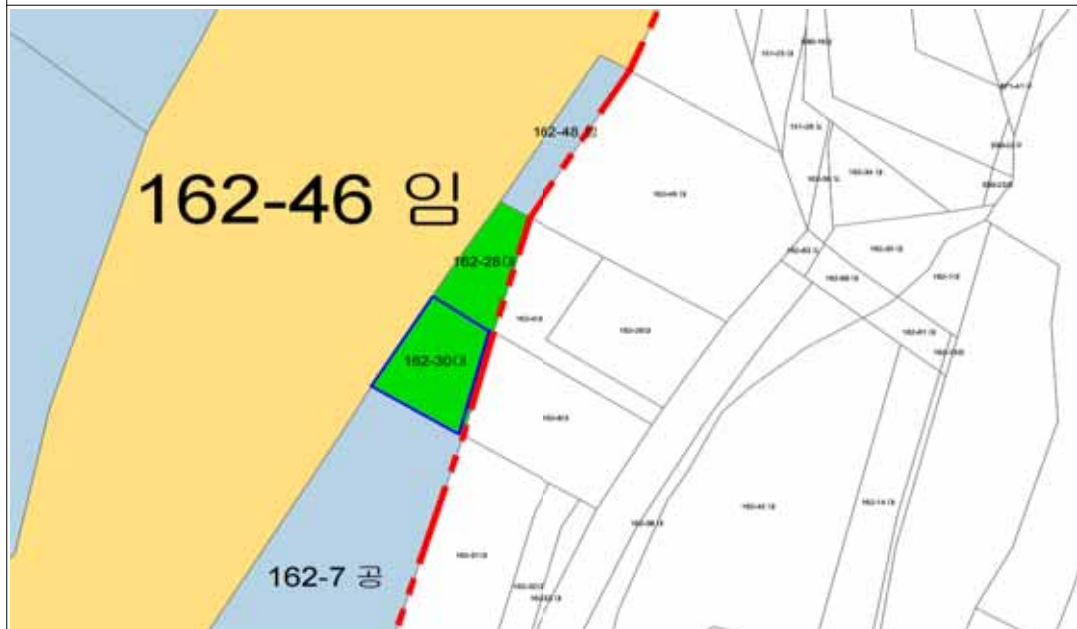
보상용지도 : 신정동 162-28(대지/235㎡)

첨부-2

사업시행지 위치도(계획평면도) 및 보상용지도
[신정동 162 - 30]



사업위치도(계획평면도) : 신정동 162-30(토지보상 343㎡, 건물보상 279.74㎡, 공원조성 343㎡)



보상용지도 : 신정동 162-30(대지/343㎡)

양천구고시 제2020 - 12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용왕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 8. 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94호(1987. 2. 17.)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서울시 고시 제229호(2019. 7. 18.)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양천구 공고 제532호(2020. 4. 9.) 실시계획 인가 열람공고, 양천구 고시 제66호(2020. 6. 18.)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용왕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2. 실시계획 변경사항(건축물 보상면적 변동)을 서울시 양천구 공고 제2020-999호(2020. 7. 23.)호로 열람공고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고시 합니다.
3. 사업 관계서류는 양천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업문의는 양천구청(공원녹지과 ☎ 02-2620-357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9일

양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양천구 목동 202-9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용왕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내용(면적)

- 당초 : 토지보상(3,539㎡), 건물보상(438.54㎡), 공원조성(3,539㎡)
- 변경 : 토지보상(3,539㎡), 건물보상(560.88㎡), 공작물보상(86㎡), 공원조성(3,539㎡)

라. 사 업 비 : 1,964백만원(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예정)

마. 사업의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양천구청 7층 공원녹지과)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 사용·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의 조서 : 첨부-1 참조

아. 사업대상지 위치도(계획평면도), 보상용지도 : 첨부-2 참조

자. 고시방법 : 서울시보 게재

첨부-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용왕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 업 위 치 : 서울시 양천구 목동 202-9
 □ 사업시행자 : 양천구청장

변경 전										변경 후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내용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내용
계			3,539	3,539									3,539	3,539						
1	목동 202-9	종교용지	3,539	3,539	재단법인 ○○○○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중앙로 ○○					* 변경 없음									

첨부-1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조서

- 사 업 명 : 용왕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 업 위 치 : 서울시 양천구 목동 202-9
 □ 사업시행자 : 양천구청장

변경 전											변경 후										
연번	지 번	물건의 종 류	면적(㎡)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비고	지 번	물건의 종 류	면적(㎡)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비고	
			구조 규 격	편입면적 및수량 (㎡)	성 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소				구 조 및 규 격	편입 면적 및수량 (㎡)	성 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소		
	합계	건물		438.54							합계	건물		560.88							
	목동 202-9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438.54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 중앙로 〇〇	20/21				목동 202-9	건물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364	재단 법인 ○○ 〇〇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 중앙로〇〇	20/21				
					임○○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13 나길 20-〇〇	1/21					건물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167							
												건물 (지하)	철근 콘크리트조	29.88							
											합계	공작물		86	임○○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13나 길 20-〇〇	1/21				
										목동 202-9	공작물	가건물	5								
											공작물	비닐 하우스	74								
											공작물	석탑	4								
											공작물	석불	1								
											공작물	복전함	2								

첨부-2

사업시행지 위치도(계획평면도) 및 보상용지도
(양천구 목동 202 - 9)



사업 위치도(계획평면도) : 목동 202-9(토지보상 3,539㎡, 건물보상 560.88㎡,
공작물 보상 86㎡, 공원조성 3,539㎡)

보상용지도 : 목동 202-9(종교용지/ 3,539m²)

구로구고시 제2020 - 213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실효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실효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구로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폐지)

연번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	폐지	소로	2	-	8	국지 도로	198	고척동 85-14	고척동 76-28	일반 도로	서고 3 ('69.1.18.)	
2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506	개봉동 68-193	오류동 13-186	일반 도로	서고 3 ('69.1.18.)	구고 130 ('20.7.2) 부분폐지
	변경	소로	3	-	6	국지 도로	245	개봉동 68-193	오류동 19-199	일반도 로		미집행 구간 실효
3	폐지	소로	3	-	6	국지 도로	243	고척동 산8-1	고척동 234-15	일반도 로	서고 2 ('74.1.14.)	구고 130 ('20.7.2) 부분폐지

2.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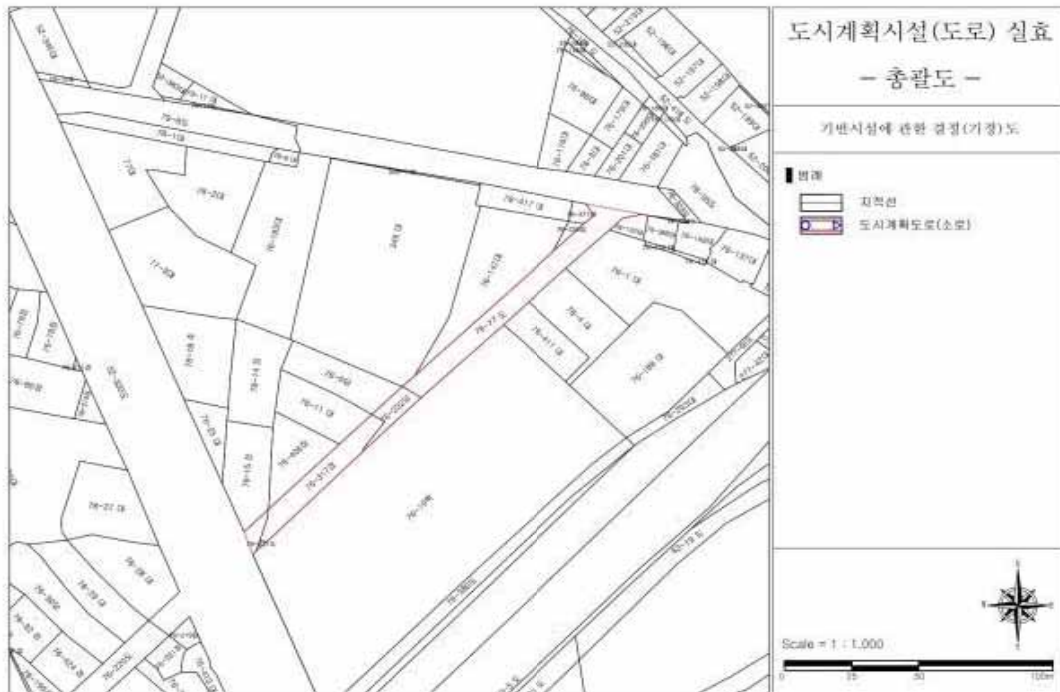
3. 지형도면의 작성 : 불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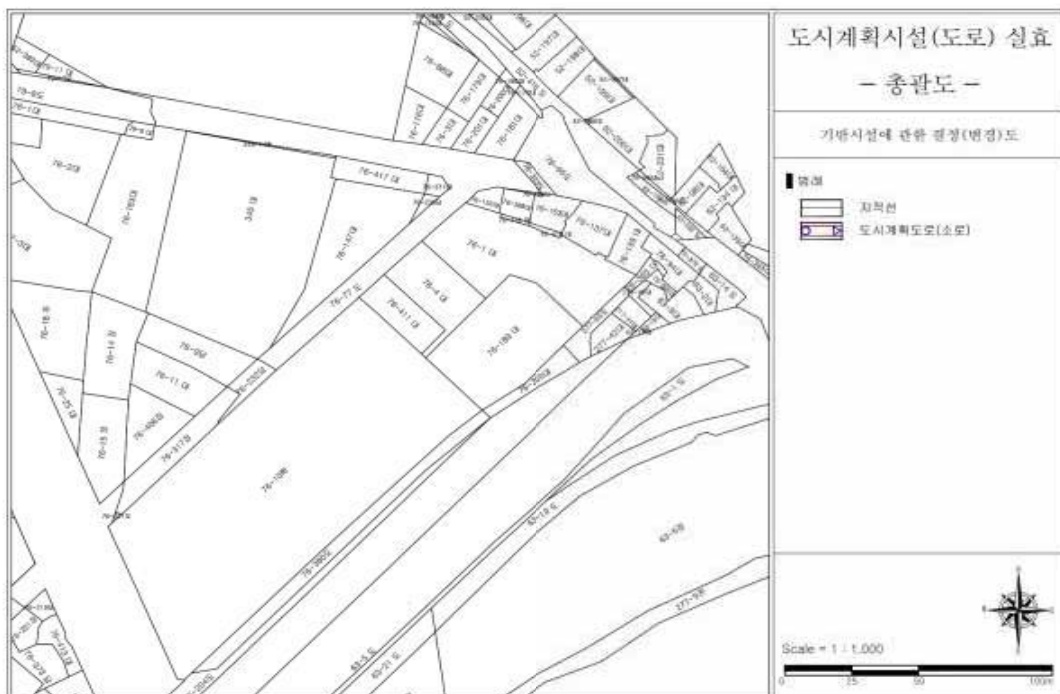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280)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 고시 (폐지)

○ 기정



○ 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 고시 (변경)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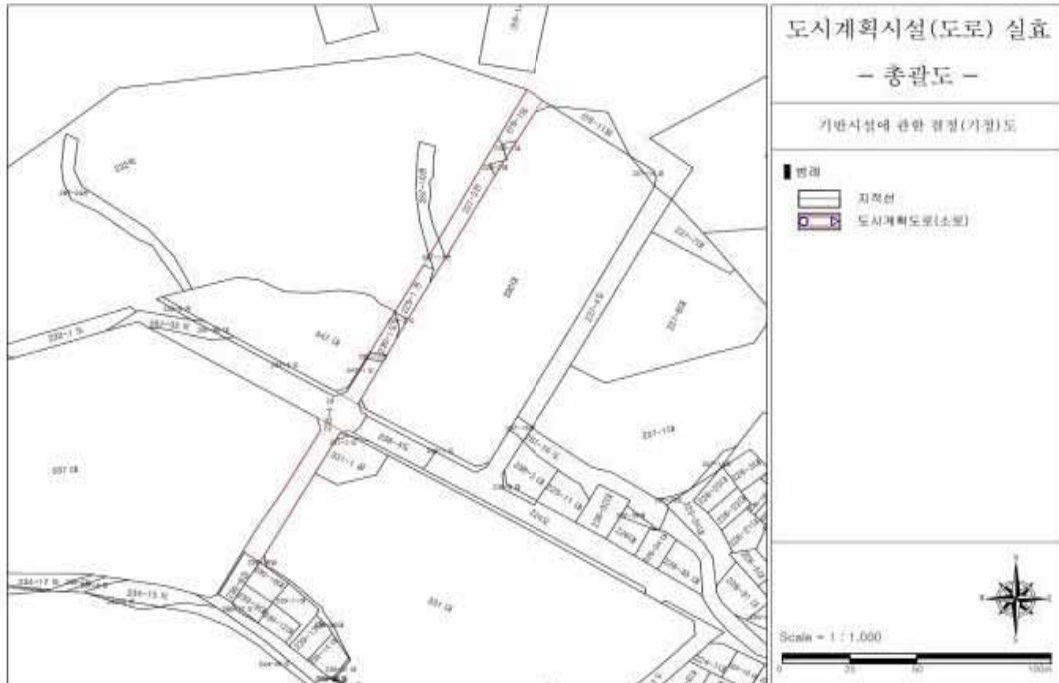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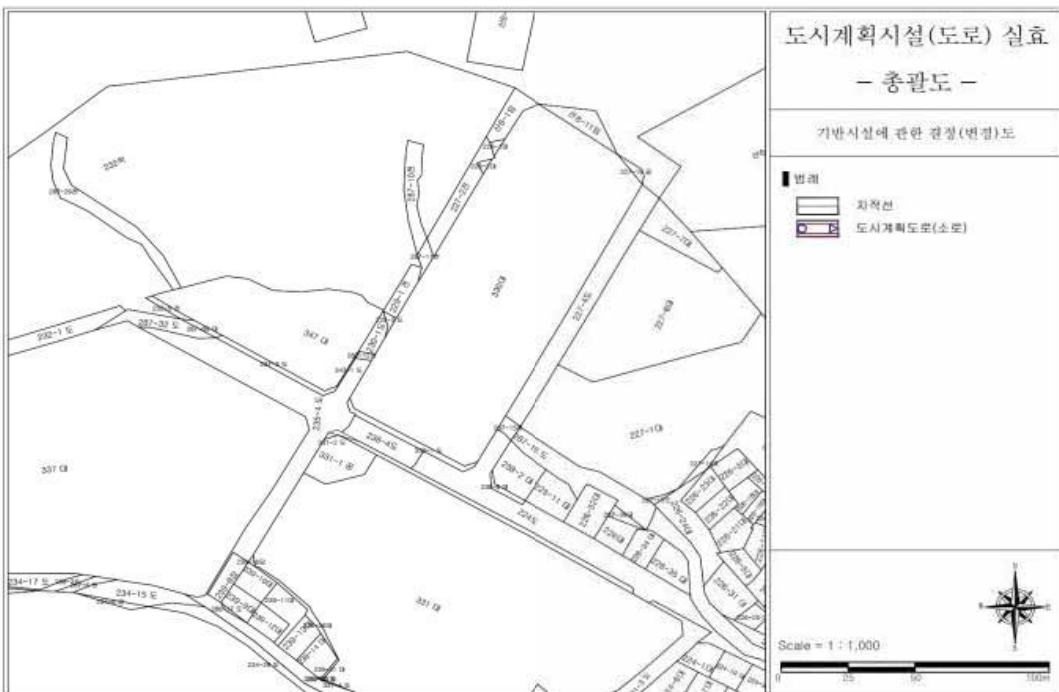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 고시 (폐지)

○ 기정



○ 변경



영등포구고시 제2020 - 19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610번지 외 1필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결정취지

-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지하부와 인접건물(신길동 3608 소재 신풍역세권 청년주택) 지하층을 연결하는 연결통로를 개설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주민 보행 편의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도로)로 결정(중복 및 입체적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2	1	9 ~9.7	특수 도로	4.5	신길동 3616 (신풍역)	신길동 3610	지하도로 (지하층 연결로)	-	중복(대로3-28호선) 및 입체적 결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	소로2-1	◦ 지하도로 신설 - 폭원 : 9~9.7m - 연장 : 4.5m	◦ 7호선 신풍역과 인접 건물을 연결하는 지하도로(지하층연결로) 설치를 통해 건물 이용자들의 보행편의를 도모하고, 주변지역 차량 및 보행 통행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도로) 입체적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소로2-1	도로 (지하 도로)	신길동 3601번지	길이	-	증) 1.4m	1.4m	-	지하층 연결로 내 사유지
				폭	-	증) 9m	9m		
				높이 (해수면 기준)	-	증) 3.15~10.838	3.15~10.838		

-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 입체적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1	도로 (지하도로)	◦ 소로2-1 일부구간 입체적 결정	◦ 사유지 내 지하도로(지하층연결로) 부분에 대하여 입체적 결정을 통한 합리적 토지이용 도모

3.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공보에 고시를 하기 위한 도면으로써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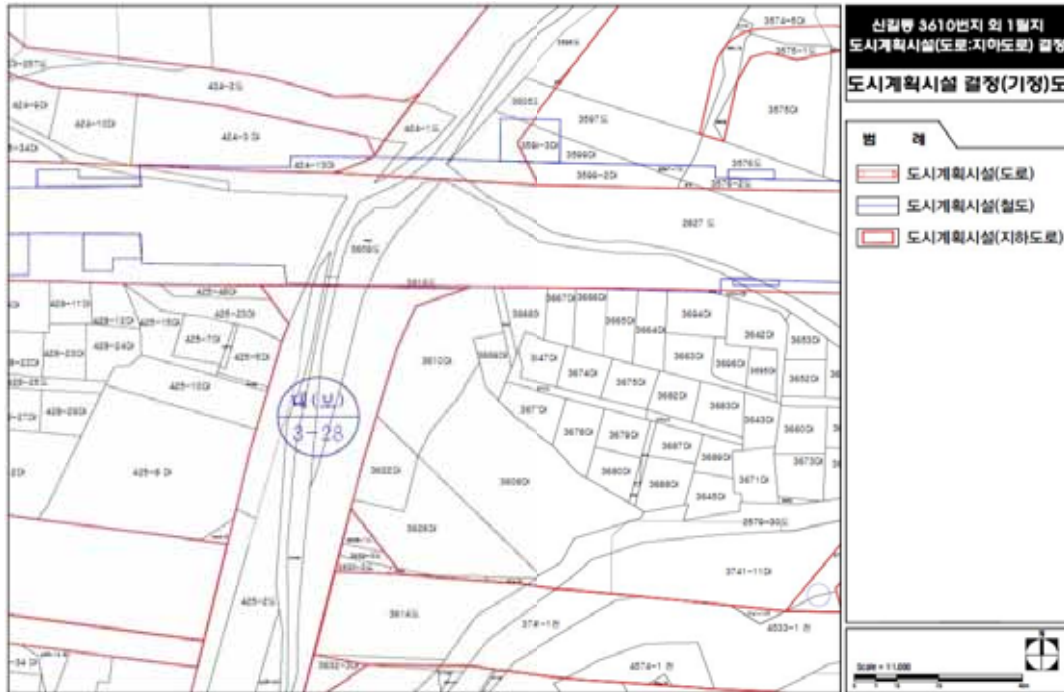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 도시계획과(☎2670-3539)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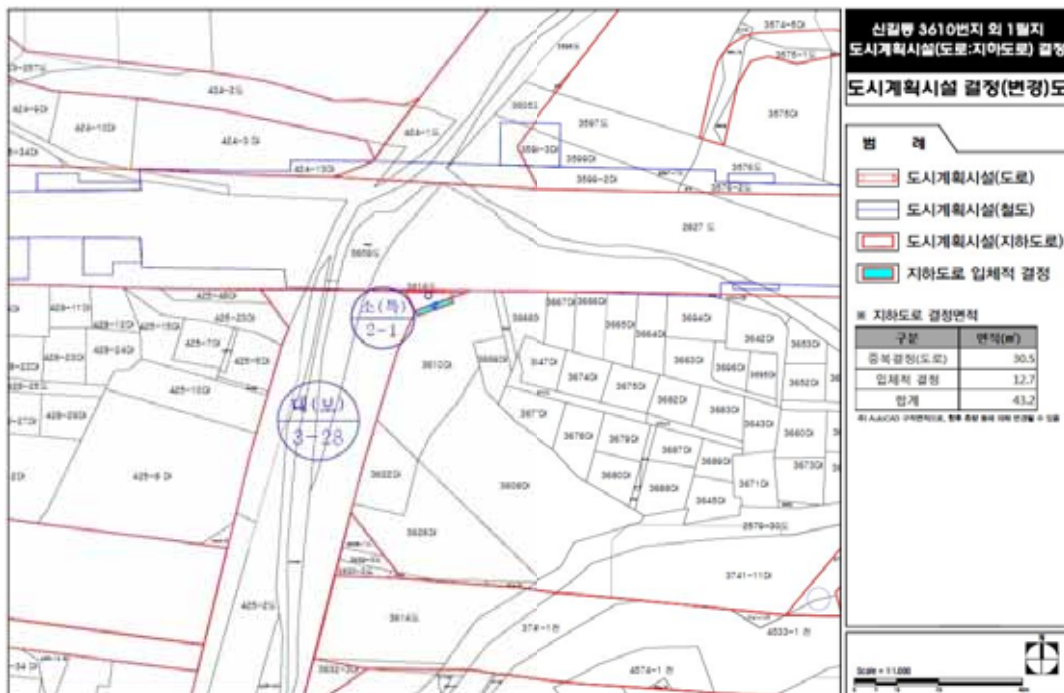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시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예정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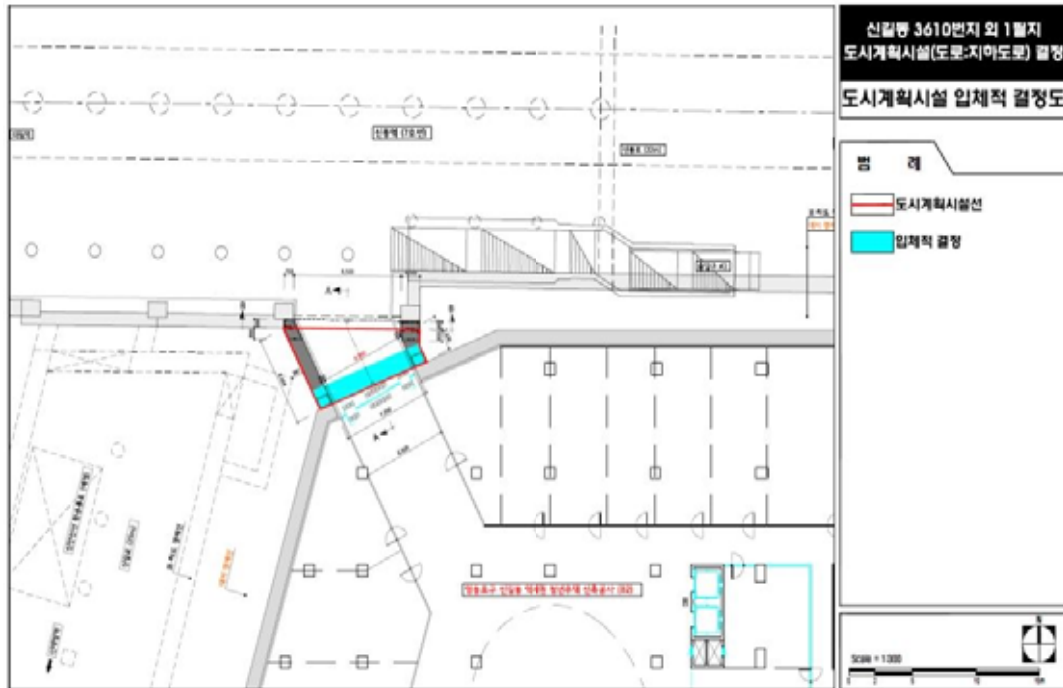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도로) 결정(기정)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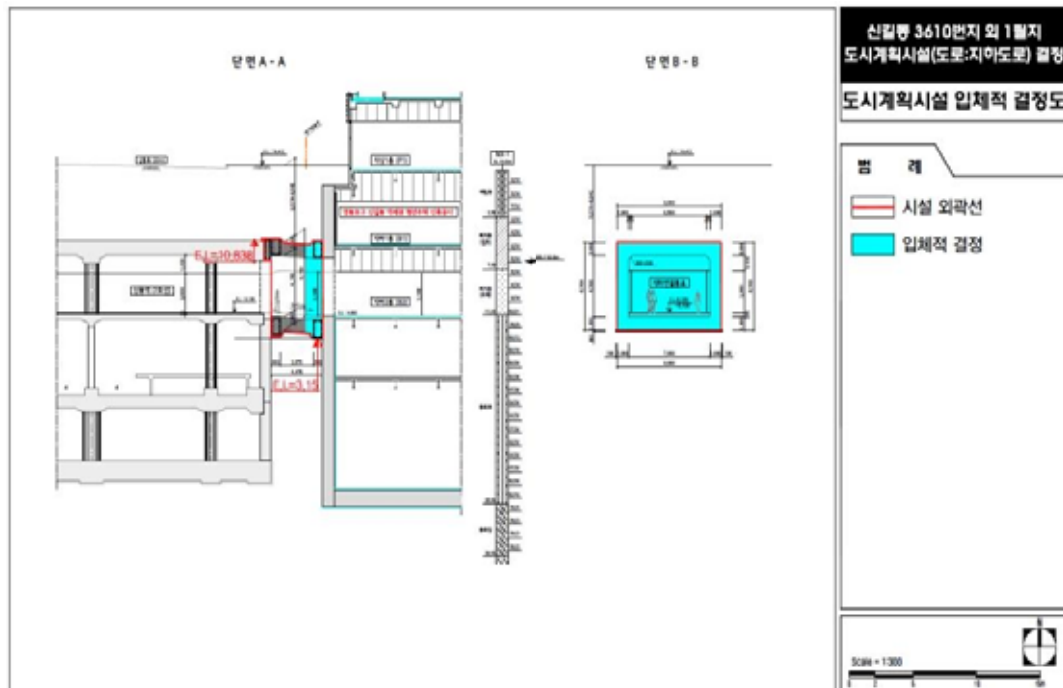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도로) 결정(변경)도(안)



○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입체적 결정도(평면도)



○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입체적 결정도(단면도)



동작구고시 제2020 - 154호
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9호(2017. 7. 13.)로 변경(재정비) 고시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105호(2020. 7. 9.)로 (변경)결정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동 작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진입도로 보상계획」(구청장 방침 제217호, '20.9.21.)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지 내 도시계획도로(소로 3-270)의 지상 건축물(상도동 373-34호) 저촉부분 제척으로 인한 도로 일부구간 선형 변경하기 위함.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3	270	7~9 (7~9)	국지 도로	172 (172)	상도동 179-2	상도동 170-13	보행자 우선도로	-	서고시 제44호 (‘71.6.4)	일부구간 선형변경

주)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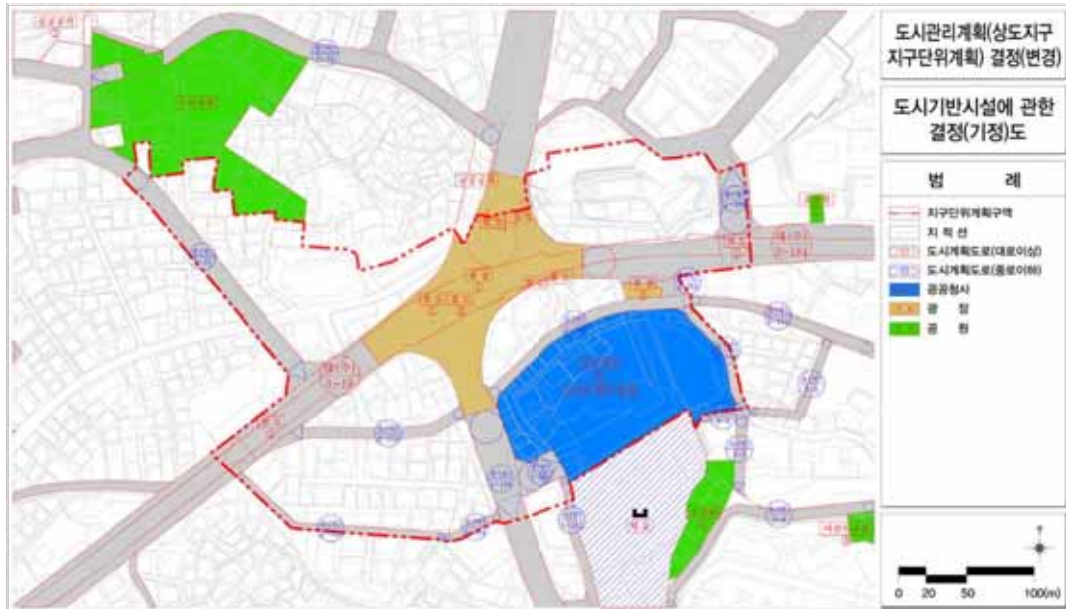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270	소로 3-270	· 일부구간 선형변경	· 건축물 저촉부분 제척에 따른 일부구간 선형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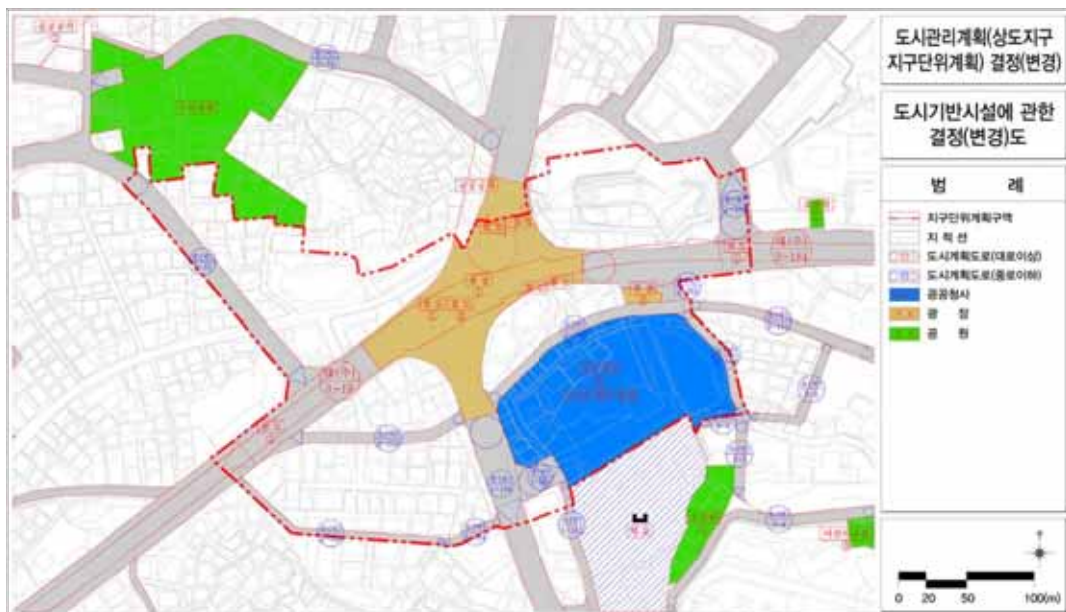
※ 상기 시설 외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교통시설 변경없음

3. 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기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 변경내용 없음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동작구 도시계획과(☎820-959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동작구고시 제2020 - 155호

도시관리계획(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5호(2015.10.29.) 결정(변경) 고시된 「사당·이수 지구 단위계획(재정비)」 및 동작구고시 제2018-86호(2018.10.25.), 「특별계획가능구역(동작대로변2, 동작대로변4)의 효력 기간 연장(2년)」의 효력기간 만료(2020.10.29.)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동 작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5호(2015.10.29.) 결정(변경) 고시된 「사당·이수 지구 단위계획(재정비)」 및 동작구고시 제2018-86호(2018.10.25.), 「특별계획가능구역(동작대로변2, 동작대로변4)의 효력 기간 연장(2년)」의 효력기간만료(2020.10.29.)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가.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최종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효력 기간 만료	㉔	동작대로변2 특별계획가능구역	동작구 사당동 1030-1번지 일대	4,252	감)4,252	-	2015.10.29 (서고2015-335)	효력기간 (2020.10.29.) 만료로 자동해제
효력 기간 만료	㉕	동작대로변4 특별계획가능구역	동작구 사당동 1008-1번지 일대	7,095	감)7,095	-	2015.10.29 (서고2015-335)	효력기간 (2020.10.29.) 만료로 자동해제

2)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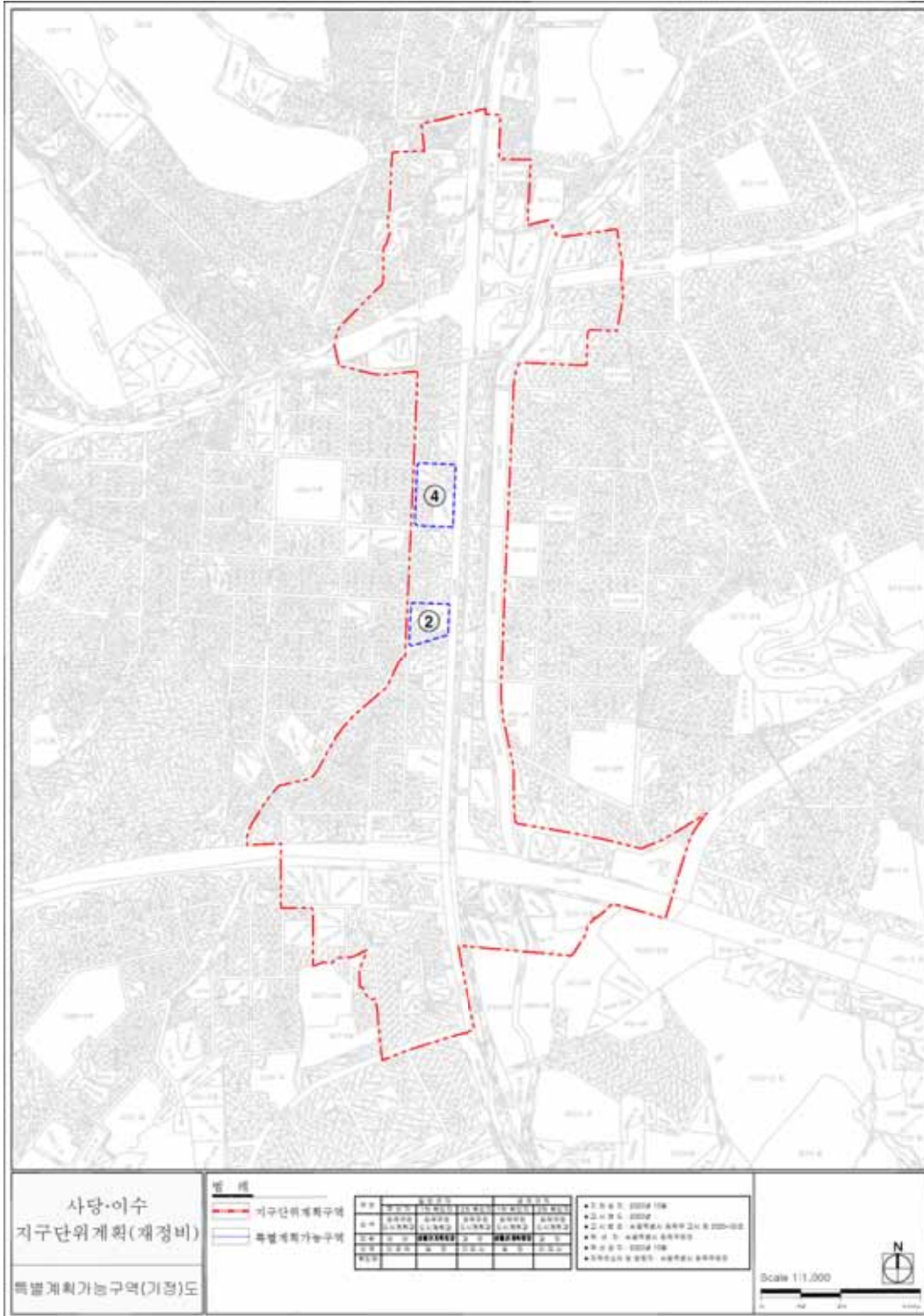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변경사유
효력 기간 만료	②	동작대로변2 특별계획가능구역	동작구 사당동 1030-1번지 일대	4,252	•특별계획(가능)구역 효력기간(2020.10.29.) 만료로 자동해제
효력 기간 만료	④	동작대로변4 특별계획가능구역	동작구 사당동 1008-1번지 일대	7,095	•특별계획(가능)구역 효력기간(2020.10.29.) 만료로 자동해제

3. 관계도면 :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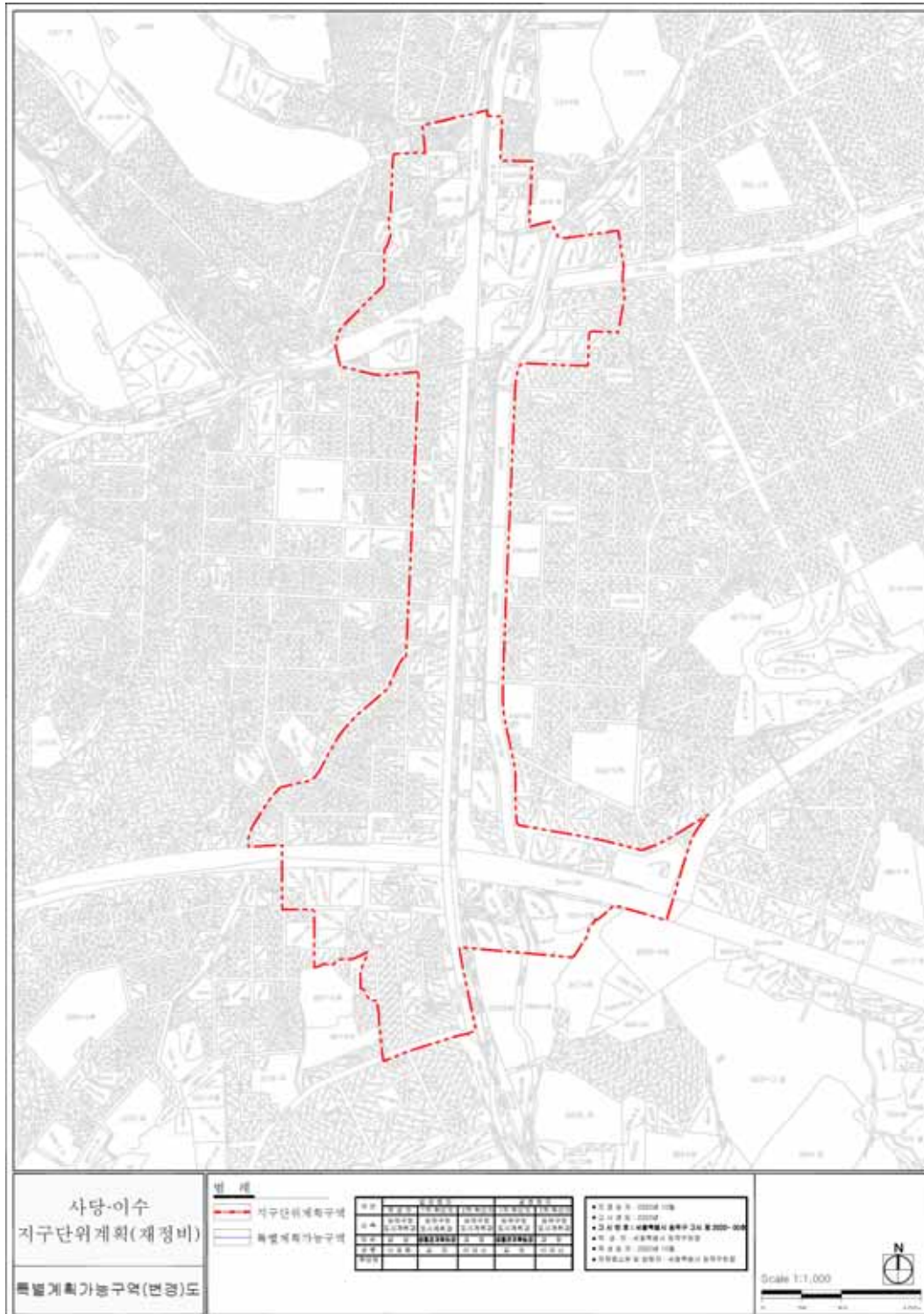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동작구 도시계획과(☎820-9666)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도



■ 특별계획가능구역 변경도



관악구고시 제2020 - 18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4호(1968.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44호(1997.2.17) 및 관악구고시 제17호(1997.2.27)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관악구 공고 제155호(1997.8.5)로 공람공고, 관악구고시 제1997-67호(1997.9.10)로 실시계획인가 및 관악구고시 제2016-93호(2016.10.20)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관악산도시자연 공원조성(낙성대지구)”에 대하여 사업기간 변경(연기)으로 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 97조, 제99조,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 기존 사업계획의 변경이 없어 이미 통지한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 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234-1 일대 등 30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칭 :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낙성대지구”

다. 사업개요

- 1) 내용 : 과학전시관 건립
- 2) 면적 : 부지면적 57,532㎡, 건축면적 10,191㎡, 연면적 28,166㎡
- 3) 규모 : 전시동, 연구동, 온실 천문대 등(지하2층, 지상3층)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28)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 당초 : 1997.9.10 ~ 2020.10.31
- 2) 변경 : 1997.9.10 ~ 2024.10.31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아. 공고방법 : 서울시보 게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사 업 명 : 도시계획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 “낙성대지구”) - 과학전시관 건립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공유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30필지		58,507	57,532							
1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34-1	전	19,076	18,852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시 종로구 송원길 48				
2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31-2	전	7,235	6,977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시 종로구 송원길 48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구분지상권	
3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32-3	답	67	67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34-2	잡종지	172	172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시 종로구 송원길 48				
5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37-2	답	215	215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시 종로구 송원길 48				
6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37-3	답	1,858	1,858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시 종로구 송원길 48				
7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38	임야	886	886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시 종로구 송원길 48				
8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39-15	학교용지	115	115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시 종로구 송원길 48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공유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49-1	잡종지	195	195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시 종로구 송원길 48				
10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49-3	대	185	185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시 종로구 송원길 48				
11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49-7	대	10	10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시 종로구 송원길 48				
12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49-8	잡종지	119	119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시 종로구 송원길 48				
13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50	대	102	102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시 종로구 송원길 48				
14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51	잡종지	225	225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시 종로구 송원길 48				
15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52-2	대	26	26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시 종로구 송원길 48				
16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738-348	하천	10	10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7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738-349	하천	820	327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8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738-350	하천	44	44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공유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9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738-351	하천	24	24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0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738-352	하천	53	5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1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738-353	하천	1,034	1,034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2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738-52	하천	7,405	7,405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23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760-1	대	3	3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시 종로구 송원길 48				
24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761	대	97	97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시 종로구 송원길 48				
25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762	도로	132	13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6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763	도로	48	48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7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산35-5	임야	17,609	17,609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시 종로구 송원길 48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구분지상권	
28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산4-11	구거	313	31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공유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9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산48-7	임야	318	318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시 종로구 송원길 48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구분 지상권	
30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산8-19	임야	111	111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시 종로구 송원길 48				

강남구고시 제2020 - 169호

도시계획시설사업(봉은역사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6호(2009.5.2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근린→역사),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74호(2020.2.27.)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봉은역사공원)에 대하여 강남구 고시 제2016-57호(2016. 5.4.)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봉은역사공원) 사업시행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분할시행)·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3243-624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0월 29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자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 명 칭 : 봉은역사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공원면적 75,405㎡ 중 204.98㎡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대표 주지 원명(김종민)]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명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사용(사업)부지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	종	204.98㎡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531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구 공 고

용산구공고 제2020 - 111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8호(2006.10.2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0호(2020.1.16.)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되어,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0-99호(2020.6.11.)로 실시계획 고시한 ‘이봉창 역사공원(가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공원) 조성 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286-7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 사업
- 명칭 : 이봉창 역사공원(가칭)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역사공원 조성 484.4㎡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7층 공원녹지과)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20.12.31일까지

바. 관계도서 비치 : 용산구청 공원녹지과(☎02-2199-759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공고 제2020 - 12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99(2017. 11. 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58(2018. 8. 16.)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금호로 확장공사 (금호동1가 506-3 ~ 526)」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9일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506-3 ~ 526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칭: 금호로 확장공사(금호동1가 506-3 ~ 526)

다. 사업의규모(변경없음): 도로확장 폭15m→20m, 연장 70m

라. 사업시행자(변경없음): 서울특별시청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0. 12. 31.까지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1. 6. 30.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생략(변경없음)

사.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아.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83)
- 서울특별시 성동구 토목과(02-2286-5766)

노원구공고 제2020 - 1117호

도시관리계획(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노원구고시 제2019-4호(2019.01.10.)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을 폐지한 토지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열람합니다.
2.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열람하오니 본 도시관리계획(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9일

노 원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관리과(☎2116-3866)

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계획의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 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계 획	면 적(m ²)	
변경	-	330-35	규 제	247	○ 공동개발 신설
		335-24			
		372-1			

※상기 외 다른 사항 변경없음.

라. 관계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끝.

서대문구공고 제2020 - 1156호

충정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 열람 ·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79호(1998.03.13.)로 충정지구단위구역(상세계획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78호(2002.05.10.)로 구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50호(2008.09.11.)로 충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된 「충정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충정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을 마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 ·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20. 10. 29. ~ 11. 13.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5일간)

나. 열람장소 : 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330-1937) 및 충현동 주민센터

다. 열람사유 : 서대문구 미근동 21번지 일대 충정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

라. 열람내용 :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

마. 기타사항

-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 및 팩스(02 330-1636 도시관리과), 우편으로 송부가 가능하며, 우편의 경우 열람기간 내 날인된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함을 안내드립니다. 끝.

I.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충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 미근동 21번지 일원	24,230	감)120	24,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78호 (2002.05.10.)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변경	-	서대문구 미근동 21번지 일원	24,110	•미근동 209번지 경찰청 소유 (제척으로 인한 면적 감소 120㎡)

II. 도시 관리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합 계		24,230	감)120	24,110	100.0	-
주거지역	소계	16,784		16,784	69.6	-
	제3종일반주거지역	7,384	-	7,384	30.6	-
	준주거지역	9,400	-	9,400	39.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7,446	감)120	7,326	30.4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	서대문구 미근동 21번지 일원	일반상업지역 7,446→7,326㎡으로 120㎡감소	미근동 209번지 경찰청소유 (제적으로 인한 면적감소 120㎡)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방화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면 적(㎡)	연장(m)	폭원(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방화지구	방화지구	통일로변	12,720 (588)	- (49)	12	건고시 제727호 (63.12.13.)	-
기정	-	방화지구	방화지구	충정로변	58,080 (1,371)	- (114)	12	건고시 제727호 (63.12.13.)	-

※ 주 () ; 구역 내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

가. 도 로

■ 도로 결정 총괄조서(변경없음)

유별	규 모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3	496	4,791.5	-	-	-	2	386	4,263.0	1	110	528.5
중로	1	142	2,320.0	-	-	-	1	142	2,320.0	-	-	-
소로	2	354	2,471.5	-	-	-	1	244	1,943.0	1	110	528.5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142	충정로 (구역 내)	의주로 (구역 내)	일반 도로	-	건고시 제177호 (1962.12.8.)	-
기정	소로	2	1	8	집산도로	244	미근동 20-1	미근동 99-1	일반 도로	-	서고시 제178호 (2002.5.10.)	-
기정	소로	3	1	4	집산도로	110	미근동 96-1	소 2-1	일반 도로	-	서고시 제178호 (2002.5.10.)	-

2) 도시기반시설

가.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공지	미근동 157-9번지 일원	291.1	-	291.1	서고시 제178호 (2002.5.10.)	특별계획구역①,②에서 확보(기부채납)
기정	②	공공공지	미근동 157-10번지 일원	487.4	-	487.4	서고시 제178호 (2002.5.10.)	
기정	③	공공공지	미근동 22-3번지	113.0	-	113.0	서고시 제178호 (2002.5.10.)	특별계획구역③에서 확보(기부채납)

3. 친환경 및 방재안전에 관한 결정조서

■ 친환경 및 방재안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적용구역	규제기준	비고
신설	-	방화지구 통일로변 588㎡ 충정로변 1,371㎡	•건축규제 ①주요구조 및 외벽: 내화구조 ②마감재 등 - 외벽 및 처마면, 지붕 등 불연재료로 사용	-

III.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구		용도별 구분	위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A	-	A1	도면참조	2,442.3	2,442.3	특별계획구역①
		A2	도면참조	6,088.2	6,088.2	특별계획구역②
		A3	도면참조	7,522.8	7,522.8	특별계획구역③
B	-	B1	도면참조	870.0	1,645.0	-
		B2	도면참조	703.9	1,038.1	-
		B3	도면참조	1,013.9	-	-
C	-	C	도면참조	2,143.7	-	-
		C1	도면참조	-	1,281.6	-
		C2	도면참조	-	737.8	-

2)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가 구	면 적 (㎡)	변 경 사 유
-	B1	1,645.0	가구 B1+B2 ⇒ B1 가구 B3 ⇒ B2 로 변경됨 가구 합계 2,587.8㎡ → 2,683.1㎡ ; 대장 면적 오기 정정
-	B2	1,038.1	
-	B3	-	
-	C1	1,281.6	가구 C ⇒ C1+C2로 분할됨 ※미근동 209번지 경찰청 소유 (면적 제척으로 면적 감소 120㎡) 미근동 94-1 61.2㎡ → 66.1㎡ ;대장면적 오기 정정
-	C2	737.8	

가.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기정)조서

구 분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편입면적 (㎡)	
A	16,053.3	미근동 20-1	38.0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20-2	119.1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①)
		미근동 20	1,483.2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①)
		미근동 21-1	4,224.8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②)
		미근동 21-4	13.2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②)
		미근동 22-1	72.0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22-3	72.4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22-4	9.9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22-5	10.2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22-6	17.2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23-1	36.4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23-2	105.8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24-1	43.0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24-3	35.7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24-4	5.3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25-1	14.2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25-2	43.6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25-4	30.7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25-5	53.6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26	49.6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34	76.0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35-1	23.1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35-2	11.5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35-3	7.4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35	56.2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36-4	31.0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0-1	136.5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0-2	62.8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0-3	69.4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0-4	92.6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0-5	59.5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0-6	62.8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0-7	62.8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가.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기정)조서

구 분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편입면적 (㎡)	
A	16,053.3	미근동 60-8	66.1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0-9	52.9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0-10	69.4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0-11	79.3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0-12	66.1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0-13	72.7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0-15	52.9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0-16	3.3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0-17	56.2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0-18	36.3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0-19	116.7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0-20	85.6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0-22	76.7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0-24	37.1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0-27	81.0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0-29	16.0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0-31	12.6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0-32	2.3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0-37	4.0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0-40	5.1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0-42	24.3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0-43	12.1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1-1	75.3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2-3	7.2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3-1	46.9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4	36.4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5-6	126.3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5	11.2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6-1	286.9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6-4	54.2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6-5	121.3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6-6	140.5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6-7	3.0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6-8	73.0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6-9	20.8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7-1	142.2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8-1	46.3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68-2	43.0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가.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기정)조서

구 분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편입면적 (㎡)	
A	16,053.3	미근동	69	159.0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71	102.5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72-1	401.6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72-2	89.3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72-3	374.9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72-4	261.5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72-6	183.2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72-7	59.5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72-8	155.4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72-9	191.0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73-1	33.1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73-2	33.1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74-3	76.0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74-4	79.3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75-1	31.7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75-2	55.5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75-3	4.6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75-4	14.6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75-5	47.9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75-6	23.8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79-1	89.0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98-1	403.0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98-4	155.7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98-5	48.9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99-1	38.4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99-3	31.1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100-4	25.4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100-5	32.0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100-6	3.6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101	158.7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102-1	94.5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102-3	61.8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103	72.7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104	59.5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105-1	132.2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105-3	18.8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117-35	67.6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③)
		미근동	157	691.3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①)
		미근동	157-9	99.9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①)
		미근동	157-10	1,899.0	공동개발 규제(특별계획구역②)

가.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기정)조서

구 분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편입면적 (㎡)	
B	2,587.8	미근동	27	95.9	공동개발 규제 31-9, 31-10
		미근동	31-2	118.0	공동개발 규제 177
		미근동	31-3	135.0	공동개발 권장 31-6
		미근동	31-4	22.0	-
		미근동	31-6	66.1	공동개발 권장 31-3
		미근동	31-7	49.6	공동개발 규제 31-8
		미근동	31-8	82.6	공동개발 규제 31-7 공동개발 권장 31-4
		미근동	31-9	102.5	공동개발 규제 27, 31-10
		미근동	31-10	86.0	공동개발 규제 27, 31-9
		미근동	31-11	92.0	공동개발 권장 31-4
		미근동	31-12	110.0	공동개발 권장 31-13
		미근동	31-13	134.0	공동개발 권장 31-12
		미근동	31-14	239.3	-
		미근동	177	6.6	공동개발 권장 31-2
		미근동	178	0.7	공동개발 규제 181
		미근동	179	51.1	공동개발 규제 180
		미근동	180	67.6	공동개발 규제 179, 181, 182 공동개발 권장 31-2
		미근동	181	21.3	공동개발 규제 178, 180, 188
		미근동	182	13.2	공동개발 규제 180
		미근동	186	224.7	공동개발 권장 190
		미근동	188	4.6	공동개발 규제 181, 189
		미근동	189	3.2	공동개발 규제 188
		미근동	190	278.1	공동개발 권장 186, 192
		미근동	192	113.9	공동개발 규제 193, 194 공동개발 권장 190
		미근동	193	41.0	공동개발 규제 192, 194
		미근동	194	55.9	공동개발 규제 192, 193
		미근동	196	154.7	공동개발 규제 197, 198
		미근동	197	34.7	공동개발 규제 196
		미근동	198	158.4	공동개발 규제 196, 202
		미근동	202	1.3	공동개발 규제 198, 203
		미근동	203	10.9	공동개발 규제 202, 205
		미근동	204	7.9	공동개발 규제 205
		미근동	205	5.0	공동개발 규제 203, 204

가.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기정)조서

구 분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편입면적 (㎡)	
C	2,114	미근동	72-5	62.9	공동개발 권장 72-6
		미근동	72-6	15.0	공동개발 규제 74-1, 권장 72-5
		미근동	74-1	236.7	공동개발 규제 72-6
		미근동	76-1	155.0	공동개발 권장 77, 78
		미근동	76-2	40.0	공동개발 규제 79
		미근동	77	47.5	공동개발 권장 76-1, 78
		미근동	78	141.3	공동개발 권장 76-1, 77
		미근동	79	113.0	공동개발 규제 76-2
		미근동	80	168.6	공동개발 권장 82-1
		미근동	81	78.4	공동개발 권장 82-2
		미근동	82-1	30.2	공동개발 권장 80
		미근동	82-2	73.8	공동개발 권장 81, 82-3
		미근동	82-3	100.9	공동개발 권장 82-2
		미근동	83-3	1.1	공동개발 권장 210
		미근동	90-2	72.6	-
		미근동	90-4	68.5	공동개발 권장 90-14
		미근동	90-5	40.3	공동개발 규제 90-6, 90-8
		미근동	90-6	55.6	공동개발 규제 90-5, 90-9
		미근동	90-8	39.7	공동개발 규제 90-5, 90-9
		미근동	90-9	29.8	공동개발 규제 90-6, 90-8
		미근동	90-14	86.5	공동개발 권장 90-4
		미근동	91	149.4	-
		미근동	93-1	76.0	공동개발 규제 94-1
		미근동	94-1	64.2	공동개발 규제 93-1
		미근동	95-1	26.1	공동개발 규제 95-2, 95-3
		미근동	95-2	1.7	공동개발 규제 95-1, 96-1
		미근동	95-3	83.0	공동개발 규제 95-1, 95-4
		미근동	95-4	0.4	공동개발 규제 95-3, 96-7
		미근동	96-1	30.2	공동개발 규제 95-2, 96-7
		미근동	96-7	15.6	공동개발 규제 95-4, 96-1
		미근동	210	39.7	공동개발 권장 83-3

나.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	획지		공동개발 권장 및 지정	비 고
			위치	편입면적 (㎡)		
A	1	2,442.3	충정로2가	157	691.3	특별 계획 구역 ①
			충정로2가	157-9	99.9	
			충정로2가	157-11	0.7	
			충정로2가	157-12	1.8	
			미군동	20	1,483.2	
			미군동	20-2	119.1	
			미군동	21-4	13.2	
	2	6,088.2	미군동	21-5	18.8	특별 계획 구역 ②
			미군동	21-6	14.3	
			충정로2가	157-10	1,197.2	
			충정로2가	157-13	211.1	
			충정로2가	157-14	488.2	
			미군동	21-1	3,916.9	
	3	7,522.8	미군동	21-7	9.3	특별 계획 구역 ③
			미군동	21-8	265.5	
			미군동	22-1	72.0	
			미군동	22-3	72.4	
			미군동	22-4	9.9	
			미군동	22-5	10.2	
			미군동	22-6	17.2	
			미군동	23-1	36.4	
			미군동	23-2	105.8	
			미군동	24-1	43.0	
			미군동	24-3	35.7	
			미군동	24-4	5.3	
			미군동	25-1	14.2	
			미군동	25-2	43.6	
			미군동	25-4	21.4	
			미군동	25-5	53.6	
			미군동	25-6	5.0	
			미군동	25-7	4.3	
			미군동	26	49.6	
			미군동	34	76.0	
			미군동	35	56.2	
			미군동	35-1	26.6	
			미군동	35-2	11.5	
			미군동	35-3	7.4	
			미군동	36-4	30.1	
			미군동	60-1	136.5	
			미군동	60-2	62.8	
			미군동	60-3	69.4	
			미군동	60-4	92.6	
			미군동	60-5	59.5	

나.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	획지			공동개발 권장 및 지정	비 고
			위치		편입면적 (㎡)		
A	3	7,522.8	미군통	60-6	62.8		특별 계획 구역 ③
			미군통	60-7	62.8		
			미군통	60-8	66.1		
			미군통	60-9	52.9		
			미군통	60-10	69.4		
			미군통	60-11	79.3		
			미군통	60-12	66.1		
			미군통	60-13	72.7		
			미군통	60-15	52.9		
			미군통	60-16	3.3		
			미군통	60-17	56.2		
			미군통	60-18	36.3		
			미군통	60-19	122.5		
			미군통	60-20	85.6		
			미군통	60-22	76.7		
			미군통	60-24	37.1		
			미군통	60-27	83.0		
			미군통	60-29	20.0		
			미군통	60-31	12.6		
			미군통	60-32	2.3		
			미군통	60-37	4.0		
			미군통	60-40	5.1		
			미군통	60-41	1.4		
			미군통	60-42	24.3		
			미군통	60-43	12.1		
			미군통	61-1	75.3		
			미군통	62-3	0.0		
			미군통	62-5	1.4		
			미군통	63-1	46.9		
			미군통	64	36.4		
			미군통	65	11.2		
			미군통	65-5	0.3		
			미군통	65-6	126.3		
			미군통	66-4	54.2		
			미군통	66-5	121.3		
			미군통	66-6	129.4		
			미군통	66-7	3.0		
			미군통	66-8	70.7		
			미군통	66-9	20.8		
			미군통	67-1	142.2		
			미군통	68-1	46.3		
			미군통	68-2	43.0		
			미군통	69	159.0		
			미군통	71	102.5		
			미군통	72-1	401.6		

나.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	획지			공동개발 권장 및 지정	비 고
			위치		편입면적 (㎡)		
A	3	7,522.8	미근동	72-2	244.7		특별 계획 구역 ③
			미근동	72-3	574.9		
			미근동	72-4	261.5		
			미근동	72-6	201.7		
			미근동	72-7	59.5		
			미근동	72-9	194.0		
			미근동	73-1	33.1		
			미근동	73-2	33.1		
			미근동	74-3	76.0		
			미근동	74-4	79.3		
			미근동	75-1	31.7		
			미근동	75-2	55.5		
			미근동	75-3	4.6		
			미근동	75-4	14.6		
			미근동	75-5	47.9		
			미근동	75-6	23.8		
			미근동	79-1	179.2		
			미근동	98-1	403.0		
			미근동	98-4	155.7		
			미근동	98-5	48.9		
			미근동	99-1	38.4		
			미근동	99-3	31.1		
			미근동	100-4	25.4		
			미근동	100-5	32.0		
			미근동	100-6	3.6		
			미근동	100-7	16.4		
			미근동	101	158.7		
			미근동	102-1	94.5		
			미근동	102-3	61.8		
			미근동	103	72.7		
			미근동	104	59.5		
			미근동	105-1	132.2		
			미근동	105-3	18.8		
			미근동	117-35	67.6		

나.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	획지			공동개발 권장 및 지정	비 고	
			위치		편입면적 (㎡)			
B	1	1,645.0	미근동	31-2	122.0	공동개발 권장 : 31-2⊕117⊖(178⊕179)⊖179-1	-	
			미근동	31-3	148.7	공동개발 권장 : 31-3⊖31-6		
			미근동	31-6	66.1			
			미근동	177	6.6			
			미근동	178	0.7	공동개발 지정 : 178⊕179		
			미근동	179	183.1			
			미근동	179-1	6.3			
			미근동	186	228.2			
			미근동	190	281.6			
			미근동	192	128.9	공동개발 지정 : 192-2⊕193 공동개발 권장 : 192⊖(192-2⊕193)⊖194		
			미근동	192-2	1.0			
			미근동	193	43.0			
			미근동	194	55.9			
			미근동	196	154.7	공동개발 지정 : 196⊕197⊕198⊕202⊕203⊕204⊕205⊕206-4		
			미근동	197	34.7			
			미근동	198	158.4			
			미근동	202	1.3			
			미근동	203	10.9			
			미근동	204	7.9			
			미근동	205	5.0			
	2	1,038.1	미근동	27	95.9	공동개발 권장 : 27⊖(31-9⊕31-10⊕31-8⊕31-20)⊖31-7⊖31-11	-	
			미근동	31-7	49.6	공동개발 권장 : 27⊖(31-9⊕31-10⊕31-8⊕31-20)⊖31-7⊖31-11 공동개발 지정 : 31-9⊕31-10⊕31-8⊕31-20		
			미근동	31-8	82.6			
			미근동	31-9	102.5			
			미근동	31-10	86.0			
			미근동	31-11	99.2	공동개발 권장 : 31-14⊖31-13⊖31-12		
			미근동	31-12	116.0			
			미근동	31-13	148.1			
			미근동	31-14	239.3			
			미근동	31-20	18.9			

면적변경사유: 미근동 31-4 도로필지 제외, 미근동 31-8, 31-11, 31-12, 31-13, 31-14 대장면적 오기로 인한 편입면적 정정, 미근동 31-20 대지필지 편입

나.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	획지		공동개발 권장 및 지정	비 고
			위치	편입면적 (㎡)		
C	1	1,281.6	미근동	72-5	40.5	-
			미근동	74-1	229.0	
			미근동	76-1	156.4	
			미근동	76-2	48.6	
			미근동	77	27.3	
			미근동	78	120.0	
			미근동	79	125.6	
			미근동	80	159.5	
			미근동	81	47.2	
			미근동	82-1	36.0	
			미근동	82-2	49.8	
			미근동	82-3	81.3	
			미근동	95-1	4.5	
			미근동	95-2	2.6	
			미근동	95-3	91.9	
			미근동	95-4	1.0	
			미근동	96-1	4.5	
			미근동	96-7	16.2	
			미근동	210	39.7	
	2	737.8	미근동	90-2	82.6	-
			미근동	90-4	75.0	
			미근동	90-5	56.2	
			미근동	90-6	62.8	
			미근동	90-8	39.7	
			미근동	90-9	29.8	
			미근동	90-14	100.2	
			미근동	91	149.4	
			미근동	93-1	76.0	
			미근동	94-1	66.1	

면적변경사유: 미근동 74-6 A3 가구 편입, 미근동 83-3 도로필지 제외, 미근동 94-1 대장면적
오기로 인한 편입면적 정정 및 미근동 209필지 제척(감소면적 : 120㎡)

3) 최대개발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공동개발 최대개발규모(㎡)		비 고
용도지역	위 치		기정	변경	
일반상업지역	(기정) 의주로변	전면부	2,000	1,000	전면부 최대개발 규모 필지면적 928㎡
	→ (변경) 통일로변	이면부	1,200	800	이면부 최대개발 규모 필지면적 702㎡
	이면도로변 (충정로6길 포함)		650	800	이면부 최대개발 규모 필지면적 744㎡

4) 최대개발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표시	위 치	변경사유
-	통일로 전면부, 이면부 충정로6길 이면부	일반상업지역의 기개발지를 제외한 최대개발가능규모에 따른 면적으로 변경됨

2.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불 허 용 도		비 고
		기 정	변 경	
일반상업지역	전층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위락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ATM기 제외-※단 1층에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ATM기 제외-※단 1층에 한함), 자 동차영업소,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위락시설 / 창고시설 / 발전시설 / 장례시설	-
준주거지역 (특별계획구역 ①, ②)	전층	• 안마시술소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ATM기 제외-※단 1층에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ATM기 제외-※단 1층에 한함), 자 동차영업소,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종교시설, 판매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관광휴 게시설	-
제3종일반 주거지역 (특별계획구역 ③)	전층	-	• 해당용도지역의 불허용도 준수	-

※ 학교정화구역에 포함될시 교육청과 별도협의

※ 구역전체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불허한다. 체인점 형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을 포함하는 체인점, 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배제)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이전 지구단위구역 내 주소지를 둔 본점의 경우 제외됨

2)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권 장 용 도		비 고
		기 정	변 경	
권장용도1 (특별계획 구역①)	전층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른 권장 용도	-
권장용도2 (특별계획 구역②)	전층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른 권장 용도	-
권장용도3 (특별계획 구역③)	전층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른 권장 용도	-
권장용도4 (일반상업 지역)	전층	-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의원, 한의원, 업 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예능·직업기술·기예 분 야), 도서관 •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센 터 등), 사회복지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저층 (1~2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가로활성화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소매점, 아·미 용원, 판매시설 •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
권장용도5 (일반상업 지역)	전층	-	-	-
	저층 (1~2층)	• 근린생활시설	-	

3.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적용지역	건폐율(%)	비 고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준주거지역	60%이하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0%이하	

2)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 용적률 결정(기정)조서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고
일반상업지역	500%	600%	4대문 안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기정 준주거지역 포함)	300%	360%	특별계획구역①,②
일반주거지역 → 3종일반주거지역	220%	250%	특별계획구역③

주) 준주거지역에서의 허용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3. 6. 30까지는 400%이하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허용용적률은 433% 범위 내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함.

주)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동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한다.

■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구 분	용 적 률		
	기 준	허 용	상 한
준주거지역(특별계획구역①,②)	300%	360%	400% 이내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함
제3종일반주거지역(특별계획구역③)	210%	230%	
일반상업지역	500%	600%	

※ 제3종일반주거(특별계획구역③)의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 따른 용적률 기준준수 : (1-4-4) (주택재개발 사업 미지정시 기정 도시계획 용적률 및 건폐율 준용)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변경 시 변경된 조례를 따른다.

3)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 높이계획 결정(변경)조서

- 특별계획구역①,②는 기정계획 반영하여 변경없음
- 일반상업지역(통일로변)은 평균높이 시뮬레이션을 반영한 40m이하 높이로 계획
- 일반상업지역(충정로6길변)은 평균높이 시뮬레이션을 반영한 높이계획
- 특별계획구역③의 경우 인근 초등학교의 일조권 등을 고려하여 55m이하로 높이계획

구 분	적용지역	높 이 계 획		비 고
		기 정	변 경	
최고높이	특별계획구역①,②	65m (17층 이하)	65m (17층 이하)	기정계획 반영
	제3종일반주거지역 (특별계획구역③)	55m이하	55m이하	미동초등학교의 일조권 등을 고려하여 계획
	통일로변 (북측 상업지역 및 미관도로변)	-	40m이하	
	이면부 및 충정로6길 (C1)	-	30m이하	
	이면부 및 충정로6길 (C2)	-	40m이하	

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결정(변경)조서

- 특별계획구역①,②의 경우 기존 결정에 따라 계획유지
- 일반상업지역 통일로 이면부 1.5m 및 충정로6길변 1~2m지정을 통해 보행자 이동통로 확보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건축한계선	특별 계획 구역 ①	8m도로변	1m	1m	
		15m도로변	1.5m	1.5m	
	특별 계획 구역 ②	8m도로변	1m	1m	
		충정로변	3m	3m	
	특별계획구역③		2m	3m	충정로6길변
	일반 상업 지역	통일로 전면부	3m	3m	
		통일로 이면부	1.5m	1.5m	
		충정로 6길변	1.5m	1m, 2m	1m(C1가구) 2m(C2가구)
벽면한계선	특별계획구역①		3m	3m	
	특별 계획 구역 ②	특별계획 구역① 연접	3m	3m	
		구역 남측	6m	6m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경	특별계획구역③	2m→3m	가로활성화를 위해 건축한계선 변경	-
	충정로6길변	1.5m→1m(C1), 2m(C2)	가구현황 및 계획에 따른 보행자 이동통로 확보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①구역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특별계획구역①	미군동 20의 6필지((주)사조산업 부지)	2,442.3㎡(739평)	-

나. 특별계획구역 지침(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토지이용			•위치 : 구역 미군동 20의 6필지 •규모 : 2,393.3㎡(724평)	-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
기반시설			•기부채납 면적 : 특별계획구역 면적의 15.5%이상 •특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및 공공공지를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도로 : 305.6㎡ - 공공공지 : 71.0㎡	-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1층 전면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
		전층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전시장,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전층 불허용도		•안마시술소 •해당 용도지역의 불허용도 준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축 시 관련 규정 준수	-
건폐율			•60%이하	-
용적률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기준용적률 - 300%이하 •허용용적률 - 360%(400%)이하 •상한용적률 -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동시행규칙부칙 제3조에 의함	-
최고높이			•65m이하(17층 이하)	-
건축한계선			•15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5m •8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0m •남측 특별계획구역② 연결 : 벽면한계선 3m(공공보행통로)	-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규모 및 형태 : 서울시 건축조례 제22조에 의한 면적 이상의 썸지형공지 •위치 : 북측 15m도로와 구역내부도로와의 결절점(위치지정)	-
차량출입금지구간			•충정로 및 북측 15m도로변으로 차량출입 금지	-
건축물의 외관 및 형태			•경관형성계획 참조	-

2) 특별계획구역②구역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특별계획구역②	미근동 21-1외 1필지(KT&G 부지)	6,088.2㎡(1,856평)	-

나. 특별계획구역 지침(변경없음)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토지이용			•위치 : 구역 미근동 21-1외 2필지 •규모 : 6,137㎡(1,856평)	-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
기반시설			•기부채납 면적 : 특별계획구역 면적의 15.5%이상 •특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및 공공공지를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도로 : 266.2㎡ - 공공공지 : 707.5㎡ - 구역 내 공공용지(국공유지) : 13.2㎡	-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1층 전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전층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학원법: 직업기술기예한함), 직업훈련소	-
	전층 불허용도		•안마사술소 •해당 용도지역의 불허용도 준수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축 시 규정 준수	-
건폐율			•60%이하	-
용적률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기준용적률 - 300%이하 •허용용적률 - 360%(400%)이하 •상한용적률 -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동시행규칙부칙 제3조에 의함	-
최고높이			•65m이하(17층 이하)	-
건축한계선			•충정로변 : 건축한계선 5m(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3m포함) •8m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북측 특별계획구역① 연접 : 벽면한계선 3m(공공보행통로) •남측 특별계획구역③ 연접 : 벽면한계선 6m(공공보행통로)	-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규모 및 형태 : 서울시 건축조례 제22조에 의한 면적 이상의 썸지형공지 •위치 : 구역 남측 특별계획구역③과 연접(위치지점)	-
차량출입금지구간			•충정로변으로 차량출입 금지	-
건축물의 외관 및 형태			•경관형성계획 참조	-

3) 특별계획구역③구역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특별계획구역③	미군동 20-1 외 103필지	7,522.8㎡(2,277평)	-

나. 특별계획구역 지침(기정)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토지이용		•위치 : 구역 미군동 20-1외 103필지 •규모 : 7,522.8㎡(2,277평)	-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기반시설		•기부채납 면적 : 특별계획구역 면적의 10.6%이상 •특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및 공공공지를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조성 후 기부채납 - 도로 : 1,416.0㎡ - 공공공지 : 113.0㎡ - 구역 내 공공공지(국공유지) : 821.4㎡	-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전층 불허용도	•해당 용도지역의 불허용도 준수(도시계획법 제53조,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61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 내지 제54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 시 관련 규정 준수(학교보건법 제6조 ①항 및 시행령 제4조 ②항)	-
건폐율		•50%이하	-
용적률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기준용적률 - 220%이하 •허용용적률 - 250%이하 •상한용적률 -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동시행규칙부칙 제3조에 의함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용적률을 적용함	-
최고높이		•55m이하, 전면도로사선제한 동시적용	-
건축한계선		•총정로6길변 : 건축한계선 5m(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3m포함)	-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규모 및 형태 : 서울시 건축조례 제22조에 의한 면적 이상의 쌈지형공지	-
차량출입금지구간		•남측 10m도로변으로 차량출입 금지	-

다. 특별계획구역 지침(변경)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토지이용		•위 치 : 구역 미근동 20-1외 103필지 •규 모 : 7,384㎡	-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가능	-																								
기반시설		•순분담율 : 특별계획구역 면적의 15%이상 •순분담면적(1,519.6㎡)=계획정비기반시설(도로728㎡+공공공지113㎡=841㎡) +기부채납환산부지면적(775.3㎡)-기반시설 내 국공유지(821.4㎡)-유상매입시설면적(0㎡) •상기 도시계획시설 제공 후 잔여 부담 기부채납을 건축물로 제공 •기부채납 용도 :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창업공간, 임대공간 등 공공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청과 협의 후 진행 •순분담율(15%)=순분담면적(1,519.6㎡)/(주거면적(6,003.2㎡)-기부채납환산부지면적(775.3㎡))	-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주거 복합건물로서 아파트 권장(지상연면적의 10% 이상 비 주거 확보) •문화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1/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공연장, 도서관, 의원, 지역아동센터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																								
	불허용도	•해당 용도지역의 불허용도 준수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저축 시 규정 준수	-																								
건폐율		•60%이하	-																								
용적률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기준용적률 - 210%이하 •허용용적률 - 230%이하 •상한용적률 - 400%이하	-																								
최고높이		•55m이하	-																								
건축한계선		•충정로6길변 : 구역계로부터 건축한계선 3m •이면부 : 건축법 상 공지규정에 따라 적용	-																								
대지 내 공지		•규모 및 형태 : 서울시 건축조례 제22조에 의한 면적 이상의 썸지형공지	-																								
차량출입구간		•남측 충정로6길변 10m ~ 12m도로변으로 차량출입 금지	-																								
사업방식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시행 •도시정비사업 지수 <table><tr><th>구분</th><th>기준</th><th>지수</th><th></th></tr><tr><td>동수 노후도</td><td>동수의 2/3이상</td><td>95%</td><td></td></tr><tr><td>연면적 노후도</td><td>연면적의 2/3이상</td><td>95.0%</td><td></td></tr><tr><td>호수밀도</td><td>60호/ha</td><td>79.76호/ha</td><td></td></tr><tr><td>과소필지</td><td>40%이상</td><td>86.56%</td><td></td></tr><tr><td>접도율</td><td>40%이하</td><td>11.76%</td><td></td></tr></table>	구분	기준	지수		동수 노후도	동수의 2/3이상	95%		연면적 노후도	연면적의 2/3이상	95.0%		호수밀도	60호/ha	79.76호/ha		과소필지	40%이상	86.56%		접도율	40%이하	11.76%		-
구분	기준	지수																									
동수 노후도	동수의 2/3이상	95%																									
연면적 노후도	연면적의 2/3이상	95.0%																									
호수밀도	60호/ha	79.76호/ha																									
과소필지	40%이상	86.56%																									
접도율	40%이하	11.76%																									

- ※ 향후 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향에 부합하는 정비계획 변경 요청 시 타 구역과 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시 관리 변경 검토 가능
- ※ 특별계획구역 지침(변경)은 중상향을 전제로 한 지침이며, 제3종일반주거지역 적용 시 건폐율, 용적률, 기반시설 순분담율은 기정 지침 적

IV.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 내 공지 및 통로등에 관한 결정사항

- 대지 내 공지의 확보를 통하여 가로환경 개선과 이용자의 휴게공간 확보
- 지역 내 부족한 오픈스페이스의 확보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 보행자의 편의를 위한 보도부속형공지 조성
-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의 편의 증진

구 분		적 용 대 상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대지 내 공지	전면 공지	•건축한계선으로 제어되는 필지	•건축한계선으로 제어되는 필지 - 충청로6길변 1m, 2m - 특별계획구역③(충청로6길변) 3m	•건축한계선을 통한 확보 •주차장, 보행장애시설 설치금지

2.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결정사항

1) 차량동선계획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여 차량 소통 원활화 도모
- 구역 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양방향 동행계획
 - 북측 중로2류~특별계획구역①,② 진출입구 및 경찰청 후문(소로2-1호)
 - 특별계획구역③ 진출입구 ~ 남측 철도변 도로(소로2-1호)
 - 구역 북측 통일로 ~충청로(중로2-1호)
- 보행 안전 및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일반통행 지정
 - 특별계획구역③ 진출입구 ~ 특별계획구역①,② 진출입구 및 경찰청후문 : 남→북 방향
 - 사업지 남동부 일반상업지역 내 국지도로(소로3-1호) : 북→남 방향

2) 보행동선계획

-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동선체계 확립
- 구역 내 8m도로는 일방통행을 위한 1개 차로 이외의 부지는 보행공간 및 보행자를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
- 건축선 후퇴 등을 통하여 조성된 대지 내 공지를 보행공간으로 활용
- 보행자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계획(2개소)
 - 벽면한계선 3m ~ 6m지정(최소 유효 폭6m)
- 도시계획도로와 연결한 건축 후퇴 부분은 보도로 활용
- 보행 축을 녹지축과 연계하여 보행환경 제고

■ 교통처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지정위치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통일로(간선도로)변 일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으로 도로에서 대지 안으로의 차량통행이 금지된 지역)	●도로에서 대지 안으로의 차량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	●결정도 상 위치표기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구역 내 주차장 추가설치 금지(기 조성된 주차장 제외) ●주차장 설치기준을 50% 완화하고 미완화분은 자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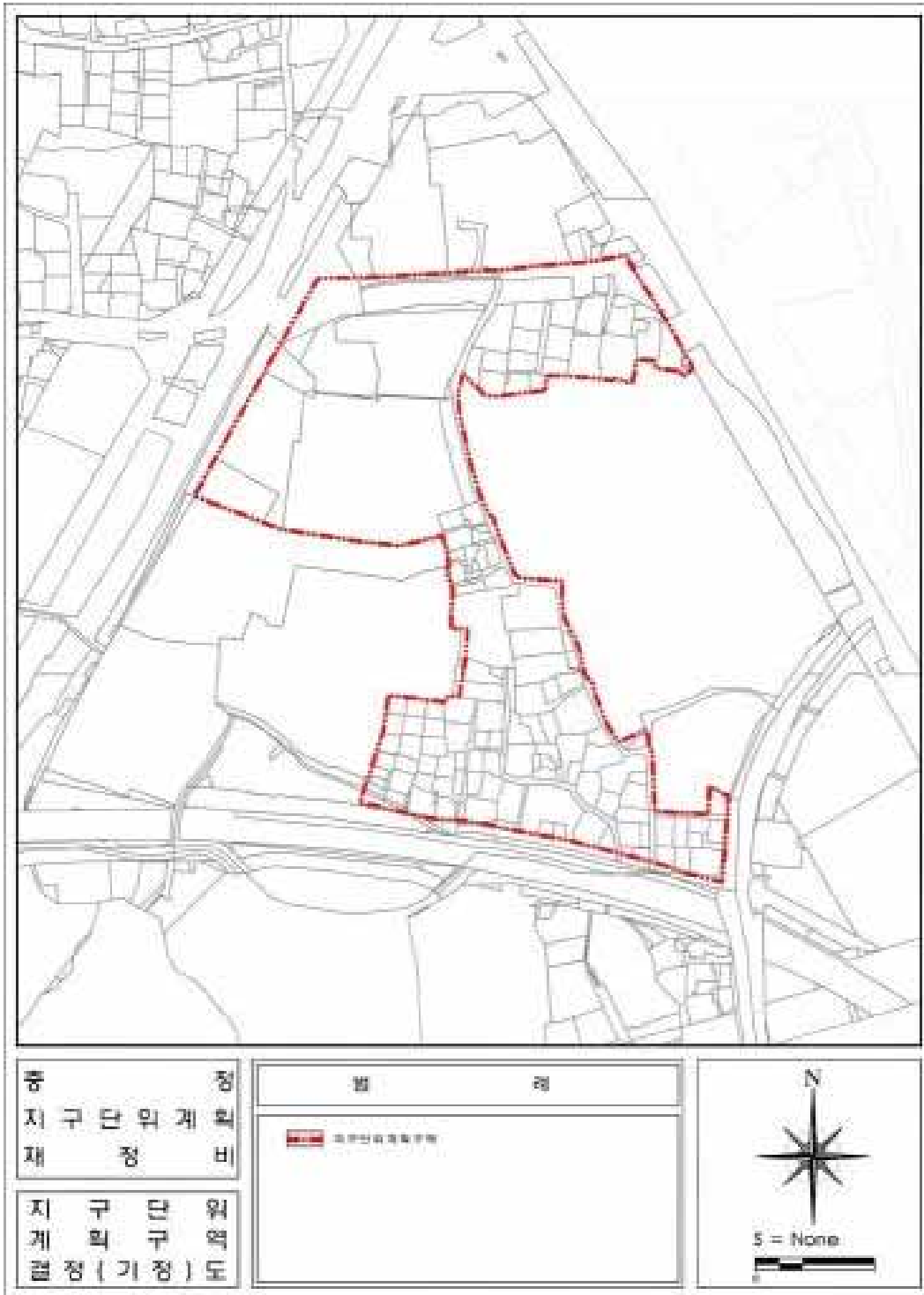
주: 「차량출입불허구간」에 접하는 대지에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이전에 설치된 기존 주차장의 차량통행은 허용되나, 해당 대지에 신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구간에서의 차량통행을 불허하고 주차장 출입구 설치를 금지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결정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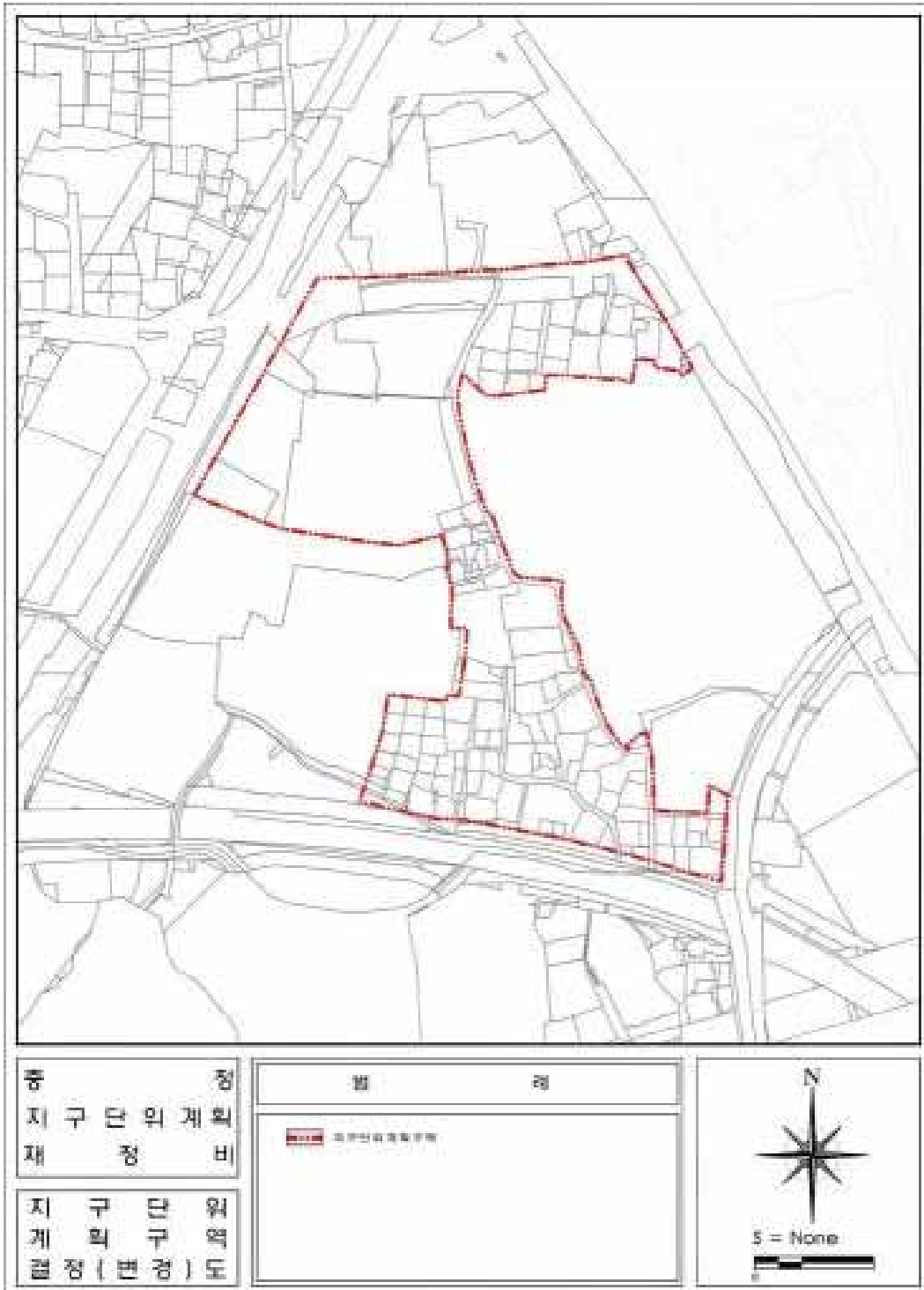
적용구역	완화조건	계획내용	비고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해당 대지에 신축행위를 할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50% 완화하고 미완화분은 자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	●결정도 상 위치표기

VI.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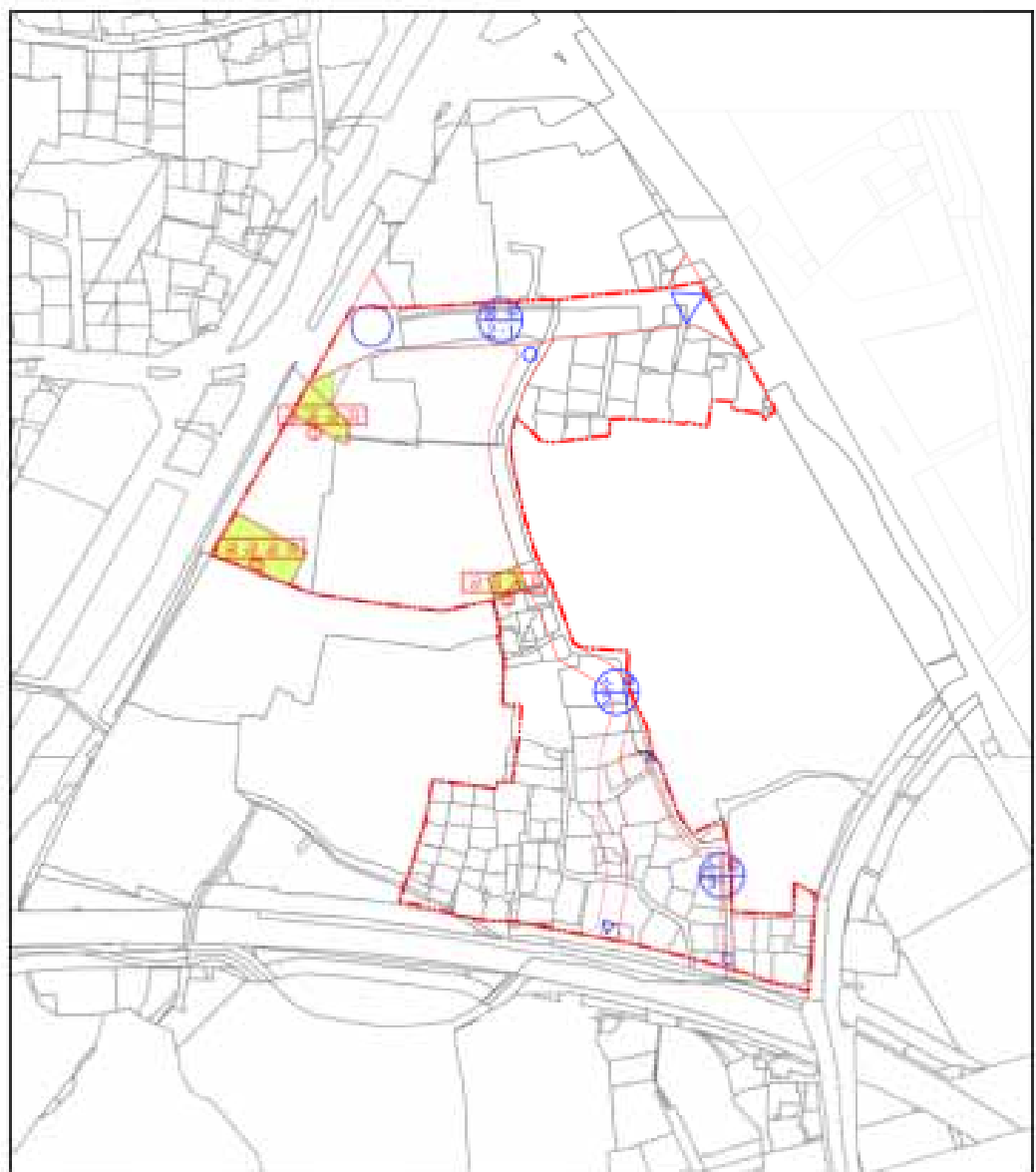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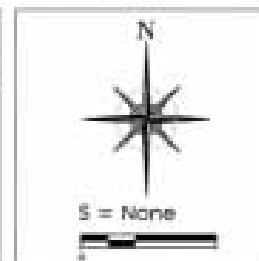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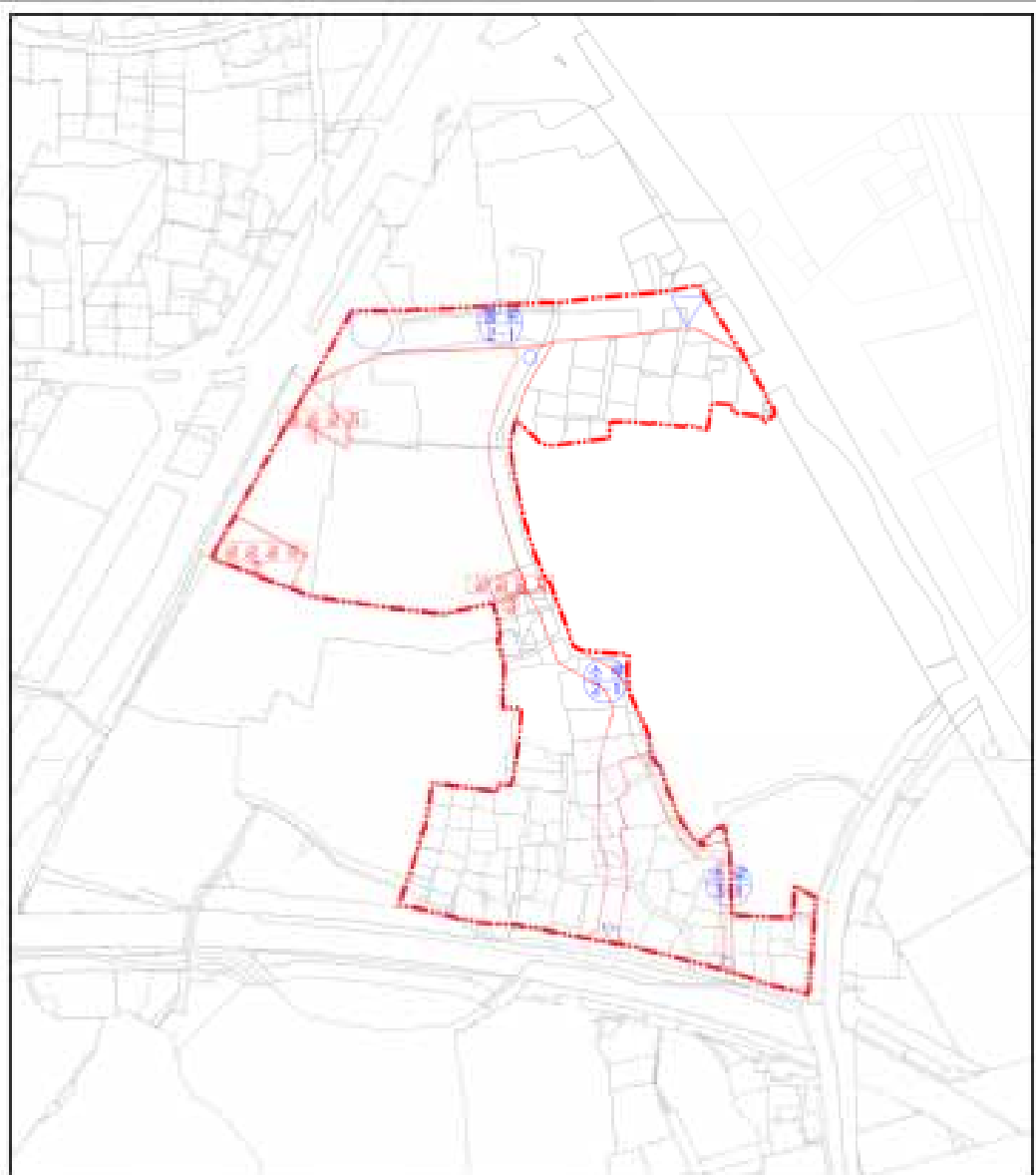


행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범	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하철역
	공원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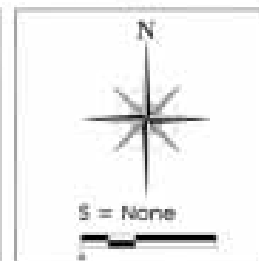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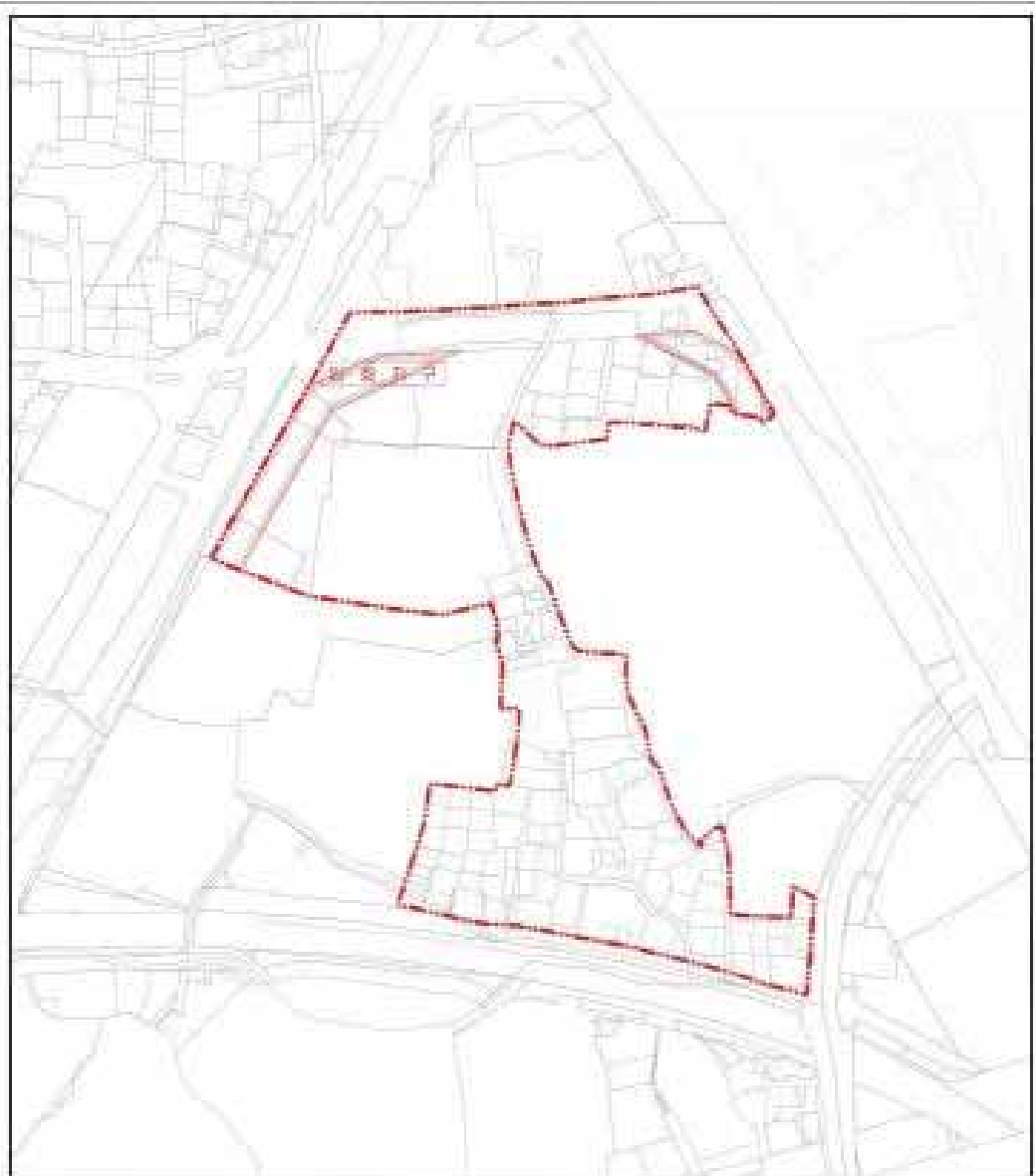


행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범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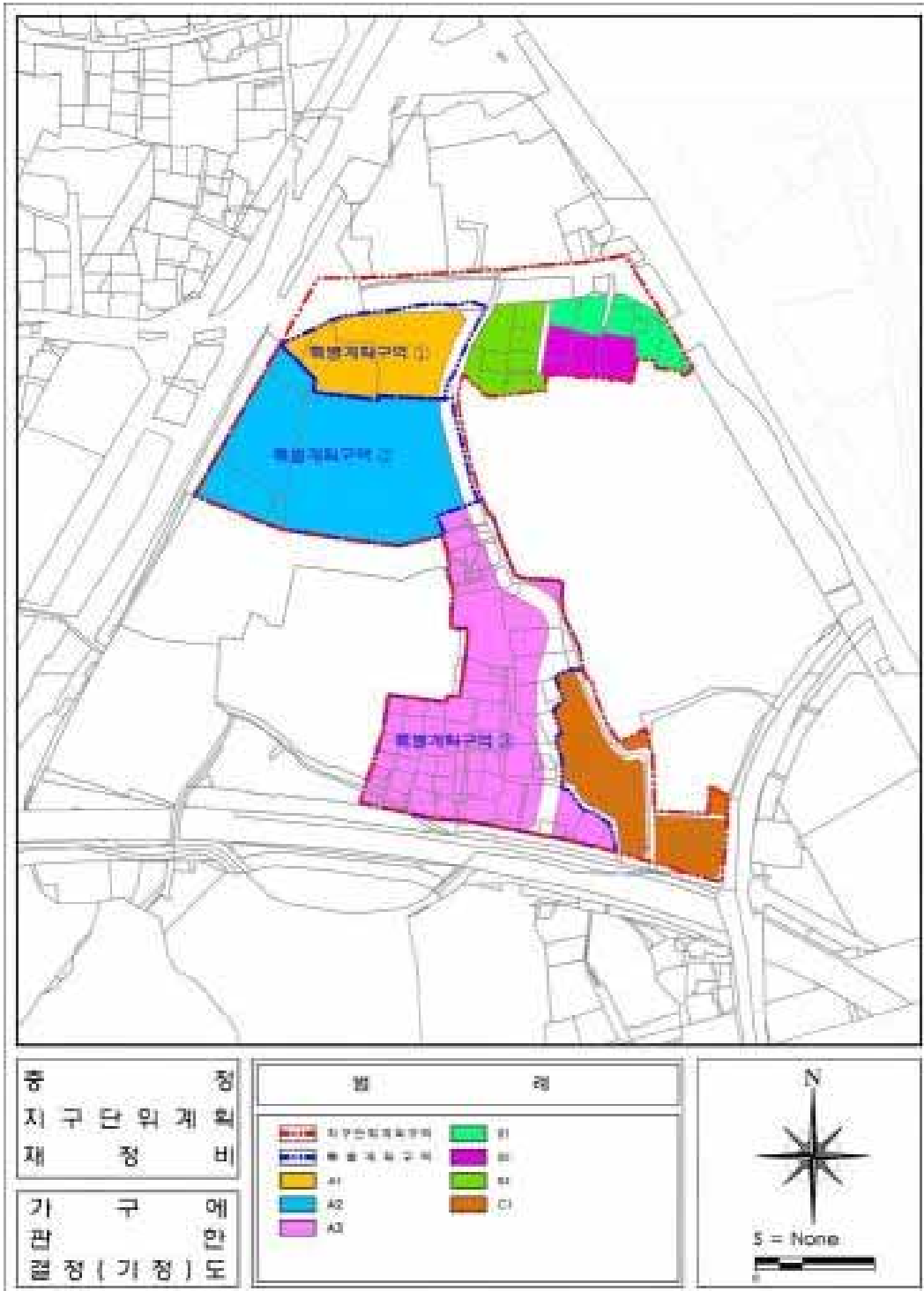


■ 친환경, 방재안전, 지역(역사)자산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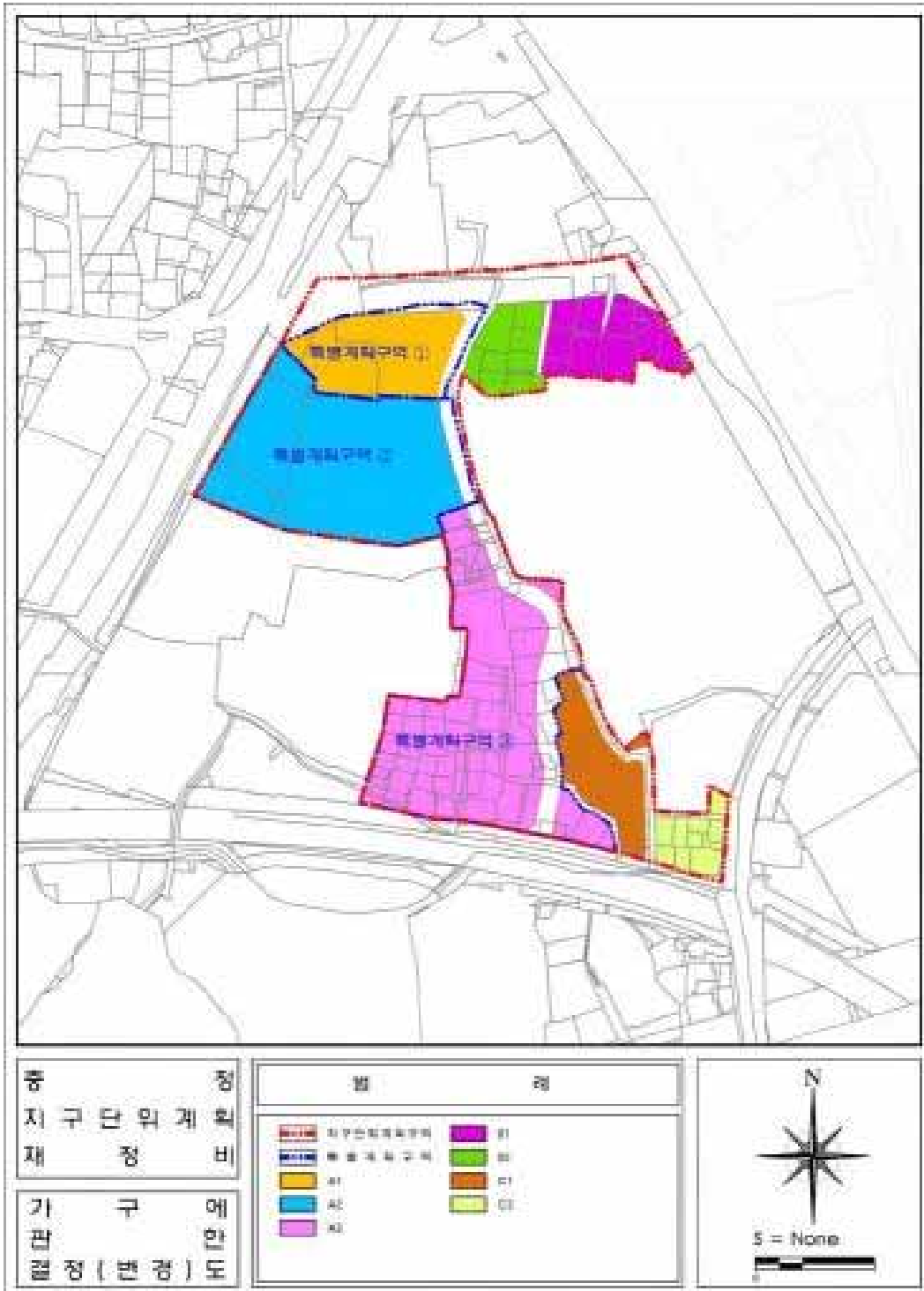


중 지 구 단 위 계 획 재 정 비	범 례 -----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 방 재 안 전	N 5 = None
친환경, 방재안전, 지역(역사)자산에 관 한 결 정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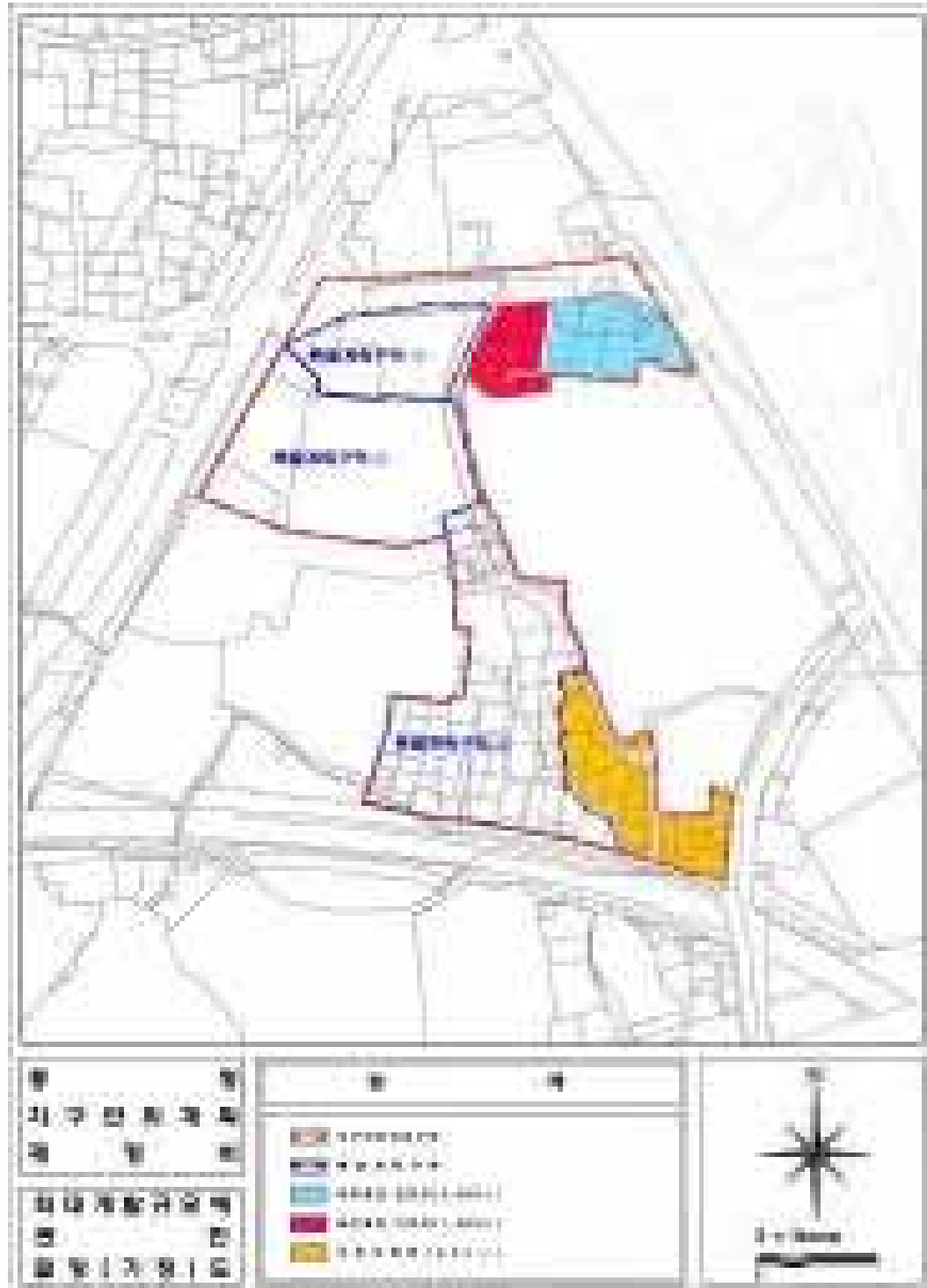
■ 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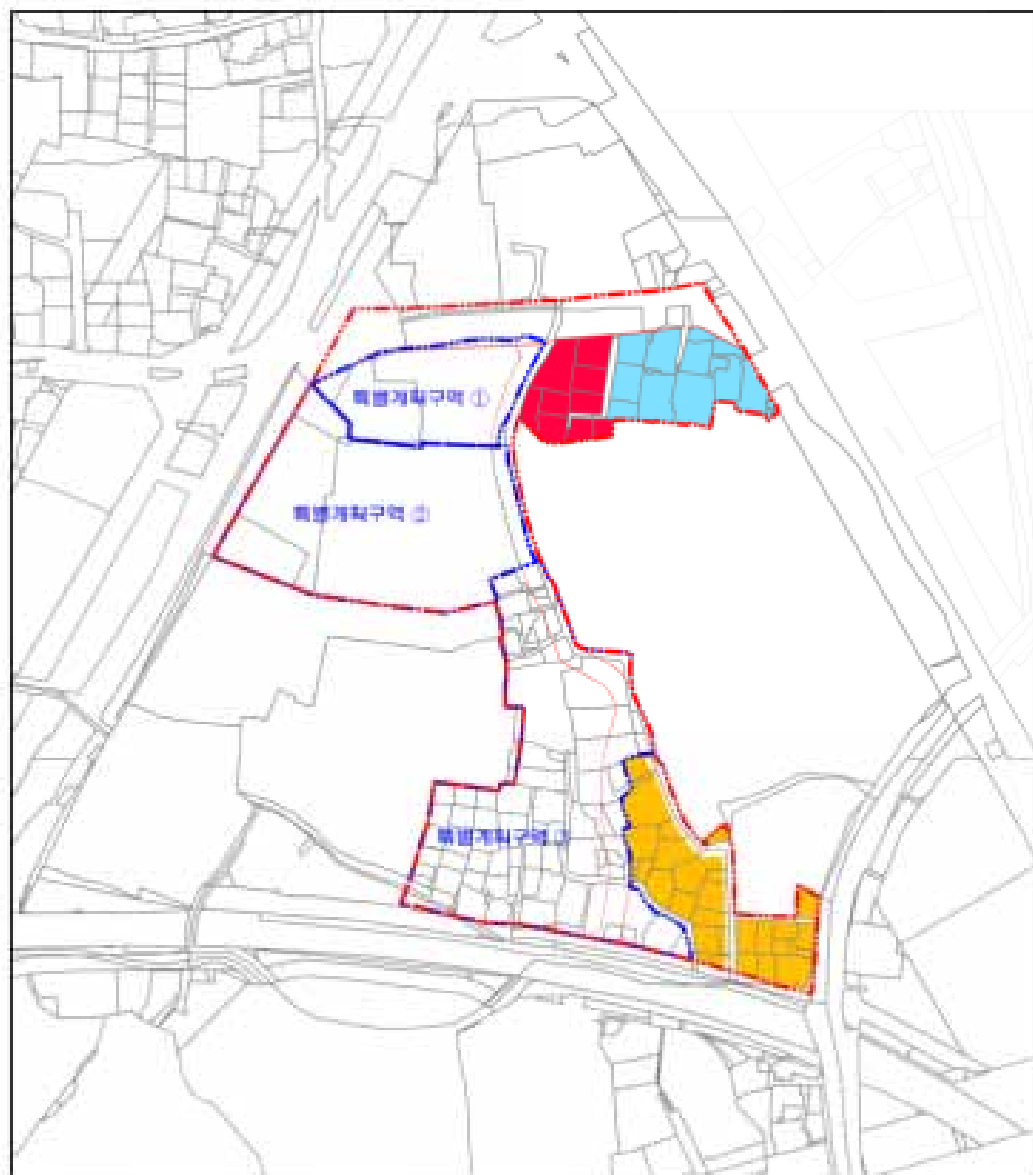
■ 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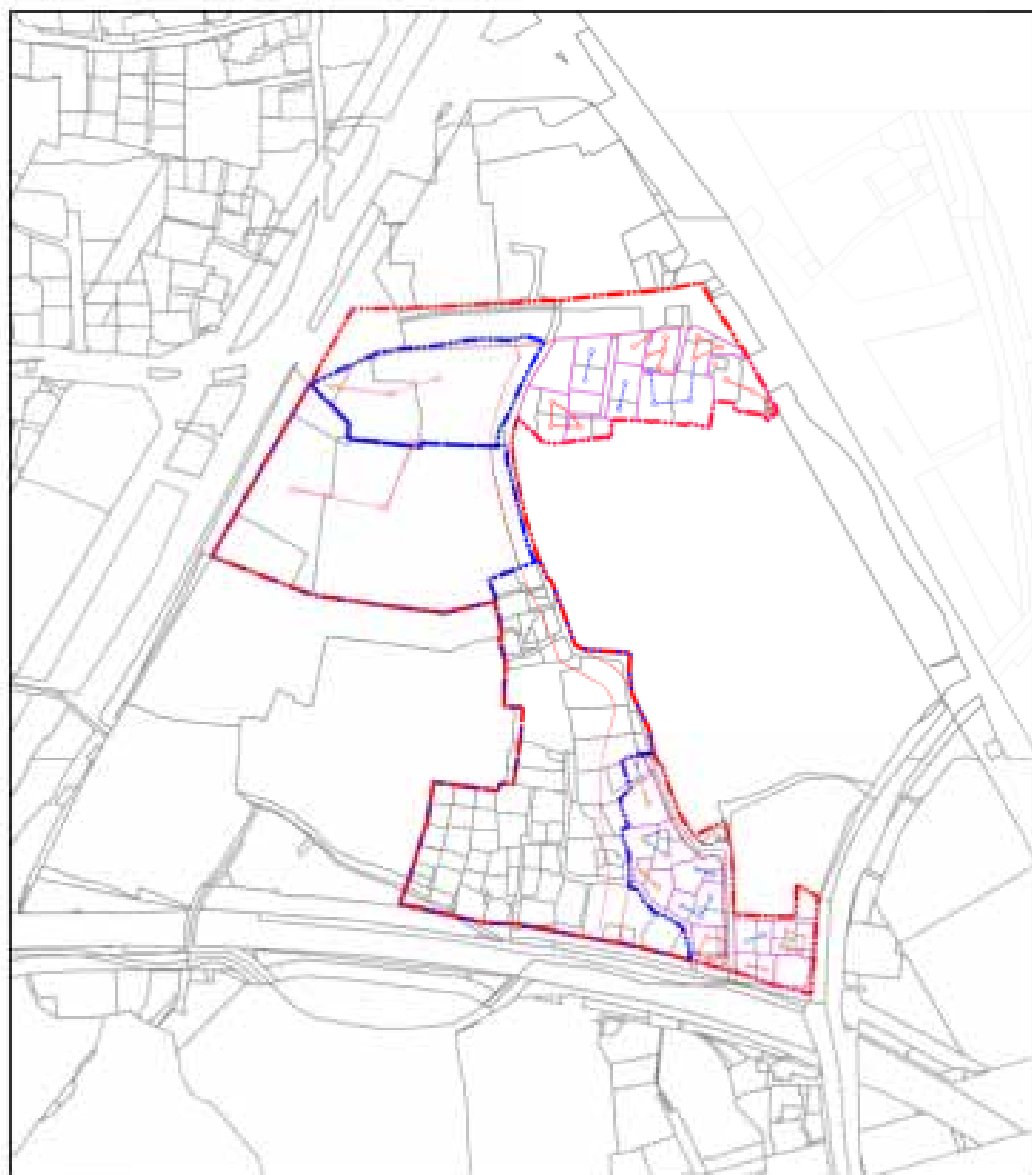
■ 최대개발규모에 관한 결정(기정)도



■ 최대개발규모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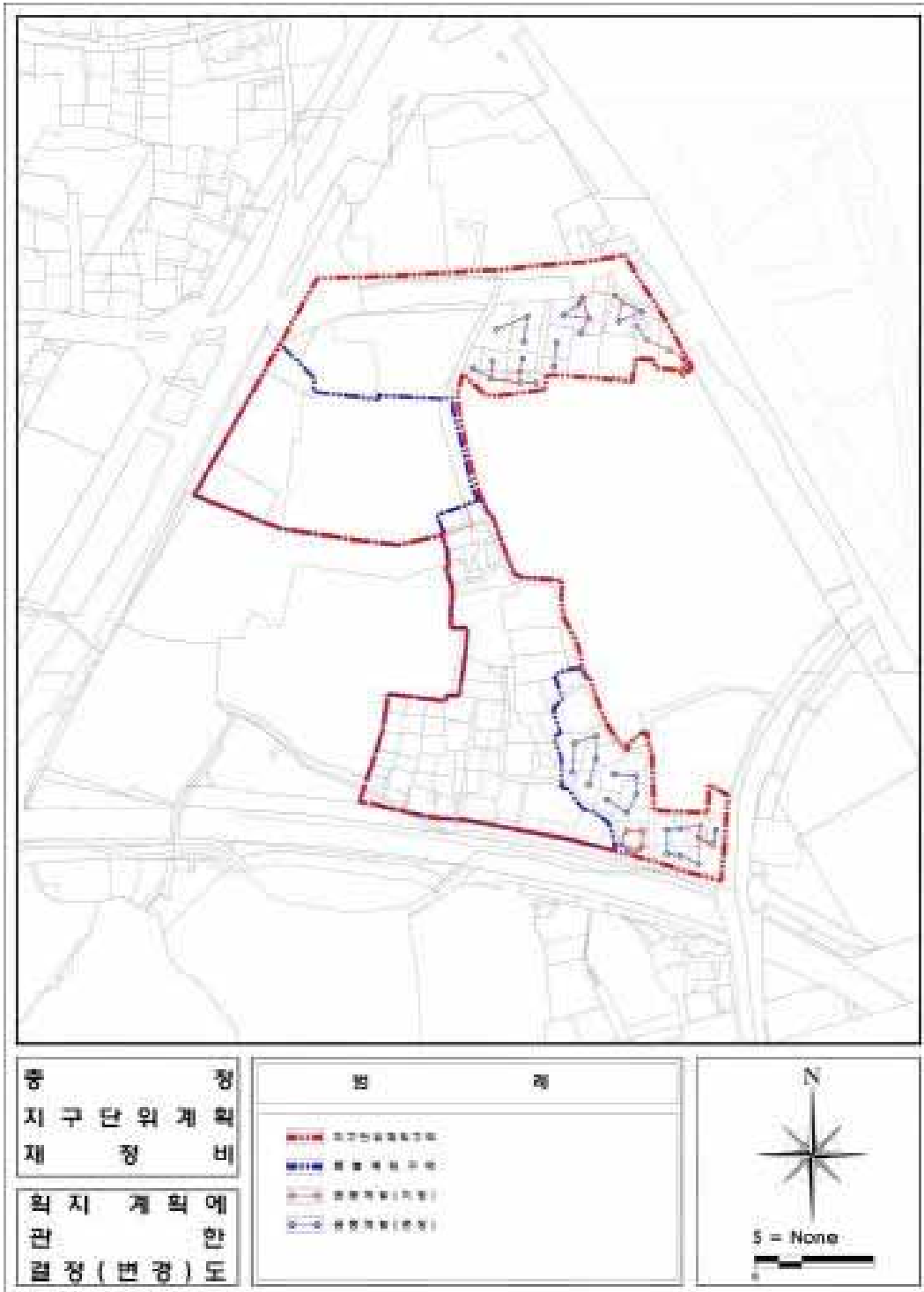


행정 구역 단위 계획
재정비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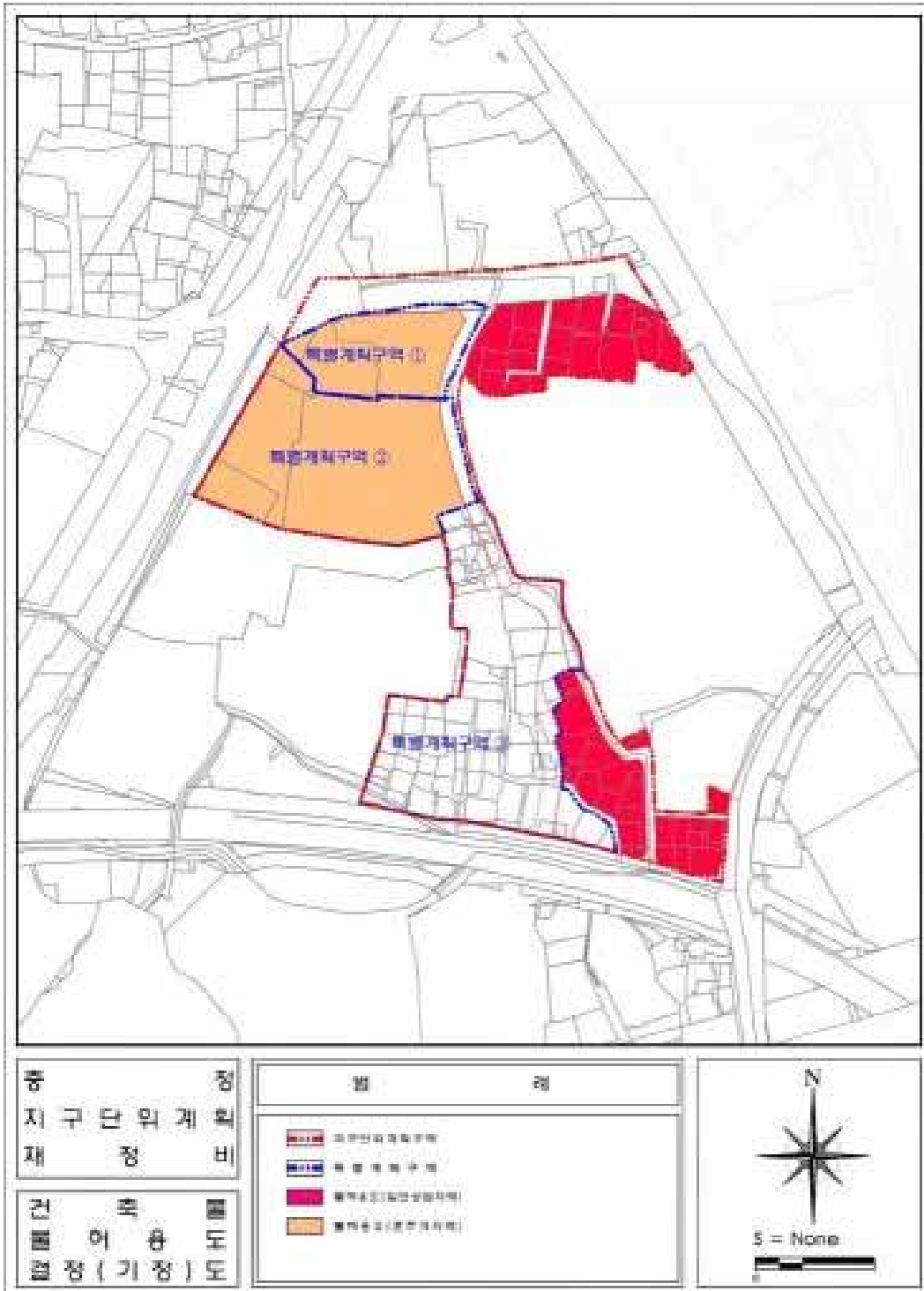
범	례
 	지구단위계획구역
 	국립공원구역
 	국립공원(부속)
 	국립공원(공관)
 	특수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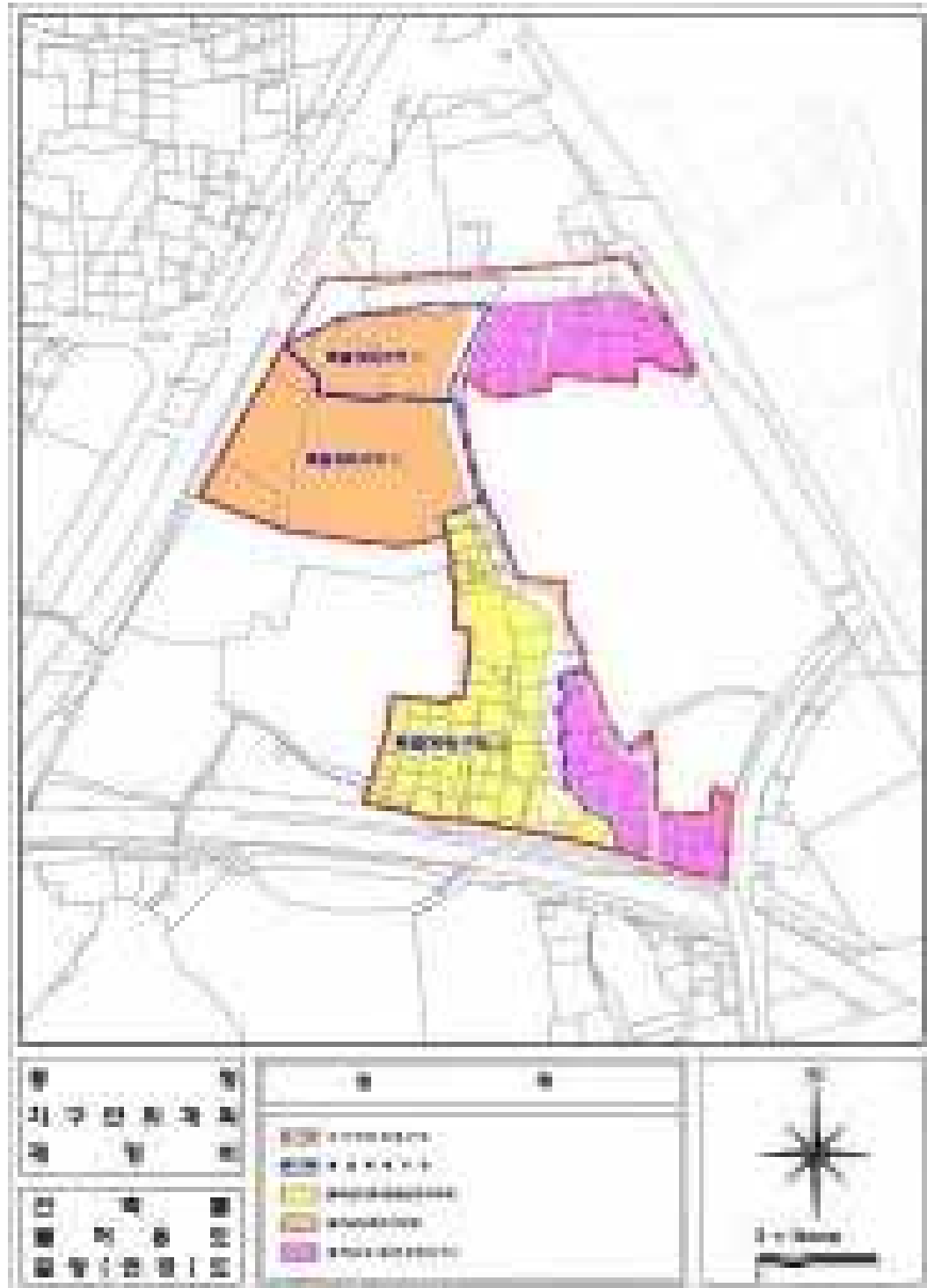
■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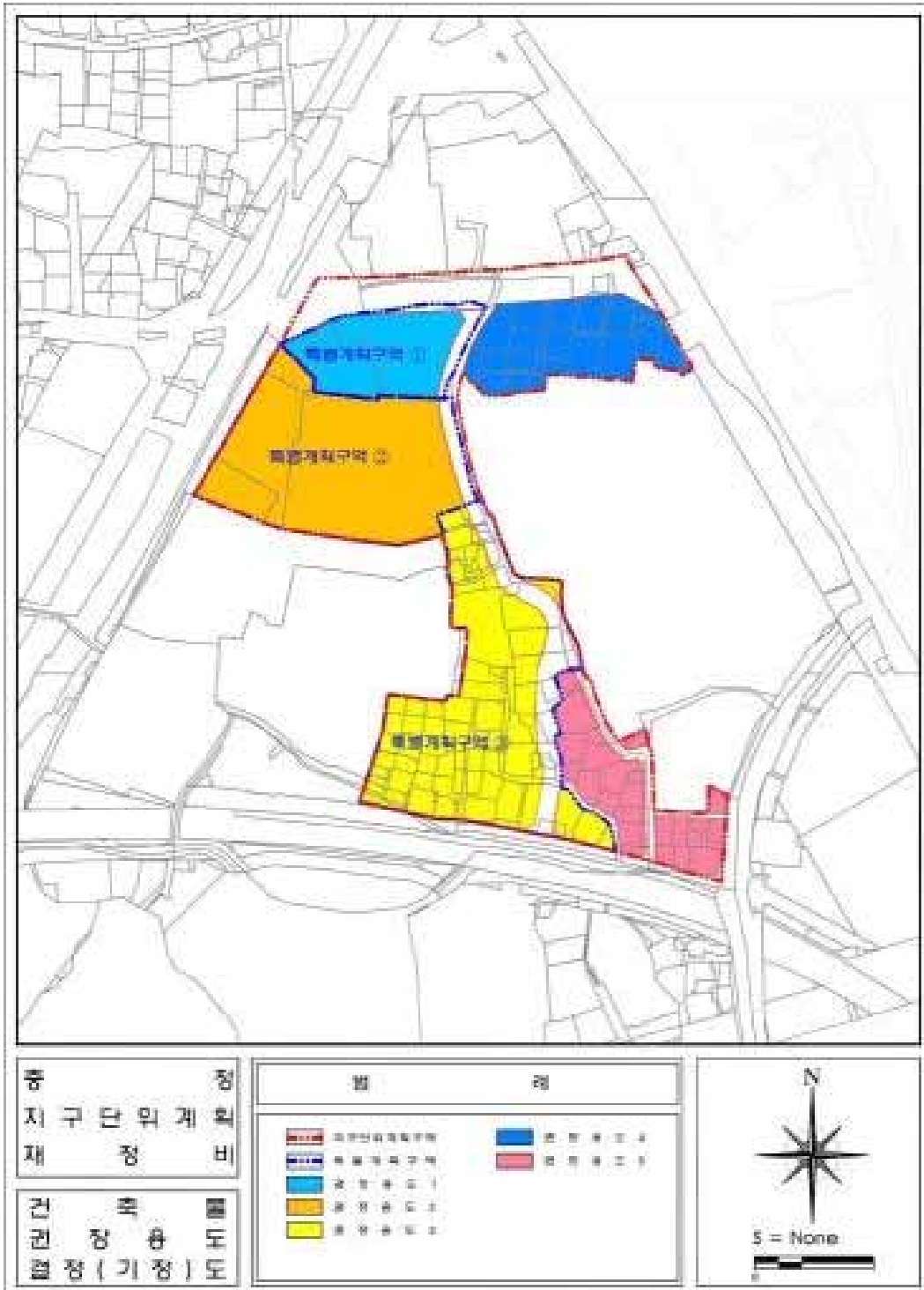
■ 건축물 불허용도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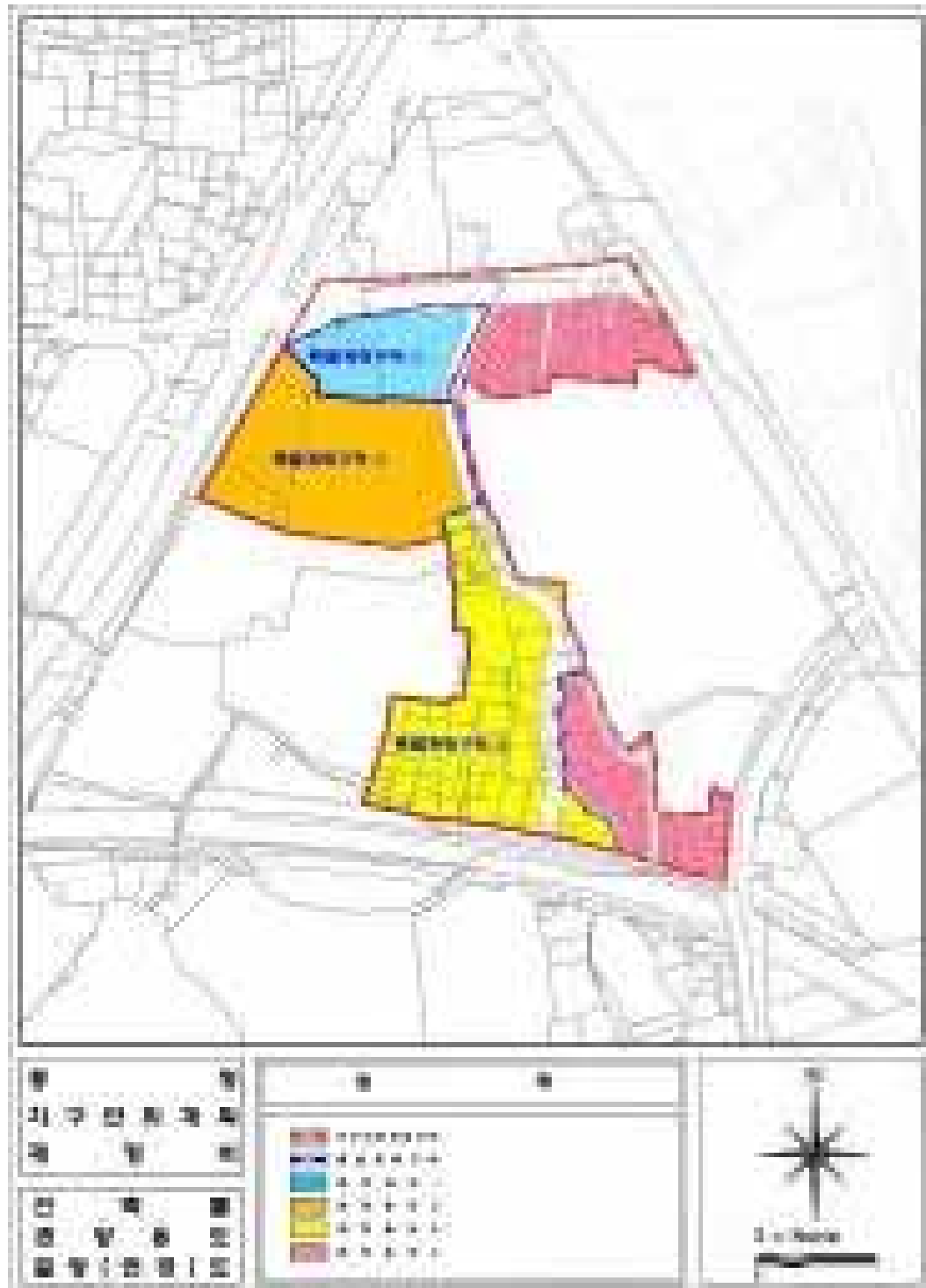
■ 건축물 불허용도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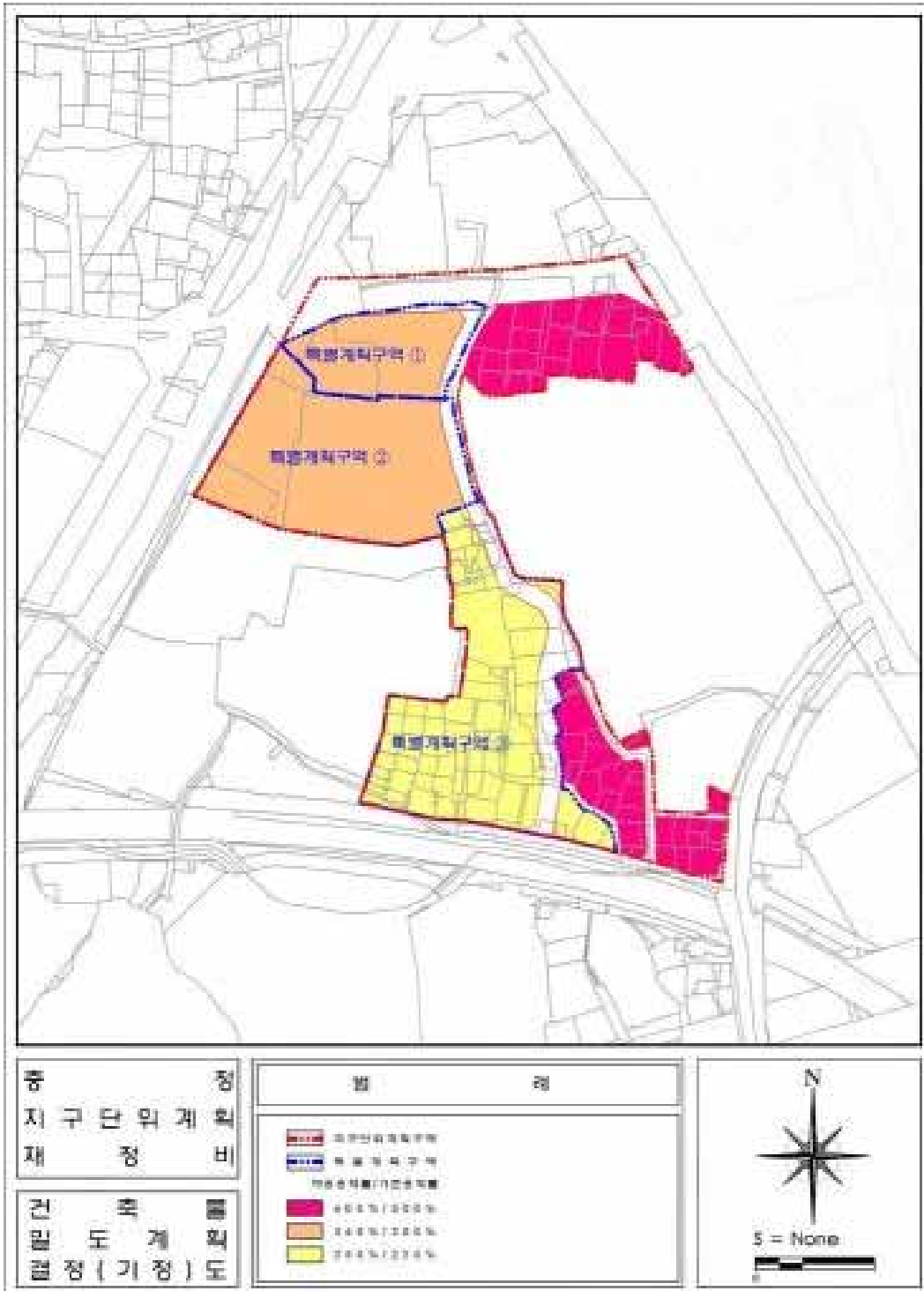
■ 건축물 권장용도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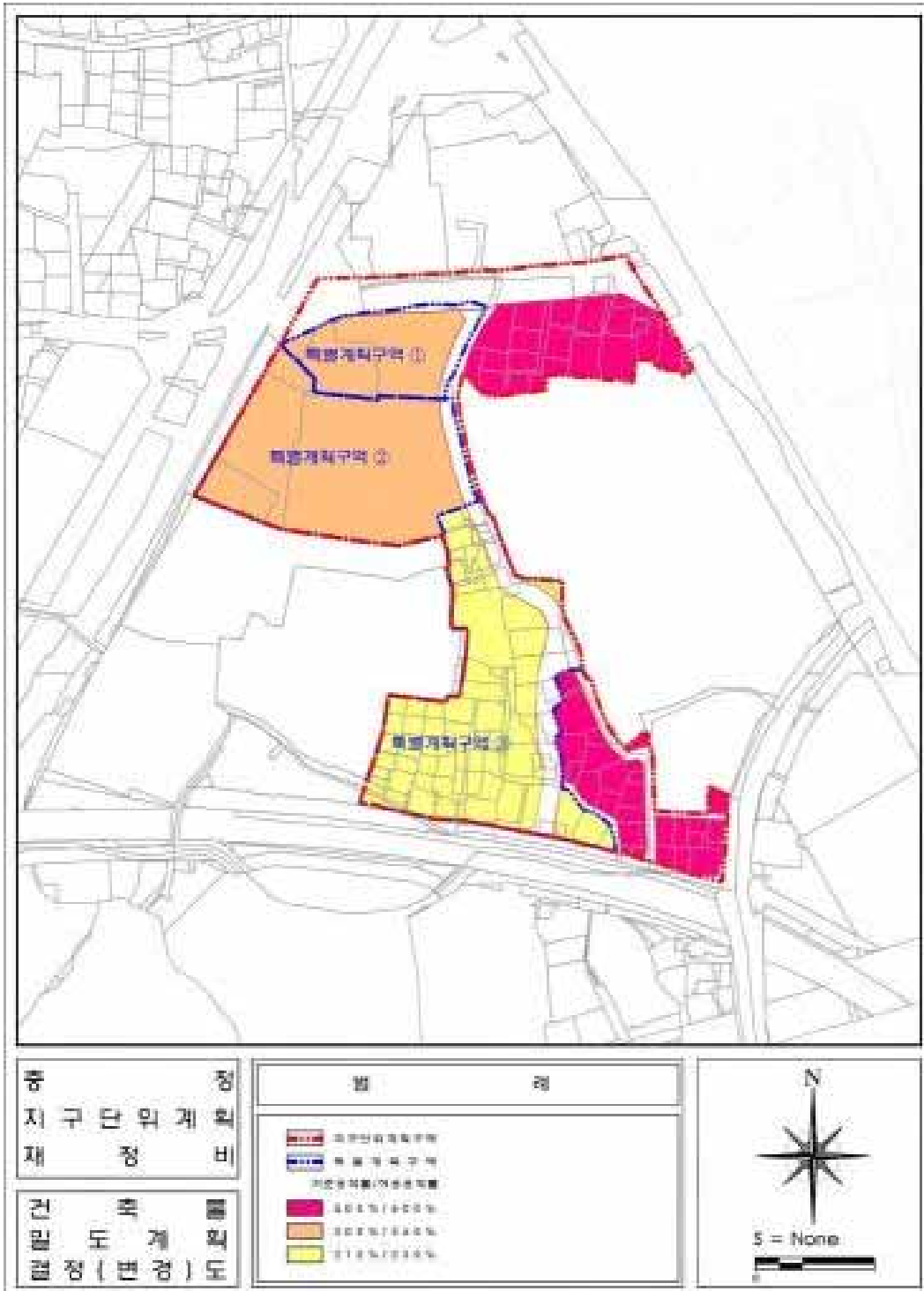
■ 건축물 권장용도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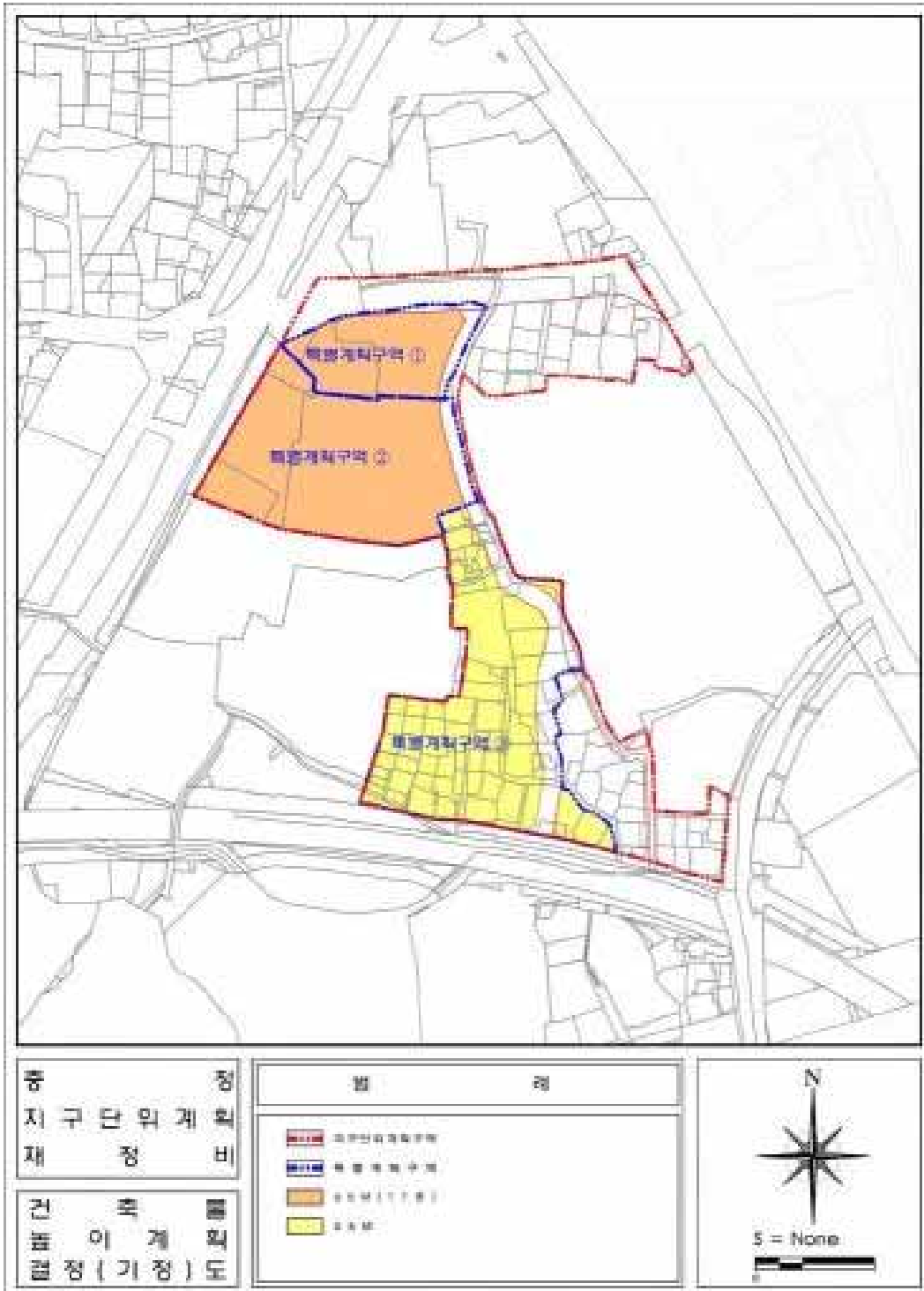
■ 건축물 밀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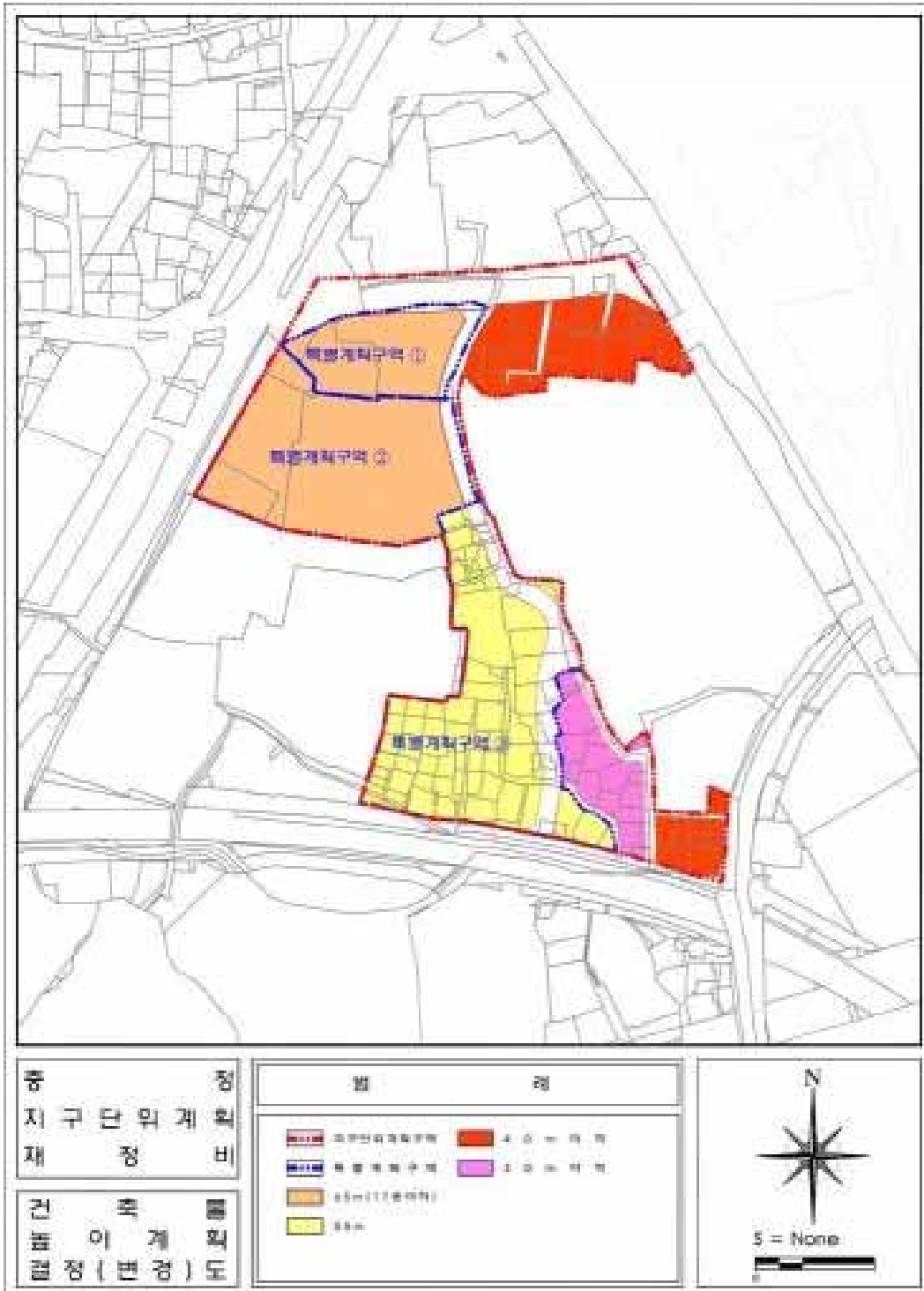
■ 건축물 밀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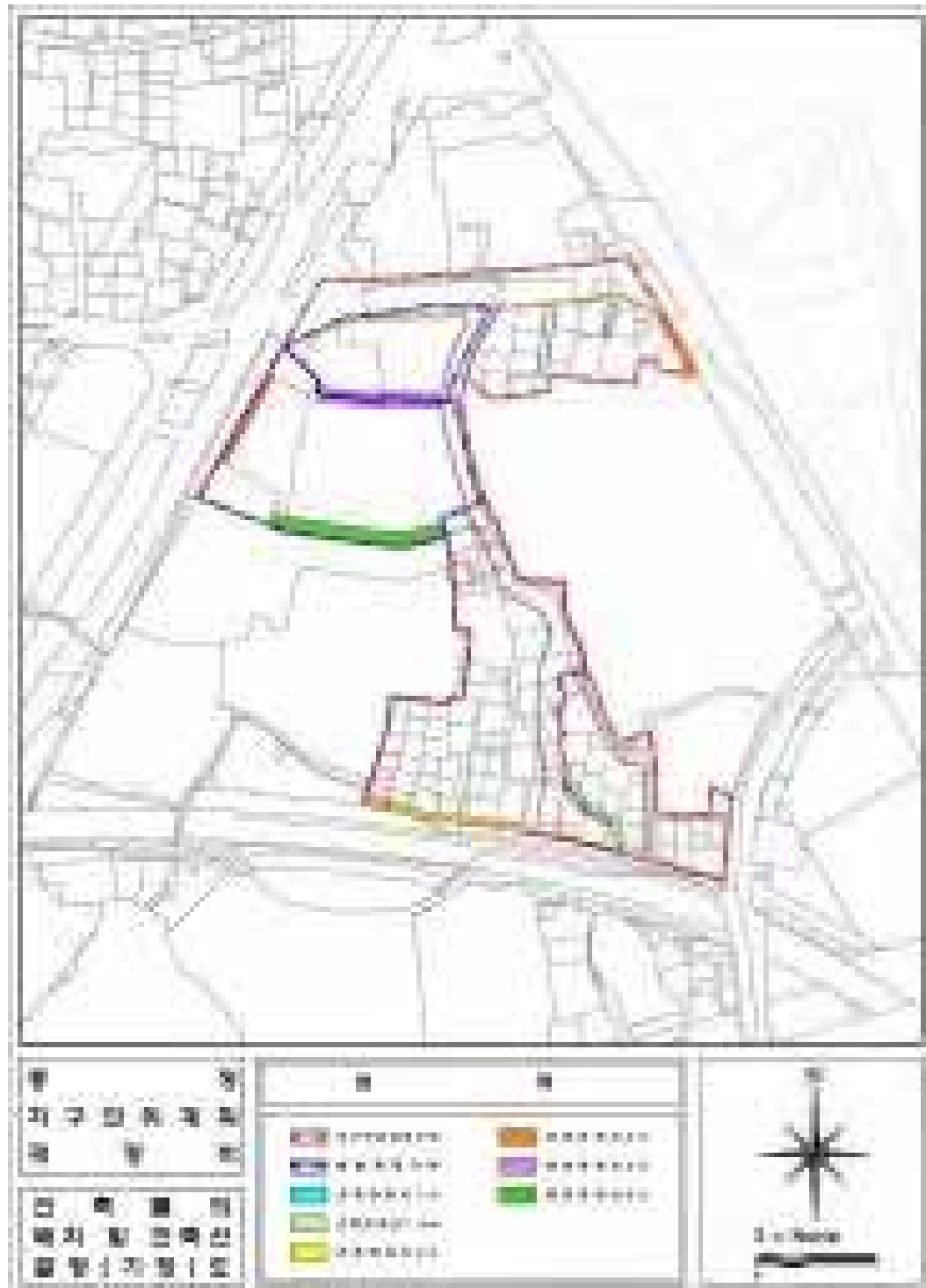
■ 건축물 높이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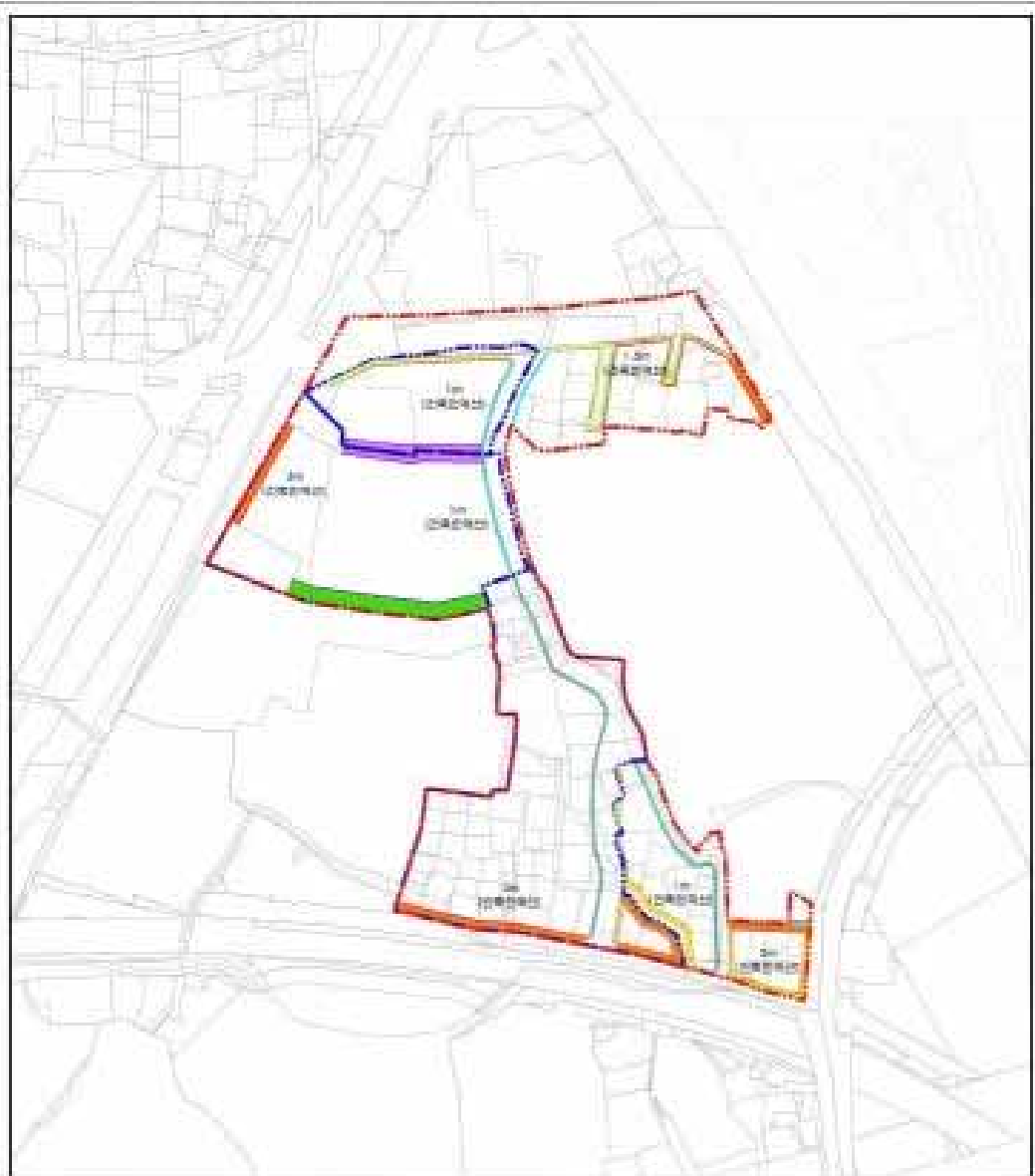
■ 건축물 높이계획 결정(변경)도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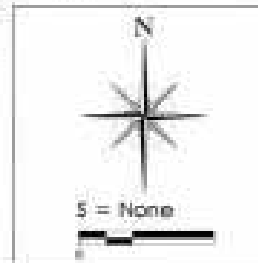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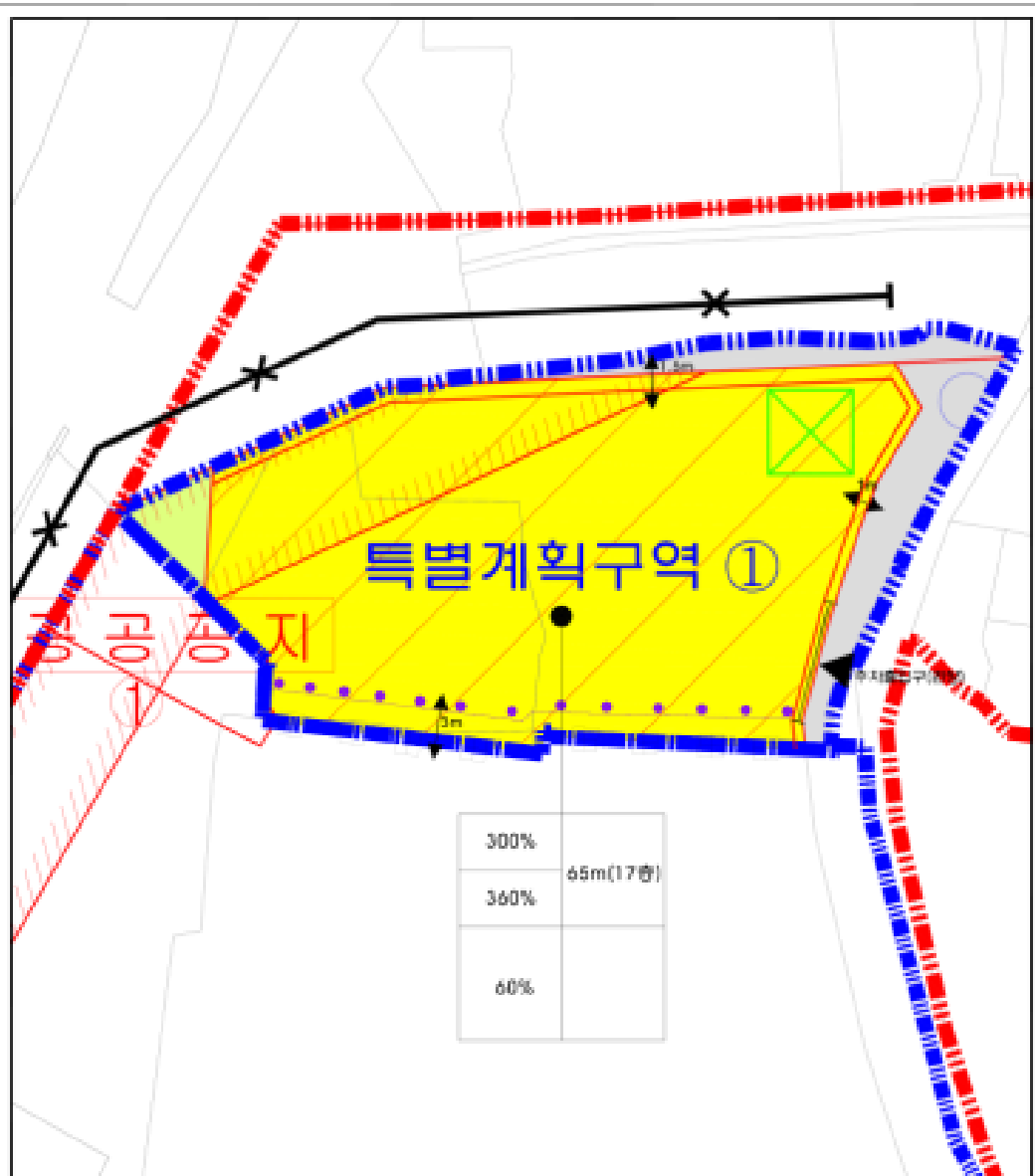
중
지 구 단 위 계 획
재 정 비

건 축 물 의
배 치 및 건축선
결 정 (변 경) 도

범	례
1.5m (건축선거리)	1.5m (건축선거리)
1.5m (건축선거리)	1.5m (건축선거리)
1.5m (건축선거리)	1.5m (건축선거리)
1.5m (건축선거리)	1.5m (건축선거리)
1.5m (건축선거리)	1.5m (건축선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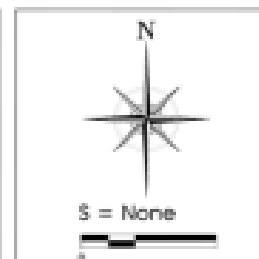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①구역 지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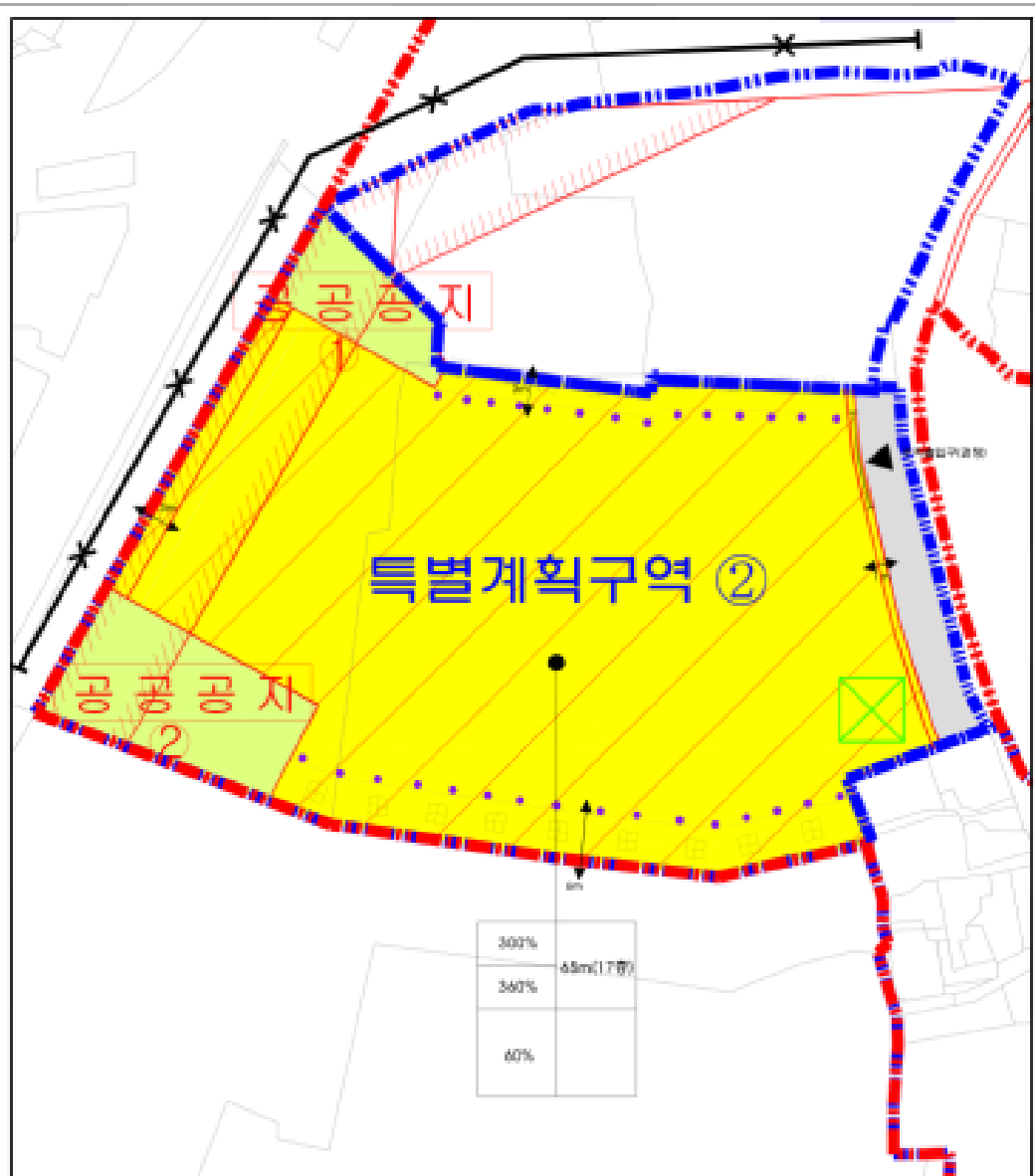
행정 구역 단위 계획
재정비

특별계획구역 ①
결정도

범	례
지구단위계획구역	차등통행제한구역
특별계획구역	방화지구
일반거차역	방화경계
건축선	도로
안전선	경지계획
경관보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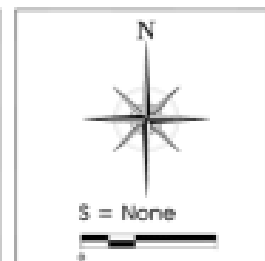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②구역 지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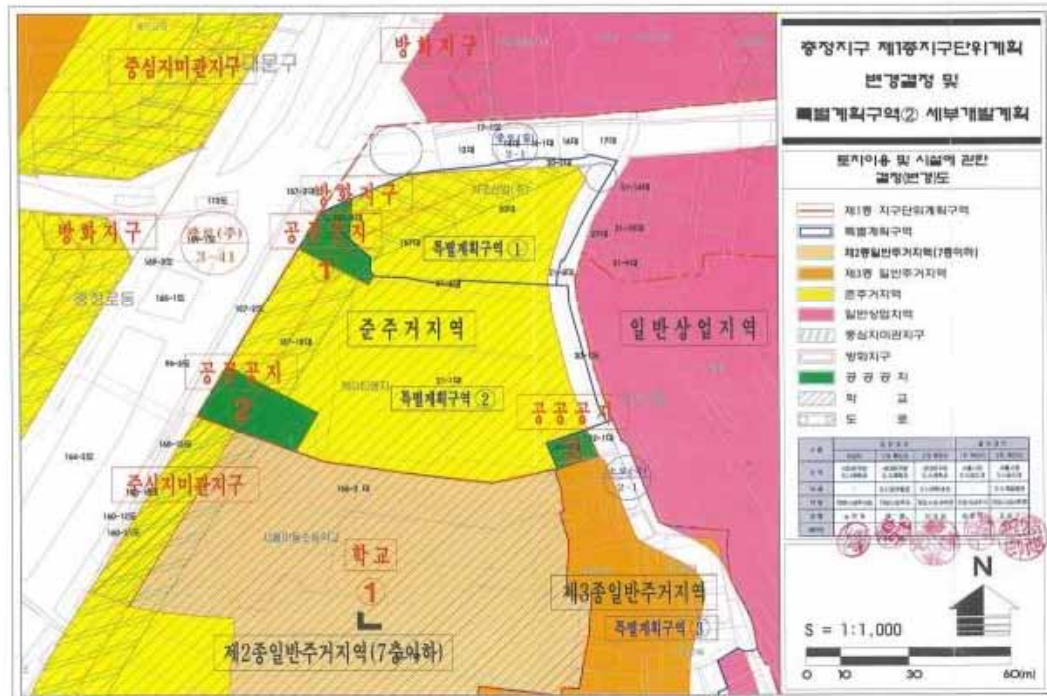


행정단위	정비
지	구
단	위
계	획
재	정
비	

범	례
지	지
구	구
단	단
위	위
계	계
획	획
재	재
정	정
비	비



■ 특별계획구역②구역 세부개발계획(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특별계획구역②구역 세부개발계획(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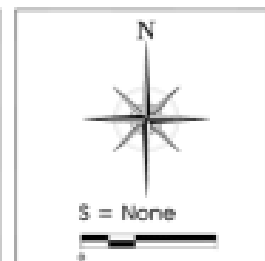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③구역 지침(기정)도



행	정
지	구
단	위
계	획
재	정
비	

특	별
계	획
구	역
③	
결	정
(	기
정	)
도	

범	례
비주요한계지선	차등통행제한구역
주요한계지선	방화지선
차등통행제한구역	방화경계지
방화경계지	방화경계지
방화경계지	방화경계지
방화경계지	방화경계지
방화경계지	방화경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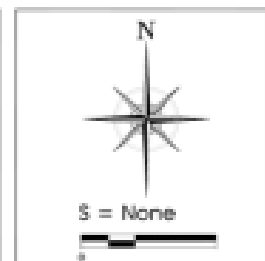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③구역 지침(변경)도



행	정
지	구
단	위
계	획
재	정
비	

특	별
계	획
구	역
3	
결	정
(	변
경	)
도	

범	례
비구입화 계획구역	차등입몰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면적지구
비구입화지역	면적정공지
도로면적지	면적정
면적정지선	면적지계
면적정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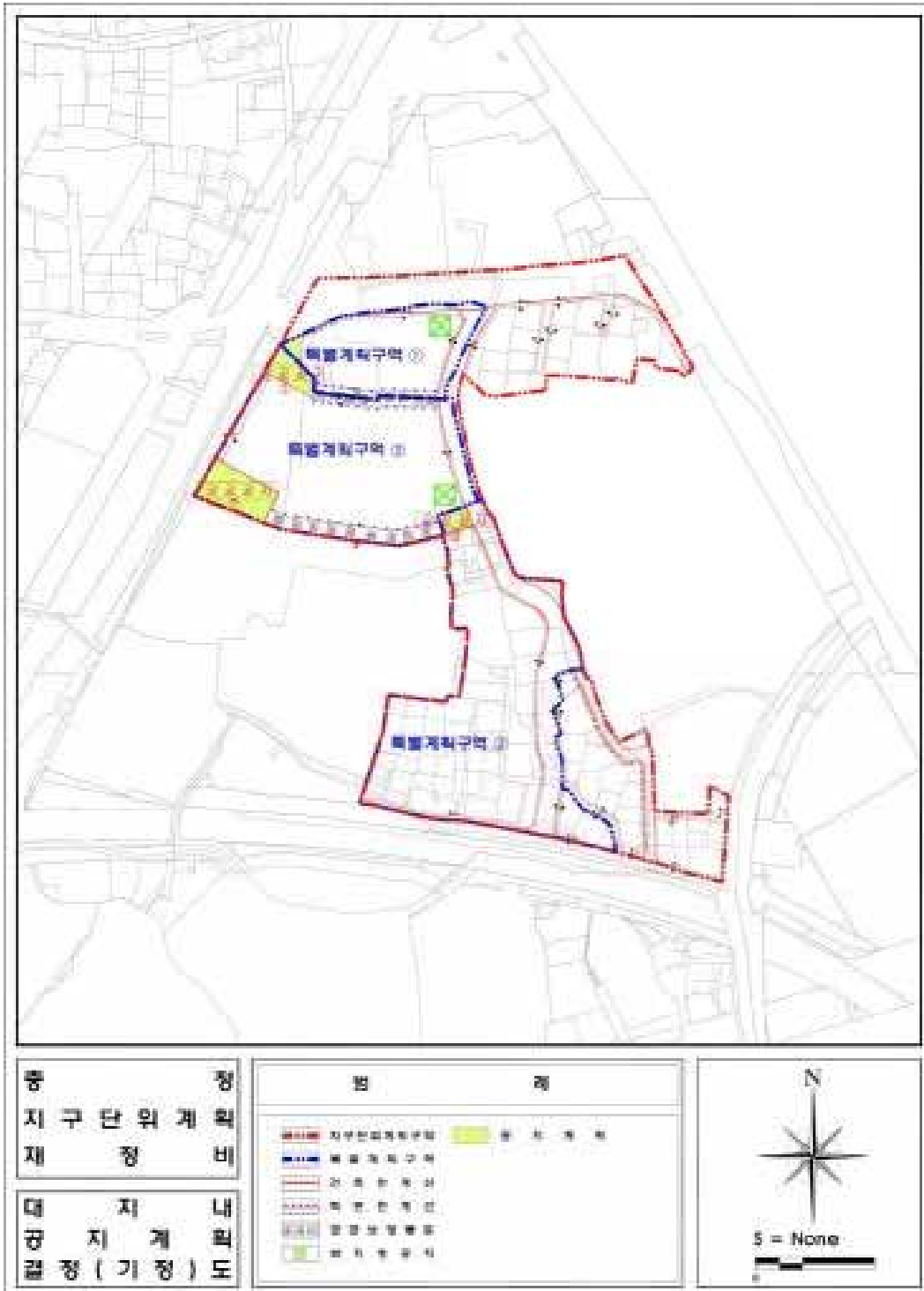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③구역 세부개발계획(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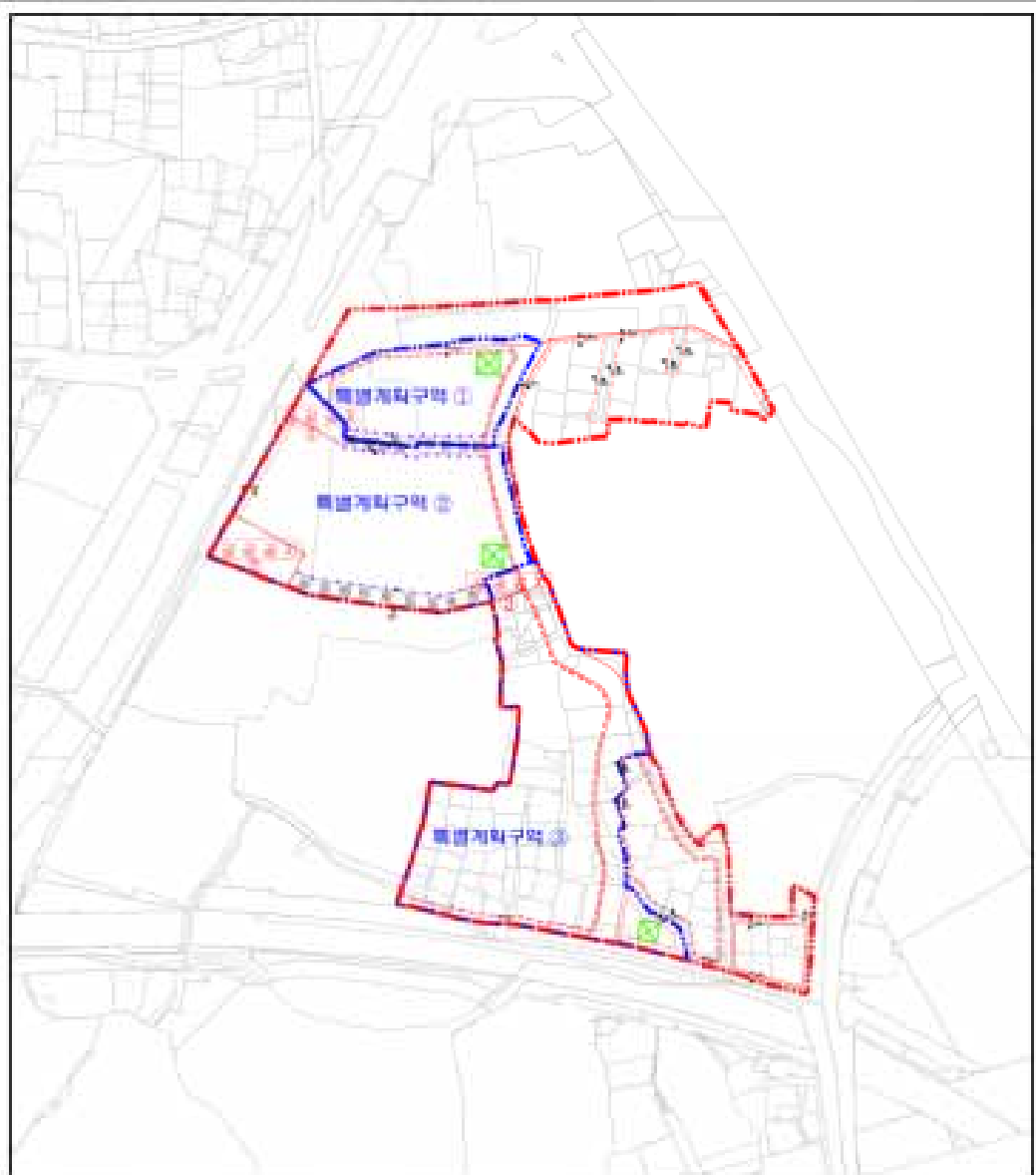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③구역 세부개발계획(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대지 내 공지 계획 결정(기정)도



■ 대지 내 공지 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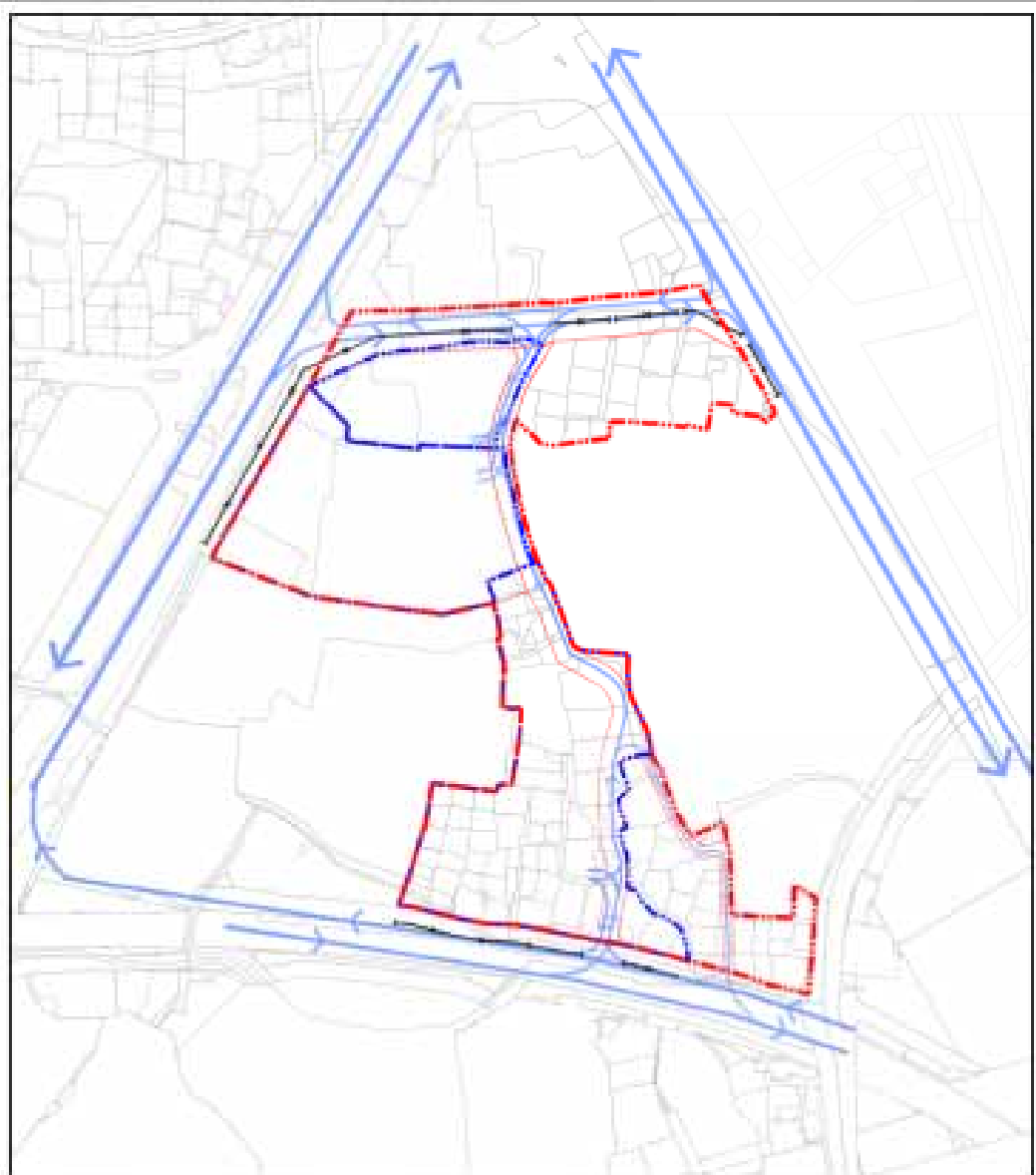
중
지
구
단
위
계
획
재
정
비

대
지
내
공
지
계
획
결
정
(
변
경
)
도

범	례
지하철역사	경계선
특별계획구역	경계선
일반계획구역	경계선
제한구역	경계선
경관보전구역	경계선
대지내공지	경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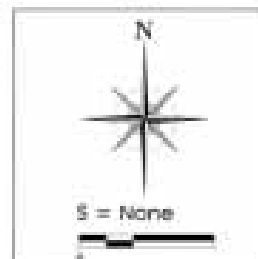
■ 차량 및 교통동선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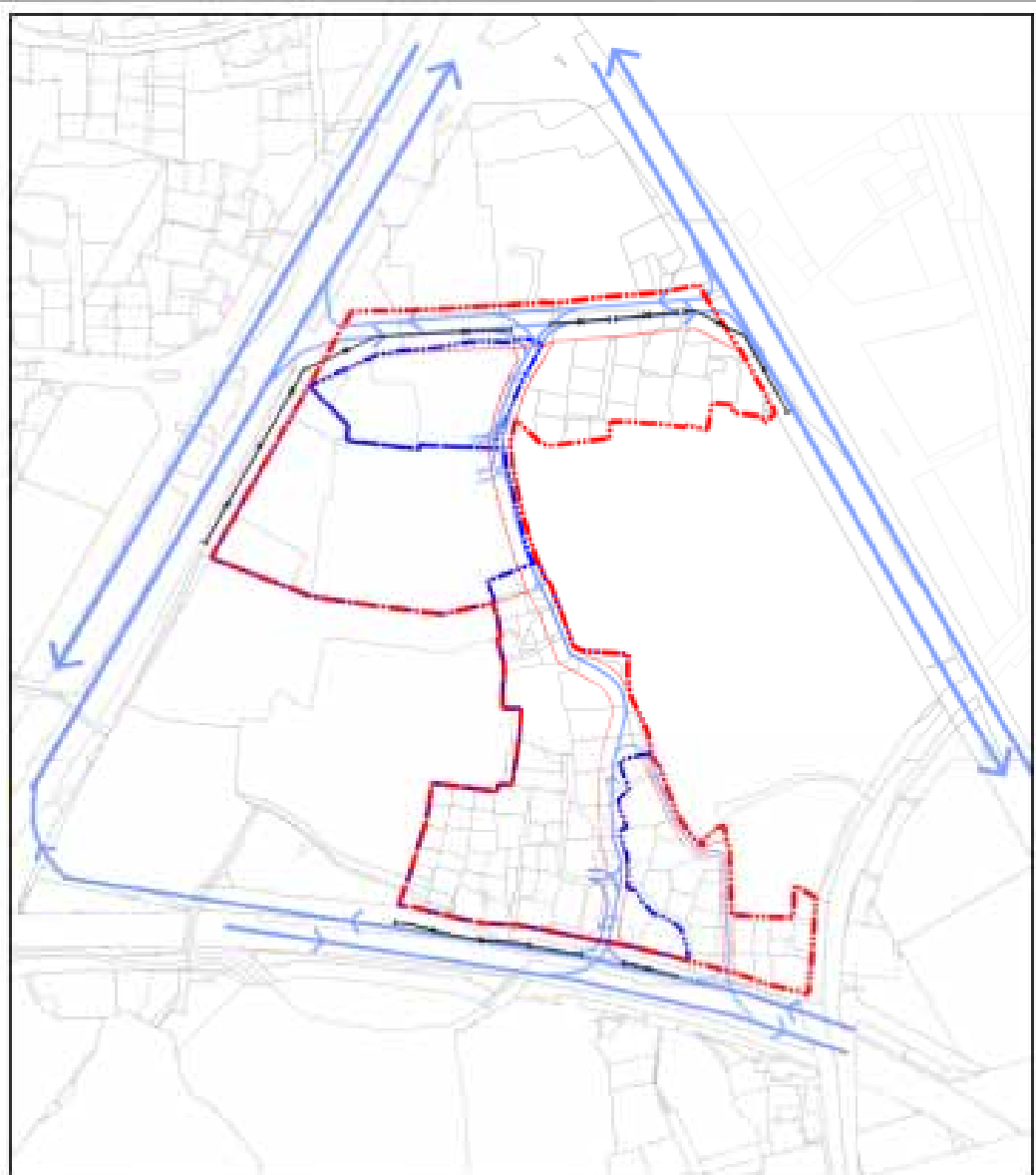
행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차량 및 교통동선
결정(기정)도

범	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계획구역
	주요도로
	기정도로



■ 차량 및 교통동선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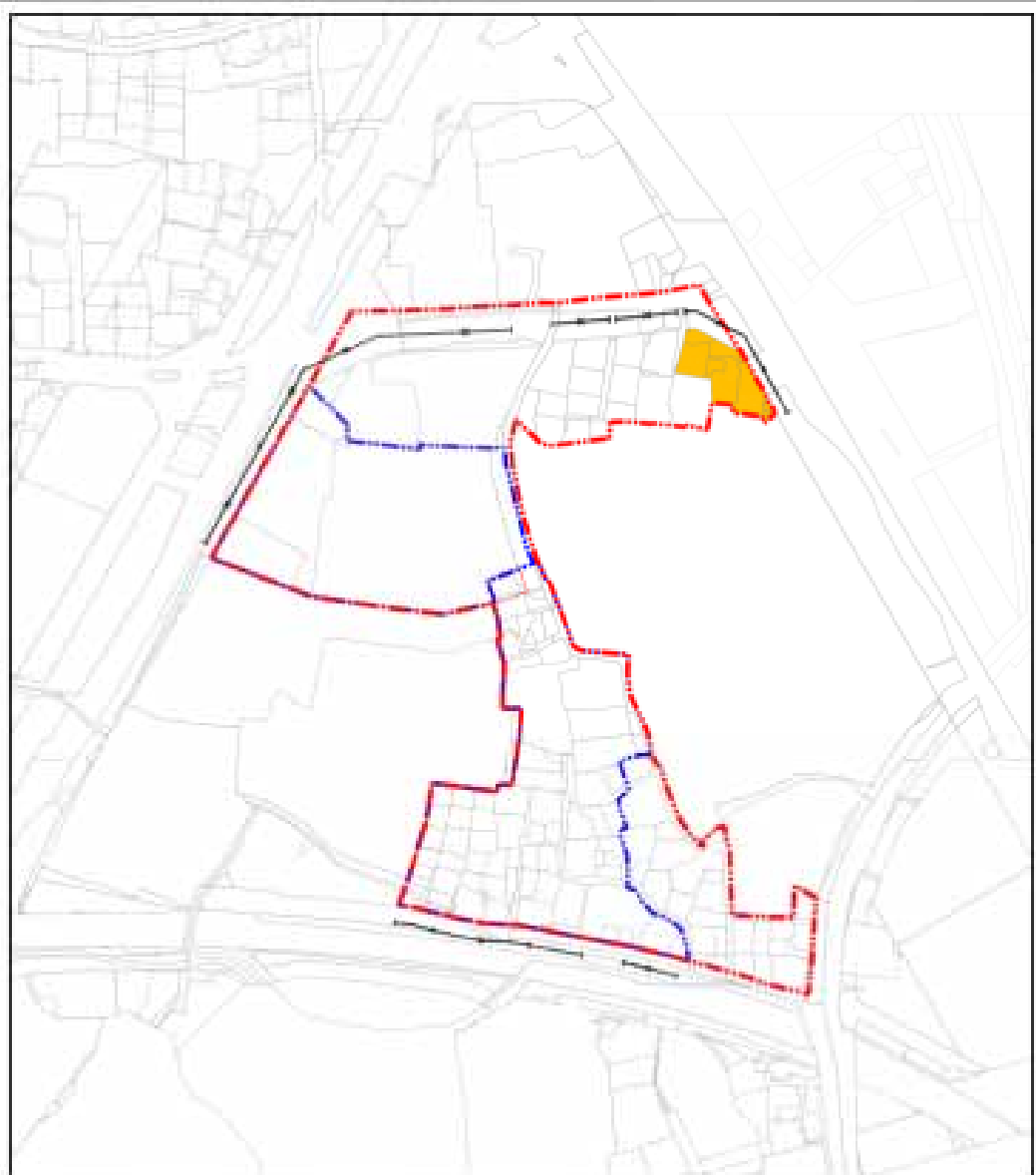
행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차량 및 교통동선
결정(변경)도

변	제
---	차량단위계획구역
---	차량단위계획구역
---	차량단위계획
---	차량단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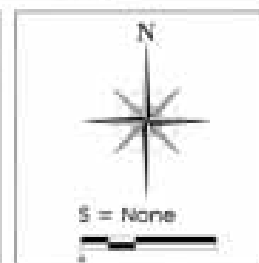


■ 주차장설치기준완화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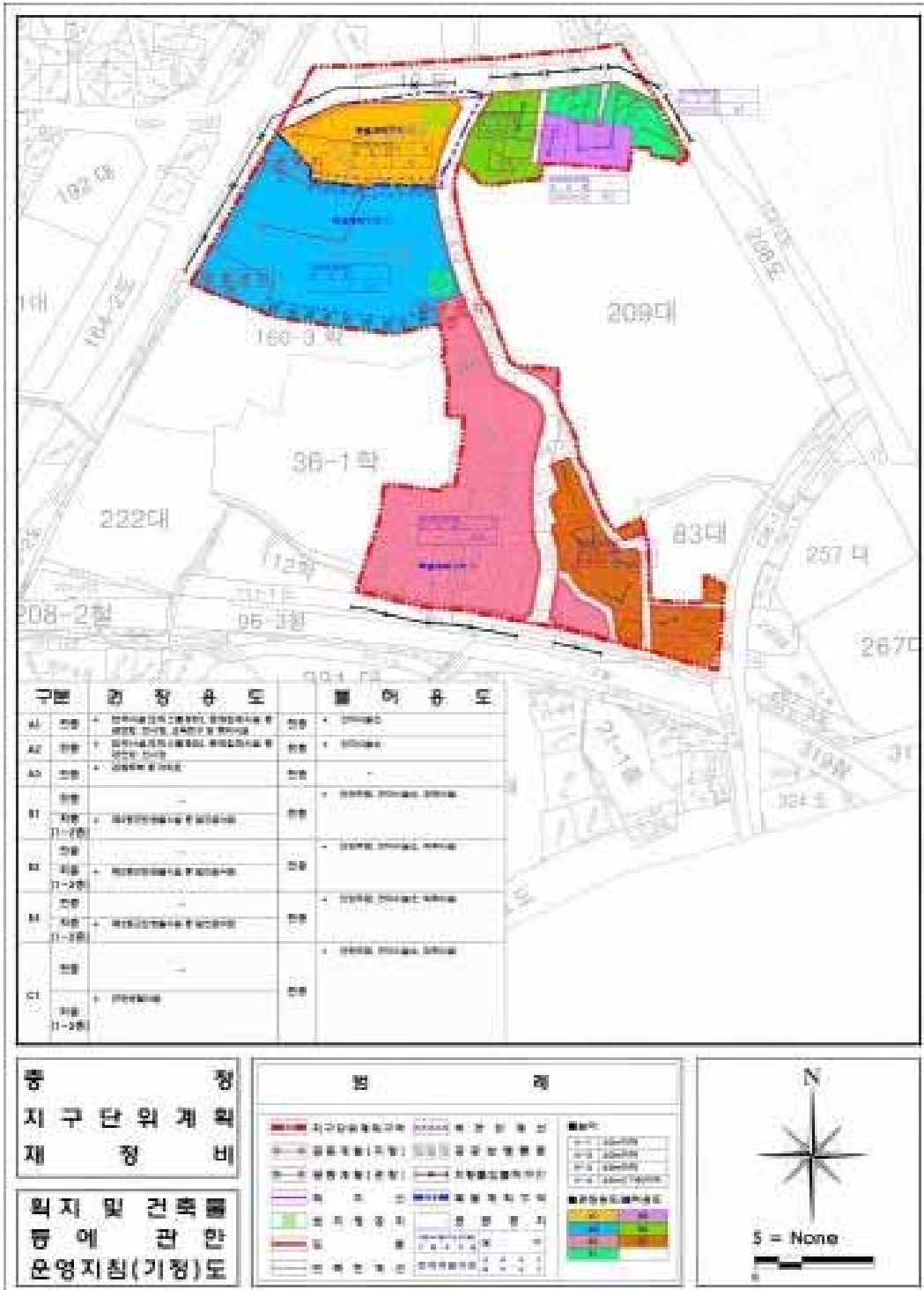


행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차장설치기준완화
구역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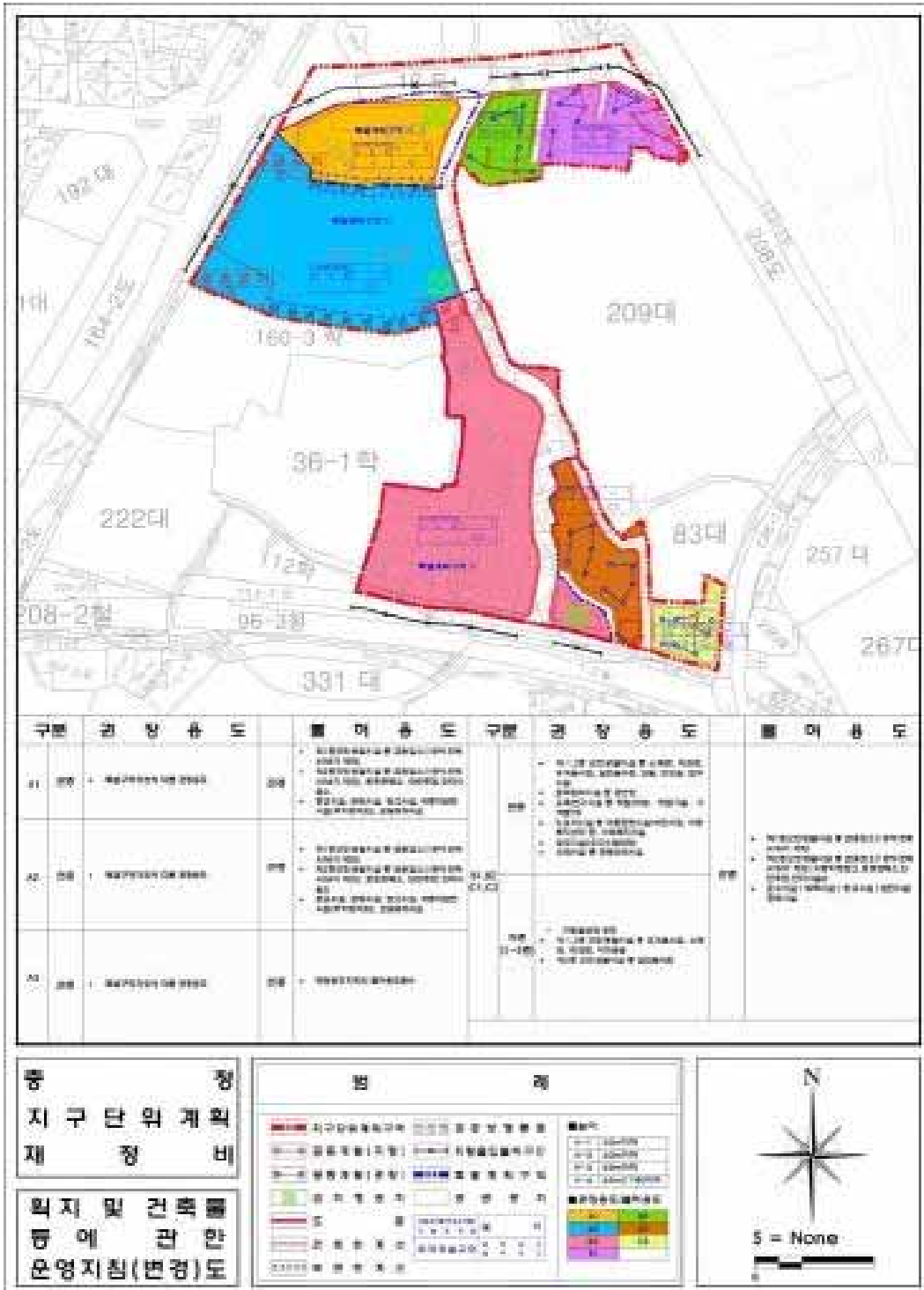
범	례
	이웃간화정확구역
	국공립학교
	주차장설치기준완화구역
	이웃간화정확구역



■ 운영지침 결정(기정)도



■ 운영지침 결정(변경)도



공 램 의 견 서

공 랑 의 건 서				
사업명	충정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 (서대문구 미군동 21번지 일대)			
공람기간	2020. 10. 29. ~ 2020. 11. 13. (공고일 다음날부터 15일)			
대 상 물건지	건 물			
	토 지			
의 견 제출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내 용 (제 출 일 :)			

금천구공고 제2020 - 100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653-27번지 금산초등학교 마을개방형 체육관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결정(안)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및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9일

금 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1) 금천구청 도시계획과(☎02-2627-1555, e-mail young0@geumcheon.go.kr)
- 2)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2165-0344, e-mail hyeoncho@sen.go.kr)

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학교	초등학교	금천구 시흥동 653-27번지	6,400	-	6,400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298호 (1994.09.08.)	-

- 2) 건축범위 결정조서

건 폐 율(%)		용 적 륜(%)		높 이 (층)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0	30	100	-	5층 이하	-	자연녹지지역

- 3)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건축범위 변경 · 건폐율 : 20%→30%	- 해당 학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학교부지의 추가 확장은 불가능하며, 기존 건축물의 상부에 증축은 구조적 불안정 등으로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 운동장 일부를 활용한 체육관 증축이 불가피하여, 증축계획에서 건축범위를 초과한 건폐율의 완화를 통해 체육관을 설치함으로써 건강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및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라. 관련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동작구공고 제2020 - 153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

1. 총독부고시 제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16-241호(2016.8.11)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동작구고시 제2020-49호(2020.5.14.)로 실시계획 인가된 상도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자, 같은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열람공고 합니다.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9844)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9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상도근린공원)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시행지 : 당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65-159 등 15필지
변경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65-254 등 16필지
- 면 적 : 5,990㎡
- 내 용 : 토지보상 5,990㎡, 지장물 보상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청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 12. 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사. 토지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따로붙임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노량진로 74, ☎02-820-9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계		5,990	5,990								
1 (당초)	상도동 산65-159	임야	39,468	1,547	서울 동작구 상도동 209-00	재단법인○ ○○	1/1					
1 (변경)	상도동 산65-254	임야	1,547	1,547	서울 동작구 상도동 209-00	재단법인○ ○○	1/1					
2	상도동 산64-361	임야	87	87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83-2 제우피스빌딩 ○층	상도○○○ ○지역주택 조합	1/1				신탁	
3 (당초)	상도동 산57-42	임야	539	21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000	○○○○공 사	1/1					
3 (변경)	상도동 산57-116	임야	215	21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000	○○○○공 사	1/1					
4 (당초)	상도동 산57-43	임야	4,549	1,86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70, 나동 ○○○○호(방배동, 방배삼호아파트)	이○화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3길 8, ○○○호(양재동)	이○수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2길 4, 101동 ○○○○호(잠원동, 잠원현대아파트)	이○현	1/3					
4 (변경)	상도동 산57-117	임야	1,861	1,86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70, 나동 ○○○○호(방배동, 방배삼호아파트)	이○화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3길 8, ○○○호(양재동)	이○수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2길 4, 101동 ○○○○호(잠원동, 잠원현대아파트)	이○현	1/3					
5 (당초)	상도동 산57-99	임야	757	487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70, 나동 ○○○○호(방배동, 방배삼호아파트)	이○화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3길 8, ○○○호(양재동)	이○수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2길 4, 101동 ○○○○호(잠원동, 잠원현대아파트)	이○현	1/3					
5 (변경)	상도동 산57-119	임야	487	487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70, 나동 ○○○○호(방배동, 방배삼호아파트)	이○화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3길 8, ○○○호(양재동)	이○수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2길 4, 101동 ○○○○호(잠원동, 잠원현대아파트)	이○현	1/3					
6 (당초)	상도동 산57-98	임야	496	1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93, 102동 ○○○호(토당동, 한라비발디리버아파트)	최○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2길 25, 112동 ○○○호(신길동, 삼성아파트)	최○수	1/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93, 102동 ○○○호(토당동, 한라비발디리버아파트)	최○수	1/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00, 303동 ○○○○호 (식사동, 은행마을)	최○수	1/5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동해대로 1611-7, 103동 ○○○호 (심미아파트)	최○수	1/5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6 (변경)	상도동 산57-118	임야	120	1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93, 102동 000호(토당동, 한라비발디리버아파트)	최○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2길 25, 112동 000호(신길동, 삼성아파트)	최○수	1/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93, 102동 000호(토당동, 한라비발디리버아파트)	최○수	1/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일로 100, 303동 0000호 (식사동, 은행마을)	최○수	1/5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동해대로 1611-7, 103동 000호 (심미아파트)	최○수	1/5				
7 (당초)	상도동 산65-115	임야	1,347	393	서울 동작구 상도동 209-00	재단법인○ ○○	1/1				
7 (변경)	상도동 산65-253	임야	393	393	서울 동작구 상도동 209-00	재단법인○ ○○	1/1				
8 (당초)	상도동 산80-24	임야	410	57	서울 강남구 개포동 800, 우성3차아파트 6동 000호	진○렬	1/3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0-8 현대맨션 15동 000호	서○훈	1/3				
					서울 중랑구 묵동 20 신내두산아파트 528-0000	김○선	1/3				
8 (변경)	상도동 산80-33	임야	57	57	서울 강남구 개포동 800, 우성3차아파트 6동 000호	진○렬	1/3	국가	처분청 : 제주세무서장	압류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0-8 현대맨션 15동 000호	서○훈	1/3				
					서울 중랑구 묵동 20 신내두산아파트 528-0000	김○선	1/3				
9 (당초)	상도동 산80-26	임야	215	54	서울 강남구 개포동 800, 우성3차아파트 6동 000호	진○렬	1/3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0-8 현대맨션 15동 000호	서○훈	1/3				
					서울 중랑구 묵동 20 신내두산아파트 528-0000	김○선	1/3				
9 (변경)	상도동 산80-34	임야	54	54	서울 강남구 개포동 800, 우성3차아파트 6동 000호	진○렬	1/3	국가	처분청 : 제주세무서장	압류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0-8 현대맨션 15동 000호	서○훈	1/3				
					서울 중랑구 묵동 20 신내두산아파트 528-0000	김○선	1/3				
10 (당초)	상도동 산65-183	임야	96	9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67 현대주택디-○	백○치	1/8	한국○○○○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 (신용회복관리부)	가압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260 동부센트레빌아파트 102-○○○○	백○숙	16950 /162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27 도곡렉슬아파트 403-○○○○	백○숙	2268.75 /162000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354 벽산라이브파크아파트 108-000	백○정	2268.75 /162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87 등촌1단지주공아파트 109-000	백○호	1/8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83번길 55, 000호(탄방동, 위즈아파트)	백○희	2/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87-1 삼남아파트 가동 000호	백○희	1/8	국가	처분청 : 서울중앙지방법 청정검사	압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7-18 비○○호	유○옥	87/960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354 벽산라이브파크아파트 108-000	김○아	87/960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23길 24, 000호(상도동, 두양빌라)	백○우	9900/ 162000					
10 (변경)	상도동 산65-183	임야	96	9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67 현대주택디-○	백○치	1/8	한국○○○○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 (신용회복관리부)	가압류		
					파산자주식회사 프라임○○○○ 은행의파산관재 인에금보험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	가압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260 동부센트레빌아파트 102-○○○○	백○숙	16950 /162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27 도곡렉슬아파트 403-○○○○	백○숙	2268.75 /162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354 벽산라이브파크아파트 108-○○○	백○정	2268.75 /162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87 등촌1단지주공아파트 109-○○○	백○호	1/8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83번길 55, ○○○호(탄방동, 위즈아파트)	백○희	2/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22길 39-2, ○○○호(논현동)	백○희	1/8	국가	처분청 : 서울중앙지방법 청정검사	압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7-18 비○○호	유○옥	87/960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354 벽산라이브파크아파트 108-○○○	김○아	87/960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23길 24, ○○○호(상도동, 두양빌라)	백○우	9900/ 162000										
11	상도동 산65-151	임야	43	43	서울 동작구 상도3동 283-○○○	김○석	1/1					
12	상도동 산57-105	임야	135	135	서울 강서구 화곡동 370-○○	한○수	1/1					
13	상도동 산57-106	임야	207	207	서울 강서구 화곡동 370-○○	한○수	1/1					
14 (당초)	상도동 산65-232	임야	9,740	677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10-○○	재단법인○ ○○	1/1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10-00	재단법인○○ ○○	1/1				
(변경)	1 상도동 산65-255	임야	424	424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10-00	재단법인○○ ○○	1/1				
	1 상도동 산65-256	임야	253	253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10-00	재단법인○○ ○○	1/1				
15 (당초)	상도동 산64-360	임야	11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83-2 제우피스빌딩 ○층	상도○○○ ○지역주택 조합	1/1			선탁	
16 (변경)	상도동 산64-360	임야	11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83-2 제우피스빌딩 ○층	상도○○○ ○지역주택 조합	1/1			선탁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1 (당초)	상도동 산65-159 (양녕로 32길 58-8)	건물	10㎡	1		동작구 양녕로 32길 58-〇	김〇숙	동작구 양녕로 32길 58-〇	노〇재	거주자	기존 무허가 건물	
		건물	78㎡	1								
		담장	14.5m	1								
		담장	38.3m	1								
		벚나무	B17	1								
		수목	B4	1								
		수목	H1.2	2								
		옻나무	H1.0~1.5	4								
		살구나무	B8~15	2								
		영산홍	H0.3	2								
라일락	B13~16	2										
1 (변경)	상도동 산65-254 (양녕로 32길 58-8)	건물	10㎡	1		동작구 양녕로 32길 58-〇	김〇숙	동작구 양녕로 32길 58-〇	노〇재	거주자	기존 무허가 건물	
		건물	78㎡	1								
		담장	14.5m	1								
		담장	38.3m	1								
		벚나무	B17	1								
		수목	B4	1								
		수목	H1.2	2								
		옻나무	H1.0~1.5	4								
		살구나무	B8~15	2								
		영산홍	H0.3	2								
라일락	B13~16	2										
2 (당초)	상도동 산65-159 (양녕로 32길 58-9)	창고	4㎡	1			미상	동작구 양녕로 32길 58-〇	김〇분	거주자	무허가 건물	
		건물	82㎡	1								
		부속건물	28㎡	1								
		화장실	2㎡	1				동작구 양녕로 32길 58-〇	김〇우	거주자		
		벚나무	H1.5~2.0	10								
		수목	H1.0	1								
		개나리	H1.0	20				동작구 양녕로 32길 58-〇	이〇분	거주자		
		감나무	R17	1								
2 (변경)	상도동 산65-254 (양녕로 32길 58-9)	창고	4㎡	1		동작구 양녕로 32길 58-〇	김〇분	동작구 양녕로 32길 58-〇	이〇분	거주자	무허가 건물	
		건물	82㎡	1								
		부속건물	28㎡	1								
		화장실	2㎡	1								
		벚나무	H1.5~2.0	10								
		수목	H1.0	1								
		개나리	H1.0	20								
		감나무	R17	1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3 (당초)	상도동 산65-159 (양녕로 32길 58-11)	건물	19㎡	1			미상	동작구 양녕로 32길 58-00	김○찬	거주자	무허가 건물	
		화장실	2㎡	1								
		감나무	R6	1								
		수목	R3	1								
		아사히베리	H1.2~2.0	20								
		엄나무	H1.5~2.0	6								
		사철나무	H1.0~3.0	60								
모과나무	H5.0	1										
3 (변경)	상도동 산65-254 (양녕로 32길 58-11)	건물	19㎡	1		동작구 양녕로 32길 58-00	김○찬				무허가 건물	
		화장실	2㎡	1								
		감나무	R6	1								
		수목	R3	1								
		아사히베리	H1.2~2.0	20								
		엄나무	H1.5~2.0	6								
		사철나무	H1.0~3.0	60								
모과나무	H5.0	1										
4 (당초)	상도동 산65-159 (양녕로 32길 58-23)	건물	128㎡	1		동작구 양녕로 32길 58-00	고○희	동작구 양녕로 32길 58-00	고○희	거주자	기존 무허가 건물	
		건물	28㎡	1				동작구 양녕로 32길 58-00	손○혁	거주자		
		담장	44.8m	1								
		수국	H0.3	10								
		남천	H1.0	15								
		사철나무	H1.0~1.5	210								
		벗나무	B9~21	7								
		동백나무	H1.0	2								
		자두나무	H0.8	2								
		대추나무	H0.8	1								
		주목	H1.2	1								
		영산홍	H0.2~0.3	20								
		남천	H1.0	5								
		키위	H1.0	2								
		공작단풍	H1.0	1								
		회양목	H0.4~0.5	100								
		개나리	H1.0	20								
		대문	3.3m	1								
		측백나무	H0.3~0.5	20								
		장미		50								
		능소화		1								
		나무화분		9								
		화단수석		5								
		적벽돌		200								
		흰벽돌		50								
		태양광등불		6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4 (변경)	상도동 산65-254 (양녕로 32길 58-23)	건물	128㎡	1		동작구 양녕로 32길 58-00	고○희	동작구 양녕로 32길 58-00	고○희	거주자	기존 무허가 건물
		건물	28㎡	1							
		담장	44.8m	1							
		수국	H0.3	10							
		남천	H1.0	15							
		사철나무	H1.0~1.5	210							
		벚나무	B9~21	7							
		동백나무	H1.0	2							
		자두나무	H0.8	2							
		대추나무	H0.8	1							
		주목	H1.2	1							
		영산홍	H0.2~0.3	20							
		남천	H1.0	5				동작구 양녕로 32길 58-00	손○혁	거주자	
		키위	H1.0	2							
		공작단풍	H1.0	1							
		회양목	H0.4~0.5	100							
		개나리	H1.0	20							
		대문	3.3m	1							
		측백나무	H0.3~0.5	20							
		장미		50							
		능소화		1							
		나무화분		9							
		화단수석		5							
		적벽돌		200							
		흰벽돌		50							
		태양광등불		6							
5 (당초)	상도동 산57-99 (상도로 60길 45)	건물	43㎡	1		서초구 서초동 1604-19 대호프레조빌 0000호	이○현				기존 무허가 건물
		창고	2㎡	1							
		창고	13㎡	1							
5 (변경)	상도동 산57-119 (상도로 60길 45)	건물	43㎡	1		서초구 서초동 1604-19 대호프레조빌 0000호	이○현				기존 무허가 건물
		창고	2㎡	1							
		창고	13㎡	1							
6 (당초)	상도동 산57-99 (상도로 60길 47)	건물	49㎡	1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248번길 40 103동 0000호	윤○환				기존 무허가 건물
		창고	7㎡	1							
		사철나무	H0.3~1.0	10							
		회양목	H0.3	1							
6 (변경)	상도동 산57-119 (상도로 60길 47)	건물	49㎡	1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248번길 40 103동 0000호	윤○환				기존 무허가 건물
		창고	7㎡	1							
		사철나무	H0.3~1.0	10							
		회양목	H0.3	1							
		황매화	H0.8	30							
		황매화	H0.8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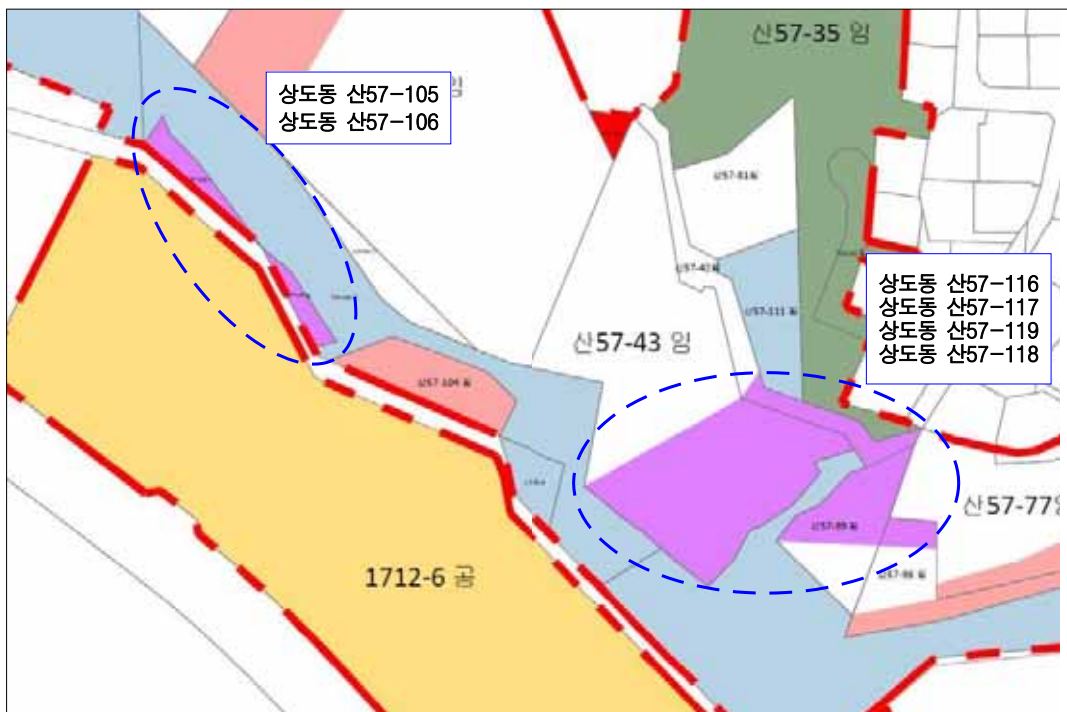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7 (당초)	상도동 산57-99 (상도로 60길 49)	건물	51㎡	1		동작구 상도동 산57-00	이○임				기존 무허가 건물
		창고	3㎡	1							
		창고	13㎡	1							
		창고	9㎡	1							
7 (변경)	상도동 산57-119 (상도로 60길 49)	건물	51㎡	1		동작구 상도동 산57-00	이○임				기존 무허가 건물
		창고	3㎡	1							
		창고	13㎡	1							
		창고	9㎡	1							
8 (당초)	상도동 산57-99 (상도로 60길 49-3)	건물	23㎡	1			미상	동작구 상도동 산57-00	임○수	거주자	무허가 건물
		창고	25㎡	1							
		창고	9㎡	1							
		창고	10㎡	1							
		탱자나무	H2.0	3							
		수목	H0.8	1							
		수목	R10	1							
		회양목	H0.4	1							
8 (변경)	상도동 산57-118 (상도로 60길 49-3)	건물	23㎡	1		동작구 상도동 산57-00	임○수				무허가 건물
		창고	25㎡	1							
		창고	9㎡	1							
		창고	10㎡	1							
		탱자나무	H2.0	3							
		수목	H0.8	1							
		수목	R10	1							
		회양목	H0.4	1							
9 (당초)	상도동 산57-43 (상도로 60길 50)	건물	75㎡	1		동작구 상도동 산57-00	이○윤	동작구 상도동 00	김○숙	거주자	기존 무허가 건물
		화장실	2㎡	1							
		부속건물	4㎡	1							
		창고	3㎡	1							
		창고	3㎡	1							
		사철나무	H0.8~1.5	270							
		라일락	H1.5	7							
		목란	H1.0	2							
		산수국	H0.8	1							
		영산홍	H1.0	8							
		능소화	H4.0	2							
		매자나무	H0.4	5							
		홍나무	R11	4							
		아로니아	H0.5	1							
		보리수나무	R17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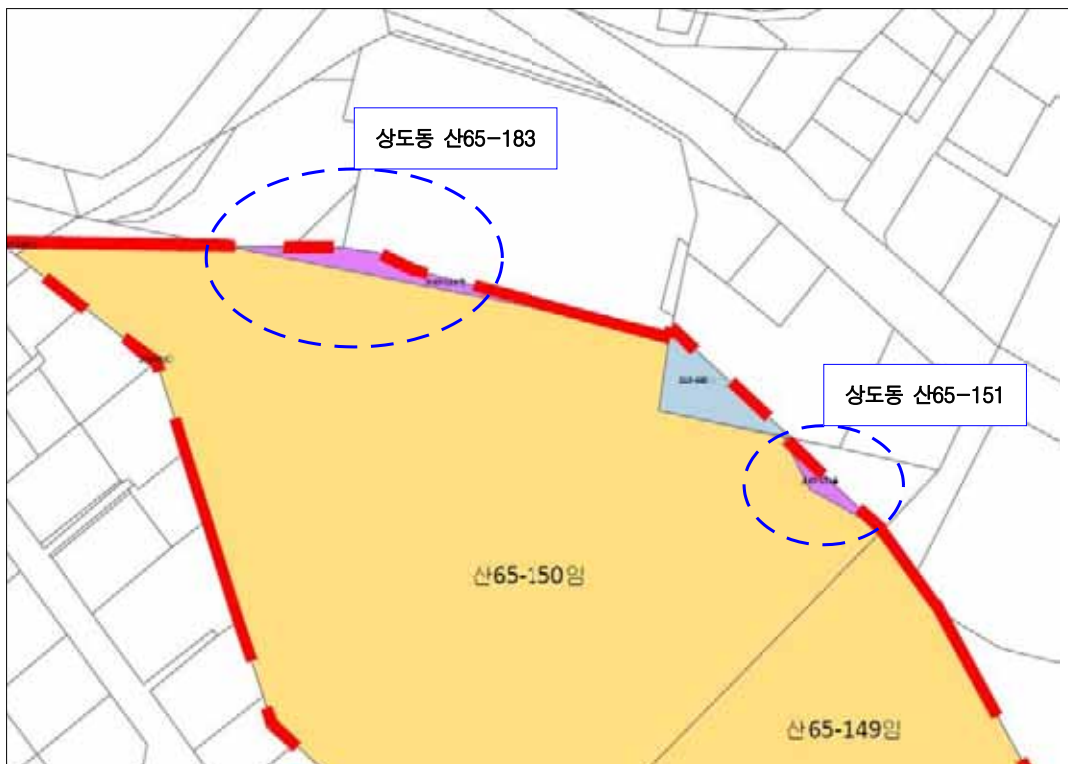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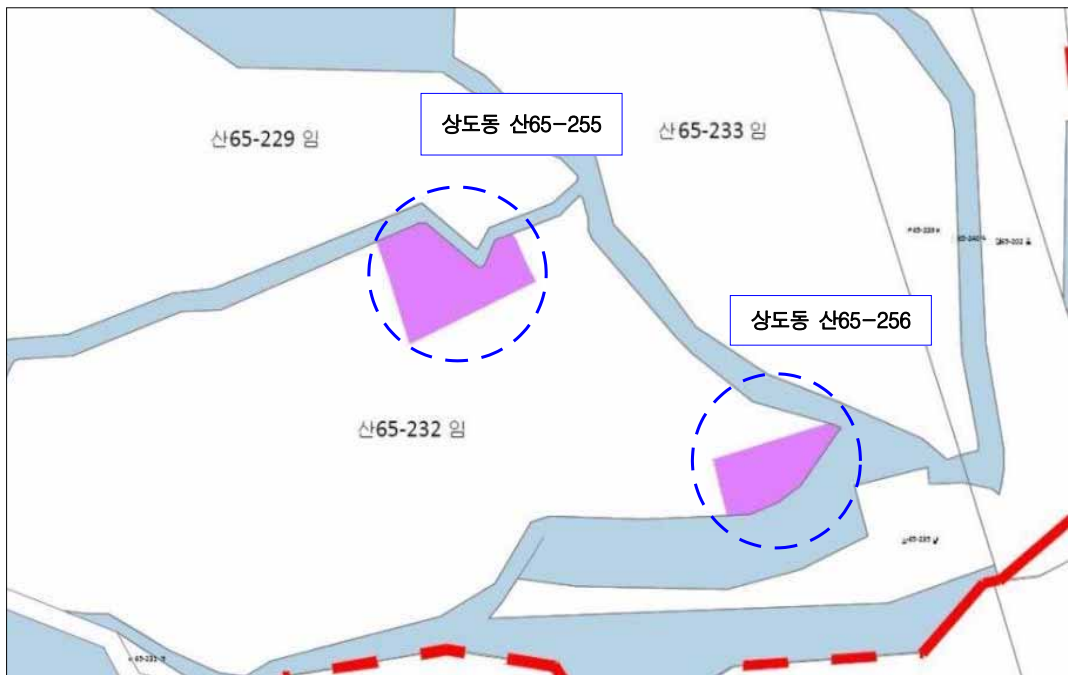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주목	R13	1							
		앵두나무	H1.0	1							
		밤나무	B22	5							
		감나무	R15	1							
		포도나무	H2.0	2							
		단풍나무	R8	4							
		두릅나무	H0.3~1.0	80							
		향나무	R15	2							
		황매화	H1.0~1.5	70							
		회양목	H0.5	23							
		앵두나무	R10	2							
		단풍나무	R10	1							
		구지뽕	H1.5~2.0	4							
		매실나무	R20	1							
		가시오가피	H1.5	5							
		골담초	H1.5	2							
		개나리	H1.5	20							
		인동초		2							
		대추나무	H2.5	1							
		황매화	H1.0	10							
		장미	H1.5	4							
		회양목	H0.5	10							
		은행나무	B30	1							
9 (변경)	상도동 산57-117 (상도로 60길 50)	건물	75㎡	1		동작구 상도동 산57-00	이○윤	동작구 상도동 00	김○숙	거주자	기존 무허가 건물
		화장실	2㎡	1							
		부속건물	4㎡	1							
		창고	3㎡	1							
		창고	3㎡	1							
		사철나무	H0.8~1.5	270							
		라일락	H1.5	7							
		목란	H1.0	2							
		산수국	H0.8	1							
		영산홍	H1.0	8							
		능소화	H4.0	2							
		매자나무	H0.4	5							
		뽕나무	R1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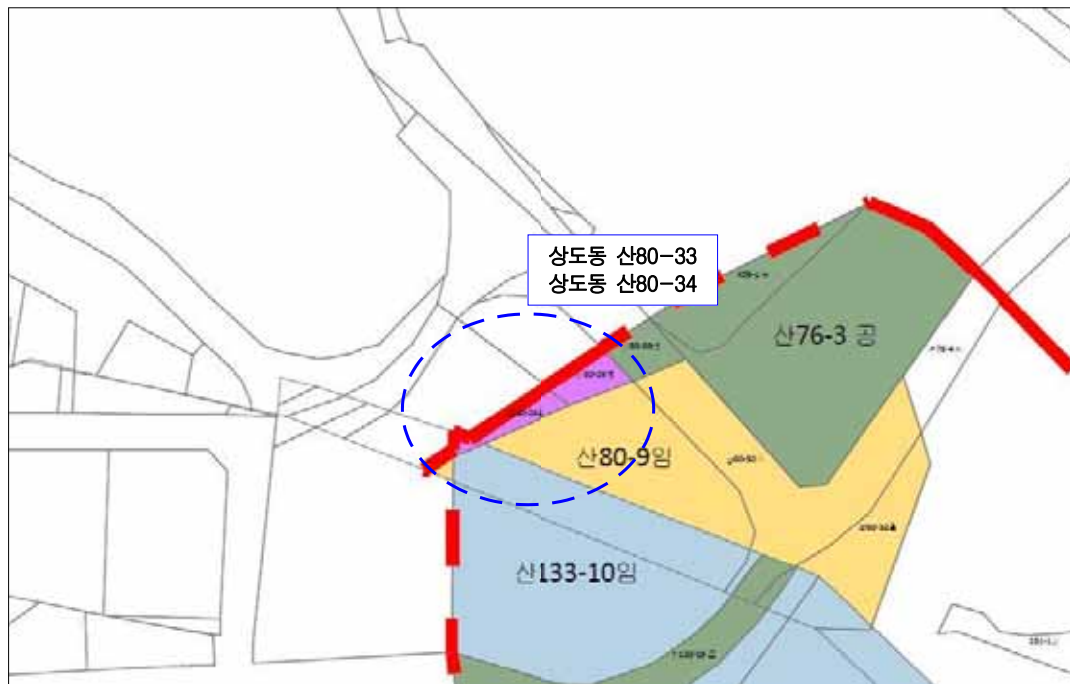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아로니아	H0.5	1								
		보리수나무	R17	2								
		주목	R13	1								
		앵두나무	H1.0	1								
		밤나무	B22	5								
		감나무	R15	1								
		포도나무	H2.0	2								
		단풍나무	R8	4								
		두릅나무	H0.3~1.0	80								
		향나무	R15	2								
		황매화	H1.0~1.5	70								
		회양목	H0.5	23								
		앵두나무	R10	2								
		단풍나무	R10	1								
		구지뽕	H1.5~2.0	4								
		매실나무	R20	1								
		가시오가피	H1.5	5								
		골담초	H1.5	2								
		개나리	H1.5	20								
		인동초		2								
		대추나무	H2.5	1								
		황매화	H1.0	10								
		장미	H1.5	4								
		회양목	H0.5	10								
		은행나무	B30	1								
10 (당초)	상도동 산57-43 (상도로 60길 52)	건물	75㎡	1		동작구 상도동 산57-00	김○명	동작구 상도로 60길 ○○	김○수	거주자	기존 무허가 건물	
		창고	16㎡	1								
		화장실	4㎡	1								
		모란	H0.5	1								
		주목	H0.5	3								
		홍매화	H1.0	2								
		사철나무	H1.2	100				동작구 상도로 60길 ○○	김○숙	거주자		
		향나무	H4.0	1								
		황매화	H1.5	1								
		회양목	H1.5	20								
		산수국	H0.8	2								
		소나무	H2.5	1								
		감나무	R10	1								
		매실나무	H2.5	1								
		대추나무	H3.0	1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살구나무	R5~15	2		동작구 상도로 60길 00	박○철	동작구 상도로 60길 00	이○임	거주자	
		보리수나무	H3.0	1							
		자두나무	R30	1							
		박태기나무	H2.0	2							
		건물	25㎡	1							
		창고	5㎡	1							
10 (변경)	상도동 산57-117 (상도로 60길 52)	건물	75㎡	1		동작구 상도동 산57-00	김○명	동작구 상도로 60길 00	김○수	거주자	기존 무허가 건물
		창고	16㎡	1							
		화장실	4㎡	1							
		모란	H0.5	1							
		주목	H0.5	3							
		홍매화	H1.0	2							
		사철나무	H1.2	100							
		향나무	H4.0	1							
		황매화	H1.5	1							
		회양목	H1.5	20							
		산수국	H0.8	2							
		소나무	H2.5	1							
		감나무	R10	1							
		매실나무	H2.5	1							
		대추나무	H3.0	1							
		살구나무	R5~15	2							
		보리수나무	H3.0	1							
		자두나무	R30	1							
		박태기나무	H2.0	2							
		건물	25㎡	1				동작구 상도로 60길 00	박○철		
		창고	5㎡	1							

사업 위치도







서초구공고 제2020 - 1581호

**도시관리계획(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일대의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 초 구 청 장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양재동, 우면동, 염곡동 일대	3,067,090.0	-	3,067,090.0	2001.12.12 (서고 제2001-418호)

- 2)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계획 결정(변경)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5)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6)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KCTC부지 특별계획구역	양재동 224번지	-	증)9,782.6	9,782.6	

- 7)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8) KCTC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다. 열람장소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2155-6794), 양재2동 주민센터(☎ 2155-7905)

라. 관련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와 같음)

마. 기타사항 : 결정조서의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절차이행 중 변경될 수 있음

바.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방문, Fax 2155-6819, 이메일 kimhs881@seocho.go.kr)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공고 제2020 - 2034호**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열람 공고**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51호(2019.12.31.)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자원순환센터추진과에 비치하고 열람기간 동안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본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시행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9일

강 동 구 청 장

☐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87길272(고덕동85) 외60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 다. 사업의 명칭: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 라. 사업의 면적: 41,153㎡
- 마. 사업시행자: 강동구청장(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
- 바.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5년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
-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자.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차. 열람장소: 강동구청 자원순환센터추진과
-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자원순환센터추진과(☎3425-60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강동구 고덕동	54-5	잡	1,479	1,479	SH					
2	강동구 고덕동	55-5	잡	3,451	3,451	SH					
3	강동구 고덕동	56	잡	775	775	SH					
4	강동구 고덕동	57	잡	26	26	SH 외1인					
5	강동구 고덕동	72-7	잡	264	264	SH					
6	강동구 고덕동	80-19	잡	747	747	SH					
7	강동구 고덕동	80-21	잡	22	22	SH					
8	강동구 고덕동	80-23	잡	956	956	SH 외1인					
9	강동구 고덕동	80-24	전	7	7	SH					
10	강동구 고덕동	80-33	제	237	237	국토교통부					
11	강동구 고덕동	80-45	잡	70	70	SH 외 1인					
12	강동구 고덕동	80-46	전	103	103	국토교통부					
13	강동구 고덕동	81	잡	569	569	SH					
14	강동구 고덕동	82	잡	1,656	1,656	SH 외1인					
15	강동구 고덕동	83	잡	740	740	SH					
16	강동구 고덕동	84-1	잡	496	496	SH 외1인					
17	강동구 고덕동	85-7	잡	100	100	SH					
18	강동구 고덕동	359-1	잡	1,375	1,375	SH					
19	강동구 고덕동	359-3	잡	418	418	SH					
20	강동구 고덕동	359-4	잡	7,580	7,580	SH 외 5인					
21	강동구 고덕동	359-5	천	2,095	172	SH 외 1인					
22	강동구 고덕동	359-9	전	11	11	국토교통부					
23	강동구 고덕동	359-12	잡	5	5	서울특별시					
24	강동구 고덕동	359-13	잡	48	48	SH					
25	강동구 고덕동	359-14	잡	206	165	SH					
26	강동구 고덕동	359-15	잡	82	82	SH					
27	강동구 고덕동	359-16	잡	28	8	서울특별시					
28	강동구 고덕동	359-17	전	353	353	국토교통부					
29	강동구 고덕동	359-18	잡	763	763	국토교통부					
30	강동구 고덕동	359-19	잡	16	16	서울특별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31	강동구 고덕동	54-7	답	1,119	1,119	SH					
32	강동구 고덕동	84-2	답	288	288	SH 외1인					
33	강동구 고덕동	84-3	전	162	162	SH					
34	강동구 고덕동	85	잡	4,880	4,880	SH					
35	강동구 고덕동	85-1	천	23,523	123	SH 외1인					
36	강동구 고덕동	89-3	잡	1,735	1,735	SH					
37	강동구 고덕동	89-16	전	166	122	SH					
38	강동구 고덕동	358-12	도	1,091	1,091	SH 외1인					
39	강동구 고덕동	358-14	도	865	13	SH 외1인					
40	강동구 고덕동	80-48	제	390	23	국토교통부					
41	강동구 고덕동	80-51	제	67	65	국토교통부					
42	강동구 고덕동	359-20	잡	15	15	SH 외5인					
43	강동구 고덕동	359-21	천	33	6	서울특별시					
44	강동구 고덕동	359-23	잡	170	95	서울특별시					
45	강동구 고덕동	359-25	잡	10	10	국토교통부					
46	강동구 고덕동	359-26	잡	124	62	서울특별시					
47	강동구 고덕동	359-28	잡	32	32	국토교통부					
48	강동구 고덕동	359-29	잡	9	9	SH 외5인					
49	강동구 고덕동	358-13	도	557	102	강동구					
50	강동구 고덕동	52	답	1,479	1,146	SH 외2인					
51	강동구 고덕동	53-1	답	1,660	1,660	SH					
52	강동구 고덕동	53-2	구	468	468	SH					
53	강동구 고덕동	53-4	잡	116	116	SH					
54	강동구 고덕동	89-1	답	1,773	1,773	SH					
55	강동구 고덕동	89-2	구	770	770	SH					
56	강동구 고덕동	89-4	답	1,146	1,136	SH					
57	강동구 고덕동	89-5	전	2,396	1,248	SH 외1인					
58	강동구 고덕동	89-14	답	8	8	SH					
59	강동구 고덕동	89-15	전	30	30	SH					
60	강동구 고덕동	89-17	답	52	52	SH					
61	강동구 고덕동	89-18	전	102	100	SH					
합계 면적(㎡)				69,914	41,153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1	강동구 고덕동	85	재활용선별장 (본동)	일반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356.16	m ²		강동구				
2	강동구 고덕동	85	재활용선별장 (사무동)	일반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151.28	m ²		강동구				1층:75.64 2층:75.64
3	강동구 고덕동	85	창고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28	m ²		강동구				
4	강동구 고덕동	85	스티로폼 감용기동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147	m ²		강동구				
5	강동구 고덕동	85	정비고동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185.64	m ²		강동구				
6	강동구 고덕동	85	후생복지동	일반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474	m ²		강동구				
7	강동구 고덕동	85	가로진공 차고동	경량철골조 아크릴	491.64	m ²		강동구				
8	강동구 고덕동	85	관리본동	일반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444.08	m ²		강동구				1층:222.04 2층:222.04
9	강동구 고덕동	85	바이오디젤 주유소	일반철골조	295.8	m ²		강동구				
10	강동구 고덕동	85	수목	은행나무 등	1	식		강동구				
11	강동구 고덕동	55-5	폐형광등 수집보관소	경량철골조 아크릴	81	m ²		강동구				
12	강동구 고덕동	55-5	응역 정비고동	경량철골조 아크릴	245.82	m ²		강동구				
13	강동구 고덕동	55-5	경비실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31.96	m ²		강동구				
14	강동구 고덕동	55-5	차고동 (태양광패널)	경량철골조	246.84	m ²		강동구				
15	강동구 고덕동	55-5	오수처리 시설	경량철골조 조립식패널	625	m ²		강동구				
16	강동구 고덕동	55-5	폐목재 막구조	일반철골조 막구조	1,008.7	m ²		강동구				
17	강동구 고덕동	55-5	수목	잣나무 등	1	식		강동구				

위치도 및 용지도

□ 위치도



□ 용지도



사업소고시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0 - 28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계 내 한강 (영동대교)	선박 2척	영동대교 보수공사	2020.10.23. ~ 2020.11.22.	2020. 10.22.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0 - 28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시계내 한강 (광나루 외 8개소)	광나루 333㎡	관공선 선착장 및 임시 선착장	2020.10.25. ~ 2023.10.24.	’ 20.10.23
			독섬 253㎡			
			본부 229㎡			
			이촌 253㎡			
			망원 253㎡			
			잠원 229㎡			
			양화 229㎡			
			여의도 957㎡			
			임시선착장 861㎡			

사업소공고

양천소방서공고 제2020 - 34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동법 제32조에 따른 청문실시를 위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여야하나, 연락두절 및 사업장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양 천 소 방 서 장

1.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통지
2. 공고기간: 2020. 10. 29. ~ 11. 12. (14일간)
3. 공고내용

제 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당 사 자	성명(명칭)	이건희 [주식회사 현이엔지]				
	주 소	양천구 국회대로 20, 2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2차 영업정지 3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2.개별기준, 나.2차 영업정지 3개월					
청문실시	기관명	양천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박성완
	주 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전화번호	02-6981-8692
	일 시	2020년 11월 16일(월) 10시 ~			장 소	양천소방서 2층 소회의실

- 붙임 1. 의견제출서(서식) 1부
2. 기피신청서(서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28>

기피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청문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신청이유	

「행정절차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처리기관 (행정청)	→	검토 처리기관 (행정청)	→	결정 처리기관 (행정청)	→	신청인에게 통지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기 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 - 309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2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양천구 목동 116-32외 6필지(양천구 목동 411 ~ 강서구 염창동 221-1)
 - 면 적 : 일시 1,12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지역난방 열수송관 보수공사
 - 내 역 : 고수부지 굴착(B=3.2m, H=3.6m, L=50m) 7개소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20.10.22.~2021.04.19.(점용기간과 같음)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